



저출산 대응정책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분석 연구

: 자녀 양육기의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유해미 최효미 강신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orea
Institute of Child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17-15

저출산 대응정책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분석 연구

: 자녀 양육기의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유해미 최효미 강신혜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 리 말

지난 10여년 이상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경주해왔다. 지난해에 수립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종전의 기혼가구의 보육 부담과 일·가정 양립 일상화에서 그 범위를 확장하여 고용, 주거, 교육 등 저출산의 구조적 원인을 해소하는 데 보다 주력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 발표에 의하면, 출생아수는 2016년부터 감소세가 이어져 2017년 9월에는 30,1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300명(-12.5%)명이 줄어들었다. 또한 혼인코호트별로 기대자녀수는 감소하고 무자녀 비중은 증가하며 출산기간은 단축되는 추세를 보여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게다가 보편적 보육지원에도 불구하고 육아 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도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저출산 대응의 방향성에 대한 점검은 물론, 각종 세부대책들이 정책 수요자의 욕구에 제대로 부합하는지를 면밀하게 따져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저출산 대응의 생애주기별 접근에 주목하여 특히 자녀 양육기의 돌봄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수요자의 욕구에 현행 지원이 부합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예비부부를 포함한 정책 수요자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이들 욕구에 대한 효과성 진단을 위해 저출산 분야 정책 전문가 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병행하였다. 그 결과 각 자녀양육 단계별 자녀돌봄 지원의 내용, 지원대상 범위와 지원수준에 관한 제언을 도출하였는데, 이들 방안은 저출산 대응정책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 등에 응해주신 전국 지역의 부모님들, 그리고 자문회의 등에서 고견을 주신 전문가들께도 감사를 전한다. 끝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혀 둔다.

2017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직무대행 **이미화**

차 례

요 약	1
I. 서론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2. 연구 내용 및 범위	10
3. 연구 방법 및 절차	16
II. 연구의 배경	23
1. 자녀 양육기 재정투자 비중 및 추이	23
2. 자녀돌봄 지원의 유형	29
3. 자녀돌봄 지원과 출산율 제고 효과	47
III. 자녀양육 단계별 돌봄지원 정책 현황	53
1. 중앙정부의 돌봄지원 제도 및 정책 현황	53
2. 지방정부의 돌봄지원 시책 추진 현황	103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돌봄지원 분야 연계	135
IV.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 평가와 개선 요구	138
1. 출산 의향과 자녀양육 단계별 애로사항	138
2.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도움 정도 인식	147
3. 자녀돌봄 지원의 개선 요구	164
V. 자녀돌봄 지원의 정합성 평가와 개선 과제	194
1. 자녀돌봄 지원의 재정투자 비중 및 방향성	194
2. 자녀돌봄 지원의 효과성 평가	196
3. 자녀돌봄 지원의 개선 과제	203
VI. 결론 및 제언	211
1. 종합: 자녀돌봄 지원의 양육 단계별 정합성 평가	211
2. 자녀양육 단계별 돌봄지원의 방향 및 주요 전략	220
3. 세부 정책 과제	223

참고문헌	239
부록	245
부록 1. 설문조사표: 정책 수요자용	247
부록 2. 설문조사표: 정책 전문가용	263
부록 3. 심층면담 질문지: 부모용	285
부록 4. 전국 상위 10개 지역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	293

표 차례

〈표 I-3- 1〉 설문조사 항목_정책 수요자(부모) 대상	17
〈표 I-3- 2〉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1_정책 수요자_가구 특성	18
〈표 I-3- 3〉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1_정책 수요자_자녀 특성	19
〈표 I-3- 4〉 설문조사 항목_전문가 대상	19
〈표 I-3- 5〉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2_정책 전문가	20
〈표 I-3- 6〉 심층면담 대상 및 내용_부모	20
〈표 I-3- 7〉 심층면담 대상자 일반적 특성_부모	21
〈표 II-1- 1〉 OECD 국가의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초기 정책 개입의 범위	23
〈표 II-1- 2〉 일본의 “새로운 저출산 대책” 주요내용(2006)	24
〈표 II-1- 3〉 대만의 영유아 대상 육아지원정책	24
〈표 II-1- 4〉 대만의 자녀양육 단계별 의료서비스	26
〈표 II-2- 1〉 아동관련 현금급여(2010)	30
〈표 II-2- 2〉 OECD 국가의 법정 배우자 출산휴가제도(2016)	34
〈표 II-2- 3〉 OECD 국가의 법정 육아휴직제도(2016)	37
〈표 III-1- 1〉 2017년 저출산 대책 주요과제 중 돌봄지원 분야 현황	61
〈표 III-1-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기준 변경(2006-2017)	66
〈표 III-1-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대상 및 내용(2017)	66
〈표 III-1- 4〉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2017)	69
〈표 III-1- 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2017)	69
〈표 III-1- 6〉 장애아동수당 지원내용(2017)	70
〈표 III-1- 7〉 입양아동 양육관련 보조금 지원내용(2017)	71
〈표 III-1- 8〉 만 0~5세 보육료 지원단가(2017)	74
〈표 III-1- 9〉 시간제보육 대상별 이용 및 지원시간(2017)	75
〈표 III-1-10〉 시간연장보육료 지원 단가(2017)	76
〈표 III-1-1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2017)	77
〈표 III-1-12〉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 서비스 내용	78
〈표 III-1-13〉 육아휴직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비교	81
〈표 III-1-14〉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대상 및 내용(2017)	85

〈표 III-1-15〉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및 금액(2017)	88
〈표 III-1-16〉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유형 및 지원대상(2017)	89
〈표 III-1-17〉 교육급여 지원내용(2017)	91
〈표 III-1-18〉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지원 현황(2006-2016)	94
〈표 III-1-19〉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내용(2017)	98
〈표 III-1-20〉 자녀양육 단계별 주요사업 예산(2017)	99
〈표 III-1-21〉 아동관련 수당 지원대상 및 급여액(2017)	100
〈표 III-1-22〉 돌봄지원 분야 출생순위 적용 사업(2017)	101
〈표 III-1-23〉 돌봄지원 분야 주요사업의 적용대상 소득기준(2017)	102
〈표 III-2- 1〉 전국 시·도별 총 인구 및 15세 미만 인구(2017)	103
〈표 III-2- 2〉 전국 지역의 연도별 출생아 수 추이(2010-2016)	104
〈표 III-2- 3〉 전국 지역의 연도별 출생아 및 합계출산율 추이(2010-2016)	107
〈표 III-2- 4〉 전국 시·도별 출산·돌봄지원 분야 공통사업 범주화	110
〈표 III-2- 5〉 전국 시·도별 출산·돌봄지원 분야의 공통사업 수(2016)	113
〈표 III-2- 6〉 전국 시·도별 출산·돌봄지원 분야의 공통사업 예산(2016)	115
〈표 III-2- 7〉 전국 시·도별 출산·돌봄지원 분야 공통사업 예산(2016)	116
〈표 III-2- 8〉 전국 시·도별 출산·돌봄지원 분야 자체사업 수(2016)	118
〈표 III-2- 9〉 전국 시·도별 출산·돌봄지원 분야 자체사업 예산(2016)	120
〈표 III-2-10〉 전국 시·도별 출산·돌봄지원 분야 사업 및 예산(2016)	121
〈표 III-2-11〉 합계출산율 상위지역의 출산·육아 지원내용_전반	123
〈표 III-2-12〉 합계출산율 상위지역의 출산·육아 지원내용_출산용품	125
〈표 III-2-13〉 합계출산율 상위지역의 출산·육아 지원내용_출산축하금	125
〈표 III-2-14〉 합계출산율 상위지역의 출산·육아 지원내용_양육비	126
〈표 III-2-15〉 합계출산율 상위지역의 출산·육아 지원내용_산모·신생아 건강관리	126
〈표 III-2-16〉 합계출산율 상위지역의 출산·육아 지원내용_보험료	126
〈표 III-2-17〉 출생아수 상위지역의 출산·육아 지원내용_전반	127
〈표 III-2-18〉 출생아수 상위지역의 출산·육아 지원내용_출산용품	131
〈표 III-2-19〉 출생아수 상위지역의 출산·육아 지원내용_출산축하금	131
〈표 III-2-20〉 출생아수 상위지역의 출산·육아 지원내용_양육비	132
〈표 III-2-21〉 출생아수 상위지역의 출산·육아 지원내용_기타	133
〈표 IV-1- 1〉 추가출산 의향	139

〈표 IV-1- 2〉	현재 자녀의 희망자녀수 여부	139
〈표 IV-1- 3〉	희망자녀수보다 부족하나 추가출산 의향이 없는 이유	140
〈표 IV-1- 4〉	양육비 지원 시 추가출산 의향 여부	142
〈표 IV-1- 5〉	희망자녀수	143
〈표 IV-2- 1〉	출산·신생아 지원제도 인지도_전반	148
〈표 IV-2- 2〉	출산·신생아 지원제도 인지도_세부 사업별	148
〈표 IV-2- 3〉	영유아기 자녀돌봄 지원제도 및 정책 인지도	150
〈표 IV-2- 4〉	학령기 자녀돌봄 지원제도 및 정책 인지도	151
〈표 IV-2- 5〉	근로자 대상 기업의 자녀돌봄 지원 및 정책 인지도	151
〈표 IV-2- 6〉	출산·신생아 지원제도의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_전반	152
〈표 IV-2- 7〉	출산·신생아 지원제도의 도움 정도_가구 특성별	153
〈표 IV-2- 8〉	영유아기 돌봄지원 제도 및 정책의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_전반 ..	154
〈표 IV-2- 9〉	영유아기 돌봄지원 제도 및 정책의 도움 정도_가구 특성별(1)	155
〈표 IV-2-10〉	영유아기 돌봄지원 제도 및 정책의 도움 정도_가구 특성별(2)	157
〈표 IV-2-11〉	학령기 자녀돌봄 지원제도 및 정책의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_전반 ..	159
〈표 IV-2-12〉	학령기 자녀돌봄 지원제도 및 정책의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_가 가구 특성별	160
〈표 IV-2-13〉	근로자 대상 자녀돌봄 지원제도의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_전반 ..	161
〈표 IV-2-14〉	근로자 대상 자녀돌봄 지원제도의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_가 가구 특성별	162
〈표 IV-3- 1〉	자녀양육 단계별 주요 돌봄지원 외 추가내용	165
〈표 IV-3- 2〉	출산·양육 시 자녀돌봄 제도 및 정책의 필요도 인식	169
〈표 IV-3- 3〉	돌봄지원 필요 시기_돌봄서비스 지원	170
〈표 IV-3- 4〉	돌봄지원 필요 시기_양육비 현금지원	170
〈표 IV-3- 5〉	돌봄지원 필요 시기_양육비 세제지원	171
〈표 IV-3- 6〉	돌봄지원 필요 시기_아동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171
〈표 IV-3- 7〉	돌봄지원 필요 시기_학령기 교육비 지원	172
〈표 IV-3- 8〉	출산·양육 시 자녀돌봄 제도 및 정책의 필요도_가구 특성별(1)	174
〈표 IV-3- 9〉	출산·양육 시 자녀돌봄 제도 및 정책의 필요도_가구 특성별(2)	176
〈표 IV-3-10〉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의 출산 도움 정도	178
〈표 IV-3-11〉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179

〈표 IV-3-12〉 출산지원금 지원 수준	179
〈표 IV-3-13〉 아동수당 지급 기준_아동 연령	180
〈표 IV-3-14〉 아동수당 지급 기준_자녀수	180
〈표 IV-3-15〉 아동수당 지급 기준_가구소득	181
〈표 IV-3-16〉 아동수당 지급 기준_돌봄취약계층(장애아 등)	181
〈표 IV-3-17〉 출산에의 도움 정도	183
〈표 IV-3-18〉 자녀양육에의 도움 정도_전반	185
〈표 IV-3-19〉 자녀양육에의 도움 정도_가구 특성별(1)	186
〈표 IV-3-20〉 자녀양육에의 도움 정도_가구 특성별(2)	188
〈표 IV-3-21〉 전(全)계층 지원 여부_생애 단계별	191
〈표 IV-3-22〉 전(全)계층 지원 여부_가구소득별	191
〈표 IV-3-23〉 전(全)계층 지원 여부_맞벌이 가구 여부별	192
〈표 IV-3-24〉 전(全)계층 지원 여부_자녀수별	192
〈표 V-1- 1〉 주요 돌봄지원의 적용 대상	195
〈표 V-1- 2〉 자녀돌봄 지원의 합계출산율 제고 효과 평가	196
〈표 V-2- 1〉 출생·신생아 지원 제도 및 정책 효과성 인식	197
〈표 V-2- 2〉 출생·신생아 지원 제도 및 정책 효과성 낮은 이유	197
〈표 V-2- 3〉 영유아기 자녀 돌봄지원 제도 및 정책 효과성 인식	198
〈표 V-2- 4〉 영유아기 자녀 돌봄지원 제도 및 정책 효과성 낮은 이유	199
〈표 V-2- 5〉 학령기 자녀 돌봄지원 제도 및 정책의 효과성 인식	200
〈표 V-2- 6〉 학령기 자녀 돌봄지원 제도 및 정책 효과성 낮은 이유	201
〈표 V-2- 7〉 근로자 대상 자녀돌봄지원 제도 및 정책의 효과성 인식	202
〈표 V-2- 8〉 근로자 대상 자녀돌봄지원 제도 및 정책 효과성 낮은 이유	202
〈표 V-3- 1〉 중앙정부 돌봄지원의 출산·양육 시 필요도 인식	203
〈표 V-3- 2〉 지방자체단체 출산지원 제도 및 정책의 출산 도움 정도 인식	204
〈표 V-3- 3〉 지방자치단체 육아지원 제도 및 정책의 자녀양육 도움 정도 인식	205
〈표 VI-1- 1〉 양육 단계별 돌봄지원의 필요도_부모/전문가 비교	212
〈표 VI-1- 2〉 자녀돌봄 지원의 도움 정도_부모/전문가 비교	214
〈표 VI-1- 3〉 출산·신생아 지원의 도움 정도_부모/전문가 비교	215
〈표 VI-1- 4〉 영유아기 돌봄지원의 도움 정도_부모/전문가 비교	216
〈표 VI-1- 5〉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의 출산 도움 정도_부모/전문가 비교	217

〈표 VI-1- 6〉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의 자녀양육 도움 정도_부모/전문가 비교 217
〈표 VI-1- 7〉 전(全)계층 지원 확대의 동의 비율 218

그림 차례

[그림 I-2-1] 육구-정책-사각지대 관계	13
[그림 I-2-2] 연구 범위 및 분석 내용	15
[그림 I-3-1] 연구 절차 및 흐름도	22
[그림 II-1-1] OECD 국가의 아동 연령별 1인당 공적사회지출 추이(2003/2007/2011)	28
[그림 II-2-1] OECD 국가의 출산휴가(모성휴가) 급여율(2016)	33
[그림 II-2-2] OECD 국가의 육아휴직 급여율(2016)	34
[그림 II-2-3] OECD 국가의 부성휴가 급여율(2014)	36
[그림 II-2-4] 0~2세아 공적 보육서비스 이용율(2006/2014)	42
[그림 II-2-5] 3~5세아 공적 보육서비스 이용율(2014)	43
[그림 II-2-6] 3~5세아 연령별 공적 보육서비스 이용율(2014)	44
[그림 II-2-7] OECD 국가의 아동 연령별 비공식 보육 이용율(2014)	46
[그림 III-1-1] 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의 추진 방향 및 전략	54
[그림 III-1-2]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_일·가정 양립 일상화를 위한 체계 ..	55
[그림 III-2-1] 시·도별 출생아 수 감소율(2000년 대비 2016년)	105
[그림 IV-3-1] 양육 단계별 자녀돌봄 지원의 필요도	164
[그림 IV-3-2] 전(全)계층 지원 확대의 동의 비율_부모	190
[그림 V-1-1] 자녀양육 단계별 재정투자 우선순위	194
[그림 V-3-1]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출생순위	206
[그림 V-3-2] 출산지원금 적정급여 수준	206
[그림 V-3-3] 아동수당 지급대상 기준	207
[그림 V-3-4]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영유아인 경우 세부 적용기준	208
[그림 V-3-5] 아동수당 급여지급 방식	209
[그림 V-3-6] 전(全)계층 지원 확대의 동의 비율_전문가	210
[그림 VI-3-1] 자녀돌봄 지원의 양육 단계별 포괄범위	224
[그림 VI-3-2] 자녀돌봄 지원의 증장기 로드맵	230

부록 표 차례

[부록 표 41] 전국 상위 10개 지역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2016)	293
---	-----

요 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저출산 대응 전략은 생애주기별로 빈틈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때 자녀 양육기의 돌봄 분야는 가장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함.
- 지난 10여 년간 저출산 대응에서 가장 주력해 온 자녀돌봄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각 양육 단계별로 수요자 욕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진단하여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이 연구는 기존의 자녀돌봄 지원이 각 양육 단계별로 수요자의 욕구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그리고 미 반영된 돌봄지원 욕구는 없는지를 규명하고자 함.
 - 지방정부의 저출산 대응 노력에도 주목하여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 강화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함.

나. 연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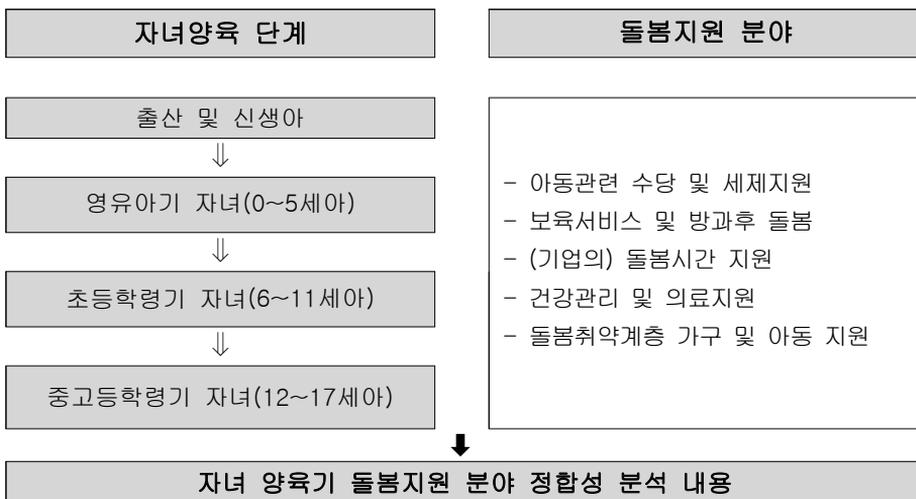
- OECD 국가들의 자녀양육 단계별 재정투자 비중 및 추이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와 비교하고 함의를 도출함.
- 중앙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 중 자녀 양육기 돌봄지원 분야의 방향 및 중점 과제를 살펴보고, 세부 사업의 적용대상 및 지원내용을 조사함.
- 정책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존 자녀 돌봄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규명하고, 각 시기별 추가 수요를 파악함.
- 저출산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녀양육 단계별 돌봄지원 영역 및 세부 사업의 중요도와 지원내용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각 단계별로 추가지원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

다. 연구방법 및 절차

□ 주요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 문헌연구: OECD 자료(Family database 등)를 통한 자녀돌봄 분야 재정투자 및 해당 사업의 효과성 논의와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각종 정부정책 정보제공 사이트의 돌봄지원 내용을 조사함.
- 정책 수요자 대상 설문조사: 예비부모(첫 자녀 출산 이전 가구), 영유아를 둔 가구(영아/유아), 초등학생 자녀(1~3학년/4~6학년)를 둔 가구,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를 각 그룹별로 300명씩, 총 1,200명을 대상으로 돌봄지원 제도의 만족도와 개선요구를 파악함.
- 정책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인구정책, 가족정책, 아동정책 분야의 학계 전문가를 총 31명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단계별 돌봄지원의 효과와 개선과제를 파악함.
- 심층면담: 1)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0~2세/3~5세)와 2)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1~3학년/4~6학년), 3) 중고등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 총 14인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단계별 양육 시 어려움과 돌봄지원 요구를 파악함.

□ 이 연구의 자녀 양육기 및 돌봄지원의 포괄범위 및 정합성 분석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자녀양육 단계별 돌봄지원 욕구 수준별 재정투자 비중
2. 자녀양육 단계별 돌봄지원 내용의 사각지대 여부
3. 돌봄지원 대상 및 적용범위(소득기준 등)의 대상별 요구 부합성
4. 돌봄지원 대상별 급여 및 체계의 욕구 수준 반영 정도
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돌봄지원의 정합성

2. 연구의 배경

- 자녀 양육기 재정투자 비중 및 추이
- 자녀돌봄 지원의 유형
- 주요 돌봄지원의 출산율 제고 효과

3. 자녀양육 단계별 돌봄지원 정책 현황

가. 중앙정부의 돌봄지원 제도 및 정책 현황

- 이하 각 양육 단계별 주요 사업내용을 조사함.
 - 출산 및 신생아기, 영유아기 자녀(0~5세아), 초등학교 학령기 자녀(6~11세아), 중·고등학교 학령기 자녀(12~17세아) 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수준을 파악함.
- 이들 사업의 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수준을 종합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바는 다음과 같음.
 - 영유아기에 집중되어 사업 수가 가장 많고 다양한 지원 부문을 포괄하며, 특히 0~5세 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의 예산 비중이 각각 약 51.6%와 20.2%로 약 71.8%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초·중·고등학교 교실이 9.7%이고, 이외 세부 사업들은 5%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지원내용 측면에서 학령기 아동을 둔 가구에 대한 보편적인 돌봄지원은 극히 제한적임.
 - 지원대상 및 수준의 측면에서 아동 연령과 소득기준, 그리고 급여수준의 적용이 일관되지 않고, 출생순위를 적용한 지원 항목의 근거도 모호함.

나. 지방정부의 돌봄지원 시책 추진 현황

시·도별 출산 및 돌봄지원 정책

- 출산·돌봄지원 분야 공통사업의 예산 총액은 8조 7,148억 원으로, 그 중 지방비 예산은 3조 8,872억 원이며, 보육교육서비스 지원(누리과정 지원금 포함)이 5조 6,66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65.0%를 차지함.
- 출산·돌봄지원 분야 자체사업은 영유아기 보육·교육서비스(누리과정 지원금 포함) 예산이 1조 916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60.0%), 해당 비중은 공통사업 예산(65.0%)과 비교하여 약간 적고, 출산 및 신생아 지원 예산 비중이 9.9%로 나타남.

4.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 평가와 개선 요구

가. 출산의향과 자녀양육 단계별 애로사항

-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와 자녀가 1명인 가구에서 추가출산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2.3%와 34.6%로 높게 나타남.
- 현재 자녀수가 희망하는 자녀수가 아닌데도 추가출산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양육비 부담이 53.1%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직장생활과 자녀양육의 병행 어려움이 21.1%로 조사됨.
- 국가에서 양육비를 지원한다면 추가출산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7.1%였으며, 해당 비율은 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높음.
- 예비부모를 포함하여 희망하는 자녀수는 평균 2.04명이고, 예비부모의 평균 희망자녀수가 1.81명으로 가장 적음.

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도움 정도 인식

- 돌봄지원의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특히 예비부모의 출산 및 신생아 지원에 대해서는 '들어보았고 내용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10%선에 그침.
- 신생아·산모 도우미 지원으로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2%이고 평균 4.12점(5점 만점)을 나타냄.

-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이 '매우 도움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8%로 가장 높고(평균 4.37점, 5점 만점), 그 다음으로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0~5세 보육료 지원, 자녀세액공제, 3~5세 누리과정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4.14점 순으로 평가됨.
- 급식비 지원과 학교 유유급식 지원의 도움 정도는 각각 평균 4.36점(5점 만점)과 4.35점으로 높게 평가되며, 그 다음으로는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도움 정도가 높게 평가됨.

다. 자녀돌봄 지원의 개선 요구

- 각 양육 단계별로 지원이 필요한 시기로 돌봄서비스는 초등학교 66.8%, 양육비 현금지원은 초등학교 41.6%, 양육비 세제지원과 학령기 교육비 지원은 중·고등학교까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1.0%와 68.1%로 높고, 아동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의 해당 비율은 초등학교 42.2%, 중·고등학교 41.7%로 나타남.
- 출산 및 양육시의 필요도는 영유아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이 평균 6.25점(7점 만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양육비 세제지원 6.17점, 학령기 교육비 지원 6.12점,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공히 6.06점, 초·중 방과후 돌봄 지원 6.05점 순으로 조사됨.
- 자녀를 원하는 시기에 출산하는 데 각 출산지원 정책 및 제도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신생아 의료비 지원이 평균 5.94점(7점 만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아동수당 42.3%, 산후조리원 지원 36.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29.6% 순임.

5. 자녀돌봄 지원의 효과성 평가와 개선 과제

가. 자녀돌봄 지원의 재정투자 비중 및 방향성

- 재정투자 비중의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1순위 기준으로 영유아가 64.5%로 높은 응답율을 보이며, 그 다음으로 출산 및 신생아가 29.0%로 조사됨.

- 자녀돌봄 지원 분야의 합계출산을 제고 효과에 대해서는 1순위 기준으로 보육지원 내실화가 45.2%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휴가·휴직 제도 강화 19.4%,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근로문화 개선 12.4% 순임.

나. 자녀돌봄 지원의 효과성 평가

- 출산·신생아 돌봄지원 제도 및 정책의 합계출산을 제고 효과에 대해서는 신생아·산모도우미 지원이 평균 4.90점(7점 만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고위험 신생아 산모 지원 순으로 평가됨.
- 영유아 자녀 대상 돌봄지원 제도 및 정책의 출산을 제고 효과에 대해서는 0~5세 보육료 지원과 3~5세 누리과정 지원이 각각 평균 5.48점(7점 만점)과 5.39점,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4.94점 순으로 평가됨.
- 학령기 자녀 대상 돌봄지원 제도 및 정책의 출산을 제고 효과에 대해서는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가 각각 평균 5.42점(7점 만점)과 5.03점으로 높게 평가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급식비 지원이 공히 4.71점으로 평가됨.

다. 자녀돌봄 지원의 개선 과제

- 중앙정부의 출산 및 양육 차원에서 돌봄지원 제도 및 정책의 필요도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평균 6.06점(7점 만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초등방과후 돌봄 5.97점, 학령기 교육비 지원 5.81점, 신생아·산모 도우미 지원 5.74점, 임신·출산관련 의료비 지원 5.61점 순으로 조사됨.
- 2016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 제도 및 정책의 도움 정도는 신생아(0세아) 의료비 지원이 평균 5.32점(7점 만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됨.

6. 정책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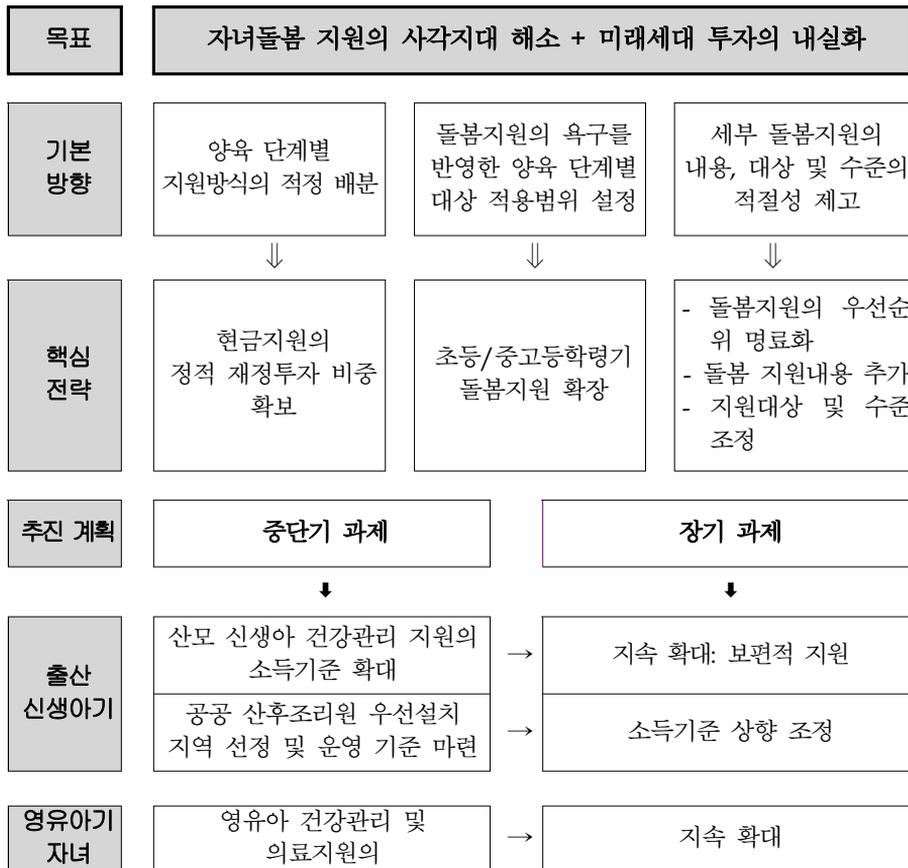
가. 자녀양육 단계별 돌봄지원의 방향 및 주요 전략

- 자녀돌봄 지원의 포괄범위는 돌봄서비스 지원의 경우는 초등학교학령기, 양육비 현금지원, 세제지원, 아동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은 모두 중고등학교학령기까지 그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장함.

구분	자녀양육 단계별			
	영아	유아	초등학령기	중고등학령기
주요 돌봄지원 분야				
돌봄서비스 지원	→			
양육비 현금지원	→	→	→	→
양육비 세제지원	→			
아동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			
학령기 교육비 지원	→			

나. 세부 정책 과제

□ 자녀돌봄 지원의 양육 단계별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p>소득기준 상향 조정</p> <p>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소득기준 및 지원액 상향 조정</p> <p>아동수당 지급('18)</p>	<p>→</p> <p>지속 추진</p> <p>→</p> <p>지원대상 및 수준 확대</p>
<p>학령기 자녀</p>	<p>고교 무상보육 도입</p>	<p>→</p> <p>고교 무상보육 확대 완료</p>
	<p>상담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취약계층 선별적 지원</p>	<p>→</p> <p>지원대상 확대: 보편적 지원</p>
	<p>장애아 발달재활/언어발달 /부모상담 지원의 지원대상 확대</p>	<p>→</p> <p>지원대상 확대: 보편적 지원</p>
	<p>한부모 가족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및 수준 상향 조정</p>	<p>→</p> <p>지속 추진</p>
	<p>다문화 자녀 언어발달 지원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p>	<p>→</p> <p>지속 추진</p>
	<p>온종일 돌봄지원 체계 내실화</p>	<p>→</p> <p>지속 추진</p>
	<p>-</p> <p>-</p>	<p>→</p> <p>아동수당 지원대상 단계적 확대 및 지원액 상향 조정</p> <p>중고등학령기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강화</p>
<p>돌봄지원 의 기반 강화</p>	<p>↑</p> <p>돌봄지원 분야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p>	<p>↑</p> <p>돌봄지원 사업의 정책 수요자의 인지도 제고</p>
	<p>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 강화</p>	<p>홍보사업의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p>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6년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저출산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시행 첫 해인 지난 해 5월까지 출생아 수가 18.2만 명으로 전년 대비 1만 명이나 감소하는 등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정부는 현재의 저출산 현상을 “인구절벽 위기”로 인식하고 전사회적 총력 대응을 강조하며(보건복지부, 2016c), 같은 해 8월에는 “출산을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보건복지부, 2016a). 여기에서 정부는 출생아 수 감소 추세의 반전을 위해 난임 지원 및 임신·출산 등에 집중한다고 밝히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a: 6). 또한 2017년 저출산 분야 예산 중 특히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부문에는 총 50,141억 원이 배정되어 전년 대비 37.8% 증액되었다(보건복지부 2016d: 2).

그런데 이들 정책이 자녀 출산을 희망하는 이들의 욕구 수준에 과연 얼마나 부합하는지는 의문시된다. 최근 들어 저출산의 구조적 원인까지 포괄하여 출산 방해 요인에 주목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 생애 단계별로 빈틈없는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사각지대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 사회는 저출산의 다양한 원인에 주목하여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생애주기별 접근을 강조해왔다. 1994년 이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 온 일본은 2005년에 사상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보임에 따라 2006년부터 임신·출산에서부터 자녀가 대학생이 될 때까지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해왔다(유해미·조숙인·장경희·박은영, 2016: 99). 또한 2015년에 발표된 “저출산 사회대책 대강”에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역과 기업을 포함한 사회전체가 결혼, 임신·출산, 자녀 양육기의 각 단계별 시책을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유해미·조숙인·장경희·박은영, 2016: 117).

이와 같은 저출산 대응의 생애주기별 접근에서 특히 자녀 양육기의 돌봄 분야는 가장 주목할 지점이다. 일반적으로 일·가정 양립지원 등 돌봄 분야는 저출산 대응의 핵심 과제로 인식되며, 최근 저출산 대책의 우선순위 분석에서도

“일·가정 양립 여건과 보육여건 개선” 부문이 효과성, 시급성, 적용가능성, 효율성 측면 모두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김상우, 2016). “맞춤형 돌봄 확대 및 교육 개혁” 부문의 2017년 예산은 158,833억 원으로, 전체 저출산 분야 예산(214,547억 원)의 약 74%를 차지한다(보건복지부, 2016d: 2). 새 정부는 7월에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육아 문제’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였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80).

한편 그동안 자녀돌봄 지원의 개선 과제는 돌봄지원의 설계를 단지 탈가족화 또는 가족화에 국한되지 말고, 이들 부문을 정책 효과성 측면에서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되어왔다. 돌봄지원은 분절적이거나 상충 효과를 지니지 않은 채 실제 정책 수요자의 혜택으로 이어져야 하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김미숙·홍석표·정재훈·김기현·안수란, 2010: 201). 또한 돌봄 사각지대와 관련하여 돌봄서비스 이용 형태와 육아휴직 이용 여부는 사회계층 변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이소정·백선희·윤홍식·홍백희·김지연, 2011: 7). 이는 곧 현행 자녀돌봄 지원이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젠더 관계는 물론 사회계층간 불평등을 야기하는지를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함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의 저출산 대응에서 가장 주력해 온 자녀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각 양육 단계별 정책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기존의 주요 정책들이 자녀양육 단계별로 수요자의 욕구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그리고 간과된 돌봄지원 욕구는 없는지를 규명할 것이다. 이때 지방정부의 저출산 대응 노력에도 주목할 것이다. 저출산 대응은 사회전반의 노력 즉 중앙정부 이외에도 민간과 기업 그리고 지역사회의 노력이 동시에 요구되며, 특히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를 견지하되 각 지역의 여건이 반영된 별도의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하기 때문이다.

2. 연구 내용 및 범위

이 연구의 주요 내용과 자녀 양육기 및 돌봄 분야의 포괄 범위, 그리고 “생애주기별 정책 적합성”을 개념화하고 구체적인 분석 요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연구 내용

첫째, OECD 국가들의 자녀양육 단계별 재정 투자 비중 및 추이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규명하고, 주요 돌봄지원의 출산을 제고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을 검토하여 정책 설계 차원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중앙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 중 자녀 양육기 돌봄지원 분야의 방향 및 중점과제를 살펴보고, 세부 사업의 적용대상 및 지원내용을 조사하여 자녀양육 단계별로 검토한 후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셋째, 중앙정부 사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저출산 시책을 분석한다. 즉 각 지역별 저출산 분야 자녀 양육기 돌봄지원 분야의 사업 규모와 소요 예산을 파악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들을 검토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확대 적용 가능성을 모색한다.

넷째, 정책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존 자녀돌봄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규명하고, 각 시기별 추가 수요를 파악한다. 이때 정책 수요자에는 첫째 자녀를 출산한 부모뿐만 아니라, 임신·출산의 잠재 인구인 첫 자녀 출생 이전의 예비부모를 포함하여 첫 자녀 출산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포괄한다.

다섯째, 저출산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책 효과 측면에서 자녀양육 단계별 돌봄지원 영역 및 세부 사업의 중요도와 지원내용의 타당성을 각각 평가하고, 각 단계별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지원내용을 규명한다.

여섯째,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자녀 양육기 돌봄지원이 수요자의 욕구와 정책 효과성 및 재정 효율성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추가수요를 파악하여 자녀양육 단계별 돌봄지원의 방향과 개선 과제를 제안한다.

나. 연구 범위 및 분석 요소

자녀 양육기 및 돌봄지원의 포괄범위와 관련 정책들의 정합성 분석 요소를 다루었다.

1) 자녀 양육기 돌봄지원 분야의 범위

가) 자녀 양육기의 포괄 범위

OECD 자료에 의하면, 자녀양육 시기별 재정투자는 크게 초기(0~5세), 중기(6~11세), 후기 아동기(12~17세)로 구분되며, 이는 우리나라의 미취학과 취학연령대를 포괄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아동 연령별 돌봄지원의 재정투자 비중 및 재정지원 방식의 변화를 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자녀 양육기의 포괄 범위를 자녀 출생 이후 즉 0세아 부터 고등학령기까지 포괄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중고등학령기는 돌봄서비스가 아니라 교육비 지원 위주이나, 이 연구에는 자녀양육을 위한 비용지원도 포함되므로 교육비 지출이 급증하는 중고등학령기까지를 다루었다.

나) 돌봄지원 분야의 포괄 범위

자녀 출산 이후의 정책적 개입은 1) 보편적인 산후 돌봄지원, 2)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3) 산후 모성, 부성, 부모휴가, 4) 양육관련 수당, 5) 보육 및 교육서비스, 6)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된다(OECD, 2009: 106-113).

또한 고티에르 등에 의하면,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은 5가지 분야로 구분된다(Thévenon O., & Gauthier A. H., 2012: 88). 1) 임신 기간 중 지원, 2) 베이비 키트 등 출산 당시 지원, 보다 일반적으로는 3) 장기간에 걸친 양육비 지원, 4) 양성평등적 일·가정 양립지원, 5)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부모를 위한 지원이 그것이다. 이들 지원은 그 시기와 종류가 상이하며, 각 정책별로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도 차이를 보인다. 또한 이들 정책은 출산율 제고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경우에도 출산 의사의 결정이나 출산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거나 출산 저해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 그 밖에도 2015년에 일본 정부가 발표한 생애주기별 저출산 대책 중 자녀 양육기의 세부내용으로는 1) 경제적 돌봄 완화 및 교육비 부담 경감, 2) 건강·안전 양육환경 조성, 3) 다양한 가정 및 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제시된다(유해미·조숙인·장경희·박은영, 2016: 117-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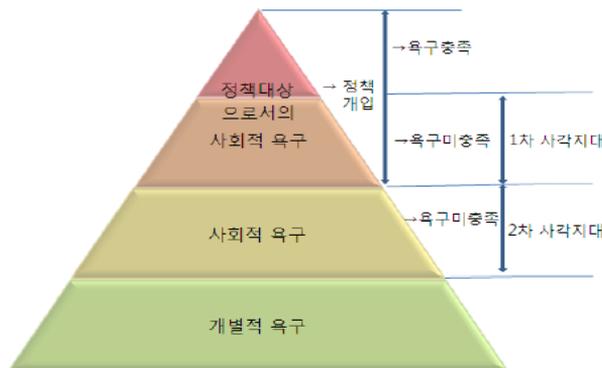
이상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자녀 양육기 돌봄지원 분야는 1) 아동관련 수당 및 세제지원, 2) 보육 및 방과후 돌봄, 3) (기업 부문) 돌봄시간 지원, 4) 아동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5) 돌봄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지원으로 구분한다.

2) 저출산 대응정책의 정합성 분석 요소와 개념 정의

가) 정책 정합성의 분석 요소

저출산 대응을 위한 현행 급여와 서비스의 제공이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는 곧 특정 대상의 문제 해결 시에 어떤 급여나 서비스가 효율적이면서 동시에 효과적인가를 의미한다(김미혜·정진경, 2007: 120). 이는 단적으로 수급자의 선택의 자유를 중시하여 사회적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급여 제공자 관점에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여 더 많은 이들이 수혜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의 적합성은 정책 수요자가 필요한 물품, 서비스를 직접 판단해야 한다(김미혜·정진경, 2007: 129).

이와 동시에 현행 급여와 서비스 유형이 사회문제와의 적합성 평가에도 주력해야 한다(김미혜·정진경, 2007: 130). 즉 각종 저출산 대응을 위한 지원들이 출산의 방해 요인을 해소하는 데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는가의 문제이다. 적합성은 문제를 지닌 이들의 욕구가 분명하게 함축되어 있는지, 프로그램의 급여가 그들 중 누구에게 전달되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만약 대상에서 빠져 있거나 욕구가 정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는 사회문제로서 정의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자료: 이소정·백선희·윤홍식·홍백희·김지연(2011). p. 25.

[그림 1-2-1] 욕구-정책-사각지대 관계

이때 빈틈없는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사각지대 해소는 2가지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다(이소정·백선희·윤홍식·홍백희·김지연, 2011: 25)(그림 I-2-1 참조). 1차 사각지대는 정책 대상에 속하지만 의도하는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기존의 정책 틀 내에서 실효성 제고 또는 내실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2차 사각지대는 기존 정책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으나, 사회적 욕구의 해결을 위해서는 해당 욕구를 반영하여 정책 범위를 확장해야 하는 영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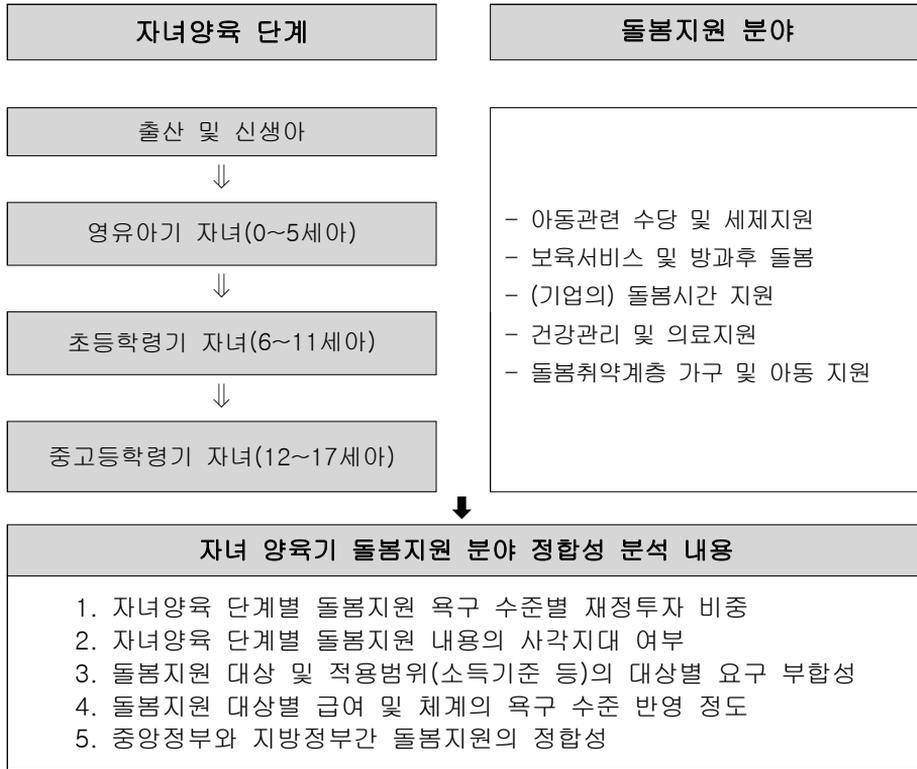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돌봄 지원에 대한 부모들의 욕구에 일차적으로 주목해야 하며, 기존 정책과 추가적인 요구를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요소는 1) 정책의 목적과 목표, 2) 정책 대상, 3) 서비스와 급여, 4) 전달체계, 5) 재정으로 구성된다(김미혜·정진경, 2007: 21-26). 정책 대상은 서비스와 급여의 자격 기준이며, 서비스 및 급여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수단이다. 그런데 이들 중 정책 정합성 측면에서는 특히 정책 대상 및 서비스와 급여에 일차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저출산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세부 정책의 유형, 급여액, 수급 조건 등에 따라 그 영향 정도가 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김영록·신동면, 2016: 26). 즉 서비스와 급여는 정책 대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을 요하며, 해당 정책의 목적과 대상자의 특성 및 욕구에 부응하여 다양한 형태로 선택될 수 있다(김미혜·정진경, 2007: 23). 서비스와 급여의 내용에는 이처럼 그 형태와 종류뿐만 아니라¹⁾, 지급 요건 및 기준 등도 포함된다(김미혜·정진경, 2007: 24).

나) 정책 정합성의 개념화

앞서 검토한 정책 정합성 분석 요소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 저출산 대응정책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분석은 곧 자녀양육 단계별로 지급되는 급여와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 및 수준이 정책 수요자의 욕구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내용들을 진단한다.

1) 기본적인 급여 형태인 현금과 현물급여 방식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이 공존함. 현물 급여는 표적으로 삼는 수혜 집단에게 정확히 전달된다는 점에서 현금보다 효과적이며(길버트, 닐·폴 테렐, 2007: 224). 공동체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문제에 자원을 집중하는 데에 보다 뛰어나다고 언급됨. 이를테면 의료서비스, 식품 등 공동체가 비교적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목표를 위한 서비스들은 국가 통제 하에 직접 배분이 가능하다는 것임(길버트, 닐·폴 테렐 2007: 225). 반면에 현금 급여는 소비 시점에서 소비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단점을 지니는 반면, 수혜자에게 최대의 선택을 보장할 수 있으며(길버트, 닐·폴 테렐, 2007: 225), 관리 운영이 간편하고 낙인 효과가 없으며 빈곤 완화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주장됨(길버트, 닐·폴 테렐, 2007: 232).



[그림 1-2-2] 연구 범위 및 분석 내용

첫째, 자녀양육 시기별로 돌봄지원의 재정 투자의 비중의 적합성을 분석한다. 즉 출산 및 신생아 → 영유아기(0~5세아) 자녀 → 초등학령기(6~11세아) 자녀 → 중고등학령기(12~17세아) 자녀에 걸친 돌봄지원 유형별 재정투자 비중은 각 시기별 수요자의 욕구 수준에 맞게 배분되었는지를 점검한다.

둘째, 자녀양육의 시기별로 돌봄지원 내용의 정합성을 분석한다. 즉 각 단계 별로 사각지대 여부 즉 돌봄지원 내용이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빠짐없이 반영하고 있는지를 규명한다.

셋째, 현행 돌봄지원의 지원대상 및 적용범위의 정합성을 분석한다. 즉 수요자의 돌봄지원 요구 수준에 맞는 지원대상이 포함되고, 해당 욕구 수준에 맞는 소득기준 등의 지원대상 기준이 설정되었는지를 파악한다.

넷째, 지원대상별 급여 수준의 정합성을 분석한다. 즉 대상별 급여수준이 수

요자의 욕구 수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점검한다. 이때 급여지원 체계가 자녀 돌봄의 취약성 즉 취약계층과 다자녀로 인한 추가적인 돌봄지원 욕구를 적절히 반영하는지를 따져본다.

다섯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저출산 분야 돌봄지원의 정합성을 분석한다. 즉 중앙정부의 저출산 대응을 위한 돌봄지원의 기초가 지방정부의 공동사업에 일관되게 반영되는지를 점검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의 특성을 공동사업과의 관계 하에서 다룬다.

한편 앞서 제시한 연구 범위와 분석 내용을 종합하면 위의 [그림 1-2-2]와 같다. 즉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자녀 양육기 돌봄지원 분야의 정합성에는 자녀 출생 이후 학령기에 걸친 돌봄 분야의 지원, 즉 현금 및 서비스(보육 및 방과후 돌봄, 의료서비스)와 돌봄시간 지원을 포괄한다.

또한 분석내용 중 재정투자 비중의 정합성 즉 자녀양육 단계별 재정투자가 수요자의 돌봄지원 요구 수준에 맞게 배정되었는가는 돌봄지원 분야 사업 전반을 포괄한다. 다음으로 돌봄지원의 내용, 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지원수준 및 체계에 정합성 분석은 대상별 급여 즉 현금과 현물(서비스 및 기타 현물)을 위주로 다룬다.

3. 연구 방법 및 절차

이 연구의 주요 방법 및 절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OECD 자료(Family database 등)를 검색하여 OECD 국가의 자녀양육 단계별 재정투자 비중 및 추이를 파악하고, 주요 돌봄지원과 출산율 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다룬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이외 관련 대책을 조사하여 자녀 양육기 돌봄지원의 방향 및 중점과제를 파악하였다. 또한 관련 세부 사업내용은 각종 정부정책 정보제공 사이트(복지로, 고용노동부 일가양득 사이트 등) 및 흥

보 책자(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등)와 각종 정부 지침(2017년 건강검진 지원사업안내 등)을 조사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의 저출산 대응 노력을 파악하기 위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을 수집하였다.

2)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정책 수요자인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와 저출산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행 자녀 양육기 돌봄지원 분야의 평가와 추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각각 실시하였다.

가) 정책 수요자

조사 대상은 예비부모(첫 자녀 출산 이전 가구), 영유아를 둔 가구(영아/유아), 초등학교 자녀(1~3학년/4~6학년)를 둔 가구,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를 각 그룹별로 300명씩, 총 1,2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양육 단계별 자녀 돌봄 시 애로사항, 현행 자녀돌봄 지원의 영역 및 세부 사업별 지원내용 및 수준의 만족도, 필요도, 도움 정도(출산 시기, 추가 출산, 양육비 부담 경감, 경력단절 예방 및 구직활동 등), 각 자녀양육 단계별 추가지원 요구 등이다.

〈표 1-3-1〉 설문조사 항목_정책 수요자(부모) 대상

조사 영역	조사 항목
자녀 출산 의향 및 미의향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막내 자녀 연령 및 출산 순위 - 추가 출산 의향 여부 및 해당 사유 - 양육비 지원 시 추가 출산 의향 여부 및 적정 지원액 - 희망 자녀수
자녀 돌봄지원 제도 및 정책 인지도/필요도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신생아 지원사업의 인지도 - 영유아 자녀 대상 돌봄지원 제도 및 정책의 인지도 - 학령기 자녀 대상 돌봄지원 제도 및 정책의 인지도 - 근로자 대상 기업의 자녀돌봄지원 제도의 인지도

(표 I-3-1 계속)

조사 영역	조사 항목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 및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신생아 지원사업 이용 여부와 만족도, 필요도 - 영유아 자녀 대상 돌봄지원 제도 및 정책 이용 여부와 만족도, 필요도 - 학령기 자녀 대상 돌봄지원 제도 및 정책 이용 여부와 만족도, 필요도 - 근로자 대상 기업의 자녀돌봄지원 제도 및 정책 이용 여부와 만족도, 필요도 이용 여부와 만족도 - 각 자녀돌봄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기 - 양육 시기별 추가로 필요한 지원 내용
일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성별, 학력, 직업, 월 평균 가구소득, 거주 지역 - 취업 여부 및 고용 상태, 평균 근로시간 - 가구 특성 및 자녀 특성(첫째 자녀 연령, 총 자녀수)

조사대상자는 각 생애 단계별 즉 예비부모, 영유아 자녀, 초등학교 자녀,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가구가 각각 동일한 비율을 차지한다. 또한 여성 응답자가 55.6%, 맞벌이 가구는 49.6%, 평균 월 가구소득은 약 476만 원이며, 읍면지역의 거주자가 5.8%를 차지한다. 자녀수는 1명 38.6%, 2명 52.7%이다.

〈표 I-3-2〉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1_정책 수요자_가구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사례수)	구분	비율(사례수)
생애 단계별		월 가구소득	
예비부모	25.0(300)	200만 원 이하	4.2(50)
영유아자녀	25.0(300)	400만 원 이하	39.6(475)
초등자녀	25.0(300)	600만 원 이하	40.8(490)
중고등자녀	25.0(300)	600만 원 초과	15.4(185)
		평균	476.1만 원
성별		거주지역	
남자	44.4(533)	광역시	54.5(654)
여자	55.6(667)	중소도시	39.7(476)
맞벌이가구 여부		읍면지역	5.8(70)
맞벌이	49.6(595)		
홀벌이	50.4(605)		
	계(수)		100.0(1,200)

〈표 1-3-3〉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1_정책 수요자_자녀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사례수)	구분	비율(사례수)
자녀수		막내자녀 연령	
1명	38.6(347)	0~5세	300(33.3)
2명	52.7(474)	6-11세	300(33.3)
3명	7.8(70)	12~17세	100(33.3)
4명 이상	1.0(9)		
	계(수)		100.0(900)

나) 정책 전문가

인구정책, 가족정책, 아동정책 분야의 학계 전문가를 총 31명을 선정하여 의견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정책 수요자 대상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녀양육 단계별 정합성 평가, 지방자치단체의 돌봄지원 분야 시책들의 효과성 평가, 이외에도 각 양육 단계별로 추가해야 할 지원내용 등이다.

〈표 1-3-4〉 설문조사 항목_전문가 대상

조사 영역	조사 항목
자녀 양육기의 재정투자 비중 및 돌봄지원 방향	- 자녀양육 단계별 재정투자의 적정 비중과 근거 - 각 돌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 - 중앙정부 저출산 대책의 효과 및 추가로 요구되는 지원 분야
자녀돌봄지원 제도 및 정책의 출산율 제고 효과 평가	- 출산·신생아 지원 제도 및 정책의 효과 평가 및 근거 - 영유아 자녀 대상 돌봄지원 제도 및 정책의 효과 평가 및 근거 - 학령기 자녀 대상 돌봄지원 제도 및 정책의 효과 평가 및 근거 - 근로자 대상 기업의 자녀 돌봄지원 제도 및 정책의 효과 평가 및 근거
자녀돌봄 지원의 수요 인식 전반	- 자녀 출산·양육에 대한 돌봄지원의 필요도 - 출산장려대책의 기대 효과 및 적정 수준과 대상 - 육아지원 제도 및 정책의 전 계층 지원 여부
응답자 및 자녀의 일반적 특성	- 연령, 성별, 최종학력, 직업 - 전공분야 및 경력

한편 전문가 조사 대상자는 사회복지, 아동보육·유아교육, 사회학 및 여성학,

그리고 경제학 및 여성노동 등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였으며, 이들의 관련 분야 경력은 10년 이하에서 20년 초과로 다양하였다.

〈표 1-3-5〉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2_정책 전문가

단위: %(명)			
구분	비율(사례수)	구분	비율(사례수)
전공분야		경력	
사회복지	45.2(14)	10년 이하	29.0(9)
아동/보육/유아교육	25.8(8)	20년 이하	48.4(15)
사회학/여성학	19.4(6)	20년 초과	22.6(7)
경제학/여성노동/기타	9.7(3)		
계(수)		100.0(31)	

3) 심층면담

심층면담은 자녀양육 시 돌봄지원 수요가 집중되는 1)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0~2세/3~5세), 2)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구(1~3학년/4~6학년), 3)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양육 시기에 따른 차별화된 돌봄지원 요구가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자녀양육 단계별 돌봄지원 요구, 아동 및 가구 특성별 자녀돌봄의 애로사항, 현행 자녀돌봄 지원 제도 이용 실태 및 도움 정도, 추가 출산을 위한 돌봄지원 요구 등이다.

〈표 1-3-6〉 심층면담 대상 및 내용_부모

조사 대상	조사 규모	조사 항목
영유아	6인	- 아동 및 가구 특성, 양육 실태 전반 - 자녀양육 시기별 애로사항 및 그 변화 - 자녀돌봄 지원정책 및 제도 이용 실태와 만족도, 출산을 제고 효과 인식
초등학교	3인	- 추가출산 의향 및 미의향 사유, 자녀양육 시기별 추가지원 요구
중고등학교	5인	- 응답자 및 자녀의 일반적 특성(연령, 학력, 직업, 가구 특성, 자녀 특성, 거주 지역, 월평균 소득)

조사 규모는 각 단계별로 총 14인이며, 조사 대상자는 아동 및 가구 특성 즉 아동 연령 및 출생순위와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라 고르게 선정하였다(표 1-3-7

참조).

이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30~40대이고, 최종학력은 고졸 이하부터 대학원 졸업자로 구성되며, 자녀수는 1명에서 3명이고, 월 가구소득은 350만 원부터 60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하게 분포한다.

〈표 1-3-7〉 심층면담 대상자 일반적 특성_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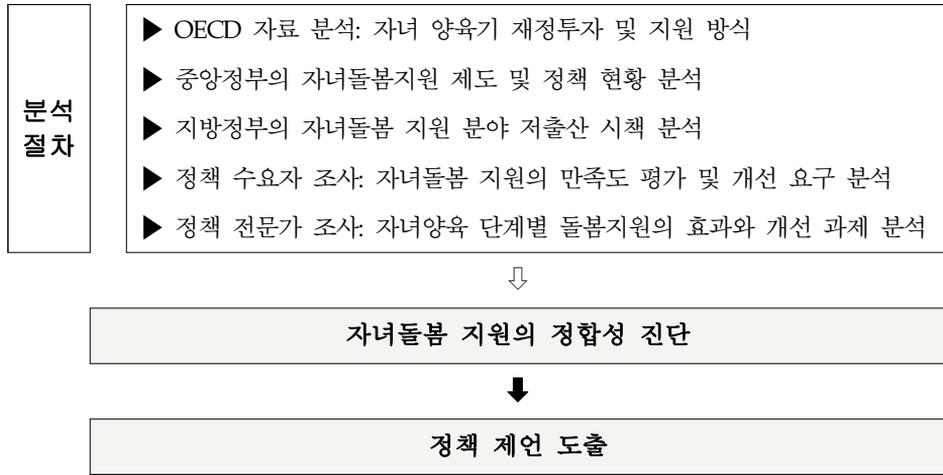
번호	모 연령(만)	모 최종학력	모 취업상태	총 자녀수	첫째 자녀 연령	월평균 가구소득
1	36세	4년제 대학 이상	전업주부	1명	7세	350~399만원
2	41세	전문(3년제)대학 졸	전업주부	3명	15세	600만원 이상
3	38세	대학원 이상	시간제	1명	3세	400~499만원
4	38세	대학원 이상	시간제	2명	5세	600만원 이상
5	30세	대학원 이상	전일제	1명	3세	500~599만원
6	40세	대학원 이상	시간제	3명	8세	500~599만원
7	38세	대학원 이상	전일제	2명	4세	600만원 이상
8	42세	4년제 대학 이상	전업주부	3명	15세	-
9	38세	4년제 대학 이상	시간제	1명	2세	200~249만원
10	44세	고졸 이하	전업주부	2명	18세	300~349만원
11	38세	고졸 이하	시간제	2명	12세	300~349만원
12	37세	전문(3년제)대학 졸	전업주부	1명	3세	200~249만원
13	44세	4년제 대학 이상	시간제	2명	17세	600만원 이상
14	45세	4년제 대학 이상	시간제	2명	19세	-

4) 전문가 간담회 및 자문회의

학계 전문가 및 관련 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자녀양육 단계별로 마련된 지원내용의 타당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며, 이때 학계전문가는 정책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참여한 대상 중 각 분야별로 선정하여 정책 간담회를 10월과 11월에 총 2차에 걸쳐 진행하였다.

나. 연구 절차

이상의 연구 방법에 따른 분석 절차를 제시하면 [그림 1-3-1]과 같다.



[그림 1-3-1] 연구 절차 및 흐름도

II. 연구의 배경

이 장에서는 OECD 국가들의 자녀 양육기 재정투자 비중 및 추이와 주요 돌봄지원의 유형별로 지원대상 및 수준을 파악하며, 자녀돌봄 지원과 출산율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자녀 양육기 재정투자 비중 및 추이

저출산 대응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생애주기별 접근의 필요성을 지적한 논의들과 이때 강조되는 아동 연령별 정책 개입 방식으로는 구체적으로 다음이 제시된다.

가. 저출산 대응의 생애주기별 접근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아동을 위한 정부의 초기 개입은 크게 임신 전(pre-natal), 출산(birth), 자녀 양육기(post-natal period)(출산 이후) 로 구분된다(OECD, 2009: 99).

〈표 II-1-1〉 OECD 국가의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초기 정책 개입의 범위

	출산 전	출산	출산 후
보편적 정책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전보호 - 모성보호 - 산전휴가 - 산전 공적 의료지원 - 산전 건강 및 영양 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의료지원 - 출산보조금 (birth gra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수당(cash) - 산후 부모휴가
↓			
선별적 정책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후 의료지원 - 산모 방문서비스 - 자녀양육지원프로그램 - 아동보호서비스

자료: OECD(2009). Doing Better for Children. p. 99.

생애주기별 저출산 대응이 추진 중인 일본에서는 2006년 “새로운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에서 1) 임신·출산, 2) 취학 전(영유아기), 3) 초등학교 시기, 4) 중·고·대학생으로 구분된다(유해미·조숙인·장경희·박은영, 2016: 99-100). 또한 2015년에 발표된 저출산 사회대책 대강에는 “결혼” 단계가 새롭게 포함되고, 자녀 양육기로 포괄적으로 제시된다(유해미·조숙인·장경희·박은영, 2016: 117).

<표 II-1-2> 일본의 “새로운 저출산 대책” 주요내용(2006)

생애주기별	아동양육지원책
임신·출산	- 임신 중 건강검진 비용부담 경감 - 불임치료 공적 부담 확대
초등학교 취학 전 (영유아기)	- 아동수당에 영유아기 가산제도 창설 - 대기아동 제로작전 추진 - 모든 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양육지원센터 확충 - 병아보육, 질병 후 보육, 장애아동 보육 확충 - 소아의료 시스템 정비 - 취학전 교육의 보호자 부담 경감 정책의 내실화
초등학교 시기	- 전체 초등학교 구역에서 방과 후 아동플랜 작성 추진 - 스쿨버스 도입 등 등하교 안전대책
중·고·대학생	장학금의 충실화, 학생 베이비시터

자료: 유해미·조숙인·장경희·박은영(2016). pp. 99-100.

대만에서는 출생 이후 영유아 자녀를 대상으로 각 연령별로 촘촘한 육아지원이 강조된다(보건복지부·중앙일보, 2017: 95). 아래 <표 II-1-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유아기에는 아동 연령별로 다양한 돌봄서비스와 더불어 양육자 및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각종 수당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각종 생활수당과 보조금은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부모를 위주로 지급되는 경향이 있으며, 3세 미만 의료보조금은 보편적으로 지원되고, 미취학아동을 위한 특별공제도 이루어진다.

<표 II-1-3> 대만의 영유아 대상 육아지원정책

	임신	0-1	1-2	2-3	3-4	4-5	5-6
교육 및 보호 환경	·태아기 검사 ·산모 관리 센터	공립 유치원/비영리 유치원					
		공공민간 협력 유아 센터					
		육아를 위한 공공민간 협력 지원 센터					

(표 II-1-3 계속)

	임신	0-1	1-2	2-3	3-4	4-5	5-6
교육 및 보호 환경	·태아기 검사 ·산모 관리 센터	가족 보육 서비스 센터					
		어린이 예방보건관리 서비스					
		입양 지원 및 양육 위탁 서비스					
		3단계 예방 조치, 위험한 가정에 대한 홈케어, 아동 학대 방지					
우호적 직장	·조산 휴가 ·태아기 간호 휴가 ·출산 휴가 ·동반 출산 휴가	무급 육아 휴가					
		가족 배려 휴가					
		회사 내 돌봄 시설 및 조치					
경제적 지원	·임신을 위한 의료비 ·출생 및 보육 보험료 ·정부의 출산 및 보육 수당	무급 육아 휴가 수당					
		직장을 가진 부모를 위한 보육 보조금과 검증된 보육 제공자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위한 지원 (생활어린이 보육 수당)				
		2세 미만의 아이를 가진 실업 상태 부모를 위한 수당					
		미취학 아동을 위한 특별 공제					
				중저소득 가정을 위한 유치원 교육 보조금			5세를 위한 무상 교육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위한 어린이 생활 수당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긴급 생활 수당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생활 수당					
		3세 미만 아동을 위한 의료 보조금					
		발달 지연 아동을 위한 돌봄 및 교통비 보조금					
중저소득 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국가 건강보험 보조금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일보(2017). 동아시아 4개국 저출산 정책 국제 포럼 자료집. p. 95.

의료서비스 지원은 그 대상범위가 중고등학교령기에 이르러 전체 자녀 양육기를 포괄하고 있다(보건복지부·중앙일보, 2017: 101). 생후 3개월 미만 신생아에 대한 청력검사 보조금 전액 지원,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선천적 대사장애 검사, 4-5세 아동을 위한 시력검사, 7세 미만아의 예방보건서비스 제공, 청소년 대상의 담배 예방 등과 모든 도시와 자치구에 1~4개의 아동발달 평가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표 II-1-4〉 대만의 자녀양육 단계별 의료서비스

신생아		유아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1 day	1 month	1 year	2 year	3 year	4 year	5 year	6 year	7 year	8 year	9 year	10 year	11 year	12 year	13 year	14 year	15 year	16 year	17 year	18 year
신생아 대상장애 검사																		성교육 담배 위험 예방 및 통제	
출개중 폐쇄중 검사																			
신생아 청력 검사				청력 검사		사시, 양시 및 기타 시각장애에 대한 검사												건강 검진 (1, 4, 7학년, 교육부)	
(일반 건강 검사, 발달 검사, 시력, 청력 및 구강 건강 검사)		이동 예방 보건서비스																	
이동 발달 검사, 공동 평가 및 중재 서비스								영구적인 어금니 치아에 대해 치아 실관트 치료											
불소 젤 도포								초등학교생들을 위한 불소 구강 세정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흡연 예방/건강한 다이어트/ 교통 안전/ 스트레스 해소 및 휴식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일보(2017). 동아시아 4개국 저출산 정책 국제 포럼 자료집. p. 101.

이외에도 저출산 현상의 극복에 대한 장기적인 노력을 강조하면서 저출산 사업 예산은 생애주기적 통합적 추진이 강조된다(김영록·신동면, 2016: 197). 이 연구에서 저출산 예산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기혼여성을 위한 저출산 사업이 94.5%를 차지하고, 미혼남녀 대상 예산은 1.0%, 아동 청소년을 위한 사업 예산은 4.6%에 그친다. 이를 토대로 여기서는 생애주기 관점에 입각하여 결혼준비기, 출산 및 양육기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결혼,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사회 환경의 조성을 위한 적절한 정책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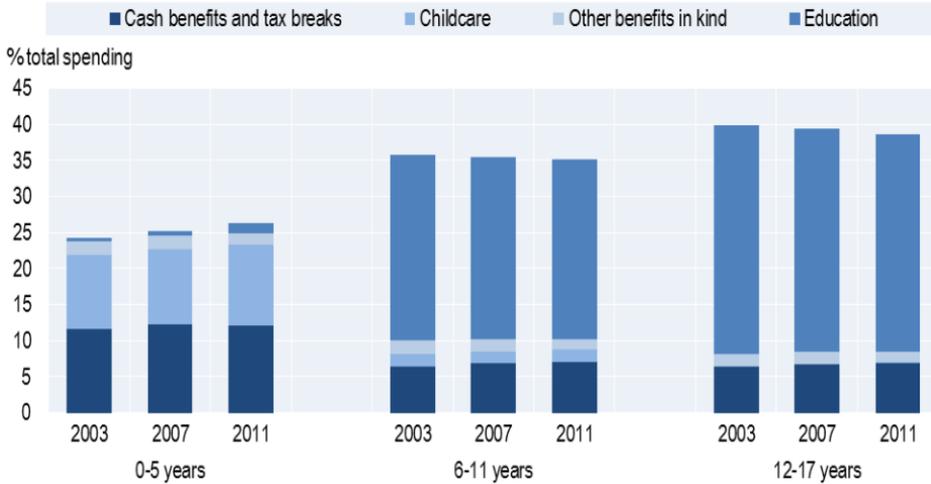
나. 자녀양육 단계별 재정투자 방식 및 추이

생애주기별 관점에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다루는 것은 아동기를 독립된 그룹으로 다루기보다는 초기 생애주기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보다 영향력이 크고, 장기적 효과도 크다는 점이 강조된다(OECD, 2009: 67). 그런데 이때 아동의 생애주기에 따라 재정투자의 사회적 이윤이 상이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와 동시에 재정투자 방식 또한 아동 연령에 따라 소요 비용이 달리 배정된다는 점이 중요하다(OECD, 2009: 68). 만약 자녀 연령에 따라 가족에게 소요되는 비용이 다르다면, 자녀양육 단계별로 재정투자의 비중 및 주요 방식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아동 1인당 사회적 지출 수준은 아동 연령별로 크게 3단계 즉 초기 아동기(0~5세), 중기 아동기(6~11세), 후기 아동기(12~17세)로 구분된다(OECD, 2009: 74)²⁾. 가족급여와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는 이들 아동 연령대에 따라 그 양상이 상이하다. OECD 국가는 평균적으로 해당 예산의 25%를 초기 아동기에 투자하며, 중기 아동기에는 33%, 후기 아동기에는 40%선으로 점차 증가한다(OECD PF 1.6, 2017: 1). 초기 아동기에는 현금과 세제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재정투자 양상은 2003, 2007, 2011년 모두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며, 단 초기 아동기에 대한 공적 투자 비중은 소폭 증가하고, 중기와 후기 아동기는 소폭 감소하였다(OECD PF 1.6, 2017: 1).

2) 여기에는 가족에 대한 현금수당, 세제지원, 보육, 이외 현물급여, 그리고 교육 부문이 포함됨. (OECD PF 1.6, 2017: 1).

단위: %



자료: OECD(2017). Family database-PF1.6. OECD, Paris. p. 1.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 검색일자: 2017년 2월 11일)

[그림 II-1-1] OECD 국가의 아동 연령별 1인당 평균공적사회지출 추이(2003/2007/2011)

그러나 개별 국가에 따라 아동 연령별 재정투자 비중은 상이하다. 이를테면 아이슬란드와 멕시코는 후기 아동기보다 중기 아동기의 재정투자 수준이 더 높은 반면, 헝가리와 룩셈부르크는 12~17세아 보다 0~5세아의 재정투자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OECD PF 1.6, 2017: 2).

한편 각 시기별로 주요 재정투자 방식도 달리 나타난다. 초기 아동기에는 현금수당과 세제지원이 주된 사회적 투자 방식이나, 현금수당은 3~5세아에 비해 2세 이하 아동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OECD PF 1.6, 2017: 2). 초기 아동기에 대한 투자 수준은 각국별로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하여, 북유럽 국가, 프랑스, 독일, 영국 등에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반면, 멕시코, 칠레 등은 저조한 수준을 보인다. 현금 지원이 영아기에 한정된 전략인 반면, 보육과 유아교육 부문은 초기 아동기의 지출 전략에서 그 중요도가 더 높게 인식된다(OECD, 2009: 76). 그러나 해당 투자 수준은 각 국가별로 차이를 보여, OECD 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을 나타내는 헝가리에서는 높은 투자 수준을 보이는 반면, 미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수준을 보이나 지출 수준을 낮다(OECD, 2009: 76-77).

중기 아동기(6~11세)에는 의무교육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지며, 현금급여의 비

중은 의미 있게 감소한다(OECD, 2009: 77). 특히 한국, 멕시코에서는 중기 아동기에 대한 투자가 약 90%선으로 교육 부문에 집중되며, 현금지원은 매우 저조한 특징을 보인다(OECD PF 1. 6, 2017: 4).

12세에서 17세까지 아동기의 마지막 단계에는 모든 과정에서 교육 부문에 투자가 집중되며, 이는 각국별로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OECD PF 1.6, 2017: 4). 즉 대부분의 아동이 중등교육 과정 단계이므로 교육 부문의 투자는 중기 아동기에 비해 더 증가하여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밖에도 북유럽 국가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에서는 아동 연령에 따라 현물 급여가 제공되는데, 일부 항목은 의무교육이 지난 이후까지도 지원된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현금을 지급하는 국가들에서는 대부분 해당 기간이 18세까지 지속되며, 10대 전 시기에 걸쳐 보편적인 교육지원이 이루어진다(OECD, 2009: 78). 양육비용 수준이 높을 경우는 다자녀를 희망하지 않게 되어 추가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출산 시기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Oystein Kravdal, 2016: 24), 지원대상 뿐만 아니라, 지원 기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자녀돌봄 지원의 유형

OECD 국가들을 위주로 자녀돌봄 지원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특히 정합성 분석을 위해 아동관련 급여에 한정하여 지원대상 및 수준(급여 수준, 지원 기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휴가·휴직급여는 현금급여 부문에서 다루고, 서비스 부문에는 보육 및 비공식 돌봄을 포괄하였다.

1) 현금급여

현금급여에는 아동관련 수당 및 세제지원과 휴가·휴직급여가 포함된다. 아동관련 수당 및 세제지원은 일부 국가에서 소득기준이 적용되며, 아동 연령과 자녀수가 증가함에 지원 수준을 높여 양육비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휴가·휴직급여는 가구소득에 따라 급여 대체율이 상이하고, 지원 기간이 다양하며, 아버지 휴가의 경우는 대체로 그 기간은 짧으나 급여 대체율을 상향 조정하여 제도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가) 아동관련 수당 및 세제지원

아동수당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거나 소득기준이 적용되어 특정 수준 이하 소득 가구에만 지급되거나 가구소득이 증가하면 급여액이 줄어든다(OECD PF 1. 3, 2017: 1). 지급 시기는 주로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정해지며, 환급형 세제지원은 가족급여에 포함된다.

〈표 II-2-1〉 아동관련 현금급여(2010)

국가명	1인당 최대 수당액		부가 수당		상한 연령	기준	비고
	급여액	AW 대비 백분율	연령	자녀 수			
덴마크	13,448	4	-	0	17	없음	자녀 1인당 300유로의 “녹색 수표” 수급 가능
핀란드	1,200	3	0	+	16	없음	첫째아에 대한 가족수당 없음. 11세 미만 두 자녀인 경우, 자녀 1인당 747 유로 (AW의 2%)
프랑스	747	2	+	+	19	없음	
독일	2,208	5	0	+(셋째)	18 (25)	없음	아동수당(Kindergeld)은 매월 이루어지는 환급형 세액 공제(과세액이 없는 경우 SA 감소)
	1,680	5	-	-	17 (21)	있음	보충아동수당은 자녀들의 유지관리를 위해 실업수당 II/사회복지수당을 신청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부모에게 지급
일본	156,000	3	0	0	15	없음	보충아동수당 (SA의 일환)
뉴질랜드	4,487	9	+	-	18	가족 소득	가족 세액 공제
노르웨이	11,640	2	0	0	17	없음	한부모의 경우 1~3세 자녀를 위한 보조와 더불어 자녀 1명분의 수당 추가 지급
스웨덴	12,600	3	0	+	15 (19)	없음	

(표 II-2-1 계속)

국가명	1인당 최대 수당액		부가 수당		상한 연령	기준	비고
	급여액	AW 대비 백분율	연령	자녀 수			
영국	1,056	3	0	-	15 (18)	없음	둘째아 부터 정액 급여
	2,845	8	0	-	15 (18)	총 가족 소득	WTC 수혜 자격이 있는 가족에게 근로 세액 공제 소진 후 아동 세액 공제
미국	1,068	2	0	+/-	-	있음	자녀수가 아닌 신청 시 가족 규모에 따른 빈곤가정 일시지원(TANF), 금액과 기간은 각주별

주: 세 번째 열의 "+"와 "-" 는 자녀수가 많거나 연령이 낮을 때의 급여액 증감을 나타냄.
 자료: OECD(2017). Family database-PF1.6. OECD, Paris. p. 1.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 검색일자: 2017년 6월 12일)

주요국의 가족급여 수준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가에서 자녀가 있는 가구에 한하여 지급하며, 절반 이상의 국가에서 가구소득과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이 지원된다(OECD PF 1. 3, 2017: 1). 이들 중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에서는 저소득 가정과 어린 자녀가 있거나 부모가 실업 상태에 있는 가정에게 각각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보편적인 아동수당인 경우라 할지라도 가계의 고용 상태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벨기에의 경우는 실업 상태가 7개월째가 되면 아동수당 급여액이 상향 조정된다. 한 자녀 가정에 대한 보편적 급여 제공은 헝가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가 가장 관대하여 근로자의 평균 소득의 5%를 초과할 수 있다. 아동수당 급여액이 가구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국가로는 일정 소득 이상의 가구의 경우는 자녀수에 따라 가족급여가 감소되는 아이슬란드를 들 수 있다. 적용대상 아동 연령의 상한선은 대개는 교육을 받는 연령보다 높게 정해진다(OECD PF 1. 3, 2017: 1).

한편 호주, 캐나다, 독일, 뉴질랜드, 영국은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를 취한다. 이중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소득에 따른 가족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며, 독일은 자녀의 수(4명 이상)가 적용된다. 조세지출은 현금급여를 수급자에게 직접 제공하지는 않으나, 조세체계를 활용하여 과세 소득을 감면하거나 세액을 공제해줌으로써 현금급여를 제공한 것과 마찬가지로 가구의 가처분 소득에 변화를 주는 급여 방식이다(김영록·신동면, 2016: 29). 가족급여의 성격의 조세

지출은 소득의 수직적 재분배에 취약하여 역진적 소득재분배를 초래할 수 있다(김영록·신동면, 2016: 29). 그러나 자녀수에 따라 수급 자격을 제한하고 급여 수준을 달리 설계할 경우 수평적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자녀 출산 및 양육 관련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김영록·신동면, 2016: 29).

나) 휴가·휴직제도

OECD 국가들에서 아동을 위한 부모휴가제도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나, 보편적으로는 1) 출산휴가(Maternity/Paternity leave) 2) 육아휴직(Parental Leave), 3) 재가 돌봄 휴가, 4) 아픈 자녀를 위한 단기 휴직제도가 포함된다(김미숙·홍석표·정재훈·김기현·안수란, 2010: 101). 이들 제도는 국가마다 매우 상이하다.

부모가 출산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가계 순 소득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국가마다 그 양상은 매우 상이하나, OECD 국가는 평균적으로 평균 소득수준의 2자녀 맞벌이 가구의 둘째아 출산 후 첫 달의 순 소득은 출산 이전보다 약 19% 낮아지며, 대체로 저소득층 가구의 수입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낮다(OECD PF 2.4, 2017: 45).

(1) 출산휴가(모성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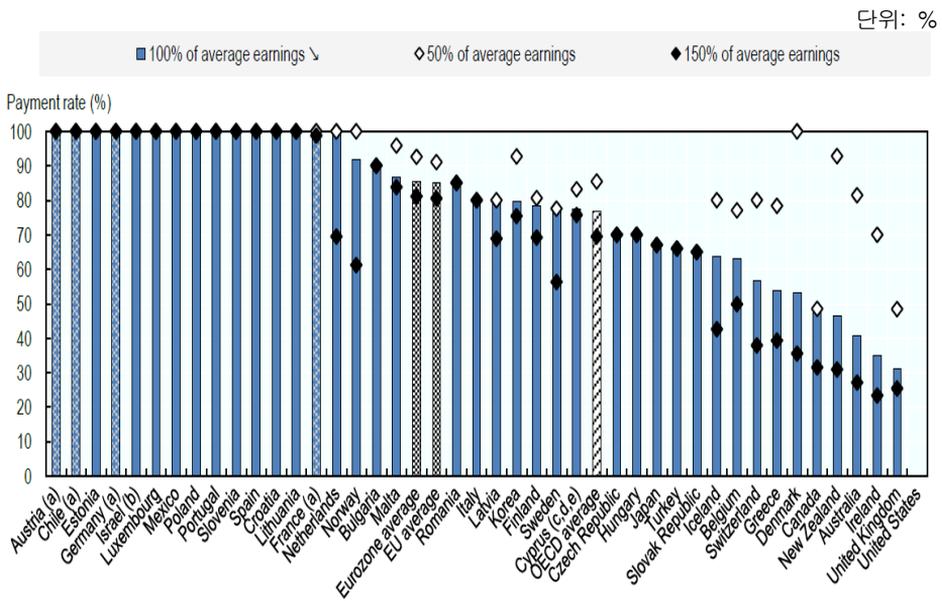
출산휴가는 일부 국가에서는 출산 전 임신부 근로자의 보호와 관련된 노동법 조항을 제공한다(OECD PF 2.1, 2017: 1).

출산휴가에 대한 ILO 협약은 휴가기간을 최소 14주로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출산전후휴가의 분할사용이 가능하며 OECD 국가는 평균적으로 약 18주의 유급 출산휴가를 제공한다(OECD PF 2.1, 2017: 1). 미국은 유급 출산휴가가 국가 차원에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유일한 국가인 반면, 영국에서는 최대 9개월까지 출산휴가를 이용할 수 있다.

OECD 국가들의 출산휴가 급여율은 높은 편이다. 평균 임금을 받던 어머니의 경우는 이전 수입의 평균 약 79%를 받을 수 있으며, 평균 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나라도 13개국에 달한다(OECD PF 2.4, 2017: 2)(그림 II-2-1 참조). 반면 영어권 국가들, 즉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은 소득 대체율이 50% 미만으로 낮은 편이다. 단, 이들 국가 중 캐나다와 영국을 제외하면

3) '급여율(payment rates)'은 이전 총수입(일부 국가의 경우 순수익)이 휴가 연계 수당으로 대체된 비율을 말함(OECD PF 2.4, 2017: 1).

저임금계층의 급여 대체율이 더 높다. 평균 소득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데, 이는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수준과 유사한 정액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고임금 근로자인 여성의 소득 대체율은 대체로 낮는데, 이는 급여 상한선을 두기 때문이다(OECD PF 2.4, 2017: 2). 예를 들어, 네덜란드, 노르웨이에서 고임금 산모의 소득 대체율은 중간 수준의 임금을 받던 산모의 소득 대체율 보다 30~40%p 낮다. 그러나 11개 국가에서는 고임금군에게도 총 수입의 100%가 지급된다. OECD 국가 전체의 고임금군 평균 급여율은 69.4%이다.



자료: OECD(2017). Family database-PF1.6. OECD, Paris. p. 3. .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 검색일자: 2017년 6월 12일)

[그림 11-2-1] OECD 국가의 출산휴가(모성휴가) 급여율(2016)

(2)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시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이다(OECD PF 2.1, 2017: 1).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출산휴가 기간보다 짧고, 이 기간 동안 급여가 지불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배우자 휴가 자격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고, 육아휴직 제도의 일부에 속한다.

〈표 11-2-2〉 OECD 국가의 법정 배우자 출산휴가제도(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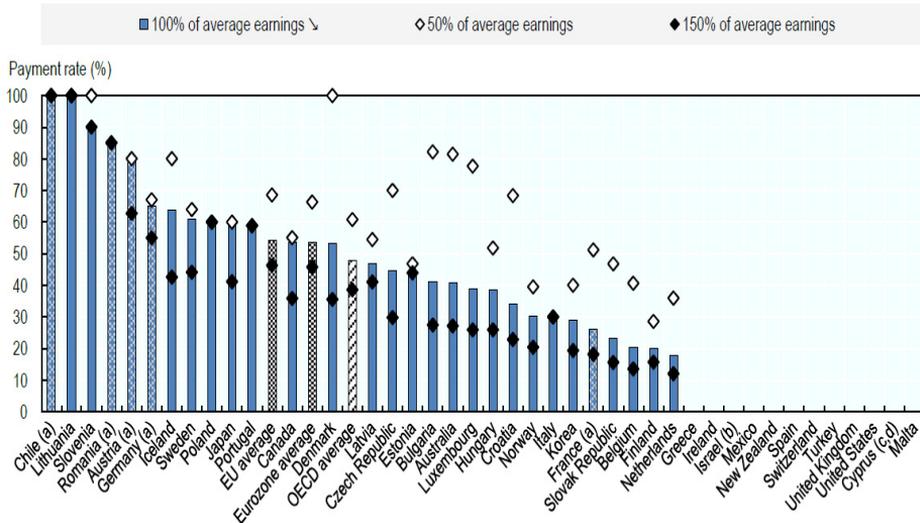
국가	기간	급여 여부	급여 수준
프랑스	2주	유급	100% (최대 1일 EUR 83.58)
스웨덴	10일	유급	77.6% (최대 연간 SEK 332,200)
노르웨이	2주	무급	-
영국	2주	유급	100% (최대 주당 GBP 139.58)

자료: OECD(2017). Family database-PF 2.1. OECD, Paris. p. 3.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 검색일자: 2017년 6월 12일)

(3) 육아휴직

육아휴직제도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이다 (OECD PF 2.1, 2017: 1). 주로 출산휴가와 배우자 휴가로 대체되며 출산휴가 후 사용된다. 육아휴직은 부모 중 한 명이 택일하며 부모 중 한 명만 소득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OECD 국가들에서 어머니가 사용할 수 있는 평균 육아휴직 기간은 37.5주이며 대부분의 국가가 26~52주 범위 내이다. 11개국은 유급 육아휴직제도가 부재한 반면, 4개국(에스토니아, 핀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의 법정 육아휴직 보장 기간은 2년 반에 달한다.

단위: %



자료: OECD(2017). Family database-PF 2.4. OECD, Paris. p. 3.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 검색일자: 2017년 6월 12일)

[그림 11-2-2] OECD 국가의 육아휴직 급여율(2016)

육아휴가 급여 수준은 출산휴가의 경우보다 대체로 낮으며, 평균 임금 기준으로 급여 대체율은 OECD 평균 48%선으로 나타난다(OECD PF 2.4, 2017: 3). 급여 대체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칠레(100%)이고, 가장 낮은 국가는 벨기에, 핀란드, 네덜란드, 슬로바키아(모두 25% 미만)이며, 10개국에서는 육아휴직 시 법정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휴직 기간이 길수록 급여 대체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슬로바키아는 130주의 유급 육아휴직이 가능하나 급여 대체율이 23%에 그치며, 핀란드는 이보다도 낮은 19.7%이다. 후자 경우 육아휴직의 상당 비율이 '재가 돌봄' 휴직의 형태로 연장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소득수준별로는 육아휴직의 경우도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소득 대체율이 낮다. 고임금군의 평균 소득 대체율은 약 39%이며, 중간 수준의 임금군과 고임금군의 대체율이 동일한 나라는 5개국에 불과하다(칠레,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OECD PF 2.4, 2017: 3).

(4) 남성 육아휴직

남성에게는 여성에 비해 대체로 훨씬 더 짧은 휴직이 제공된다. 아버지를 특정한 유급휴가(배우자 출산휴가 및 아버지를 특정한 육아휴가)의 기간은 OECD 평균 8주가 겨우 넘었다(OECD PF 2.4, 2017: 4). 8개국에는 유급 아버지 휴가가 없으며, 13개국은 2주 이하 였다. 반면, 8개국에는 3개월 이상의 유급 아버지 휴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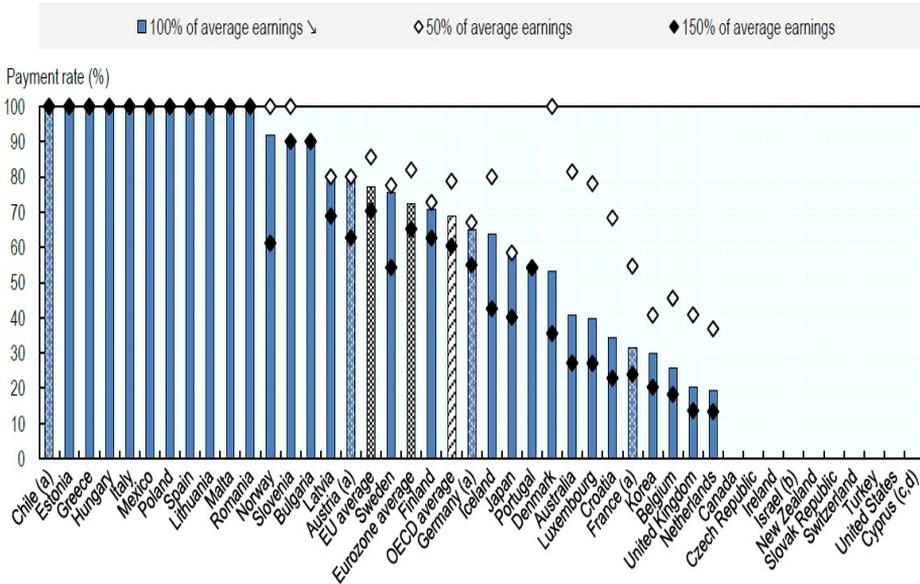
아버지 휴가가 단기간인 경우에는 급여 보전이 잘 이루어지는 편이지만 기간이 길어지면 소득 대체율은 낮아진다(OECD PF 2.4, 2017: 4)(그림 II-2-3 참조). 1개월 이상의 아버지 휴가를 제공하면서도 급여율이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와 스웨덴을 들 수 있다. 일본은 휴가 기간이 52주인 대신 급여율이 58%밖에 되지 않았다.

남성 휴직제도를 도입한 국가에서는 급여 대체율이 대체로 높다(OECD PF 2.4, 2017: 4). 평균 소득인 경우는 69%의 급여 대체율을 보였고, 10개국은 90%, 8개국은 100%의 급여 대체율을 나타냈다⁴⁾. 반면 7개국에서는 급여율이 50% 미만이었으며, 25% 미만인 경우도 2개국이 존재한다. OECD 국가들 전체 평

4) 둘 이상의 관련 수당이 있거나 지급 금액이 휴가 기간에 따라 다르다면 각 지급 기간의 길이에 따라 가중 평균을 산출, 이전의 소득수준에 따라 휴가 수당의 상대적 가치가 상이하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이전의 수입이 평균 수입의 50%(저임금), 100%(중간 수준의 임금), 150%(고임금)였던 경우 각각의 급여율을 제시함(OECD PF 2.4, 2017: 4).

균으로 보면, 이전의 수입이 평균의 150%라면 60.4%, 평균의 50%라면 78.8%를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른 급여 대체율의 격차가 큰 국가는 덴마크, 호주, 룩셈부르크였다.

단위: %



자료: OECD(2017). Family database-PF2.4. OECD, Paris. p. 4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 검색일자: 2017년 6월 12일)

[그림 11-2-3] OECD 국가의 여성휴가 급여율(2014)

〈표 II-2-3〉 OECD 국가의 법정 육아휴직제도(2016)

국가	법정제도	기간	나이 제한	지급내용	비고	아버지 수당 할당량
프랑스	육아휴직	3세까지 (개인별)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자녀: 출산휴가가 끝난 후 12개월 동안 월 EUR 390.52. 단,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최대 6개월 동안만 휴직 가능하고 나머지 6개월을 배우자가 쓸 수 있음 - 2자녀 이상: 한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월 EUR 390.52. 단,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최대 24개월 동안만 휴직 가능하고 나머지 6개월을 배우자가 쓸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로 휴가 사용 가능하며 이때 급여는 그에 상응하여 감소. - 어느 한 시점에 부모 중 한쪽만 전일제로 휴가를 쓸 수 있으나, 둘 다 시간제로 쓸 경우 동시에 휴가를 쓸 수 있음 	
독일	육아휴직	3년까지 (휴가는 개인별, 단, 급여는 가족 단위로 지급)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후 10개월 동안 부모 평균소득의 67%, 매달 EUR 1,800 한도, 소득이 없는 부모의 경우 최소 EUR 300 - 저소득 보조금: 월 소득 EUR 1,000 이하인 경우 매 월정액 EUR 2 당 0.1% 자녀양육수당 증가 - 고소득자: 월 소득 EUR 1,200 초과 시 EUR 2당 0.1% 수당 감소 (평균소득의 65%가 하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양쪽이 최저 2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기간이 2개월 연장(10+2 옵션) - 10(+2)개월의 기간을 파트타임으로 나누어 20(+4)개월로 쓸 수 있음 - 부모가 동시에 휴직할 수 있으며 휴직 기간을 둘로 나누어 쓸 수 있음(20+4 옵션의 경우 3분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 양쪽이 최소 2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2개월 보너스가 지급되며, 이 2개월은 공유할 수 있음

(표 II-2-3 계속)

국가	범정제도	기간	나이 제한	지급내용	비고	아버지 수당 할당량
스웨덴	육아휴직	480일 부모 각각 60일	12	첫 390일: 77.6%(SEK 443,000 한도 내) 나머지 90일: 1일 SEK 180	- 유연한 육아휴직: 상근근무, 반일제, 1/4, 1/8(한 시간), 양부모 해당 - 성평등보너스는 부모가 동등하게 육아휴직을 분할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부모 모두는 동등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하루 SEK 50(EUR 5.6) 제공, 최대 보너스 SEK 13,500	-
노르웨이	1) 육아휴직 2) 재가돌봄휴직	1) 46-56주(산모의 경우 출산 전 3주 추가). 10주는 어머니 10주는 아버지가 사용해야 함 2) 유급 휴가 종료 후 부모 각각 12개월	1) 3 2) -	1) 단기 옵션: 100%. 최대 연간 NOK 540,408 장기 옵션: 0%. 최대 연간 NOK 540,408 2) 12-24개월 자녀를 둔 부모가 공공보육/교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시 현금수당 제공받음, 매달 NOK 6,000	1) 출산 전 3주, 출산 직후 6주 동안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쓸 수 있음 2) 재가돌봄수당을 받으려면 해당 아동이 공공시설의 서비스(ECEC)를 받지 않아야 함	

(표 II-2-3 계속)

국가	법정제도	기간	나이 제한	지급내용	비고	아버지 수당 할당량
일본	육아휴직	자녀 12개월령 까지, 단, 부모 모두 휴가 사용 시 14개월령 까지	1	- 첫 180일간 67% - 상한 JPY426,000(최저 월 JPY 46,230, 최 대 월 JPY 285,420), 나머지 기간 50%(최 저 월 JPY 34,500, 최대 월 JPY 213,000)	-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가 능	부모 모두 육아 휴직 사용 시 자녀 연령 한계 2개월 연장
한국	육아휴직	12개월 (개인별)	8	- 소득의 40%. - 하한 500,000원, 상한 1,000,000원. - 배우자가 휴가 사용 시 첫 3개월 동안은 상한 1,500,000원 한도 내에서 소득의 100% 지급	- 부모가 동시에 휴가 사용 시 한 쪽만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파트타임 기능("육아기근로시간단 축제") 피고용자가 육아휴직 후 동일 고용주의 사업장으로 돌아 와 6개월 이상 근무 시 육아휴직 급여의 25%가 일시금으로 지급 됨	
미국	가족의료휴 직	12주 (개인별)	1	무급 단, 주 정부나 고용주가 지급 가능	- 출산, 입양, 배우자 돌봄, 육아, 위중한 질병에 걸린 부모 부양 등을 포함	
영국	육아휴직	12주 (개인별)	18	무급	- 고용주가 별도로 허락하지 않는 한 연간 최대 4주	

자료: OECD(2017), Family database-PF2.1, OECD, Paris, p. 4.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 검색일자: 2017년 6월 12일)

(5) 재가 돌봄 휴가

재가 돌봄 휴가는 아동이 3세가 될 때 까지 부모 중 한 명이 아동을 집에서 돌볼 경우 제공된다. 재가 돌봄 휴가는 육아휴직과는 그 목적이 달라, 단기적인 소득보전보다는 자녀를 직접 돌보려는 부모를 지원하려는 제도이므로 주로 낮은 수준의 정액 급여만 지급된다(OECD PF 2.1, 2017: 1). 사례 국가로는 노르웨이, 핀란드가 대표적인데, 부모가 공적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자녀를 돌볼 경우에는 일종의 현금수당으로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된다(김미숙·홍석표·정재훈·김기현·안수란, 2010: 101).

한편 1990년대에 유럽국가에서 새롭게 도입된 양육수당은 3가지 목표를 지닌다(Korsvik T. R., 2011: 142). 즉 1) 자녀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 2) 양육 방식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며, 3) 1~3세아를 둔 가정에 대한 기관보육 소요 재정과의 형평성 제고가 그것이다.

(6) 가족 돌봄 휴가

아프거나 병이 있는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는 유급 또는 무급휴가로, ‘개인사유’ 또는 ‘가족관련 사유’로서 보다 광범위한 휴가에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영구적인 장애가 있는 자녀나 가족구성원을 돌보기 위한 휴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OECD PF 2.3, 2017: 1).

OECD 국가 대부분은 아프거나 병이 있는 가족구성원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보장하는데, 세부 지원내용은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다. 아픈 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가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 보다 포괄적인 휴가 범주 내에서 해당 휴가를 보장하는 경우도 있다. 심각하지 않은 경우의 단기 휴가와 위중하거나 말기 환자를 돌보기 위한 장기 휴가로 구분되기도 한다(OECD PF 2.3, 2017: 1). 단기 휴가의 경우는 주로 연차 휴가 형태로 특정 일수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에서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연간 2주의 휴가를 쓸 수 있으며, 네덜란드에서는 아픈 자녀, 배우자, 부모, 다른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데 연간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에스토니아, 핀란드, 스페인, 스위스 등에서는 가벼운 질병에 걸린 가족구성원을 돌보기 위한 휴가가(연간 특정 일수가 아니라) 매 휴가별로 제공된다(OECD PF 2.3, 2017: 1). 위중한 질병에 걸린 가족구성원을 돌보기 위한 휴가는 대개 ‘휴가 당’ 특정 기간이 제공되는데, 그 기간은 나라마다 매우 다양하며, 대개 2개월에서 6개월 사이다. 캐나다 일부 지방에서는 ‘사망 위험이 상당한’ 가족구성원을 돌보기 위해 쓸 수 있는 휴가가 최대 8주인 반면,

독일에서는 6개월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일본은 개인별로 위중한 질병에 걸린 경우 그를 돌보는 가족 구성원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해당 기간은 병자를 기준으로 평생 93일이다.

급여 지급 여부 및 수준은 국가와 휴가 유형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심각하지 않은 질병인 경우, 특히 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가는 유급인 경우가 많으나,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일본, 영국, 미국은 아픈 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가도 무급으로 제공된다. 위중한 질병이 있는 가족을 돌보기 위한 장기 휴가는 무급인 경우가 많으나, 역시 예외는 있다. 예를 들어, 벨기에에서는 위중한 질병이 있는 가족구성원을 위해 장기 휴가를 사용할 때 최대 1년까지 정액 급여를 받을 수 있다.(OECD PF 2.2, 2017: 1). 독일은 이와 같은 장기 휴가가 무급이나 해당자에게 무이자 대출 혜택이 주어진다. 한국은 장, 단기 구분 없이 연간 90일의 무급 휴가를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2) 돌봄서비스

영유아 대상의 공적 보육서비스와 비공식 돌봄과 방과후 돌봄으로 구분하여 각각 서비스 이용율 및 이용시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관련 주요 변인도 파악하였다. 0~2세아의 보육서비스 이용율은 국가 간 차이가 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3~5세아 보육서비스 이용율은 0~2세아 보다 월등히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비공식 돌봄의 경우는 0~2세아가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서비스 이용율은 3~5세아가 더 높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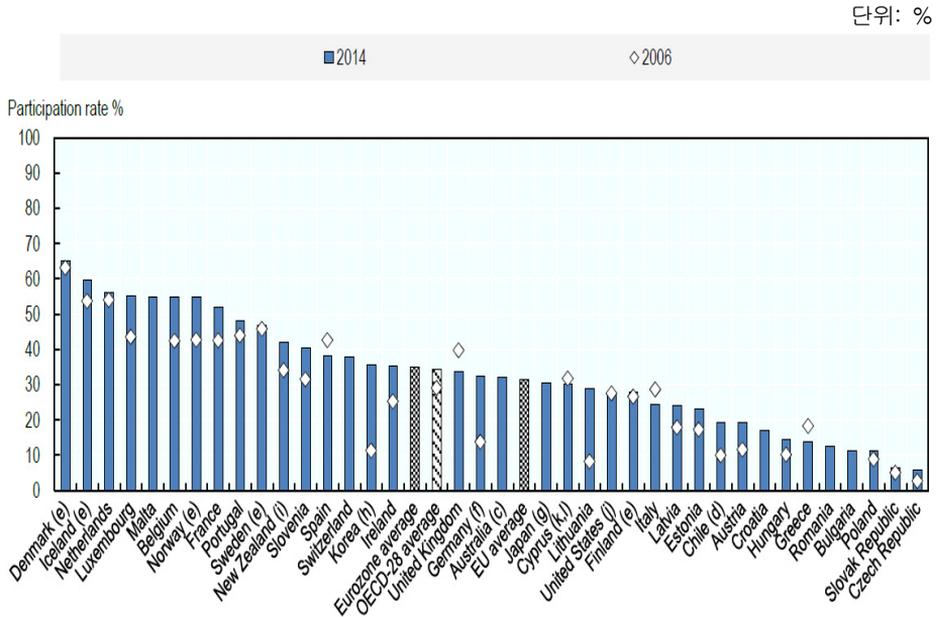
가) 공적 기관보육

공적보육(formal childcare)은 부모휴가 이후 또는 1세 이전부터 직접 공보육 시설을 제공하거나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OECD, 2011: 71-72). 일반적으로는 의무교육 연령에 가까워질수록 서비스 이용 자격을 부여하며, 그에 따라 서비스 이용율도 증가한다. 0~2세 보육의 목적이 취업모의 경력단절 예방 성격이 강한 반면, 3~6세 프로그램은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에 대한 교육서비스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이진숙·신지연·윤나리, 2010: 102).

0~2세 공적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OECD

회원국 평균은 약 35%이나, 체코는 6%밖에 안 되는 반면 덴마크는 66%에 이른다(OECD PF 3.2, 2017: 2). 북유럽(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과 베네룩스(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국가들, 그리고 프랑스, 포르투갈은 50%가 넘었다. 체코, 슬로바키아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편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높아지고 있다. 2006년에는 29%였는데 2014년에는 34%가 넘었다(OECD PF 3.2, 2017: 2). 특히 한국(24.5%p)과 독일(18.7%p)의 상승 폭이 가장 컸으며, 벨기에, 프랑스, 노르웨이 등도 10~12%p 높아졌다. OECD 국가들 중 단 4개국(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에서만 2006년 이후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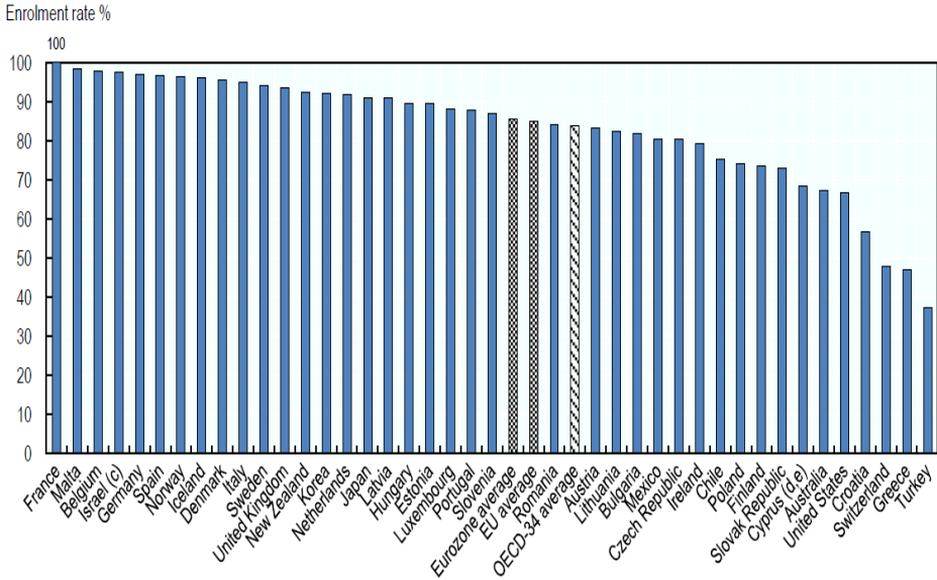
자료: OECD(2017). Family database-PF3.2. OECD, Paris. p. 3.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 검색일자: 2017년 6월 12일)

[그림 II-2-4] 0~2세아 공적 보육서비스 이용률(2006/2014)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사회경제적 배경이 유리할수록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아진다(OECD PF 3.2, 2017: 2). 예를 들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0~2세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⁵⁾이 높다. 프랑스는 고소득층에서 81%, 저소득층

에서는 19%, 아일랜드에서는 고소득층 55%, 저소득층 11%로 나타나 저소득층 자녀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고소득층 자녀의 1/4 미만이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약 35~36%) 여전히 고소득층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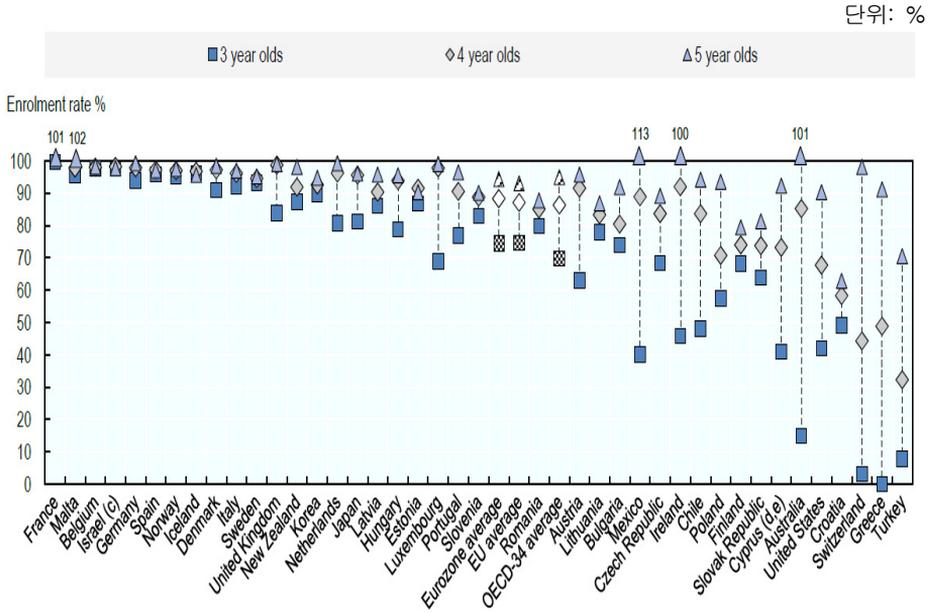
자료: OECD(2017). Family database-PF3.2. OECD, Paris. p. 6.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 검색일자: 2017년 6월 12일)

[그림 II-2-5] 3~5세아의 공적 보육서비스 이용률(2014)

0~2세아의 공적 보육서비스 이용시간도 국가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대부분은 주당 25~35시간이고 평균 30시간이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나,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등은 주당 약 40시간인 반면, 네덜란드와 영국 등은 17~18시간에 그친다(OECD PF 3.2, 2017: 6). 이같은 서비스 이용시간은 풀타임 대비 이용률로 환산할 때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포르투갈은 인구 대비 이용

5) 0~2세 유아의 공식적인 보육 및 유치원 서비스 이용률 데이터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되었음. 호주, 한국, 미국 자료는 국가 통계 당국으로부터 취합하였으며, 지역 통계 기관이나 국가 주재원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도 있음. 출처가 다른 만큼, 자료에 따라 사용된 용어의 정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비교 시 주의를 요함(OECD PF 3.2, 2017: 7).

률이 48%로 중간 수준이나 풀타임 대비 이용률로 환산하면 60%이다. 이와 반대로 네덜란드는 인구 대비 이용률이 55.9%로 상당히 높은 편이나 풀타임 대비 이용률은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32.8%로 나타났다(OECD PF 3.2, 2017: 6).



자료: OECD(2017). Family database-PF 3.2 OECD, Paris. p. 7.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 검색일자: 2017년 6월 12일)

[그림 II-2-6] 3~5세아 연령별 공적 보육서비스 이용률(2014)

3~5세아 보육서비스 이용률⁶⁾은 대체로 0~2세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OECD PF 3.2, 2017: 6)(그림 II-2-6 참조).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3~5세아의 80% 이상이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 등록되어 있으며, OECD 평균 등록률은 83.8%이다. 벨기에, 프랑스, 이스라엘은 약 98% 또는 그 이상인 반면, 그리스, 스위스, 터키의 경우 3~5세 아동의 절반 미만만이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 등록되어 있었다.

세부 연령별로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만 5세의 등록률은 매우 높게 나

6) 3~5세아의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등록률 자료는 모두 UNESCO-OECD-EUROSTAT(UOE)의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에서 나온 것이며 실제 등록 학생 수 자료임(OECD PF 3.2, 2017: 7).

타난 반면(체코, 핀란드, 슬로바키아, 터키를 제외하면 90% 이상), 만 3세와 4세의 경우에는 국가별 차이가 좀 더 컸다(OECD PF 3.2, 2017: 6).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은 3, 4세 등록률도 90% 이상이나, 미국은 5세 아동의 90% 이상이 유치원 등에 등록한 반면 3세 아동의 등록률은 42% 미만으로 나타났다.

나) 비공식 돌봄

공식적 보육 이외에도 아동의 집에서 부모에 의해 제공되거나, 친인척, 이웃, 친구, 보모 등 비공식적 주체로부터 제공되는 법적 기반이 없는 비공식적 보육 서비스도 존재한다(김미숙·홍석표·정재훈·김기현·안수란, 2010: 202). 이들 서비스를 분류하는 방식도 다양한데, 무급 돌봄만을 비공식 보육으로 포함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비용 지불 여부와 상관없이 친인척이나 이웃으로부터 제공되는 모든 비공식 보육서비스를 포함하는 국가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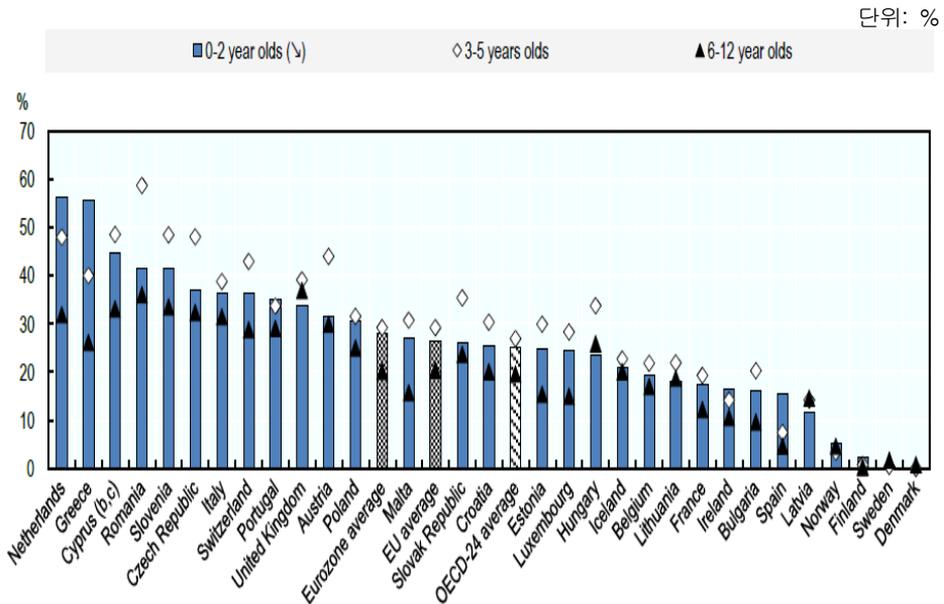
OECD 국가들의 비공식 보육 비율⁷⁾은 특히 0~2세아의 경우 매우 다양한 분포를 보여, 그리스와 네덜란드에서는 55~56%이나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해당 비율이 10% 미만이다(OECD PF 3.3, 2017: 2). 3~5세의 경우는 48%가 비공식 돌봄을 이용하는 슬로베니아로부터 해당 서비스의 이용이 전무한 덴마크에 이르기까지 넓게 분포한다. 6~12세의 경우 영국이 37%로 가장 높고, 핀란드는 0.3%에 불과하다. 전 연령에 걸쳐 북유럽 국가들의 비공식 돌봄 이용률이 낮은 수준에 그치는데, 이는 이들 국가에서 보편적인 공보육 체도를 갖추고 있음을 반영하며, 특히 모든 부모가 원할 경우 공적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OECD PF 3.3, 2017: 2).

비공식 돌봄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연령집단은 3~5세로 나타났다(그림 II-2-7 참조). 많은 국가에서 0~2세보다 3~5세에서 비공식 돌봄의 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은 가장 어린 자녀가 3~5세일 때 부모가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OECD PF 3.3, 2017: 2). 또한 6~12세 구간에서 해당 비율이 다시 낮아지는 것(대체로 20% 미만이며 체코, 이탈리아,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영국만 30% 이상)은 이 시기에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초등학교 입학이 의

7) '비공식' 돌봄의 개념 정의는 국가마다 다름. 여기서 이용된 대부분의 정보는 유럽연합통계청(Eurostat)의 EU-SILC 서베이 데이터에 근거하며, 이 서베이에서는 비공식 돌봄을 조부모, 친척, 친구, 이웃이 무급으로 제공하는 돌봄이라고 정의함. 그러나 호주, 한국, 미국 등에서는 용어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OECD PF 3.3, 2017: 1).

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된다. 6~12세 아동의 비공식 돌봄 이용은 학교에 가는 시간과 부모의 근무시간 사이의 불일치, 그리고 학교 시간 외 돌봄서비스의 공급 부족에 기인한다.

비공식 보육 비율은 3~5세아를 둔 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일반적으로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비공식 보육 이용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OECD PF 3.3, 2017: 2)



자료: OECD(2017). Family database-PF3.3. OECD, Paris. p. 2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 검색일자: 2017년 2월 11일)

[그림 11-2-7] OECD 국가의 아동 연령별 비공식 보육 이용율(2014)

한편 비공식 돌봄의 이용시간은 국가별, 연령집단별로 차이를 보이나, 대개 주당 11~17시간으로 나타난다(OECD PF 3.3, 2017: 2). 0~2세의 이용시간이 가장 길었고(그리스가 약 30시간으로 가장 길고 체코가 10시간 미만으로 가장 짧았다), 3~5세(그리스 23시간, 네덜란드 7시간), 6~12세(그리스 18시간, 네덜란드 및 스위스 5~6시간) 순으로 감소한다(OECD PF 3.3, 2017: 3). 대부분의 국가에서 0~2세의 비공식돌봄 이용시간이 가장 길었으나, 이러한 추이는 포르투갈(0~2세 28시간, 3~5세 17시간, 6~12세 13시간)에서 가장 두드러졌다(OECD PF 3.3, 2017: 3).

다) 방과후 돌봄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나라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평균 이용률은 약 30%선이나, 아일랜드, 스페인 등은 7~8%에 불과한 반면, 덴마크나 헝가리 등은 70%선으로 나타난다(OECD PF 3.3, 2017: 1).

아동 연령별로는 대체로 낮은 연령(6~8세)집단에서 이용률이 높고(덴마크, 헝가리, 스웨덴의 경우 6~8세아 중 80%), 아이슬란드와 같이 그 격차가 50%p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9~11세아의 이용률이 6~8세아의 이용률보다 높은 국가도 소수 존재한다(OECD PF 3.3, 2017: 1).

학교 시간 외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도 국가별로 다양하다(OECD PF 3.3, 2017: 3). OECD 회원국 중 유럽국가 대부분에서는 시설 기반의 학교 시간 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6~11세아의 평균 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이 주당 7~12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OECD PF 3.3, 2017: 2). OECD 회원국 전체의 평균은 주당 10시간이다. 단 헝가리는 주당 18시간을 상회하고,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영국의 경우에는 7시간 미만이다. 특히 영국은 5시간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OECD 국가들에서 유리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아동일수록 시설 기반의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OECD PF 3.3, 2017: 4).

3. 자녀돌봄 지원과 출산율 제고 효과

자녀 양육기의 돌봄지원은 그 설계 방식에 따라 저출산 대응 및 출산율 제고의 효과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저출산 대응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정책 유형, 급여액, 수급 조건 등에 따라 미치는 영향 정도가 다를 수 있다(김영록·신동면, 2016: 26). 그러므로 주요 정책의 출산율 제고 효과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주요 정책 및 출산율 제고 효과

일반적으로 현금지원은 출산 시기 특히 첫 자녀의 출산이 앞당겨지는 효과를

지니며, 육아휴직이 자녀 출산에 미치는 효과는 불확실하나, 일부 연구에서는 보육서비스 커버리지와 재정투자 수준, 그리고 휴직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총 자녀수의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된다(Thévenon O., & Gauthier A. H., 2012: 88). 즉 금전 혜택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비용의 일부를 상쇄시키므로 그 효과가 미비하나, 일·가정 양립지원은 자녀양육의 기회비용을 상쇄하거나 감소시킨다. 즉 휴직제도, 보육서비스 제공, 탄력근무제 등은 첫째 자녀의 출생 시점부터 보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출산 행태에서 사회계급간 불평등을 완화시킨다(Thévenon O., & Gauthier A. H., 2012: 95).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들 정책은 집단 간 차별적인 정책 수혜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내포한다(Thévenon O., & Gauthier A. H., 2012: 95). 휴직 기간이 늘어날 경우 양육모의 직장 복귀 시기는 늦출 수 있으나, 만 3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 지원은 양육모의 직장복귀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시간제 일자리 또한 직장복귀를 촉진하는 효과를 지니나, 이는 상근직으로 복귀하는 여성들에게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사회적 배경에 따른 이들 정책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에도 주목해야 한다(Thévenon O., & Gauthier A. H., 2012: 95). 이를테면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모는 비싼 보육시설을 이용하기보다는 휴가 수당이 적더라도 장기간의 양육휴가를 좀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적으로 돌봄지원이 사회경제적 계급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정책 혜택은 모든 하위 그룹에서 이용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출산 육아의 결정에서도 양극화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말해준다.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요소로는 다음을 들고 있다(Thévenon O., 2016: 67).

- ① 출산휴가, 휴가 기간과 아동 당 총 휴직급여 또는 베이비 보너스,
- ② 이외 재정 지원, 18세 이하 아동 1인당 총 합계,
- ③ 초기 아동대상 서비스 공급 수준, 커버리지 비율과 3세 이하 아동 1인당 평균 지출 수준이 그것이다.

나. 세부 지원별 효과

1) 아동수당 및 세제지원

현금지원은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다. 이들 연구에서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현금지원 및 세금 감면으로 인한 가용소득이 10%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이 0.02명 증가하는 효과를 지닌다고 분석된다(Thévenon O., & Gauthier A. H., 2012: 88). 관련 이탈리아의 사례에 의하면, 현금지원이 낙태 감소와 교육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여성들의 출산율 증가로 나타난다(Thévenon O., & Gauthier A. H., 2012: 89). 또한 유사한 연구들에 의하면, 이 같은 효과는 현금급여의 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두드러진다. 이는 아동수당이 양육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출산 결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이는 결과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된다.

또한 자녀수를 반영한 현금지원과 세금 감면은 보다 지속적인 정책 효과를 지닌다(Thévenon O., & Gauthier A. H., 2012: 89). 캐나다에서는 3가지 방식의 현금지원 즉 세금 면제(tax exemption), 가족수당(family allowance), 세금 감면(tax credit)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되는데, 그 정도는 정책의 유형보다는 그들 간의 호혜성 정도에 보다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프랑스는 세제 혜택이 큰 대표적인 국가인데, 3자녀 가구에 대한 세금환급액의 1% 인상은 세 번째 자녀의 출산율을 0.01% 증가시킨다고 분석되며, 단 그 효과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덜 민감하다고 보고된다.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 지원이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제한적인 효과로는 다음이 제기된다(Thévenon O., & Gauthier A. H., 2012: 90). 우선 정책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정책 효과가 장시간에 걸쳐 나타나는 것은 임신 기간으로 인해 그 효과를 입증하는 데는 최소 9개월이 걸리며, 특히 여성의 연령이 높을수록 출산 결정과 출산에 이르는 시기가 더 걸리고, 출산을 결정한 경우에도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실질적으로 출산에 이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각 가정에서 지원받은 현금지원 혜택을 추가 자녀를 출산하는데 지출하기 보다는 현재 자녀에게 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데 있다.

한편 국내 연구에서는 영유아 1인당 지급받는 현금지원액은 영유아 자녀 1명을 양육하는 가정이 영유아 2명을 양육하는 가정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신윤정·고제이·이지혜·윤자영, 2013: 128). 영유아 1인당 지원받는 현금급여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영유아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에서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현행 현금지원이 아동 1인당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므로 자녀수가 고려되지 않은 데서 비롯된 측면이 있으므로 둘째 자녀

이상 가구에 더 많은 급여를 지원하는 등 자녀수를 반영된 급여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된다.

최근 연구로는 보편적 보육료 지원 하에서 양육수당제도가 존재하면 여성총노동 공급은 0.6%, 여성고용율은 1.4% 감소하는 반면, 양육수당제도가 없는 경우는 여성 총노동 공급(0.4%)과 고용율(0.1%)이 모두 증가한다고 분석된다(한중석·홍재화, 2016: 119). 이에 따라 여성고용율 제고를 보육지원의 목표로 설정할 경우 양육수당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 취업모에게만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결론짓고 있다(한중석·홍재화, 2016: 120).

2) 보육서비스

보육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은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Thévenon O., & Gauthier A. H., 2012: 93). 그간 보육서비스는 보육비용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보육 가능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된다(Hegewisch A., & Gornick J. C., 2012: 13). 보육비용과 보육 이용가능성 이외에도 보육의 질은 여성노동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된다.

다른 한편 국가 간 여성의 노동시장참가율의 격차와 관련하여 보육에 대한 공적 투자는 육아휴직이나 세제지원에 비해 그 영향력이 낮다고 주장된다. 이는 반일제 기반의 유아교육제도에 의한 것으로, 정규보육시설에 대한 투자가 여성 고용율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크다고 설명된다. 이때 특히 0~2세 아동의 공식적 보육시설 이용율은 출산율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김미숙·홍석표·정재훈·김기현·안수란, 2010: 121).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차원에서 보육료 부담 수준은 세금 및 현금급여 수준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제 소득 측면에서 아동양육비 수준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즉 세금 감면, 보육수당, 환급, 기타 급여 등의 혜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각종 돌봄지원이 자녀 양육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얼마나 완화시키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미숙·홍석표·정재훈·김기현·안수란, 2010: 121).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에게 더 관대하거나(노르웨이 등) 특정 계층에 선별적 보육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미국 등)에서는 이들 가구에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보다 이득이 된다(김미숙·홍석표·정재훈·김기현·안수란, 2010: 121).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보다 근본적으로 종일제 보육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상당수의 부모가 공적 보육서비스와 비

공식적 양육지원서비스를 병행하여 이용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해당 비용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미숙·홍석표·정재훈·김기현·안수란, 2010: 123).

한편 우리나라의 보육료 지원이 급격히 증가한 시기인 2001년부터 2012년까지의 보육료 지원이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광역자치단체별 보육료 예산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합계출산율을 소폭 증가시키는 성과를 보이거나,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그 성과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된다(송현재·우석진, 2015). 즉 보육료 지원정책은 첫째, 둘째, 셋째아 출생아수의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그 크기도 동일한 순서로 나타났으나, 보육료 지원은 결혼과 초혼연령 등에 미치는 영향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출생아수의 경우는 지역 내 1,000억 원의 보육예산 증가로 약 1,310명이 증가한 효과를 지닌 반면(송현재·우석진, 2015: 24),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송현재·우석진, 2015: 23).

3) 돌봄시간 지원: 휴가·휴직제도/근로시간 유연화 및 단축 제도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기간의 효과는 미비하나, 휴직 기간 중 급여 수준은 합계출산율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된다(Thévenon O., & Gauthier A. H., 2012: 92). 이는 유급 육아휴가 여부가 자녀 출생 시기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파악된다. 북유럽국가들의 경우 양육휴가는 둘째 자녀의 출산 때 보다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데, 스웨덴의 경우 1980년 이후 첫째 자녀 출산 이후 둘째 자녀의 출산까지의 시기를 단축시킨 것으로 분석되며, 이 효과는 국가 경제가 미치는 영향과도 무관한 것으로 파악된다(Thévenon O., & Gauthier A. H., 2012: 92). 이로써 양육휴가 정책은 출산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들 효과는 보다 엄밀하게는 소득수준과 사회적 배경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Thévenon O., & Gauthier A. H., 2012: 92). 노르웨이 사례에 의하면, 기관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 제공되는 양육수당은 대체로 교육수준이 낮고 저소득가구의 전업주부들이 주로 이용하였으며, 둘째 자녀의 출산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를 보였다. 핀란드에서는 1990년 중반에 양육수당을 받는 여성들의 셋째 자녀를 출산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프랑스에서는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양육을 선택한 부모들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Allocation Parental d'Education)의 지원대상을 두 자녀를 둔 부모까지로 확대 적용하자 출산율이 1994~2001년 사이에 20~30% 증가하였다고 보고된다(셋째 자녀의 출산율은 10%

이상, 둘째 자녀의 출산율은 10~20% 이상). 또한 부성휴가의 출산율 제고 효과는 명확하지 않으나, 일부 국가에서 아버지의 첫째 자녀의 양육 참여는 둘째 자녀의 출산 시기를 앞당기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분석된다(Thévenon O., & Gauthier A. H., 2012: 92).

이처럼 육아휴직의 경우는 휴직 기간과 급여 수준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Lewis J., 2009: 97), 이에 더하여 휴가 사용이 유연한지(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는지, 자녀가 취학 이전 기간에 걸쳐 사용가능한지, 시간제 기반인지), 남성 또는 여성 개인의 권한인지, 동일 업무로 복귀가 가능한지 여부 또한 중요하다. 특히 남성 또는 여성 개인의 권한인지의 여부는 휴직제도 사용에 있어 남녀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목적과 관련된다(Hegewisch A., & Gornick J. C., 2012: 11). 즉 육아휴직의 설계 시에 부모가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할 경우 기회비용을 비싸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게 이양할 수 없는 육아휴직 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있다는 것이다. 남성은 육아휴직의 사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만약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해당 유급휴가의 권리는 가족 누구에게도 이양될 수 없다. 이러한 방식의 부성휴가제도를 도입한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에서는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육아휴직의 남녀 간 차이는 제도 이용 여부는 물론 사용 방식에서도 나타난다(Hegewisch A., & Gornick J. C., 2012: 12). 여성은 주어진 육아휴직 기간을 한 번에 사용하는 반면, 남성은 휴가 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휴가 기간 동안에 업무 연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사각지대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돌봄시간 지원은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임시직 임용직 등 비정규직이나 근로빈곤층 등이 그 대상에서 실질적으로 제외된다는 점이 지적된다(이채정, 2016: 29). 단적인 예로 비정규직의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1년 미만 단기계약 시에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는 2015년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이용한 여성은 82,445명으로 출산휴가자 대비 86.9%인 반면, 남성 육아휴직 이용자는 4,872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나 여성 이용자의 5.9% 수준에 불과하다(이채정, 2016: 26).

Ⅲ. 자녀양육 단계별 돌봄지원 정책 현황

이 장에서는 자녀 연령에 따른 돌봄지원 제도 및 정책 현황을 다루고, 각 사업별 적용대상, 지원내용 및 수준을 파악하였다. 또한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자녀돌봄 분야 저출산 시책을 분석하였다. 이에 앞서 중앙정부 차원의 저출산 대책 중 돌봄지원 분야의 방향 및 중점 과제를 살펴보았다.

1. 중앙정부의 돌봄지원 제도 및 정책 현황

2016년부터 시행 중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저출산 분야와 지난해 발표된 관련 대책(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 등)을 위주로 자녀돌봄 지원의 추진 방향을 우선적으로 다루고, 그 다음으로는 자녀양육 단계별로 구분하여 세부 사업들의 지원내용, 적용대상 및 수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 돌봄지원의 방향 및 중점 과제

2006년부터 시행 중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저출산기본계획)에서 돌봄지원 분야는 제1, 2차의 중점 과제로 제시된다(대한민국정부, 2016: 20). 세부적으로는 제1차 계획에서는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없는 환경의 조성을 위해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방과후 학교 확충, 양질의 육아 인프라 확충, 육아휴직 활성화에 주력하였다. 제2차 계획에서는 일·가정 양립의 일상화를 위한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유연한 근로형태 확산 등에 노력하였다. 그 결과 2013년부터 영유아 전(全)계층 무상보육이 시행되고, 다양한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가 도입되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하였다고 평가된다(대한민국정부, 2016: 21-22).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육 및 돌봄지원에서 부모의 근로형태 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체계가 미흡하고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이 부족하며 초등저학년 돌봄 여건이 미흡한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된다(대한민국정부, 2016: 21-22). 일·가정 양립지원에서는 장시간 근로와 여성중심적인 접근 등과 중소기업 비정

규직의 제도 적용 가능성이 낮은 점의 제도적 한계가 지적된다(대한민국정부, 2016: 24).

이에 따라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에서는 보육 투자는 양적 확충에서 부모와 자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질적 성숙 단계로 도약하고, 일·가정 양립은 공공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간의 격차 해소,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육아에 중점을 두어 실천력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강조된다(대한민국정부, 2016: 36). 이에 따라 저출산 대응의 기본 방향으로서는 자녀양육의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과 보육 환경의 개선,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가 제시된다. 구체적으로는 영유아뿐만 아니라 취학 이후 돌봄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초등 돌봄서비스의 확충 및 질 제고, 아이돌봄서비스는 공공 부문 내실화와 민간 시장관리를 모두 추진하여 체감도를 제고한다. 또한 일·가정 양립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대표적으로 육아휴직제도의 경우는 남성 이용의 활성화, 이용기간, 급여 수준, 재원 기반,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 개선을 모색한다고 밝히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6: 55).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실현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주거 안정 결혼친화 분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출산 국가 책임 포용적 가족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부모 관점 신뢰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격차 해소 행태·문화 개선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고용 활성화 결혼을 위한 주거사다리 강화 결혼·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출산 사회시스템 확립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지 강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춤형 보육 돌봄 지원체계 강화 교육개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가정양립실천 분위기 확산 남성·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실천 격차 해소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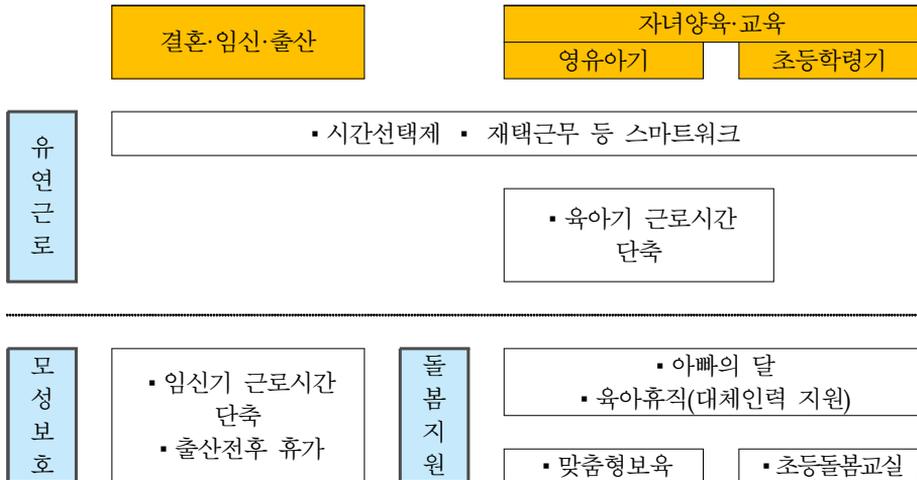
자료: 대한민국정부(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p. 38.

[그림 III-1-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추진 방향 및 전략

나아가 주요 정책별로 다음의 장기 계획들도 제시되고 있다. 전체 육아휴직 중 남성 비율은 2020년까지 15%, 2015년까지 20%, 2030년까지 25%까지 늘리고, 2025년까지 시간선택제 전환 청구권 제도를 추진한다(대한민국정부, 2016: 48).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비율은 2020년까지 37%, 2025년까지 45%까지 확대하며, 2020년까지 초등돌봄교실의 확충 및 질 제고, 2025년까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등록 및 관리제 등이 그것이다.

한편 지난해 8월에 발표된 “출산을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에서는 첫째 자녀의 출산 장려를 위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추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자녀 지원의 적용기준을 종전 3자녀에서 2자녀로 개편하는 등 3자녀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a: 12). 또한 일·가정 양립의 일상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그림 III-1-2]와 같이 제시하였다. 즉 결혼과 임신 출산 및 초등자녀 양육기에 걸쳐 시간선택제, 재택근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자녀돌봄 시간 지원을 강화하고, 임신·출산기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출산전후휴가, 그리고 자녀 양육기에는 영유아를 위한 보육, 초등학령기 자녀 대상의 초등돌봄교실을 제공하고, 이와 동시에 아빠의 달과 육아휴직제도를 제시하였다. 그 밖에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역의 주도적인 역할의 강화를 위해, 저출산 대응 지자체 평가체계 구축, 우수 지자체 특별교부세 지원 및 중앙부처 공모사업 우대 등과, 지역 저출산 대책의 주기적 점검 및 중앙-지방간 협력 모색 및 우수시책 공유 등 모니터링 강화 방안 등이 제시된다(보건복지부, 2016a: 15).



자료: 보건복지부(2016). 출산을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 p. 10.

[그림 III-1-2] 출산을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_일·가정 양립 일상화를 위한 체계

이상의 중점 과제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산모·신생아 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지원 확대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대상의 소득기준 완화, 선천성 장애 진단 및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신생아 집중치료 의료비 부담 완화가 제시된다.

우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충분한 산후관리가능하도록 지원한다(대한민국정부, 2016: 69). 종전 한 아동 당 12일(쌍생아 18일, 세쌍둥이 등 24일)이 지원되던 서비스 지원기간을 15일로 확대한다.

선천성 장애 진단 및 치료에 대해서는 난청, 대사 이상 등 장애를 발견하기 위한 신생아 선별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인 자동화 이음향 방사 검사 및 자동화 청성 뇌간 반응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지원하는 국가예산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난청 선별검사의 비급여 관행수가를 검사 종류에 따라 3~8만 원 적용한다. 비급여로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40여종의 대사이상 질환을 감별하는 신생아 선천성 선별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대한민국정부, 2016: 70).

신생아 집중치료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과정에서 의학적 필요성이 높고 비용부담이 큰 초음파, 치료 재료, 주사제 등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전면 수사하여 비급여가 없도록 건강보험을 확대한다(대한민국정부, 2016: 70). 중환자실 등 신생아 영유아 전문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수가 및 보험기준 체계를 보완하고 정부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2016년 8월에 발표된 “출산을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에 의하면, 출산지원 부문에서 고위험 산모 신생아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와 미숙아 집중치료 및 후치료 보장성 강화가 추진된다(보건복지부, 2016a: 9-10). 산모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모두 갖춘 고위험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속 확충 및 지역 내 분만의료기관 연계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 과정에서 부담이 큰 초음파, 치료재료, 주사제 등 주요 비급여 항목을 발굴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신생아 집중치료실 퇴원 후 외래 진료에 대한 상급병원 이용 본인 부담 경감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

2) 출산친화적 세제지원

자녀세액공제 도입, 출산 입양 세액공제 신설, 자녀장려금(CTC) 지급 등 결혼 및 출산 친화적 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독신자와 기혼자의 세 부담 격차가 OECD 국가 중 낮은 편으로 결혼 출산에 대한 세제 상 인센티브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대한민국정부, 2016: 45-46). 이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세제의 안착을 도모하고 세제지원의 성과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내실화한다고 밝히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6: 77).

지난해 8월에는 발표된 보완대책에서는 현행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자녀 1인당 일괄 30만 원이 지급되는 자녀세액공제제도를 개선하여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7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보건복지부, 2016a: 13).

3)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의 추진 방향으로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맞춤형 보육 확립과 공공-민간 자녀돌봄 여건 확충, 자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문제 개혁이 제시되며, 추진 계획으로는 다음이 제시된다.

가) 맞춤형 보육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

수요자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개편은 보편적 보육료 지원으로 국가 책임이 강화되었으나, 다양한 보육 수요에는 부합하지 못하였으므로 아동과 부모의 보육 수요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 지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대한민국정부, 2016: 79-80). 단적으로 보육료와 양육수당 간의 격차로 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손해라는 인식을 주어 가정양육이 중요한 영아의 경우에도 기관이용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시간을 고려한 보육료 지원으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아동들이 어린이집을 선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맞벌이 가구를 위한 시간연장형보육 확대, 시간선택제 또는 재택근무자 부모 등을 위한 시간제 보육반 확대가 명시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16: 80-81). 이와 더불어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서비스 확대 계획도 제시된다. 적정 양육수당 지원을 통한 가정양육 부담의 경감, 임신·출산·육아정보 및 상담을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을 구축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확충이 포함된다.

보육·돌봄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는 대학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와 육아 휴직제도 도입, 전방부대 군 관사 내 아이돌봄 위탁세대 선정 및 지원을 통한 전방부대 비상시 여군 돌봄 공백 해소를 추구한다(대한민국정부, 2016: 83).

나) 돌봄 지원체계 강화

돌봄이 필요한 초등 1~2학년에 대한 돌봄 지원체계를 보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하교시간과 부모의 출퇴근 시각과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 또한 민간 베이비시터는 정부의 관리 감독 부재로 한계를 노출하고 있으므로 관련 기준을 마련하며, 미취업모의 육아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지역사회 내 양육지원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된다(대한민국정부, 2016: 84).

초등학생 1~2학년생의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초등돌봄교실을 확충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특기적성 프로그램 강화, 안전 및 놀이 프로그램 중심 운영 활성화, 돌봄교실 교육 기부 활성화 등을 통한 돌봄교실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을 추구한다. 또한 3학년 이상은 학년 특성을 고려하여 방과후 학교와 연계한 돌봄교실을 운영하여 돌봄 수요를 충족한다. 그 밖에도 초등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용교실을 추가 확충하는 계획도 제시되었다(보건복지부, 2016a: 12). 돌봄전용교실은 2016년 기준으로 8,627실이나, 2017년에는 8,809실로 확대하여 약 3,600명을 추가로 수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사회 내 돌봄 여건 확충을 위해서는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의 방과후 돌봄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는 공동육아나눔터를 활성화하여 가정 내 양육 여건을 개선한다.

맞벌이 가정 등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제 아이돌보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고, 민간베이비시터 시장의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민간 부문 아이돌봄 인력의 교육지원체계 강화, 인력관리업체의 질 관리와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외국인 육아도우미 지원프로그램과 정보제공시스템 내 실화를 추진한다.

다) 대학생등록금 부담 경감

다자녀(셋째 자녀 이상) 장학금 지원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다자녀 가구의 교육 부담을 경감한다. 이를 위해 2014년에 1학년만 지원하였으나, 매년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2017년에는 1~4학년에 적용한다는 계획이 제시된다(대한민국정부, 2016: 91-92).

4)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의 추진 방향으로는 일·가정 양립 실천을 위한 근로문화 및 형태 개혁, 중소기업, 비정규직, 남성 등 사각지대의 해소와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제시된다(대한민국정부, 2016: 93).

가) 일·가정 양립 실천 분위기 확산

중소기업은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비용 부담 등으로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의 사용이 어렵고, 비정규직도 고용 불안정성 등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며,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있으나 장시간 근로관행은 여전하다는 점이 지적된다(대한민국정부, 2016: 93-94).

이에 따라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자동육아휴직제'를 확산한다. 즉 출산휴가 신청서에 육아휴직 의사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육아휴직 사용이 자동 신청되도록 출산휴가 육아휴직 통합서식을 개발·보급한다. 이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가 처리하지 않아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한 휴가 개시 일에 휴가가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재택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즉 시차출근제,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재택근무가 용이한 직군 직종을 발굴하여 직종별 재택근무모델을 마련하여 보급 확산하고, 재택근무 등 스마트워크 활성화에 대한 정부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나) 일·가정 양립 실천 여건 강화

취업모의 95.6%가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근로자의 출산 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과 사업주의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부담으로 휴가휴직 사용이 저해되는 경향이 있고, 여성의 이중고통에 따른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지적된다(대한민국정부, 2016: 97).

첫째,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실천 여건의 조성을 위한 육아휴직 지원금의 개선과 대체인력 지원을 강화한다. 육아휴직이 정착된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축

소 또는 폐지하여 절감된 재원으로 중소기업의 지원을 확대한다. 즉 현행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남성에 대한 육아휴직지원금을 인상하고, 중소기업 사업장 1호 인센티브를 신설해 사업장 최초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만 원에서 2017년에 40만 원으로 2배 인상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대체인력 지원 강화를 위해 고용복지센터의 허브 기능을 강화하여 세일센터-대체인력뱅크를 아우르는 전국 단위의 대체인력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 고용센터에 전담인력을 지정 운영하여 지역별로 대체인력 구인·구직 매칭 현황 모니터링 및 유관 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대체인력뱅크를 단계적으로 확대·설치하여 고용복지센터에 입주 또는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지역·직무·자격별로 대체인력 DB를 세분화하여 지속적인 적시 매칭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둘째, 비정규직 대상으로는 단시간 근로계약 시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모성보호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며, 사업주에 지원하는 육아휴직지원금을 고용형태별로 차등하여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을 종전 20만 원에서 2017년에 30만 원으로 인상한다(대한민국정부, 2016: 99).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고용지원금을 해당 고용 사업장에 적극 홍보하여 패키지 지원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육아휴직과 재고용 지원금을 합하여 최대 1,0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에는 아빠의 달 인센티브를 월 1~3개월로 확대하여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한다(대한민국정부, 2016: 99).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8월 보완대책에서는 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을 둘째 자녀부터 종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여 남성 육아휴직을 조기에 확산한다고 밝힌 바 있다(대한민국정부, 2016: 10).

다)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성화

초등학생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주당 15~30시간)이 가능하나 이용율은 저조하며, 현행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는 임신·일용직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낮은 임금대체율로 인한 이용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6: 100). 이와 동시에 증가하는 육아휴직자 등으로 현 제도의 유지 시에는 고용보험의 재정부담 등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다음의 추진 계획이 제시된다.

첫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대신 경력유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1~2년) 및 분할 사용 횟수(2~3회)를 확대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300만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한다.

둘째,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는 육아휴직 종료 후에도 직장생활과 육아 등이 병행될 수 있도록 근로자 수요와 생애주기를 맞추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한다(대한민국정부, 2016: 102). 또한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종료 사업장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전환 등을 위한 사업장 대상 컨설팅 및 패키지 지원, 공공 부문의 전환형 시간선택제 우수 사례 발굴 및 민간 확산을 추진한다.

이들 중 2017년 저출산 대책 주요 과제로는 다음이 제시되었다(보건복지부, 2017e: 2). 구체적으로 출산지원을 위해서는 분만 취약지와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추가로 확충하고, 종전 자녀수와 무관하게 10일 동안 제공되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출생순위를 반영하여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인상한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확충하여 4천명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며, 영아종일 돌봄서비스 이용연령도 종전 24개월 이하에서 36개월 이하로 확대한다. 출산휴가 급여를 1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인센티브를 둘째 자녀부터 상한액을 종전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확대하는 계획 등이 포함된다.

〈표 III-1-1〉 2017년 저출산 대책 주요과제 중 돌봄지원 분야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임신·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만 취약지 2개소 및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4개소 추가 선정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 * 자녀수에 무관, 10일 →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20일
가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등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 저소득 한부모 월 10 → 12만 원, 청소년 한부모 월 15 → 17만 원 ▶ 다문화 유치원·예비학교·중점학교 확대 운영 등 다문화 가족 지원 확대 * 다문화 유치원 확대 운영(60개원 → 90개원), 다문화 예비학교 확대 운영(124교 → 160학급), 다문화 중점학교 확대 운영(180교 → 200교)

(표 III-1-1 계속)

구분	주요 내용
맞춤형 돌봄 확대	
맞춤형 보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 등 공공 어린이집 확충 및 전체 어린이집 대상 평가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 180개소, 공공형 150개소, 직장 80개소 신규 확충 * 민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 '16년 30% → '17년 32% ▶ 산업단지형, 지자체 협업형 등 다양한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20개소 추가설치)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단가 상향(단독 3 → 4억 원, 공동 6 → 8억 원)
돌봄 사각 지대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돌봄교실 지속 확충 및 내실화(4천명 추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후돌봄시간 자율 연장 운영(17시~19시), 돌봄환경 개선을 위한 교실 증축 전환 확대('16년 신축 218실 → '17년 신축 200실, 전환 90실, 리모델링 1,706실) ▶ 아이돌봄 이용연령 확대 및 아이돌보미 양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일반 이용연령) 24개월 이하 → 36개월 이하, (돌보미 양성) 1.9만명 → 2.1만명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다함께 돌봄 시범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6월)
일·가정 양립 일상화	
근로 문화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가족친화인증 의무화 시행*(3월) 및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화 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 1,828개사 → 2,800개사(1천 개사 추가 확대) ▶ 유연근무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및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노무비: 근로자당 월40만 원, 인프라 지원 신설: 사업장당 최대 2천만 원
출산 휴가·육아 휴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휴가급여 지원 상한액 인상(135 → 150만 원) ▶ 중소기업 비정규직·남성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 인상(월 20 → 30만 원), 중소기업 1호 육아휴직자 대상 사업주 지원금 2배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자 수 1만명 추가 확대 목표 ▶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인센티브* 둘째 자녀부터 상한액 인상(월 150 → 200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자녀 대상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 대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인상 특례

자료: 보건복지부(2017e). 보도참고자료: 정부, 저출산 대책 보다 강력히 추진. p. 2. 재구성.

한편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자녀양육 교육의 국가책임시스템 구현과 일·가정 양립 일상화 등을 제시하였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154). 이를 위한 세부 국정과제로 다음이 제시된다. 즉 2018년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율을 40%까지 확대하며, 2017년부터 첫 3개월 간의 육아휴직 급여를 2배 인상하고 2018년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도입 및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 이외에도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등이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81). 또한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한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8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연령별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100).

나. 출산 및 신생아 지원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신부의 본인 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 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비우체(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이다(고용노동부 일가양득 사이트 <http://worklife.kr/website> 2017. 5. 25. 인출).

지원대상은 임신 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해당되며,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급여, 비급여 진료비), 산부인과의 산전검사(초음파, 양수검사), 분만비용, 산후치료 등과 조산원의 경우는 분만(출산)비용에 한해 지원한다. 또한 한방기관의 임신오저(O21 임신 중 과다구토), 태기 불안(O20 초기임신 중 출혈, O60.0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산후풍(U32.7 산후풍) 상병에 지원한다.

한편 의료급여 수급권자 즉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에게는 임신·출산진료비 50만 원(다태아 90만 원)을 지원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2017. 3. 30. 인출). 또한,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인천 옹진군 등)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는 20만 원을 추가로 지

원한다.

동 사업 예산은 2017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3억 원이 증가한 12억 원이다(보건복지부, 2016b: 44).

2) 신생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신생아 등 영유아에 대한 조기검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집중치료, 의료비 지원을 통해 신체적·기능적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다음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c: 103).

이들 사업 예산은 2017년 기준으로 총 1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7%(55억 원) 감소하였다(보건복지부, 2016b: 103). 세부적으로는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 54억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58억 원(미숙아: 41억 원, 저체중아: 3,710백만 원, 조산아: 379백만 원, 선천성이상아: 17억 원),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5억 원과 이외에도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6억 원이 소요된다.

가)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는 연간 출생하는 신생아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1인당 2만 원의 선천성대사 이상 선별검사 비용과 2차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2017. 3. 30. 인출).

2차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 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만 18세 미만의 환아 중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등의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환아 관리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검사 항목은 총 6종으로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이다.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된 환아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검사비를 청구할 수 있다.

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와,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2017. 3. 30. 인출).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한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의 신생아)는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하여,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급여, 비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출생 시 체중별로 지원한다.

선천성 이상아(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 받은 환아)는 출생 후 6개월 이내(퇴원일 기준) 수술 및 치료를 위해 발생한 치료비 중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2회 이상 입원했을 경우 의료비 지원은 1회 입원 진료비에 한하여 지원한다. 단,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예방접종비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본인부담금이 100만 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 중 1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 추가지원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00만 원까지는 상기 기준을 적용하고, 500만 원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 지원한다(고용노동부 일가양득 <http://worklife.kr/website> 2017. 5. 25. 인출).

미숙아는 체중별 최고 1천만 원까지, 선천성 이상아는 최고 5백만 원까지의 의료비를 지원하나,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 지원)와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2017. 3. 30. 인출).

다)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는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보장 가구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0%이하 가구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지원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2017. 3. 30. 인출). 이외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대상자에게는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AOAE 10,000원, AABR 27,000원)를 지원하고, 검사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를 지원한다(ABR 본인부담금).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케어를 돕는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2017. 3. 30. 인출).

신청대상은 중위소득 80% 이하의 산모이나, 소득기준을 초과하여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외적으로 지원(희귀난치성 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등)을 허용한다(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 2017. 5. 20. 인출). 출산 여부는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30일 이내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표 III-1-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기준 변경(2006-2017)

구분	'06년	'07년	'08년	'09~'14년	'15년	'16년~'17년
지원 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 둘째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60%이하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자료: 보건복지부(2017b).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안내. p. 12.

〈표 III-1-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대상 및 내용(2017)

단위: 일, 원

태아 유형	출산 순위	구분	서비스 기간(일)			책정가능 최대가격(원)			정부지원금(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5	10	15	445,000	890,000	1,335,000	50%이하	371,000	618,000	788,000
									50%초과~60%이하	352,000	587,000	749,000
									60%초과~80%이하	315,000	525,000	669,000
									80%초과(예외지원)	278,000	464,000	591,000
	둘째아	10	15	20	890,000	1,335,000	1,780,000	50%이하	667,000	834,000	945,000	
								50%초과~60%이하	634,000	792,000	898,000	
								60%초과~80%이하	567,000	709,000	804,000	
								80%초과(예외지원)	501,000	626,000	709,000	
	셋째아 이상	15	20	25	1,335,000	1,780,000	2,225,000	50%이하	1,001,000	1,112,000	1,182,000	
								50%초과~60%이하	951,000	1,057,000	1,123,000	
								60%초과~80%이하	851,000	946,000	1,005,000	
								80%초과(예외지원)	751,000	834,000	886,000	

(표 III-1-3 계속)

태아 유형		출산 순위	구분			서비스 기간(일)			책정가능 최대가격(원)			정부지원금(원)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쌍 생 아	둘 째 아	50%이하	10	15	20	1,040,000	1,560,000	2,080,000	905,000	1,131,000	1,282,000			
		50%초과~60%이하							860,000	1,074,000	1,217,000			
		60%초과~80%이하							769,000	961,000	1,089,000			
		80%초과(예외지원)							679,000	848,000	961,000			
	셋 째 아 이 상	50%이하	15	20	25	1,560,000	2,080,000	2,600,000	1,221,000	1,357,000	1,442,000			
		50%초과~60%이하							1,160,000	1,289,000	1,370,000			
		60%초과~80%이하							1,038,000	1,154,000	1,226,000			
		80%초과(예외지원)							916,000	1,018,000	1,081,000			
삼 태 아 이 상, 중 증 장 애 산 모	50%이하	15	20	25	1,710,000	2,280,000	2,850,000	1,502,000	1,669,000	1,891,000				
	50%초과~60%이하							1,427,000	1,585,000	1,800,000				
	60%초과~80%이하							1,276,000	1,418,000	1,607,000				
	80%초과(예외지원)							1,126,000	1,251,000	1,418,000				

자료: 보건복지부(2017b).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안내. p. 51.

서비스 이용기간은 출산순위⁸⁾에 따라 바우처 지원 기간이 상이하다. 종전에는 자녀수와 무관하게 일괄 10일였으나, 2017년부터 둘째아는 15일, 셋째아는 2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기간은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이하 표준서비스 기간의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이 가능하다.

서비스 내용은 산모의 경우는 유방관리 및 수유지원, 식사지원, 산후 위생관리, 간단한 청소 등이고, 신생아의 경우는 아기 위생관리(목욕, 배꼽소독, 기저귀 교체, 용품 소독 등), 아기 건강상태 확인, 아기 세탁물 관리 등이 제공된다(고용노동부 일가양득 <http://worklife.kr/website> 2017. 5. 25. 인출).

동 사업의 예산은 2017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7억 원이 증액된 388억 원이 소요된다(보건복지부, 2016b: 22). 단 이들 지원은 해산급여,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과의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4)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를 지원하기 위해 부족한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확충하

8) 예를 들면, 첫 출산이 쌍태아인 경우 → 둘째아 해당/단태아 출산 후 쌍태아 출산 또는 쌍태아 출산 후 단태아 출산 → 셋째아 이상 해당(복지로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검색일자: 2017년 3월 30일))

여 지역별 불균형 해소 및 신생아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광역 단위 신생아 집중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고자 한다(보건복지부, 2016b: 126). 이를 위해 고위험산모 중증질환 신생아 치료를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고위험분만통합 치료센터를 설치한다.

동 사업 예산은 2017년 기준 139억 원으로 전년대비 9.4%(15억 원)이 감소하였다.(보건복지부, 2016b: 126). 세부적으로는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운영지원 72억 원,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운영지원 67억 원이 소요된다.

다. 영유아기 자녀: 0~5세아

1) 아동관련 수당 지원

가)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4개월 미만 전(全) 계층 아동이다(보건복지부, 2017b: 327).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며, 지원 기간은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이다.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20만 원을 지원하며, 연령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 장애아동(장애아동 양육수당)은 36개월 미만의 경우 20만 원, 36개월~만5세(최대 84개월 미만)는 10만 원이며, 농어촌 아동(농어촌 양육수당)은 연령별로 10~20만 원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7b: 327)(표 III-14 참조).

동 사업의 2017년 예산은 2017년 기준으로 1조2,242억2원이 소요되어 2016년 대비 0.4%(50억 원)가 증가하였으며, 지원대상은 968천8명으로 나타난다(보건복지부, 2016b: 14).

단, 이들 지원은 아이돌봄서비스, 만 0~5세 보육료 지원, 장애아보육료, 방과 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지원, 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과 중복지원 할 수 없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2017. 3. 30. 인출).

〈표 III-1-4〉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2017)

단위: 개월, 천 원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0천원	0~11	200천원	0~35	200천원
12~23	150천원	12~23	177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36 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자료: 보건복지부(2017b). 2017년 보육사업안내. p. 327.

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내용별 지원대상은 다음 <표 III-1-5>와 같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3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12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연령은 종전 12세 미만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13세 미만, 지원 단가는 종전 10만 원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12만 원으로 인상되었다(여성가족부, 2017b: 9). 또한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의 추가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간 54,100원의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의 생활보조금을 지원한다.

〈표 III-1-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2017)

구분	지원대상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3세 미만의 아동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하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자료: 복지포털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검색일자: 2017년 3월 30일)

해당 예산은 2016년에는 724억 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925억 원으로 201억 원이 증액되었다(여성가족부, 2017b: 9).

단 이들 지원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양곡 할인,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청소년특별 지원, 영구임대주택 공급,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과 중복지원 할 수 없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2017. 3. 30. 인출).

다) 장애아동수당

저소득 중증·경증 장애아동에게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소득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한다(보건복지부, 2017b: 82).

〈표 III-1-6〉 장애아동수당 지원내용(2017)

구분	중증장애아동수당	경증장애아동수당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월 20만 원	월 10만 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15만 원	월 10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월 7만 원	월 2만 원

자료: 보건복지부(2017c). 2017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p. 82.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중증(1급, 2급, 3급 중복)·경증(3급, 4급, 5급, 6급) 장애아동 중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표 III-1-6> 과 같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라) 입양아동 양육관련 수당 지원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통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을 대상으로 입양아동이 만 16세가 될 때까지 월 15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해당 지원은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원이 가능하나, 생계급여(맞춤형 급여)와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2017. 3. 30. 인출).

한편 만 18세 미만의 국내 입양아동에게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이외에도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월 20만 원, 장애입양아동의 경우 경증인 경우는 월 551,000원, 중증인 경우는 627,000원과 의료비 최대 연 260만 원의 양육보조금이 지급된다.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은 보호대상아동(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중 국내입양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2017. 3. 30. 인출).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비용을 지원한다. 1회 20만 원의 심리검사비와 월 4회 이상, 월 20만 원 이내의 심리정서 치료비,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의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를 지원한다.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은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을 지원한다.

〈표 III-1-7〉 입양아동 양육관련 보조금 지원내용(2017)

구분		지원내용
입양아동 양육수당		만 16세 미만 아동 월 15만 원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월 최대 20만 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중증) 월 62만 7천 원 (경증) 월 55만 1천 원
	의료비	최대 연 260만 원

자료: 보건복지부(2017c). 2017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p. 43.

2) 세제지원

가) 자녀세액공제

정부는 출산지원을 위해 자녀수에 따른 종합소득공제를 2014년에 신설하고, 2015년에는 6세 이하 자녀가 2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추가 공제와 과세 기간 내 출생 또는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의 수에 따른 적용기준도 마련하였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moleg.go.kr> 2017. 5. 30. 인출).

우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는 자녀수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공제한다(소득세법 제 59조의 2)(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moleg.go.kr> 2017. 5. 30. 인출). 즉 자녀 1명인 경우는 연 15만 원, 2명인 경우는 연 30만 원, 3명인 경우는 연

30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 원을 공제한다.

이외에도 2015년에는 영유아 2인 이상과 출생순위를 반영한 적용기준이 신설되었다. 6세 이하 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또한 해당 과세 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된다. 종전에는 일괄 30만 원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출생순위를 반영하여 해당 자녀가 첫째인 경우는 연 30만 원, 둘째인 경우는 연 50만 원, 셋째인 경우는 7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17: 55).

나) 자녀장려세제

연간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자녀 장려금을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대한민국정부, 2016: 73).

다)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하는데, 세액공제 한도액은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는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이다(대한민국정부, 2017: 71).

근로자의 학자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근로자(대출자)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 시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적용대상은 종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에서 2017년부터는 그 대상을 확대하여 든든학자금을 포괄하였다. 든든학자금은 대학생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자금을 대출받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대한민국정부, 2017: 56).

라)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2008년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부여한다(보건복지부, 2017c: 35).

자녀가 2명인 경우는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씩 최장 50개월 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며, 추가된 가입기간 만큼 연금액을 부여한다(보건복지부, 2017c: 35).

마) 기타 세제지원

기타 세제지원으로는 유아용 기저귀 분유 및 산후조리원 이용비에 대한 부가

가치세 면제, 3자녀 이상 가구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금액의 세액공제로서 임신부 편의시설의 경우는 7%, 직장어린이집의 경우는 10%가 적용된다(대한민국정부, 2017: 73).

3) 보육·교육서비스

가) 만 0~5세 보육료 지원

2016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은 부모와 아이의 필요에 따라 종일반과 맞춤형으로 구분하여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종일반(12시간)은 취업, 구직, 다자녀, 조손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적정 시간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6시간+긴급보육바우처 15시간/월)을 지원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2017. 3. 30. 인출).

0~2세 맞춤형 아동은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지원한다. 이는 어린이집의 맞춤형 이용을 이용하는 아이와 부모가 질병, 학교방문 등 긴급한 보육수요 발생 시 맞춤형 보육시간 이외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16b: 331). 매월 15시간(월 6만 원) 긴급보육바우처 지원, 매월 미사용분은 익년도 2월까지 이월하여 사용 가능하며, 맞춤형 보육료 자격이 변경 되거나 소멸되는 경우⁹⁾에는 긴급보육바우처도 소멸한다.

단 이들 지원은 아이돌봄서비스, 방과후보육료, 가정양육수당과의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연령별 보육료 지원내용은 다음 <표 III-1-8>과 같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2016년 3조 1,066억 원에서 2017년 3조 1,292억 원으로 2016년에 비해 0.7%(226억 2원)가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16b: 14). 세부적으로는 만0~2세 보육료는 2조 9,740억 9원, 장애아보육료 425억 5원, 시간연장형 보육료 406억 원 → 417억 7원으로 2016년 대비 11억 1원이 증가하였으며, 긴급보육바우처도 710억 원으로 103억 원이 증가하였다.

9) 예를 들면 맞춤형 보육료 자격에서 종일반 보육료 자격, 양육수당 자격 등으로 전환할 경우 등 (보건복지부, 2017a: 331).

〈표 III-1-8〉 만 0~5세 보육료 지원단가(2017)

단위: 원

지원 대상	지원 비율	연령	지원단가			
			종일반	맞춤반	야간	24시
어린이집 이용 만 0~5세	100%	만 0세반	430,000	344,000	430,000	645,000
		만 1세반	378,000	302,000	378,000	567,000
		만 2세반	313,000	250,000	313,000	469,500
		만 3세반	220,000	-	220,000	330,000
		만 4세반	220,000	-	220,000	330,000
		만 5세반	220,000	-	220,000	330,000

자료: 보건복지부(2017a). 2017년 보육사업안내. p. 308.

나)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아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연령의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2017. 3. 30. 인출)(표 III-1-8 참조).

단 이들 지원은 아이돌봄서비스, 만 0~5세 보육료지원사업, 장애아보육료지원, 방과후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과의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다) 시간제보육 지원

시간제보육 지원은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이다(보건복지부, 2017a: 271). 법령상 명칭은 일시보육이나, 2014년 이후로는 시간제보육(시간차등형보육)으로 명칭을 사용한다.

지원대상은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 받지 않고,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아이다. 서비스 운영시간은 원칙적으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된다. 사업기관은 시·군·구로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 받은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다.

지원내용은 기본형은 월 40시간을 이용하며, 시간제보육료 이용단가 4,000원 중 2,000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2,000원은 학부모가 부담한다. 월 80시간을 이용하는 맞벌이형은 시간제보육료 이용단가 4,000원 중 3,000원을 지원하고 학부모

가 1,000원을 부담한다.

동 사업 예산은 2017년 기준 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7%(32억 원)이 감소하였다(보건복지부, 2016b: 63).

〈표 III-1-9〉 시간제보육 대상별 이용 및 지원시간(2017)

구 분	시간제보육		
	기본형	맞벌이형	
이용대상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 유아반(36개월 이상~만 5세)의 경우, 일부기관에서 시범운영 중		
지원대상	양육수당 수급자인 가정양육 가구	양육수당 수급자 중 시간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 기타 양육부담 가구 등	
지원시간	월 40시간	월 80시간	
보 육 료	이용단가	시간당 4천 원	
	지원단가	시간당 2천 원	시간당 3천 원
	부모부담	시간당 2천 원	시간당 1천 원

자료: 보건복지부(2017a). 2017년 보육사업안내. p. 277.

라)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시간대에 지원대상 자녀에 대하여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고용노동부 일가양득 사이트 <http://worklife.kr/website> 2017. 5. 25. 인출).

지원대상은 만0세~2세 보육료, 만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 전)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17b: 324).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시간연장 보육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이 중 야간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하다.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시간연장형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시간연장형 보육료는 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하며 시간연장보육료의 매월 지원한도액은 60시간에 한한다.

시간연장보육료는 평일은 19:30~24:00, 토요일은 15:30~24:00까지 아이 돌봄이 가능하며 월 60시간까지 이용가능하며 지원 단가는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표 III-1-10 참조).

야간보육료의 경우 19:30~익일 07:30까지 아이 돌봄이 가능하며 주간에 어린

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보육료 지원이 가능(취학아동은 이용 불가)하다. 지원 단가는 만 3세 이상 22만 원이다(표 III-1-8 참조).

24시간보육료는 07:30~익일 07:30까지로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한다.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지원이 가능하다(고용노동부 일가양득 사이트 <http://worklife.kr/website> 2017. 5. 25. 인출). 지원단가는 정부지원 단가의 150%인 만 3세 이상 33만 원이다(표 III-1-8 참조).

시간연장보육료의 시간당 보육료는 다음 <표 III-1-10>과 같다. 단, 아침, 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할 수 있다.

<표 III-1-10> 시간연장보육료 지원 단가(2017)

구 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율
일반아동	3,000	180,000	기준액×100%
장애아동	4,000	240,000	기준액×100%

자료: 보건복지부(2017a). 2017년 보육사업안내. p. 324.

휴일(토요일제외) 보육료의 기준단가는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으로 산정한다.

이들 보육료는 아이돌봄서비스,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마)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2007년에 도입되었다(여성가족부, 2017a: 10).

지원대상은 서비스 유형별로 상이하다. 즉 시간제·종합형 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최소 1일 2시간 이용해야 하고, 영아종일제·보육교사형 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아동으로 최소 1일 4시간 이용해야 한다(여성가족부, 2017a: 11).

지원 수준은 아동 연령,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가구소득 등의 조건 충족 시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가구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진다. 그중에서도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장애부모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다자녀 가정(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중증(1~3급)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을 우선순위로 한다. 반면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용노동부 일가양육 사이트 <http://worklife.kr/website> 2017. 5. 25. 인출).

〈표 III-1-1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2017)

유형	소득기준	시간제(시간당 6,500원)				영아종일제 (월 130만 원) 0~2세	
		A형 ¹⁾		B형 ²⁾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형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4인기준 268만 원)	4,875원	1,625원	4,225원	2,275원	91만 원	39만 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60%~85%이하 (4인기준 379만 7천 원)	2,925원	3,575원	-	6,500원	65만 원	65만 원
다형	기준 중위소득 85%~120%이하 (4인기준 536만 1천 원)	1,625원	4,875원	-	6,500원	39만 원	91만 원
라형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6,500원	-	6,500원	-	130만 원

주: 1) A형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주: 2) B형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

자료: 보건복지부(2017c). 2017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p. 42.

한편 정부지원의 제한은 유치원 이용 아동의 경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어린이집의 경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였으나, 2017년부터는 아이돌봄서비스 ‘다자녀 기준’에 따른 36개월 이하의 2자녀가 있는 가정이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보육시설 맞춤반’인 경우는 정부지원 제한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로 한다(여성가족부, 2017a: 2). 또한 2017년부터는 영아종일제 돌봄의 적용 대상도 종전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시간당 이용요금은 영아종일제와 시간제는 공히 6,500원이며, 보육교사형은 7150원, 종합형은 8,450원, 야간 또는 휴일 이용 시는 일괄 3,250원이 추가된다(여성가족부, 2017a: 12). 영아종일제는 최대 월 130만 원, 보육교사형은 최대 월 143만 원이 지원되며, 둘 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이 추가될 경우는 기본단가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동 2명은 총 금액의 25%, 3명은 총 금액의 33.3%가 할인된다. 각 서비스 유형별 이용요금은 <표 III-1-11> 과 같다.

시간제 돌봄의 경우는 아이돌보미가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등(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을 돕는다. 영아 종일제의 경우는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용노동부 일가양득 사이트 <http://worklife.kr/website> 2017. 5. 25. 인출).

<표 III-1-12>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 서비스 내용

서비스 유형	서비스 내용
시간제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및 학원의 등·하원, 안전·신변보호 처리, 준비물 보조 등의 서비스 제공(가사활동 제외)
종합형	시간제 돌봄 서비스 내용에 돌봄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 * 아동 관련 세탁물, 놀이공간 정리, 아동 식사 및 간식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영아종일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분야의 종합적인 돌봄서비스 제공(가사활동 제외)
보육교사형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별도의 보육교사형 돌보미 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월간 활동 계획에 따른 영아 표준 돌봄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가사활동 제외)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서비스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유해성 질병으로 인해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를 특별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일가양득 사이트 <http://worklife.kr/website> (검색일자: 2017년 5월 25일)

동 사업의 예산은 2017년 기준으로 총 86,768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영아종일제 돌봄은 5,450명 대상으로 15,085백만 원, 시간제 돌봄은 45,060명 대상으로 54,572백만 원이다(여성가족부, 2017b: 38). 국고

보조율은 서울 30%, 이외 지역은 70%이다.

4) 돌봄시간 지원

가) 육아시간(수유시간) 허용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사업주는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이다(근로기준법 제75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2017. 5. 30. 인출).

나) 휴가/휴직제도

(1)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고용노동부 일가양득 사이트 <http://worklife.kr/website> 2017. 5. 25).

지원대상은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이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3~5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연속하여 사용해야 한다.

(2) 출산전후 휴가(급여)제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 시에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출산전후 휴가 기간 급여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한다(고용노동부 일가양득 사이트 <http://worklife.kr/website> 2017. 5. 25. 인출). 이때 사업주는 총 90일의 휴가 기간 중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출산전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지원(고용보험기금)의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출산전후 휴가 무급 기간(30일/다태아 45일)에 대한 급여를 지원한다. 단, 휴가 개시일 통상임금 기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유급 기간(60일/다태아 75일)에 대해서도 고용보험기금에서 월 135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원한 금액만큼의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 의

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단, 유급 기간(60일/다태아 75일)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한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은 종전 135만 원이었으나, 2017년부터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17: 97).

(3) 육아휴직제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허용해야 하며,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 일가양득 사이트 <http://worklife.kr/website> 2017. 5. 25. 인출).

지원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서, 연속적으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해야 하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휴직기간은 최대 1년(무급)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고용보험기금)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 원, 하한액 50만 원)로 한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한다.

(4) “아빠의 달” 인센티브 제도

“아빠의 달” 인센티브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에 지급된다(고용노동부 일가양득 사이트 <http://worklife.kr/website> 2017. 5. 25. 인출).

지원대상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 원)를 지급한다.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순서는 상관없으며,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5) 가족돌봄 휴직제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한다(고용노동부 일가양득 사이트 <http://worklife.kr/website> 2017. 5. 25. 인출).

근로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돌봄 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분할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

이 불가능한 경우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육아를 해야 하는 근로자는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일부 단축하고 단축한 시간의 급여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일부 보전 받을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때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허용해야 한다(고용노동부 일가양득 사이트 <http://worklife.kr/website> 2017. 5. 25 인출).

〈표 III-1-13〉 육아휴직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비교

구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
대상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상 자녀를 둔 근로자	
기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을 합하여 1년	
급여	월 통상임금의 40% (하한 50만 원, 상한 150만 원)	월 통상임금의 60%, 단축기간에 비례
장려금	육아휴직 등 부여 장려금 지급, 신규대체인력 채용 시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급	
거부시	5백만 원 이하 벌금	5백만 원 이하 과태료
보호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리한 처우 및 해고 금지(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종료 후 원직 복귀(5백만 원 이하 벌금) -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리한 처우 및 해고 금지(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종료 후 원직 복귀(5백만 원 이하 벌금) -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 - 근로조건 서면규정(5백만 원 이하 과태료) - 연장근로 제한(천만 원 이하 벌금)

자료: 고용노동부 일가양득 사이트 <http://worklife.kr/website> (검색일자: 2017년 5월 25일)

지원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육아휴직과 동일)를 대상으로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근로조건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간에 서면으로 정하되, 임금, 연차휴가 등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단, 상여금 또는 성과급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되, 적어도 근무시간에 비례한 급여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사업주는 연장 근무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할 경우 주 12시간 이내로 가능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육아휴직과 동일)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하여 육아휴직 급여액을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만큼 사용할 수 있으며(육아휴직 미 사용 시 최대 1년),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로 연장 사용(최대 2년)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작업 진행 중이다(2014. 12 월 법안 국회 제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1회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한번에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라) 일·가정 양립 기업 지원

(1) 대체인력 지원

출산휴가·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워줄 대체인력을 제때 충원할 수 있도록 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사이트 <http://worklife.kr/website> 2017. 5. 25 인출).

지원대상은 대체인력 구인기업, 구직자, 임신·출산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되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취업자이다. 세부 지원내용은 이하와 같다.

□ 대체인력뱅크

기업에 적합한 인력풀 운영, 신속한 인재 추천을 한다. 구직자에 대하여는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 및 사후 관리, 무료 직무 및 소양교육 실시, 경력사항 및 직종을 고려한 취업 지원, 경력개발의 기회(경력단절 여성, 대학생, 취업준비생, 장기 미취업자 등) 그리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기업 맞춤형 과정과 전문기술 등 구직자의 능력 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등의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한다.

□ 새일센터

직업상담을 실시하여 구직희망 여성을 대상으로 개인별·생애주기별 1:1 맞춤형 취업상담과 생애 설계, 자신감 향상, 이미지 메이킹 등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기업 맞춤형 과정, 전문 기술 과정 등 구직자의 직업경력 및 능력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차원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가사 및 자녀양육 부담 완화, 여성친화적 기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안정적 직장생활과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 고용센터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인업체에게는 구인업체 인력지원 서비스를 제공,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여 다양한 직업 심리검사를 통한 적성 발견 및 직업선택 지원, 직업훈련 정보 제공, 심층상담을 통한 개인 특성별 맞춤형 취업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용노동부 일가양득 사이트 <http://worklife.kr/website> 2017. 5. 25 인출). 그리고 구인업체 인력지원 서비스 차원에서 워크넷에 등록된 인재 풀을 활용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알선, 모집·전형·선발 등 채용대행서비스 실시, 맞춤 훈련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 확보 지원,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한다.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중소기업 지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해당 제도의 활용을 확산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17: 98).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육아휴직 허용 시 근로자 1인당 종전 월 20만 원에서 2017년부터는 월 3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대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급을 폐지하였다. 또한 육아휴직자가 최초로 나온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1인당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시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종전 30만 원에서 2017년부터 월 20만 원(대규모 기업은 종전 20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

(3)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지원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시킨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고용노동부 일가양득 사이트 <http://worklife.kr/website> 2017. 5. 25 인출).

지원대상은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돌봄, 간병, 학업, 퇴직준비 등)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시킨 사업주(모든 기업 해당)이다. 지원 신청은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마련(전환사유 해소 시 전일제 복귀 보장), 전일제 근로자(6개월 이상 고용)의 청구에 따라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 단축),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무를 조건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전환장려금 등을 1년간 지원하되, 전환장려금의 경우 전환 전·후

시간 비례임금 차액의 일부를 지원한다. 주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로 전환 시 월 최고 20만 원, 주 25시간 초과 30시간 이하로 전환 시 월 최고 12만 원을 지원한다. 간접노무비는 전환제도 운영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비용을 1인당 월 20만 원(중소·중견기업에 한함)을 지원한다. 대체인력 인건비는 전환근로자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인건비의 50%(중소·중견기업 월 60만 원, 대기업 월 30만 원 한도)를 지원한다.

5)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가) 영유아 건강검진

6세 미만의 건강검진은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프로그램 도입으로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유아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보건복지부, 2017f: 29).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에 의거하며, 2007년 11월부터 실시되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즉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이하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만 6세 미만 전 영유아이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7. 3. 30. 인출). 건강검진 대상은 2008년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2009년에는 만 4세(42~48개월), 2012년에는 66~71개월로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왔다(보건복지부, 2017f: 29).

지원내용은 대상 아동의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 우식증 등의 선별을 목표로,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을 공통으로 실시한다. 2~3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으로 구성된다. 검진은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주기로 실시된다. 건강검진(7회)와 구강검진(3회) 비용을 전액 지급한다(보건복지부, 2017c: 46).

동 사업의 예산은 2017년 기준으로 전년과 동일한 10억 원이다(보건복지부, 2016b: 37).

〈표 III-1-14〉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대상 및 내용(2017)

단위: 개월, 원

구 분	검진주기		검진비용(원)
	일 반	구 강	
1차	생후 4~6개월	-	20,890
2차	생후 9~12개월	-	27,490
3차	생후 18~24개월	생후 18~29개월	40,650 (구강 13,160원 포함)
4차	생후 30~36개월	-	27,490
5차	생후 42~48개월	생후 42~53개월	40,650 (구강 13,160원 포함)
6차	생후 54~60개월	생후 54~65개월	40,650 (구강 13,160원 포함)
7차	생후 66~71개월	-	27,490

자료: 보건복지부(2017f). 2017년도 건강검진지원사업안내. p. 32.

나)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은 영유아 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7f: 39). 즉 발달장애로 확진된 영유아를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 연계하여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고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 의료비 및 복지비용 지출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의료비 지원 등)에 의거하여 실시된다.

사업 대상은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되는 당해 연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이다.

지원내용은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를 지원한다(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인 자(차상위계층 제외)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해당 사업에는 2017년 기준으로 전액 국고 182백만 원이 소요된다(보건복지부, 2017f: 40).

다) 만 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지원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으로,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금의 전부 일부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7c: 46).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경우는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이며, 본인부담이 10%인 경우는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만 6세 미만 아동, 만 6세 이상은 본인부담 20%가 되도록 지원한다.

라)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백신별 대상자는 상이하다.

보건소 및 전국 1만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은 국가예방접종 접종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2017년 지원대상 백신은 총 16종이며,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 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생백신, 사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PCV(폐렴구균), A형간염, HPV(자궁경부암), 인플루엔자를 포함한다. 지원대상 백신에 포함되지 않는 백신(결핵 경피용 백신, 로타바이러스 백신 등)의 접종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그 밖에 예방접종증명서 인터넷발급 서비스(민원24 홈페이지에서 무료발급), 예방접종 확인 및 다음접종 사전알림 서비스(문자 수신 동의자에 한함), 예방접종 안전관리 등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에는 2017년 기준으로 2,442억4원이 소요된다(보건복지부, 2016b: 31).

6) 기타

가)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대상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조)부모 및 자녀)이다(보건복지부, 2017c: 43).

지원내용은 자녀 돌봄을 위한 공간 및 육아정보를 제공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세부적으로는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 활동을 위한 장소(공동육아나눔터) 제공, (조)부모 및 양육자·자녀에게 육아정보 제

공 및 정보 나눔 기회 제공, 장난감 및 도서대여, 상시 프로그램(동화 구연 등) 운영 및 지원, 가족품앗이 유형별 그룹 활동 운영 지원(전체 모임 및 소모임 등) 등이 제공된다.

(2)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취학 전 모든 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도서 및 장난감 등 대여, 체험 및 놀이 공간 이용, 부모 대상 육아상담 및 부모교육, 양육관련 프로그램 제공, 부모 간 육아정보 제공 등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7b: 426).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비는 중앙센터의 경우는 1,220백만 원이 전액 국비지원되며, 시·도 센터는 평균 312백만 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50%가 지원되고, 시·군·구 센터는 지자체가 운영비를 부담한다(보건복지부, 2017b: 430).

나) 저소득층 가구 지원

(1)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중위소득 40%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기저귀 64,000원과 조제분유 86,000원을 각각 지급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2017. 3. 30. 인출).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특정 질병(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후천성 면역결핍증(HIV) 등)·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한부모(부자·조손) 가정 아동에게 지원된다.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17년 기준 2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30억 원) 증가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198.9억 8천 원, 생리대 지원 30억 원, 사업관리비 1.1억 1천 원이 소요된다(보건복지부, 2016b: 16).

(2)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대상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4인 기준 357만 4천 원) 미만인 가구의 빈혈 등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만 6세 미만 영유아이다(보건복지부, 2017c: 45).

지원내용은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 결과에 따라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닭가슴살 통조림, 귤/오렌지주스 등의 영양보충 식품을 제공하고,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 지원하는 내용 등의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다) 장애아가족 지원

장애아동가족 지원 예산은 2017년 7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0.4억 4원이 감소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652억 원, 언어발달 지원 5억 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서비스 82억 원이 각각 소요된다(보건복지부, 2017c: 9).

(1)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의 만 18세 미만 1~3급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1가정 당 연 480시간의 돌봄서비스,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복지로<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2017. 3. 30. 인출).

단 아이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2)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며,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단 6세 미만의 경우 의사진단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하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2017. 3. 30. 인출).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원하며, 각 대상자별 지원 금액은 다음 <표 III-1-15>와 같다.

<표 III-1-15>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및 금액

대상자	지원금액	서비스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22만 원(본인부담금 면제)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 /심리운동 재활 등
차상위계층	20만 원(본인부담금 2만 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18만 원(본인부담금 4만 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16만 원(본인부담금 6만 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14만 원(본인부담금 8만 원)	

자료: 복지로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검색일자: 2017년 3월 30일)

(3) 언어발달 지원

지원대상은 부모 또는 조손 가정의 조부모 중 어느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이며,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4인 기준 637만 4,400원) 이하인 가구의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이다(보건복지부, 2017d: 96).

지원내용 매월 16~22만 원의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여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 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을 제공한다.

(4)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지원대상은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중 소득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50%(4인기준 796만 8천 원) 이하 가구이다.

지원내용은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월 16만 원의 상담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한다.(월 3~4회, 회당 50~100분, 12개월간 제공).

라) 다문화아동 지원

(1)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의 유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표 III-1-16>과 같다. 즉 다문화가정에 방문교육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 부모, 자녀생활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어교육서비스는 방문지도사와 1:1로 4단계 한국어 교육이 진행된다. 부모교육서비스를 통해 자녀양육에 도움을 주는 부모교육, 가족관련 상담서비스, 한국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자녀생활 서비스는 인지, 자아·정서·사회, 문화역량 강화, 시민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지원한다. 단, 한국어 교육서비스, 부모교육 서비스, 자녀생활 서비스는 동시 제공이 불가하며, 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표 III-1-16>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유형 및 지원대상

서비스 유형	대상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만 19세 미만)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각 생애주기별(임신·출산·영아기/유아기/아동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방문 자녀생활서비스	만3세~만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자료: 복지포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검색일자: 2017년 3월 30일)

(2)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 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 적절한 언어교육을 실시한다(복지포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2017. 3. 30. 인출).

라. 초등학령기 자녀: 6~11세아

1) 현금/현물지원

가) 급식비 지원

급식비는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중위소득기준 각 시·도별 기준대상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본인부담 경감/장애수당 대상자 등), 기타 소득재산 조희를 통해 학교에서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본 사업은 2005년부터 지방 이양되어 시도교육청에서 지원대상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므로, 시도교육청별 지원대상 범위가 다를 수 있다. 각 시도교육청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학교급식비를 학교로 지원하여 무료급식을 제공한다.

단 해당 지원은 외부기관,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중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나) 학교 우유급식

학교 저소득층 청소년의 영양 불균형 해소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우유급식을 무상지원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한부모가족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기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과 협의하여 선정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단, 예산 범위 내 지원)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에게 단가 430원인 200ml 우유를 연간 250일 내외로 무상지원한다. 2017년부터는 지원대상이 고등학생까지 확대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17: 118).

다)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기준 223만 원) 초, 중,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초등학생은 연 1회 1인당 41,200원의 부교재비를, 중학생은 연 1회 부교재비 41,200원과 학용품비 54,100원(학기당 27,050원씩 연 2회)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과 부교재비 41,200원, 학용품비 54,100원을 비롯하여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를

지원한다. 2017년 해당 사업에는 127,576백만 원(지자체 보조금)이 소요된다(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2017. 6. 1. 인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청소년특별지원, 고교 학비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표 III-1-17〉 교육급여 지원내용(2017)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1,200원	-	-	-
중학생	41,200원	54,100원	-	-
고등학생	41,200원	54,1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 1회	연 2회 (분할지급)	연 1회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자료: 보건복지부(2017c).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p. 49.

라) 긴급복지 교육지원

적용대상은 긴급지원 대상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이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2017. 3. 30. 인출).

현금급여의 경우 초등학생 219,100원, 중학생 348,700원, 고등학생 427,3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이 지원된다.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학비를 납부하거나 학용품 등을 현물로 지급하기도 한다. 또한 학부모의 학생 관리 소홀시 학교로 납부해야 하는 교재비, 급식비, 학교 운영지원비, 수업료, 입학금은 학교로 고지 금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양곡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청소년특별지원, 고교 학비 지원, 영구임대주택공급,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2) 방과후 돌봄

가) 방과후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은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이다(보건복지부, 2017b: 321).

일반아동은 월 10만 원을 지원하며,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로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장애아보육료의 50%인 219,000원을 지원한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은 월 10만 원, 정부미지원 시설은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 도액의 50%를 지원한다. 방학 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만 원을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한다.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전액을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한다.

단, 이들 지원은 아이돌봄서비스, 만 0~5세 보육료지원사업, 장애아보육료 지원, 방과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사업과는 중복이 불가하다.

나) 초등돌봄교실

초등돌봄교실은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1~2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학교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서비스 유형 즉 1) 오후 돌봄, 2) 저녁 돌봄, 3) 방과후 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교육청, 2017: 4).

오후 돌봄(방과후~17:00)의 경우, 1~2학년을 중심으로 기존에 구축된 돌봄교실에서 맞벌이가구,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이 대상으로, 시·도 및 학교 여건에 따라 담임 등이 추천한 학생(일시적 실직, 일시적 경력단절 등으로 구직 중인 가정의 자녀 등)을 포함한다(고용노동부 일가양득 사이트 <http://worklife.kr/website> 2017. 5. 25. 인출). 운영시간은 방과후 부터 오후 5시까지이나, 학교 여건 및 돌봄참여 학생 가정 부모의 퇴근 시각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저녁 돌봄(17:00~22:00)의 경우는 오후 돌봄에 참여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교육청, 2017: 4). 운영시간은 오후 5시부터 10까지이나, 학생 안전관리 등을 감안하여 5명 이하 참여 돌봄교실의 운영은 지역돌봄 기관과 연계하는 등 운영 여부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교육청, 2017: 8). 이용비용은 급간식은 수익자 부담으로 하되, 교육 지원대상 학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교육청, 2017: 8). 프로그램은 무상 프로그램 이외 학부모가 수익자 부담으로 추가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는 유상으로 운영한다. 방학 중에도 운영해야하며, 학기 중 오후 또는 저녁까지 운영되는 돌봄교실이 방학 중에서 학부모 수요를 바탕으로 오전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은 학부모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교육청, 2017: 8).

방과후 학교 연계형의 경우는 별도의 공간에서 방과후에 돌봄이 필요한 3~6학년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학생 중 방과후 프로그램에 1~2개 이상 참여하면서 오후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운영시간은 5시까지로 규정되나, 학교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교육청, 2017: 8).

2017년 기준 예산은 초등돌봄교실 5,886억 원, 방과후 학교 1,305억 원이 소요된다(교육부, 2016: 8).

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저소득층, 한부모, 장애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 학습,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청소년의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지원된다(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원, 2017: 9). 2005년 청소년위원회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되어, 2006년부터 전국 지역별 운영체계가 도입되어 기존 46개소에서 100개소로 확충되었으며, 2016년부터는 중학교 대상 학년(중학교 3학년 포함)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원, 2017: 10).

적용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학생 중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이다. 우선순위 지원대상이 종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 3자녀 이상 가정 등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저소득층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로 명료화되었다(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

진흥원, 2017: 8).

〈표 III-1-18〉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지원 현황(2006-2016)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지원(개소)	100	151	185	178	161	200	200	200	200	244	250
참여인원(명)	4,200	6,300	7,980	7,560	6,672	8,200	8,060	8,200	8,043	9,490	9,700
국고예산(억 원)	77	120	150	129	121	155	155	161	144	184	185

자료: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원(2017). 2017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실무자 업무매뉴얼. p. 10.

방과후부터 오후 9시까지 일일 4시간 이상 연중 운영하며, 청소년 체험활동, 기초학습지원 활동, 급식 및 상담, 부모교육 및 캠프 등 특별활동, 귀가지도 등을 지원한다.

2017년 기준 사업 예산은 18,026백만 원이다(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원, 2017: 9).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250개소 운영지원으로 1개소 당(40명 기준) 150백만 원이 지원되며, 국고보조율은 서울 지역이 30%, 이외 지역은 50%이다.

라)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하고자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17d: 3).

지원대상은 2017년에 종전 맞벌이 가구 등에서 지역사회 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되었다(보건복지부, 2017d: vii). 또한 2017년부터는 신고정원의 90% 이상 우선보호아동 유지, 일반아동 10% 이내 이용가능하다고 변경되었다. 이때 우선보호아동은 중위소득 100%이하 지역사회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이다.

지원내용은 아동보호(안전교육, 급식),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지역연계(인적·기관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보건복지부, 2017c: 47).

동 사업의 예산은 지역아동센터 4,113개소와 아동복지교사 3,500명을 대상으로 2017년 1,472억 원이 소요되며, 2016년 대비 3.1%(44억 4천 원)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16c: 10)¹⁰⁾.

10) 세부 내역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4,113개소: 1,121억 1천(+36억 3천, 월 473만 원)),

마)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저소득층 자녀가 자유롭게 원하는 방과후 학교 강좌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60만 원 내외에서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7b: 48). 해당 사업 예산으로는 2017년 기준으로 1,947억 원이 소요된다(교육부, 2016: 8).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이며,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의 범위가 상이하하다(보건복지부, 2017c: 48).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하지 않으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액을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보육료, 토요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2017. 3. 30 인출).

3) 취약계층 지원

가) 장애아 지원

(1)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2017. 3. 30 인출).

지원대상에게는 치료사 채용, 바우처, 치료지원 제공기관(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을 통해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국립중앙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정서·행동 장애를 가진 만 9~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정서·행동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치유·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립중앙청소년 디딤센터 운영 사업비 및 인건비를 지원한다. 오름과정(1개월 1회, 60명), 디딤과정(4개월 2회, 120명), 힐링캠프(4박5일 28회, 860명) 등이 포함된다.

(3) 국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

우수 지역아동센터지원(3,300개소: 46억 원(월240천 원, 신규)), 주5일제 수업 토요일운영 지원(1,800개소: 21억 원(월20만 원, △56.2%)), 특수목적형센터(459개소 : 24억 원(월 90만 원, △35.3%)), 아동복지교사(3,500명 : 226억 원(월112만 원 전년 동일))(보건복지부, 2016b: 10).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내 교수-학습 활동 및 이동 보조, 방과후 교육 등을 지원한다.

나) 탈북/다문화학생 지원

(1) 탈북학생 교육지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탈북학생 교사 멘토링 등을 위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별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문해력 증진 교재를 보급한다.

(2)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탈북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문화·탈북 학생 기초학습 지원 및 진로지도와 생활지도를 지원한다.

마. 중고등학령기 자녀: 12~17세아

1) 교육비 지원

가) 고교학비 지원

고교학비는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이 대상이나,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가 상이할 수 있다 (복지로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2017. 3. 30. 인출). 또한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또는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자는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납부가 면제된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산재근로자복지지원(장학금), 장기복무제 대군인 수업료보조,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긴급복지 교육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나)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한다.

단,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양곡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청소년특별지원, 고교 학비 지원, 영구임대주택 공급, 교육급여

(맞춤형 급여),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긴급복지 교육지원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다) 청소년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정규 고등학교 과정(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포함)의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고 하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를 포함한 교육비를 지원한다.

단,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고교 학비 지원,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긴급복지 교육지원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의 자녀, 한부모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2017. 3. 30. 인출).

사업학교에서 대상학생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학습지원은 일대일 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대학생 멘토링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한다. 또한 예술제, 캠프, 동아리,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과 같은 활동을 통해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그 밖에도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통합 보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 복지를 지원한다.

3)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이주배경 청소년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 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 2017c: 63).

입국초기 중도입국청소년들에게 한국사회에 대한 기본 정보, 한국어 교육, 사회적 관계 향상 및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정규교육과정으로의 편입학 지원, 진로지도 등을 통해 원활한 한국사회 초기적응 지원을 돕는다.

구체적으로 레인보우스쿨(전일제/주말·야간), 레인보우 여름학교, 레인보우 겨울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한다. 전일제(4개월, 총 400시간), 주말(4개월, 주말야간 160시간), 여름학교(3주, 총 70시간), 겨울학교(4~6주, 총 150시간) 등의 형태로 운영한다. 또한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진로지원 프로그램인 ‘무지개 Job아라’와 이주배경 청소년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내·일을 Job아라’를 운영한다. 그 밖에도 하나원 재원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동기야! 놀자!’, 다문화 감수성 증진프로그램 등도 지원한다.

〈표 III-1-19〉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내용(2017)

구분	내용
맞춤형 정보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배경 청소년의 체류, 정착, 교육, 취업, 진로, 생활전반의 정보 안내 · Rainbow School 등 활동프로그램, 통합상담·사례관리 연계 및 기관 연계 지원
입국초기 지원교육 (Rainbow Scho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15개 지역, 23개소에서 운영 ·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및 특기적성, 사회문화, 심리프로그램 지원 · 전일제, 겨울학교, 여름학교, 주말·야간 프로그램 운영 · 북한이탈청소년 초기 적응을 위한 비교문화체험 및 동기모임 실시
진로지원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전국 12개소 운영 · 진로지원이 필요한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진로탐색 및 설계, 직업훈련 · 10대 후반~20대 초반 중도입국 청소년 대상
통합상담 및 가족연계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오프라인 상담 및 찾아가는 상담 실시 · 개인·집단 맞춤형 상담 및 통번역 상담 실시 · 이주배경 청소년 가족관계 향상 및 가족 내 지지 체계 강화를 위한 가족 캠프
역량강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배경 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지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 · 이주배경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이 함께하는 “통·통·통” 통합캠프 실시

자료: 보건복지부(2017c).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p. 64.

바. 종합 및 함의

이상에서 살펴본 자녀양육 단계별 돌봄지원 제도 및 정책들을 종합하여 정합성 측면에서 주목할 바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양육 단계별 재정투자 비중의 측면에서는 <표 III-1-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유아기에 집중되어 사업 수가 가장 많고 다양한 지원 부문을 포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0~5세 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이 각각 약

51.6%와 20.2%를 차지하여 총 약 71.8%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초등돌봄교실이 9.7%를 차지하고, 이외 세부 사업들은 5%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즉 영유아기에는 다양한 아동관련 수당과 세제지원, 보편적 보육교육서비스, 가정 내 양육지원(시간제보육,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 등), 자녀 돌봄시간을 보장하는 휴가휴직제도와 근로시간 단축 및 시간선택제 및 관련 기업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영유아 대상 건강관리(건강검진, 국가예방접종) 및 의료지원(입원비 지원,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그 밖에도 저소득층 대상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과 영양플러스 사업, 드림스타트 사업, 장애아 가족을 대상으로 돌봄 및 휴식지원 서비스, 부모 상담, 언어발달 및 발달재활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러므로 실제로 각종 돌봄지원 수요가 영유아기에 집중되고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표 III-1-20〉 자녀양육 단계별 주요사업 예산(2017)

단위: 백만 원

구분 사업명	양육 시기별				2017년 예산	비중
	0~2세	3~5세	6~12세	13~16세		
임신·출산 진료비					1,200	0.02
신생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12,400	0.20
신생아·산모건강관리지원사업					38,800	0.64
고위험군 산모신생아지원					13,900	0.23
가정양육수당(농어촌, 장애아동)					12,242,00	20.18
시간제보육					8,800	0.15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15,085	0.25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3,000	0.38
0~5세 보육료 지원					31,292,00	51.58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1,000	0.02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182	0.00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중앙)					1,220	0.02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2,442,00	4.03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92,500	1.52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54,572	0.90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18세)	1,472,00	2.43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9세~)		18,026	0.30
초등돌봄교실					5,886,00	9.70
방과후 학교					1,305,00	2.15
방과후 수강권				(~18세)	1,947,00	3.21
교육급여					127,576	2.10
합계					6,066,861	100.0

자료: 보건복지부(2016b) ; 교육부(2016) ; 여성가족부(2017b) ; 교육부 홈페이지.

둘째, 지원내용 측면에서 학령기 아동을 둔 가구에 대한 보편적인 돌봄지원 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를테면 초등 또는 중고등학령기까지 지원되는 교육급 여, 급식비, 학교 우유급식은 저소득층 가구에 한정된다. 또한 방과후 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도 맞벌이와 취약계층 가구(한부모가족, 저소득층, 장애 등)에 한정된다. 교육비 지원과 교육복지 관련 서비스도 저소득층 가구 지원에 그친다. 따라서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현행 저소득층 가구에 한정되는 각종 지원들이 보편적인 수요인지 그리고 이외에 간과된 돌봄지원 요구가 없는 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본다.

<표 III-1-21> 아동관련 수당 지원대상 및 급여액(2017)

구분	지원내용	
	아동 연령	지원금액(월)/원
가정양육수당/장애아동양육수당	0~35개월	200,000
	36~84개월	100,000
농어촌 양육수당	0~11개월	200,000
	12~23개월	177,000
	24~35개월	156,000
	36~47개월	129,000
	48~84개월	100,00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12세까지	120,000(+50,000)
장애아동수당	17세까지	20,000~200,000
입양아동수당	15세까지	150,000

자료: 보건복지부(2017b). 2017 보육사업안내, p. 327 ; 복지로 사이트 ; 보건복지부(2017c). 2017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p. 43, 82.

셋째, 지원대상 및 수준의 측면에서 아동 연령과 소득기준, 그리고 급여수준 의 적용이 일관되지 않고, 출생순위를 적용한 지원 항목의 근거도 모호하다. 우선 아동 연령의 경우는 유사한 성격의 지원이나, 각 사업별로 적용대상 아동 연령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테면 아동관련 수당 및 보조금 지원의 경 우는 가정양육수당은 0~5세이나,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대상별 수당의 경우는 <표 III-1-21> 에서와 같이 지급대상 아동 연령이 각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는 해당 대상자별로 그 특성상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다르거나 양육 단계별로 발생하는 돌봄 시 애로사항이 상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합성 측면에서 일관된 적용이 요구된다고 본다. 또한 동일한 양육 단계이나 급여 수 준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대상별 특성에 따라 소요되는 양육비용이

다른 점 등 타당한 근거를 요한다. 그러므로 자녀 연령별로 해당 지원의 필요도와 중요도 인식이 어떠한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다자녀 기준 즉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 지원수준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한정되며, 그 기준도 사업별로 각기 상이한 것으로 파악된다. 자녀의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다자녀 가구에 한하여 지원하는 방식은 추가 출산에 따른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지닐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출생순위별로 차별화된 돌봄 수요가 있는 지원내용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표 III-1-22〉 돌봄지원 분야 중 출생순위 적용 사업(2017)

사업명	출생순위 적용 기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 지원	- 셋째아 이상
신생아·산모건강관리지원사업	- 셋째아 이상(지자체 별도) - 서비스 이용기간: 둘째아 15일, 셋째아 20일 추가(첫째아 10일)
자녀세액공제	- 6세 이하 2명 초과 시 추가 공제 - 자녀수에 따른 종합소득세 공제(연간): 자녀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50만 원
자녀 장려세제	-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 지급 (연간소득 4천만 원 이하)
자동차 취득세 면제	- 자녀 3명 이상 가구
아이돌봄서비스	- 만 12세아 3명 이상 우선지원

자료: 복지포 사이트 ; 보건복지부(2017b) ; 대한민국정부(2016) ; 대한민국정부(2017) ; 여성가족부(2017a).

넷째, 각 양육 단계별로 모든 적용대상 즉 보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지원 항목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의 경우는 그 지원의 효과가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테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80% 이하이나 보편적인 수요를 보인다면 현행 기준의 확대 적용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유아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부문에서 세부 사업의 적용기준은 중위소득 40%에서 80%까지 달리 나타난다. 이처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이나 소득기준이 달리 적용되는 점은 돌봄지원의 형평성 측면에서 주목할 지점이라고 본다.

〈표 III-1-23〉 돌봄지원 분야 주요사업의 지원대상 소득기준(2017)

양육 단계	구분		소득기준	
	지원내용	선별적	보편적	
산모 및 신생아	임신·출산 진료비 일부 지원		○	
	아동입원비 일부 지원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 지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0% 이하		
	신생아·산모건강관리지원사업	중위소득 80% 이하		
0~2세아	가정양육수당(농어촌, 장애아동) 시간제보육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위소득 60% 이하(가형)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중위소득 40%		
	0~5세 보육료 지원		○	
0~5세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중위소득 40%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건강보험료 하위 30%		
	영양플러스 사업	중위소득 80%		
0~12세아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중 지원사업		○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중위소득 52%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중위소득 60% 이하(가형)		
	아동통합서비스	취약계층		
	장애아 언어발달 지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	
6~12세아	초등돌봄교실	저소득층 가구 우선		
	방과후 학교			
9~15세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6~17세아	방과후 수강권	취약계층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학교급식			
	급식비 지원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0~17세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발달재활서비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자료: 본 연구에서 재구성한 표임.

2. 지방정부의 돌봄지원 시책 추진 현황

2017년 1사분기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전년 동기에 비해 17개 시·도 모두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통계청, 2017: 4), 2017년 3월 기준 시·도별 출생아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서울, 부산, 대구 등 15개 시·도에서 감소하고, 세종시와 제주 지역은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이처럼 저출산은 전국적인 현상이나, 인구구조 등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저출산 양상도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이를테면 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전체 출생아수 혹은 아동인구 비율이 낮기 보다는 합계출산율이 낮은 점이 문제가 되는 반면,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는 주 출산 연령대인 청장년층이 점차 감소하여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도 존재한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의 지역적 특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대응 노력도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는 시·도별 인구 특성 및 저출산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2016년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및 출산장려정책 사례집을 토대로 양육 단계별 출산·자녀돌봄 지원 현황을 분석하였다.

가. 전국 시·도별 저출산 현황

전국 시·도별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지역(1,174만 4,210명)의 인구가 가장 많고 서울이 939만 4,807명으로 다음이었다. 15세 미만 인구수는 경기도(186만 450명)과 서울 지역(115만 591명)이 가장 많았으나, 전체인구 대비 15세 미만 인구 비중은 세종특별자치시가 20.7%로 가장 높은 반면, 부산(12.1%)과 서울 지역(12.2%)이 가장 낮았다.

〈표 III-2-1〉 전국 시·도별 총 인구 및 15세미만 인구(2017)

구분	단위: 명, %		
	전체 인구	15세미만 인구	15세미만 인구 비중
서울특별시	9,394,807	1,150,591	12.2
부산광역시	3,323,591	400,797	12.1
대구광역시	2,378,450	325,266	13.7
인천광역시	2,766,575	403,498	14.6
광주광역시	1,438,209	225,446	15.7

(표 III-2-1 계속)

구분	전체 인구	15세미만 인구	15세미만 인구 비중
대전광역시	1,467,677	222,275	15.1
울산광역시	1,105,585	172,576	15.6
세종특별자치시	191,233	39,557	20.7
경기도	11,744,210	1,860,450	15.8
강원도	1,429,438	192,665	13.5
충청북도	1,484,720	215,437	14.5
충청남도	1,946,129	293,496	15.1
전라북도	1,739,048	244,269	14.0
전라남도	1,700,563	235,275	13.8
경상북도	2,508,964	334,539	13.3
경상남도	3,144,487	476,443	15.2
제주특별자치도	575,873	96,035	16.7

자료 : 통계청 KOSIS, 인구주택총조사 2015, 성-연령 및 가구주와의 관계별 인구 - 시군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1507&conn_path=I2 (검색일자: 2017년 5월 25일)

〈표 III-2-2〉 전국 지역의 연도별 출생아 수 추이(2010-2016)

구분	단위: 명, %				
	2000	2005	2010	2015	2016*
전국	634,501	435,031	470,171	438,420	406,300
서울특별시	131,935	89,489	93,268	83,005	75,500
부산광역시	40,877	25,464	27,414	26,645	24,900
대구광역시	32,231	20,677	20,557	19,438	18,300
인천광역시	34,143	22,825	25,752	25,491	23,600
광주광역시	20,987	13,229	13,979	12,441	11,600
대전광역시	19,402	13,863	14,315	13,774	12,400
울산광역시	15,734	10,422	11,433	11,732	10,900
세종특별자치시	-	-	-	2,708	3,300
경기도	140,492	108,576	121,751	113,495	105,600
강원도	19,286	12,539	12,477	10,929	10,100
충청북도	19,471	13,075	14,670	13,563	12,700
충청남도	24,481	17,366	20,242	18,604	17,300
전라북도	24,936	15,618	16,100	14,087	12,700
전라남도	25,724	15,716	16,654	15,061	14,000
경상북도	34,893	22,201	23,699	22,310	20,600
경상남도	41,362	28,298	32,203	29,537	27,200
제주특별자치도	8,547	5,673	5,657	5,600	5,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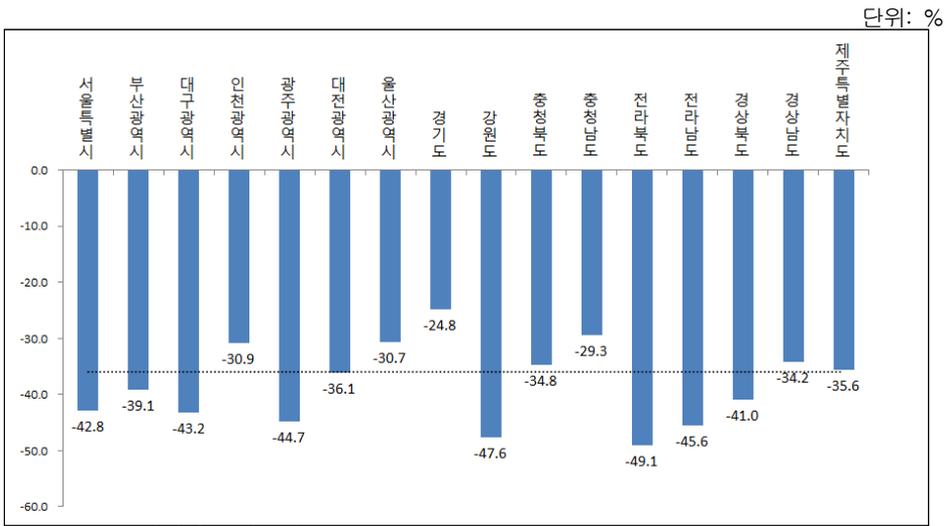
주: * 2016 수치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연간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G&conn_path=I2 (검색일자: 2017년 5월 25일)

전국 지역의 출생아수는 2000년 63만 4,501명이었으나 2005년 43만 5,031명으로 급감하였고, 2016년에는 40만 6,300명으로 나타난다. 지역별로는 2016년 기준으로 경기도 지역 10만 5,600명, 서울 지역 7만 5500명 순으로 많았다(표 III-2-2 참조).

2000년 대비 2016년 광역자치단체의 출생아 수 증감율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 36.0% 감소하였는데 전라북도(-49.1%)의 감소율이 가장 큰 반면, 경기도 지역이 -24.8%로 가장 낮은 감소율을 보였다(그림 III-2-1 참조).

시·도별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2000년 전국 평균 1.47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1.17명으로 감소하였다. 지역별로 2000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서울 지역이 1.26명이었고, 제주 지역이 1.76명으로 가장 높았으나, 2016년에는 세종시가 1.82명으로 가장 높고 서울 지역이 0.94명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주: 2016은 잠정치를 사용함.
 자료: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연간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G&conn_path=I2 (검색일자: 2017년 5월 25일)

[그림 III-2-1] 전국 시·도별 출생아 수 감소율(2000년 대비 2016년)

한편, 조출생률은 2000년 기준 제주 지역이 천 명당 15.8명, 경기도가 천 명당 15.5명으로 높은 편이었다. 2016년 기준 조출생률은 전국 평균 천 명당 7.9명으로 감소하였는데, 세종특별자치시가 천 명당 14.6명으로 높았다. 반면 2016년 기준 조출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로 천 명당 6.6명에 그쳤으며, 전북 지

역이 천 명당 6.9명으로 낮은 조출생률을 보였다. 출산 가능한 여성(15세~49세)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과 달리, 조출생률은 당해 연도 출생아 수를 당해 연도의 총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낮은 조출생률은 고령화 수준과 직결된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은 지역 내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출생 건 수 자체는 광역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높으나, 출생 건수의 감소폭이 타 지역에 비해 크고 2016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을 나타낸다. 하지만, 서울 지역의 조출생률은 7.7명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편이나, 전국 최하위 수준은 아니므로 지역 내 고령화 수준이 심각한 수준은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같은 서울 지역의 출산율 저하는 해당 지역 내 출산 가능 연령대의 여성 비중이 높다는 점과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전국 수준의 출산율 저하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한다. 반면, 강원도 지역은 2016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24명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나, 조출생률은 6.6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을 보였다. 이는 강원도 내 출산 가능 연령대의 여성의 수 자체가 적은 현상, 즉 고령화 진행 정도가 심각한 현상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도 지역의 경우는 출산가능 연령대의 여성이 지역 내에서 유출되지 않고 타 지역에서의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다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표 III-2-3〉 전국 지역의 연도별 출생아 및 합계출산율 추이(2010-2016)

행정구역별	2000						2010						2015						2016					
	출생 건수	합계 출산율	조 출생률	자연 증가율																				
	전국	634,501	1.467	13.3	8.2	470,171	1.226	9.4	4.3	438,420	1.239	8.6	3.2	406,300	1.170	7.9	2.5	75,500	0.940	7.7	3.3			
서울특별시	131,935	1.262	12.8	9.1	93,268	1.015	9.2	5.2	83,005	1.001	8.4	4.0	24,900	1.100	7.2	1.1	18,300	1.190	7.4	1.9				
부산광역시	40,877	1.225	10.7	6.0	27,414	1.045	7.8	2.2	26,645	1.139	7.7	1.7	23,600	1.140	8.1	3.2	11,600	1.170	7.9	3.0				
대구광역시	32,231	1.368	12.8	8.3	20,557	1.109	8.3	3.4	19,438	1.216	7.9	2.6	12,400	1.190	8.3	3.6	10,900	1.420	9.4	5.1				
인천광역시	34,143	1.460	13.5	9.3	25,752	1.214	9.5	5.0	25,491	1.216	8.8	4.2	3,300	1.820	14.6	9.9	105,600	1.190	8.4	4.0				
광주광역시	20,987	1.623	15.4	11.1	13,979	1.223	9.7	5.2	12,441	1.207	8.5	3.4	10,100	1.240	6.6	-0.9	12,700	1.360	8.1	1.2				
대전광역시	19,402	1.488	14.1	9.9	14,315	1.206	9.6	5.4	13,774	1.277	9.1	4.5	17,300	1.400	8.4	1.3	12,700	1.250	6.9	-0.7				
울산광역시	15,734	1.624	15.2	11.5	11,433	1.369	10.2	6.4	11,732	1.486	10.1	5.9	14,000	1.470	7.4	-1.4	14,000	1.470	7.4	-1.4				
세종특별자치시	-	-	-	-	-	-	-	-	2,708	1.893	14.8	9.5												
경기도	140,492	1.614	15.5	11.2	121,751	1.309	10.5	6.4	113,495	1.272	9.2	4.9												
강원도	19,286	1.584	12.4	5.4	12,477	1.313	8.2	1.2	10,929	1.311	7.1	-0.2												
충청북도	19,471	1.570	13.0	6.2	14,670	1.402	9.6	3.2	13,563	1.414	8.6	1.9												
충청남도	24,481	1.681	12.7	5.0	20,242	1.479	9.9	3.0	18,604	1.480	9.0	2.0												
전라북도	24,936	1.579	12.4	5.3	16,100	1.374	8.7	1.6	14,087	1.352	7.6	0.2												
전라남도	25,724	1.729	12.0	3.6	16,654	1.537	8.7	0.3	15,061	1.549	8.0	-0.8												

단위: 명, 천 명당

(표 III-2-3 계속)

행정구역별	2000				2010				2015				2016			
	출생 건수	합계 출산율	조 출생률	자연 증가율												
경상북도	34,893	1.565	12.4	4.7	23,699	1.377	8.9	1.3	22,310	1.464	8.3	0.5	20,600	1.400	7.7	-0.1
경상남도	41,362	1.574	13.4	6.9	32,203	1.413	9.9	3.9	29,537	1.437	8.9	2.5	27,200	1.360	8.1	1.8
제주특별자치도	8,547	1.764	15.8	10.5	5,657	1.463	10.0	4.7	5,600	1.477	9.2	3.7	5,500	1.430	8.7	3.1

주: 1) 합계출산율은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의미하며, 당해연도 조출생율을 출생아 수를 당해 연도의 총인구로 나눈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조출생률 = ((특정 1년간의 총출생아수)/(당해연도의 연앙인구)) * 1,000으로 산출함.

주: 2) 2016년도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시도/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H&conn_pat_h=12 (검색일자: 2017년 5월 25일)

나. 시·도별 출산 정책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시·도별로 저출산 양상이 다르므로 이에 대응하는 정책 또한 달리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절에서는 2016년 기준으로 전국 지역의 출산·자녀돌봄 지원 추진 현황을 살펴보았다. 중앙정부 저출산 대책과의 연계 논의를 위해 일관된 범주로 분석하되, 아동 연령 전반을 포괄하는 일부 사업에 한해서는 양육단계 전반으로 분류하였다.

1) 출산·돌봄지원 정책 범주화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저출산 대책은 크게 공통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된다. 공통사업은 중앙정부가 해당 사업의 수행을 지자체에 요구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출하여 지원하는 형태이다.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자녀 돌봄 지원 정책은 각 지자체별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에 보고된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진이 DB화하여 활용하였다. 해당 자료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지원 대책을 총 망라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지원 대책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자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자료를 병렬적으로 묶어놓은 자료로서, 지자체에서 실제로 수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자료에 대한 과도한 해석은 주의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세종시의 경우에는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가정 내 양육수당 지원 등이 공통사업에 제시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양육비용 지원 정책이 0개로 집계되었다.

한편,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자녀 돌봄지원 정책을 보다 가시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연구진은 해당 DB를 활용하여 생애주기 및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한 범주로 재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저출산 지원 정책은 정책 대상이 명확한 경우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섞여 있는 양상을 보이는데, 생애주기에 따라 이용 대상이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더라도 주된 지원대상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설은 특별한 생애주기를 명시하지 않은 사업이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용 대상자가 주로 영유아기 자녀인 점을 감안하여, 영유아기에 해당하는 지원으로 분류하였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사업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공통사업에

서 수행되는 것들과 유목화 범주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자체 사업의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특성이 반영되다보니, 예산 지원의 편차도 클 뿐 아니라 사업 내용 등에서도 지역 특성이 일부 반영되는 양상을 보인다.

〈표 III-2-4〉 전국 시·도별 출산·돌봄지원 분야 공통사업 범주화

단위: %(명)

양육단계	지원 분야	세부 내용	자체사업 특이사항
출산 및 신생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	-	-
	신생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 지원 ·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	-
	기타	·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용품 지원 · 임신 및 출산직원 지원 등	-
영유아기 자녀 :0-5세아	아동관련 수당 지원	· 가정양육수당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장애아동수당 · 입양아동 양육관련 수당 지원	-
	세제지원	· 자녀 세액공제 · 자녀 장려 세제 · 교육비 세액 공제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기타 세제지원	-
	보육·교육서비스	· 만 0~5세 보육료 지원 ·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 시간제 보육 지원 ·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 가정보육교사제도 · 베이비 마사지 등
	돌봄시간 지원	· 육아시간(수유시간)허용 · 휴가/휴직제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 일가정 양립 기업 지원	· 농가도우미 지원

(표 III-2-4 계속)

양육단계	지원 분야	세부 내용	자체사업 특이사항
영유아기 자녀 :0-5세아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건강검진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만 6세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 12세 이하 국가 예방접종 지원 	· 치과치료 지원 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 저소득층 가구 지원 · 장애아 가족 지원 · 다문화 아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자회 등 육아 지원 행사 개최 · 다자녀 카드 · 직장맘센터 지원
초등 학령기 자녀 :6~11세아	현금/현물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비 지원 · 학교 우유급식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긴급복지 교육지원 	-
	방과후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 보육료 지원 · 초등돌봄교실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 지역아동센터 지원 ·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 	-
	기타: 취약계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 지원 · 탈북/다문화학생 지원 	-
중고등 학령기 자녀 :12~17세아	교육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학비 지원 ·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 영어캠프 지원 등

자료: 보건복지부(2017g),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재분석.

2) 출산·돌봄지원 분야 공통사업 추진 현황

광역자치단체의 공통사업 중 출산·자녀 돌봄 분야 사업의 시행 현황을 살펴 보면, 전체적으로 총 398개의 공통사업이 수행 중에 있었는데, 전라남도가 108개로 다른 지역에 비해 사업 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실제로 전라남도가 돌봄 사업의 수행이 많은 것도 있지만, 전남의 자료가 시군구 자료를 광역단위에서 통합하지 않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추측된다. 전남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 28개, 전라북도 27개, 충북 26개 사업 등을 시행중이었다.

한편,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범주별로는 보육교육서비스 지원이 75개로 가장 많았으며, 영유아에 대한 기타 지원, 예를 들어 지역사회 돌봄인프라, 저소득층

가구지원, 장애아 가족지원, 다문화 아동 지원 등이 65개로 많았다. 다음으로, 출산지원 및 신생아 지원 중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이 50개였으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41개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반면, 세제지원, 초등학교학령기 자녀에 대한 현금/현물지원, 중·고등학교학령기 자녀에 대한 교육복지우선 지원 사업과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등은 중앙정부 사업으로 지자체 공통사업으로 수행되는 사업은 전무하였다.

생애주기별로는 영유아기 자녀에 대한 지원 사업이 가장 많아서 213개 사업이 시행중이었으며, 출산 지원 및 신생아 지원 사업이 144개, 초등학교학령기 지원 사업이 40개, 중·고등학교학령기 지원 사업은 광주에서 시행 중인 교육비 지원 사업 1개만 발견되었다. 사업수가 가장 많은 전남의 경우에는 출산지원 및 신생아 지원 사업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27개로 가장 많았으며, 신생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17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12개로 대체로 출산 전 의료지원 사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5〉 전국 시·도별 출산·돌봄지원 분야의 공통사업 수(2016)

단위: 개

전체	출산지원 및 신생아					영유아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생아 사진 예방적 건강 관리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기타	아동 관련 수당 지원	세제 지원	보육 교육 서비스 지원	돌봄 시간 지원	건강 관리 의료 지원	기타	희금/현물 지원	방과후 돌봄	기타: 취약계층 지원	교육비 지원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			
전국	398	36	50	9	8	32	0	75	11	30	65	0	36	4	1	0	0			
서울	19	1	2	0	0	1	0	6	0	1	3	0	4	0	0	0	0			
부산	20	1	1	0	0	3	0	4	1	1	6	0	2	0	0	0	0			
대구	16	3	2	1	0	0	0	0	0	4	1	0	2	1	0	0	0			
인천	9	0	1	0	1	1	0	2	0	1	2	0	1	0	0	0	0			
광주	19	2	0	1	0	2	0	4	0	0	6	0	2	0	1	0	0			
대전	28	2	1	0	0	2	0	5	6	2	5	0	4	0	0	0	0			
울산	14	2	0	3	0	1	0	4	0	0	2	0	1	1	0	0	0			
세종	13	3	1	1	0	1	0	1	0	1	2	0	0	0	0	0	0			
경기	20	3	0	1	0	2	0	7	0	2	2	0	3	0	0	0	0			
강원	15	2	1	1	0	2	0	4	0	0	3	0	2	0	0	0	0			
충북	26	1	0	2	1	4	0	6	0	2	7	0	3	0	0	0	0			
충남	14	3	1	1	0	1	0	4	0	0	1	0	0	0	0	0	0			

(표 III-2-5 계속)

전체	출산지원 및 신생아				영유아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생아 사전 예방적 건강 관리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고위험 산모·신생아 신생아 지원	기타	아동 관련 수당 지원	세계 지원	보육 교육 서비스 지원	돌봄 시간 지원	건강 관리 의료 지원	기타	현금/환물 지원	방과후 돌봄	기타: 취약계층 지원	교육비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비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비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전북	3	1	2	1	0	4	0	6	0	2	6	0	2	0	0	0	0	0	0	0
전남	12	17	27	2	6	5	0	9	0	12	14	0	4	0	0	0	0	0	0	0
경북	2	1	1	1	0	1	0	4	0	0	2	0	2	0	0	0	0	0	0	0
경남	0	3	2	0	1	0	0	5	2	1	0	0	3	0	0	0	0	0	0	0
제주	2	1	1	0	0	2	0	4	2	1	3	0	1	2	0	0	0	0	0	0

주: 전남의 경우 광역지자체 단위로 통합하지 않고 시군구가 시행중인 사업을 병렬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판단됨.

자료: 보건복지부(2017),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재분석.

출산·돌봄지원 분야 공통사업의 예산 총액은 8조 7,148억 원으로, 그 중 지방비 예산은 3조 8,872억 원이었다. 범주별로는 보육·교육서비스 지원(누리과정 지원금 포함)이 5조 6,66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65.0%에 해당하는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아동관련 수당 지원이 1조 6,604억 원으로 19.1%로, 출산·돌봄지원에서 영유아 가구에 대한 비용 지원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초등학교 자녀에 대한 지원은 주로 방과후 돌봄에 대한 지원 예산이 큰 편으로 4,561억 원(5.2%)이었다. 반면, 출산·신생아 지원은 총 1,941억 원으로 전체 공통예산의 2.3%에 그쳤다.

한편, 공통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3조 8,872억 원으로, 매칭 예산 또한 양육비용 지원이 2조 5,984억 원(66.8%)으로 가장 많았으나, 영유아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과 초등학교 자녀 지원 등이 지방비 매칭 비중이 높았다. 중고등학교 자녀 지원은 전반적으로 취약하여 관련 사업수가 적고 예산 비중도 저조하였다.

〈표 III-2-6〉 전국 시·도별 출산·돌봄지원 분야의 공통사업 예산(2016)

단위: 개, 억 원, %

생애주기	지원 분야	사업수	돌봄 분야 예산 총액		지방비 예산	
			예산 총액	분야별 비중	지방비 예산	분야별 비중
	전체	398	87,148	100.0	38,872	100.0
출산 및 신생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41	778	0.9	422	1.1
	신생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36	250	0.3	142	0.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50	682	0.8	260	0.7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9	75	0.1	32	0.1
	기타	8	156	0.2	78	0.2
영유아기 자녀 :0~5세아	아동관련 수당 지원	32	16,604	19.1	5,670	14.6
	보육·교육서비스	75	56,664	65.0	25,984	66.8
	돌봄시간 지원	11	206	0.2	30	0.1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30	3,127	3.6	1,789	4.6
	기타	65	4,026	4.6	1,097	2.8
초등학교 자녀 :6~11세아	방과후 돌봄	36	4,561	5.2	3,361	8.6
	기타: 취약계층 지원	4	18	0.0	5	0.0
중고등 학령기 자녀 :12~17세아	교육비 지원	1	1	0.0	0	0.0

자료: 보건복지부(2017g).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재분석.

2016년 기준 지역별 출산·자녀 돌봄지원 분야 공통사업 예산은 경기도가 2조 3,417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2조 601억 원으로 다음을 이었다. 해당 지역은 인구 및 15세 미만 아동도 많은 지역으로 출산·돌봄지원 예산액 자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의 공통사업 돌봄 분야 예산 총액에서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65.4%(지방비 예산 1조 3,579억 원)로 매우 높은 지방비 매칭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지방비 매칭율이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출산·돌봄지원 예산 총액 1,717억 원 중 지방비 869억 원으로 50.6%의 매칭율을 보였다. 반면에 인천 지역의 출산·돌봄지원 예산 총액 4,931억 원 중 지방비는 970억 원(19.7%)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나타냈다.

〈표 III-2-7〉 전국 시·도별 출산·돌봄지원 분야 공통사업 예산(2016)

단위: 개, 억 원, %

구분	사업 수	돌봄 분야 예산 총액	지방비 예산액	지방비 비중
전국	398	87,148	38,872	44.6
서울	19	20,601	13,479	65.4
부산	20	3,687	797	21.6
대구	16	198	85	42.9
인천	9	4,931	970	19.7
광주	19	1,016	636	62.6
대전	28	3,228	1,397	43.3
울산	14	2,151	580	27.0
세종	13	17	8	47.1
경기	20	23,417	9,618	41.1
강원	15	2,860	1,379	48.2
충북	26	2,941	1,136	38.6
충남	14	3,128	1,143	36.5
전북	27	4,193	1,938	46.2
전남	108	6,963	2,678	38.5
경북	14	2,271	749	33.0
경남	17	3,829	1,411	36.9
제주	19	1,717	869	50.6

자료: 보건복지부(2017g),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재분석.

3) 출산·돌봄지원 분야 자체사업 추진 현황

출산·돌봄지원 분야의 자체사업은 90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별로는 경북 지역이 134개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109개, 부산 107개, 경남 105개 순이었다. 반면에 경기(8개), 대구(14개), 서울 지역(16개) 등은 자체사업 수가 적은 지역으로 나타난다.

양육 단계별로는 출산지원 및 신생아 지원이 511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영유아기 자녀에 대한 지원이 291개, 초등학교기 자녀 지원 86개, 청소년기 자녀 지원 20개 순이었다. 지원내용 측면에서 출산지원 및 신생아 지원 중 기타 지원을 제외하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가 186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유아기 자녀에 대한 아동관련 수당 지원이 68개, 돌봄시간 지원 58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51개 순이었다. 앞서 살펴본 공통사업(표 III-2-8 참조)이 양육비 지원과 보육·교육서비스 위주인 데 반해, 자체사업은 출산 및 신생아 지원에 보다 주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2-8〉 전국 시·도별 출산·돌봄지원 분야 자체사업 수(2016)

전체	출산 및 신생아 지원										영유아기				초등학교평기				중고등학교평기		단위: 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신생아 사친 예방적 건강 관리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고위험 산모·신생아 산모·신생아 지원	기타	아동 관련 상담 지원	세계 지원	보육 교육 서비스 지원	돌봄 시간 지원	간강 관리 및 의료 지원	현금/현물 지원	기타	방과후 돌봄	기타: 취약계층 지원	교육비 지원	기타					
																	30	186	3	241	
전국	908	51	30	186	3	241	68	2	40	58	35	88	18	37	31	16	4				
서울	16	0	1	0	0	1	0	0	4	3	1	5	0	1	0	0	0				
부산	107	4	0	20	1	43	6	0	2	14	3	9	1	3	1	0	0				
대구	14	1	1	3	0	2	0	0	2	1	0	1	1	0	1	1	0				
인천	25	1	0	9	0	4	5	0	2	0	1	2	0	1	0	0	0				
광주	32	3	0	3	0	6	4	0	0	5	0	3	3	4	1	0	0				
대전	18	1	0	3	0	3	3	0	1	1	0	5	0	1	0	0	0				
울산	26	1	2	3	0	7	3	1	4	0	0	0	1	3	0	1	0				
세종	17	0	1	2	1	1	0	0	3	2	0	1	1	1	3	1	0				
경기	8	0	0	1	0	0	0	0	2	0	0	5	0	0	0	0	0				
강원	61	0	2	18	0	19	4	0	0	2	1	5	2	3	1	4	0				
충북	70	4	0	13	0	15	7	0	3	6	2	7	2	1	7	3	0				
충남	88	6	3	13	0	18	4	0	4	2	10	10	1	10	5	2	0				

(표 III-2-8 계속)

전체	출산 및 신생아 지원				영유아기				초등학령기				중고등학령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생아 사전 예방적 건강 관리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고위험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기타	아동 관련 수당 지원	세계 지원	보육 교육 서비스 지원	돌봄 시간 지원	건강 관리 및 의료 지원	기타	현금/현물 지원	방과후 돌봄	기타: 취약계층 지원	교육비 지원	기타
전북	3	2	9	0	16	7	0	3	7	0	3	2	4	1	1	0
전남	12	7	30	0	34	5	0	3	2	8	4	2	2	0	0	0
경북	9	6	34	0	42	6	0	4	4	6	11	0	1	10	1	0
경남	5	5	23	1	27	13	0	1	7	2	14	0	0	1	2	4
제주	1	0	2	0	3	1	1	2	2	1	3	2	2	0	0	0

자료: 보건복지부(2017g),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재분석.

광역자치단체의 출산·돌봄지원 분야별 자체사업 예산(2016년도 기준)은 총 1조 8,189억 원으로, 영유아기 보육·교육서비스(누리과정 지원금 포함) 지원 예산이 1조 916억 원(60.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해당 비중은 공통사업 예산(65.0%)에 비해서는 약간 줄어든 반면, 출산 및 신생아 지원 예산은 9.9%로 두드러진 증가를 보인다. 지자체 자체사업 중 사업 수가 가장 많은 출산 및 신생아 지원 사업 중 기타 사업에는 출산지원금이나 출산용품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8.2%가 소요되었다. 즉, 지자체의 경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체적인 출산·돌봄지원 사업으로 일회성 출산지원금 및 출산용품 지원 등에 보다 주력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III-2-9〉 전국 시·도별 출산·돌봄지원 분야 자체사업 예산(2016)

단위: 개, 억 원, %

생애주기	지원 분야	사업수	돌봄 분야 자체사업 예산	
			예산 총액	분야별 비중
전체		908	18,189	100.0
출산 및 신생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51	21	0.1
	신생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30	33	0.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186	253	1.4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3	0	0.0
	기타(출산지원금, 출산용품 등)	241	1,500	8.2
	소계	511	1,807	9.9
영유아기 자녀 :0-5세아	아동관련 수당 지원	68	417	2.3
	세제지원	2	0	0.0
	보육교육서비스	40	10,916	60.0
	돌봄시간 지원	58	76	0.4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35	50	0.3
	기타	88	411	2.3
	소계	291	11,870	65.3
초등학교 자녀 :6-11세아	현금/현물 지원	18	2,164	11.9
	방과후 돌봄	37	1,684	9.3
	기타 : 취약계층 지원	31	242	1.3
	소계	86	4,090	22.5
중고등 학생 :12-17세아	교육비 지원	16	421	2.3

자료: 보건복지부(2017g).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재분석.

시·도별 출산·돌봄지원 분야 사업 및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자체사업은 과제 수는 많은 반면 예산규모는 적은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해당 사업이 일부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회성으로 추진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공통사업 중 지방비 예산과 자체사업 예산을 합한 출산·돌봄지원 분야 총 예산은 5조 7,061억 원이며, 서울 지역이 1조 4,929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도 지역이 9,763억 원이었다.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경우는 지방 예산의 대부분이 공통사업 중 지방비 예산액으로, 자체사업 예산은 서울 1,450억 원, 경기도 145억 원에 불과하였다. 반면, 경상북도(3,199억 원)와 충청남도(2,220억 원)의 경우에는 자체사업 예산이 이외 지역에 비해 큰 편에 속한다. 한편, 부산광역시도 공통사업 중 지방비 예산이 797억 원에 그친 반면, 자체사업 예산은 1,450억 원에 달하였고, 울산 지역의 경우도 자체사업 예산(1,526억 원)이 공통사업 중 지방비 예산(580억 원)에 비해 많았다. 이처럼 공통사업에 매칭된 지방비 예산에 비해 자체사업 예산이 큰 지역은 경상북도(3,199억 원), 충청남도(2,220억 원), 제주도(1,038억 원), 대구광역시(859억 원), 세종시(311억 원) 등이었다.

〈표 III-2-10〉 전국 시·도별 출산·돌봄지원 분야 사업 및 예산(2016)

단위: 개, 억 원, %

	공통사업		자체사업		지방예산 총액
	사업수	공통사업 중 지방비예산 총액	사업수	자체사업 예산 총액	
전국	398	38,872	908	18,189	57,061
서울	19	13,479	16	1,450	14,929
부산	20	797	107	1,453	2,250
대구	16	85	14	859	944
인천	9	970	25	55	1,025
광주	19	636	32	104	740
대전	28	1,397	18	165	1,562
울산	14	580	26	1,526	2,106
세종	13	8	17	311	319
경기	20	9,618	8	145	9,763
강원	15	1,379	61	300	1,679
충북	26	1,136	70	899	2,035
충남	14	1,143	88	2,220	3,363
전북	27	1,938	58	1,379	3,317
전남	108	2,678	109	2,770	5,448

(표 III-2-10 계속)

	공통사업		자체사업		지방예산 총액
	사업수	공통사업 중 지방비예산 총액	사업수	자체사업 예산 총액	
경북	14	749	134	3,199	3,948
경남	17	1,411	105	320	1,731
제주	19	869	20	1,038	1,907

자료: 보건복지부(2017g).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재분석.

다. 시·도별 출산·돌봄지원 정책 사례

여기서는 2016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을 토대로 합계출산율 상위 10개 지역과 출생아수 상위 10개 지역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출산 및 육아지원을 비교 검토하였다¹¹⁾. 앞서 다룬 바와 같이 출생아수가 많은 지역은 경기, 서울, 경남 순이며, 합계출산율은 세종시와 전남 지역이 높은 반면 서울 지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보건복지부, 2017h).

여기서는 특히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한 사업과 출생아수가 많은 지역의 다양한 사업내용에 주목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 지역의 확대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해당 적용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사업은 정책 수요자의 필요도와 도움 정도 평가와, 정책 전문가의 출산율 제고 효과 평가 조사 항목에 반영하였다.

1) 합계출산율 상위 지역의 출산·육아지원 사업

가) 전반

합계출산율 상위 10개 지역의 출산·육아지원은 전반적으로 육아지원 분야 보다는 출산 지원에 치중된 경향이 뚜렷하다. 즉 출산지원금과 출산용품, 신생아 및 산모의 건강관리, 신생아 보험료 지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이 주를 이룬다. 이들 지원의 자격요건도 지역별로 다양하여 지원 시점 또는 출생 시점으로 거주기간이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으로 나타난다. 또한 적용대상아동의 출생순위가 적용되는 사업이 다수를 차지한다. 해당 기준은 전남 해남군의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 부담금 지원은 셋째아 이상부터 지원되나, 전남 영암군

11) 전국 10개 상위지역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는 〈부록 표 1〉 참조.

의 출산용품 지원대상은 둘째아 이상이다.

한편 사업내용 전반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서 언급된 주된 지원들이 동시에 추진된 지역은 찾아보기 힘들다. 전남 해남군에서는 현금 및 현물지원보다는 서비스 지원 위주인 반면, 경남 산천군에서는 출산장려금과 출산용품 지원이 주를 이룬다. 한편 충남 당진시는 자체사업이 전무하였다. 그 밖에도 경남 거제시의 경우는 장애아가정이나 결혼이민자 가정 그리고 셋째 자녀 이상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된다.

〈표 III-2-11〉 합계출산율 상위지역의 출산·육아 지원내용_전반

지역명	사업명	지원대상 및 기준
전남 해남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대상자 및 셋째아 이상 출산자 소득초과자
	산모·아기사랑택배지원 사업	관내 출산가정
	신생아 작명	작명을 원하는 출산가정
	신생아 양육비 지원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 미혼모 출생아, 12개월 미만 영아를 둔 가정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청자 중 셋째아 이상
강원 인제군	출산장려금	출생일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고 있는 영아의 부모
	셋째아 안전보험료 지원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출생등록을 한 가정
전남 영암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모유 유축기 대여	모유 수유가 어려운 산모
전남 장성군	출산축하용품 지원	관내 임부 등록된 출산가정
	다자녀 출산용품 지원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국비 지원 제외된 관내 주소를 둔 출산 가정
부산 강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주민등록상 부 또는 모 중 1인이 출산 1개월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둘째이후 출생아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비 지원	주민등록상 부 또는 모 중 1인이 출산 1개월 전부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셋째이후 출생아
강원 화천군	출산장려금 지급	부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입양아) 역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표 III-2-11 계속)

지역명	사업명	지원대상 및 기준
경남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로 산모가 신생아 출산일 1년 전부터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
	결혼이민여성 출산지원금 지급	관내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중 자녀를 출산한 자
	출산가구 중앙재봉투 지원	셋째아 이상 출산가구
	셋째 자녀 출산용품 지원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아
경남 산청군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일 현재 3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출산축하용품 지원	관내 주소를 둔 등록 임부
	셋째이상 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	관내 주소를 둔 셋째이상 출생아
전남 광양시	유축기 대여	관내 주소를 둔 출산모

자료: 보건복지부(2017h).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재구성.

나) 세부 사업별

합계출산율 상위 지역의 출산·양육지원 세부내용을 출산용품 지원, 출산장려금(일시금), 양육비 지원(분할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보험료 지원으로 구분하여 해당 지역별로 지원대상 및 기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출산·육아용품 지원의 경우는 출산축하용품과 유축기 대여가 주를 이루며, 지원대상은 각 지역별로 매우 다양하다(표 III-2-12 참조). 즉 경남 산청군과 전남 광양시는 첫째 자녀부터 적용되는 반면, 전남 장성군에서는 넷째아 이상, 경남 거제시에서는 셋째아 이상, 전남 영암군에서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지원된다.

일시금 형태의 출산축하금 또는 출산장려금의 경우는 적용대상의 지역 내 거주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이전, 1년 이전으로 매우 다양하고 거제시에서는 장애인 가정과 결혼이민자 가정에 한하여 지원하며, 모든 지역에서 출생순위와는 상관없이 적용된다(표 III-2-13 참조). 특히 1인당 지원 수준은 매우 다양하여, 많게는 100만 원(경남 거제시의 장애아가정 대상)에서 적게는 10만 원 선(경남 산청군, 경남 거제시의 결혼이민여성 대상)으로 나타난다.

〈표 III-2-12〉 합계출산율 상위지역의 출산·육아 지원내용_출산용품

지역명	사업명	지원대상 및 기준	1인당 지원액 (단위: 천 원)
전남 영암군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76
	모유 유축기 대여	모유 수유가 어려운 산모	133
전남 장성군	출산축하용품 지원	관내 임부 등록된 출산가정	50
	다자녀 출산용품 지원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	149
경남 거제시	출산가구 종량제 봉투 지원	셋째아 이상 출산가구	6
	셋째 자녀 출산용품비 지원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아	50
경남 산청군	출산축하용품 지원	관내 주소를 둔 등록 임부	50
전남 광양시	유축기 대여	관내 주소를 둔 출산모	25

자료: 보건복지부(2017h).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재구성.

〈표 III-2-13〉 합계출산율 상위지역의 출산·육아 지원내용_출산축하금(일시금)

지역명	사업명	지원대상 및 기준	1인당 지원액 (단위: 천 원)
강원 인제군	출산장려금	출생일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고 있는 영아의 부모	632
경남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로 산모가 신생아 출산일 1년 전부터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	1,000
	결혼이민여성 출산지원금 지급	관내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중 자녀를 출산한 자	100
경남 산청군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일 현재 3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100

자료: 보건복지부(2017h).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재구성.

분할금 방식의 양육비는 적용대상의 거주 요건이 출산장려금에 비해 전반적으로 관대하나, 부산 강서구의 경우는 출생순위 기준이 적용되어 둘째 자녀부터 지원되고,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급여가 증가한다(표 III-2-14 참조). 지원 수준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여, 전남 해남군에서는 12개월 미만 아동에게 3,148,000원을 지원한다.

산모·신생아를 대상으로 건강관리사 파견 사업과 신생아의 건강보험료가 주를 이룬다(표 III-2-15, III-2-16 참조). 이들 지원은 앞서 출산축하금 등에 비해 그 적용기준이 엄격하여 셋째 자녀부터 지원된다. 그 밖에도 전남 해남군 지역의 산모·아기사랑 택배지원과 신생아 작명 사업이 있다.

〈표 III-2-14〉 합계출산율 상위지역의 출산·육아 지원내용_양육비(분할금)

지역명	사업명	지원대상 및 기준	1인당 지원액 (단위: 천원)
전남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 미혼모 출생아, 12개월 미만 영아를 둔 가정	3,148
전남 영암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일시금: 826 분할금: 101
부산 강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주민등록상 부 또는 모 중 1인 이상이 출산 1개월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둘째이후 출생아	둘째아: 500 /셋째이후 출생아: 1,200
강원 화천군	출산장려금 지급	부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입양아) 역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500

자료: 보건복지부(2017h),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재구성.

〈표 III-2-15〉 합계출산율 상위지역의 출산·육아 지원내용_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역명	사업명	지원대상 및 기준	1인당 지원액 (단위: 천원)
전남 해남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대상자 및 셋째아 이상 출산자 소득초과자	137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청자 중 셋째아 이상	33
전남 장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국비 지원 제외된 관내 주소를 둔 출산 가정	483
부산 강서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비 지원	주민등록상 부 또는 모 중 1인 이상이 출산 1개월 전부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셋째이후 출생아	2~2.5

자료: 보건복지부(2017h),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재구성.

〈표 III-2-16〉 합계출산율 상위지역의 출산·육아 지원내용_보험료

지역명	사업명	지원대상 및 기준	1인당 지원액 (단위: 천원)
강원 인제군	셋째아 안전보험료지원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출생등록을 한 가정	71
경남 산청군	셋째이상 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	관내 주소를 둔 셋째이상 출생아	30

자료: 보건복지부(2017h),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재구성.

2) 출생아수 상위 지역의 출산·육아지원 사업

가) 전반

출생아수 상위 지역의 출산·육아지원은 전반적으로 앞서 다른 합계출산율 상위 지역에 비해 사업내용이 매우 다양하다. 이를테면 도서대여 및 독서프로그램, 장난감 대여서비스, 수강료 등 교육비 지원, 다자녀 대상 복지서비스 이용료 무료(경기 부천시) 등이 추진되었다.

또한 이들 모든 지역에서는 출산장려금이 지급되는데, 특히 경남 창원시 등에서는 출산장려금과 출산용품이 동시에 지원된다. 그 밖에도 양육비용 지원은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한정되지 않고, 수강료 면제(경기 성남시)와 유아교육비 지원(경기 수원시) 등이 이루어졌다.

〈표 III-2-17〉 출생아수 상위지역의 출산·육아 지원내용_전반

지역명	사업명	지원대상 및 기준
경기 수원시	셋째 자녀이상 출산지원금 지급	출생(입양)일 기준 180일(전,후)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 자녀 이상 및 입양아동의 부모(보호자)
	직원 임신·출산 복지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직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장애인 가정의 부(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수원시 거주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 자녀 이상 유아교육비 지원	관내 사립유치원 재원 아동 중 셋째아 이상 아동
	해피아이 장난감도서관 운영	수원시 거주 만 5세 이하 아동
	여성공직자 맘쉼터 운영	시 소속 여성공직자
	직장어린이집 운영	공직자 자녀 및 수원시 출자 출연기관, 저소득층 자녀
경남 창원시 (창원,마산,진해)	공직맘, 공직아빠와 함께 하는 아이 즐거운 체험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공직자
	출산 축하금	둘째아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출산기념품/모유유축기	등록임산부 중 출산부
	출산육아용품 지원	관내 주소를 둔 등록 임부
	유축기 대여	관내 주소를 둔 등록 임산부

(표 III-2-17 계속)

지역명	사업명	지원대상 및 기준
경기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	셋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
	도서관 품앗이 육아 우리아이 첫책, 북스타트	용인시 3개월 ~ 35개월 영유아 및 양육자
경기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자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의 둘째 이상인 자녀로 거주조건을 충족 시 신청
	맞춤형복지제도 출산축하 포인트 지급	성남시 소속 공무원 등 출산 시 축하포인트 지급
	산후조리비 지원	부 또는 모가 출산일 기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출생아가 관내에 출생신고 된 자(다문화 가족포함)
	다자녀 아동양육수당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셋째 이상 자녀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취학 전 아동(전입신고 후 해당 아동 있는 경우 신청 가능)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셋째 이상 자녀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12개월 미만 출생(입양)아(전입신고 후 해당아동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수강료 면제	셋째아 이상(막내가 초등학교까지)
	수강료 면제	셋째아 이상 가정 부모
	수강료 감면	다자녀가정
	취득세 감면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영유아건강관리	만 0세~6세아
충북 청주시	출산장려금(자체)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
	가정방문보육 바우처	취업부모 및 맞벌이 가정(0~5세)
	청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보호자
경기 고양시	셋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출산일 이전부터 고양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셋째이상 출생아 가정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고양시에 계속 거주한 장애인 가정
	다둥이 행복꾸러미 지원	출산일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넷째아 이상 출생아 가정

(표 III-2-17 계속)

지역명	사업명	지원대상 및 기준
경기 부천시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부모 중 1인이 출산 3개월 전 주민 등록상 부친 시민
	출산지원금 지급	부 또는 모가 1년 전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육아·출산 복지 포인트 지원	공무원, 공직자, 시의원 등 맞춤형복지 대상자
	다자녀 공직자 인사 인센티브	다자녀 남·여 공무원
	모든 아이에게 북스타트 서비스	모든 신생아와 만1세 아기
	엄마손 프로젝트 가사지원 서비스	부천시 거주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가구
	다자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3자녀 이상 가족
	임산부 및 다자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임산부 및 최근 3년 3자녀 이상 가구원
경기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생아의 부모가 시에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거주하고 있는 자
	셋째아 이상 미아방지 목걸이 지원	2016.1.1일 이후 중·고등학교 입학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출생 순위가 셋째아 이상/ 중·고등학교 입학년도 기준으로 전년도 1월 1일 이전 화성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지속 거주하고 있는 자
	가족육아품앗이 공동방	자녀를 양육하는 화성시민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화성시 만 18세 미만인 자녀를 3자녀 이상 둔 가정
충남 천안시	(다자녀)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표 III-2-17 계속)

지역명	사업명	지원대상 및 기준
서울 송파구	출산축하금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송파구에 거주하며 둘째 이후 자녀 출산가정으로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자
	구립산모 건강증진센터	송파구 거주 산모
	다동이 안심보험	송파구 거주 출생 신고한 셋째아
	기업과 함께하는 1사1다자녀가정 결연사업	송파구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
	아기사랑 나눔센터	송파구민으로서 만3세 이하의 자녀 양육가정

자료: 보건복지부(2017h).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재구성.

나) 세부 사업별

출생아수 상위 지역의 출산·양육지원 세부내용을 출산용품, 출산장려금(일시금), 양육비(분할금), 기타 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원대상 및 기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출산용품 및 유축기 제공과 비교하여 출산장려금이 보다 많은 지역에서 추진되었다. 즉 출산지원금은 대부분 지역에서 이루어지나, 그 기준은 지역별로 매우 상이하다. 지원대상은 주로 셋째 자녀 이상이며, 거주 기간도 매우 다양한 지원기준이 적용된다(표 III-2-18 참조). 1인당 지원액은 경남 창원시가 2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충북 청주시의 경우는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급여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표 III-2-19 참조). 또한 양육비 지원은 경기 수원시와 성남시에서 추진되었는데, 급여액은 각각 1,194,000원과 100,000원으로 그 격차가 두드러졌다.

그 밖에도 복지 포인트 지급, 장난감 도서관 운영, 각종 체험프로그램 제공, 영유아 건강관리, 산후조리비 지원, 북스타트 사업, 품앗이 육아, 가정방문서비스, 신생아와 산모 대상 독감 예방접종 등이 이루어졌다(표 III-2-21 참조).

〈표 III-2-18〉 출생아수 상위지역의 출산·육아 지원내용_출산용품

지역명	사업명	지원대상 및 기준	1인당 지원액 (단위: 천원)
경남 창원시	출산기념품 / 모유유축기	등록임산부 중 출산부	40
	출산육아용품 지원	관내 주소를 둔 등록 임부	20
	유축기 대여	관내 주소를 둔 등록 임산부	17
경기 고양시	다둥이 행복꾸러미 지원	출산일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넷째아 이상 출생아 가정	-
서울 송파구	아기사랑 나눔센터	송파구민으로서 만3세 이하의 자녀 양육가정	5

자료: 보건복지부(2017h),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재구성.

〈표 III-2-19〉 출생아수 상위지역의 출산·육아 지원내용_출산축하금(일시금)

지역명	사업명	지원대상 및 기준	1인당 지원액 (단위: 천원)
경기 수원시	셋째 자녀이상 출산지원금 지급	출생(입양)일 기준 180일(전,후) 주민등록 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 자녀 이상 및 입 양아동의 부모(보호자)	1,110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장애인 가정의 부(신생아 출생일 기준 6 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수원시 거 주자)	728
경남 창원시	출산 축하금	둘째아이 출생한 가정/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300 2,000
경기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	셋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	1,128
경기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자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의 둘 째 이상인 자녀로 거주조건을 충족 시 신청	497
충북 청주시	출산장려금 (자체)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 준으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 를 둔 경우	첫째 300 둘째 500 셋째이상 1,000 1인당 지원액 305
경기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부 또는 모가 1년 전 부천시에 주민등록 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500

(표 III-2-19 계속)

지역명	사업명	지원대상 및 기준	1인당 지원액 (단위: 천원)
경기 고양시	셋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출산일 이전부터 고양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셋째 자녀 이상 출생아 가정	500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부 또는 모가 1년이상 고양시에 계속 거 주한 장애인 가정	1,000
경기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부모가 시에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신생아 의 출생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거주 하고 있는 자	1,142
충남 천안시	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월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 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1,000
서울 송파구	출산축하금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송파구에 거 주하며 둘째 이후 자녀 출산가정으로 출 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자	335

자료: 보건복지부(2017h).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재구성.

〈표 III-2-20〉 출생아수 상위지역의 출산·육아 지원내용_양육비(분할금)

지역명	사업명	지원대상 및 기준	1인당 지원액 (단위: 천원)
경기 수원시	셋째 자녀이상 유아교육비 지원	관내 사립유치원 재원 아동 중 셋째아 이상 아동	1,194
경기 성남시	다자녀 아동양육수당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셋째 이상 자녀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취학 전 아동(전입신고 후 해당 아동 있는 경우 신청 가능)	100

자료: 보건복지부(2017h).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재구성.

<표 III-2-21> 출생아수 상위지역의 출산·육아 지원내용_기타

지역명	사업명	지원대상 및 기준	1인당 지원액 (단위: 천원)
경기 수원시	직원 임신·출산 복지포인트 지급	임신·출산직원	-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326
	해피아이 장난감도서관 운영	수원시 거주 만 5세 이하 아동	206
	여성공직자 맘캡터 운영	시 소속 여성공직자	-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 공직자 자녀 및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저소득층 자녀	6,400
	공직맘, 공직빠와 함께하는 아이 즐거운 체험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공직자	95
경기 용인시	도서관 품앗이 육아 우리아이 챗책, 북스타트	용인시 3개월~35개월 영유아 및 양육자	8
경기 성남시	맞춤형복지제도 출산 축하 포인트 지급	성남시 소속 공무원 등 출산 시 축하포인트 지급	165
	산후조리비 지원	부 또는 모가 출산일 기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출생아가 관내에 출생신고 된 자(다문화 가족포함)	500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셋째 이상 자녀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12개월 미만 출생(입양)아 (전입신고 후 해당 아동 있는 경우 신청 가능)	720
	수강료 면제	셋째아 이상(막내가 초등학교까지)	-
	수강료 면제	셋째아 이상 가정 부모	-
	수강료 감면	다자녀가정	-
	취득세 감면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
	영유아 건강관리	만 0세~6세아	27
충북 청주시	가정방문보육 바우처	취업부모 및 맞벌이 가정(0~5세)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보호자	-

(표 III-2-21 계속)

지역명	사업명	지원대상 및 기준	1인당 지원액 (단위: 천원)
경기 부천시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부모 중 1인이 출산 3개월 전 주민 등록상 부천 시민	25
	육아·출산 복지 포인트 지원	공무원, 공직자, 시의원 등 맞춤형복지대상자	160
	다자녀 공직자 인사 인센티브	다자녀 남·여 공무원	-
	모든 아이에게 북스타트 서비스	모든 신생아와 만 1세 아기	31
	엄마손 프로젝트 가사지원 서비스	부천시 거주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780
	다자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3자녀 이상 가족	비예산
	임산부 및 다자녀 계절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임산부 및 최근 3년 3자녀 이상 가구원	7
경기 화성시	셋째아 이상 미아방지 목걸이 지원	2016.1.1일 이후 중·고등학교 입학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출생 순위가 셋째아 이상/ 중·고등학교 입학년도 기준으로 전년도 1월 1일 이전 화성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지속 거주하고 있는 자	44
	가족육아 품앗이 공동방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자녀를 양육하는 화성시민 화성시민 중 만 18세 미만인 자녀를 3자녀 이상 둔 가정	- -
	송파 구립산모 건강증진센터	송파구 거주 산모	55.3
서울 송파구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	송파구 거주 출생 신고한 셋째아	16
	기업과 함께하는 1사1다자녀가정 결연사업	송파구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	100

자료: 보건복지부(2017h),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재구성.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돌봄지원 분야 연계

앞 절에서 살펴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돌봄지원을 정부사업의 연계 차원에서 종합하여 주목할 바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양육양육 단계별 재정투자 비중 및 수준을 통해 중앙사업의 기초를 반영한 공통사업이 이루어지는지,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사업이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이들 돌봄지원의 지역적 형평성은 보장되는지를 다루었다.

가. 양육 단계별 재정투자 비중 및 수준

저출산 대응의 효율성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연계는 중앙정부가 주요 방향성 및 중점과제를 제시하면 지방정부는 지역 여건에 맞게 이를 구체화하고 이외에도 지역 여건을 반영한 추가적인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각 시·도별 돌봄지원의 양육 단계별 재정투자 및 지원 수준과 자체사업 투자의 특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자녀양육 단계별 재정투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에서 영유아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지방정부의 경우에도 공통사업과 자체사업 모두에서 영유아기 위주로 지원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영유아기 돌봄지원의 지방비 예산 비중은 공통사업의 경우는 88.9%, 자체사업의 경우는 65.3%에 달한다. 그러므로 출산율 제고 효과 측면에서 자녀돌봄 지원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에서 영유아기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으로는 출산 및 신생아 지원 분야의 재정투자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공통사업 예산 비중은 2.4%에 불과하였으나, 자체사업의 해당 비중은 9.9%로 나타난다. 여기에는 출산지원금과 출산용품 지원이 포함되는 기타 지원이 8.2%를 차지하여 출산에 대한 현금 및 현물 지원이 주된 자체사업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지원내용의 측면에서 영유아기 자녀에게는 이외 양육단계에 비해 다양한 돌봄지원을 포괄하고 있으나, 양육비용 지원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는 영유아기의 다양한 지원 중에서도 단연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공통사업의 경우는 66.8%, 자체사업의 경우는 60.0%로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는 아동관련 수당은 공통사업의 경우 14.6%, 자체사업의 경우는 2.3%, 영유아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은 각각 4.6%와 2.3%로 나타난다.

반면에 초등학교학령기의 자체사업으로는 현금 및 현물지원이 돌봄지원 분야 예산의 11.9%를 차지하여 지방정부의 자체 노력으로 파악된다. 반면에 중·고등학교학령기의 교육비 지원과 돌봄지원 서비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모두 취약하여 전반적으로 가장 저조한 사업 분야로 파악된다.

셋째, 돌봄지원이 지역적 격차도 두드러진다. 지방비 예산 중 돌봄지원 분야의 비중은 서울 지역이 65.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광주 지역이 62.6%인 반면, 인천 지역은 19.2%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2016년 기준 합계출산율을 감안하면, 부산과 대구 지역은 모두 평균 이하 지역이나, 돌봄지원 분야의 지방비 재정투자 비중인 각각 21.6%와 42.9%로 차이를 보이며, 평균 대비 높은 합계출산율을 보였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관되게 영유아기의 보육·교육서비스 지원에 주력하는 가운데, 지방정부는 출산지원금과 출산용품 지원, 초등학교학령기의 현금 및 현물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위주로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중·고등학교학령기 지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해당 시기에 반영되지 못한 돌봄지원 요구가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각 지역별로 상이한 돌봄지원의 재정투자 수준에 의하면, 지역 간 돌봄지원의 형평성 제고를 노력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나. 자체사업의 세부내용

합계출산율이 높거나 출생아수가 많은 지역의 자체사업은 중앙정부 사업 및 공통사업과는 구분되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 각 지역별로 고유한 사업이 추진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는 중앙정부 사업과 비교하여 출산지원에 주력한 경향이 뚜렷하며, 이때 지원대상은 주로 다자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별로는 현물 및 현금지원과 서비스 지원이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는 드물어서 주된 지원방식은 각기 달리 나타난다. 이는 합계출산율의 제고 효과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별도의 지원내용은 없는 가운데, 출산지원에 보다 주력한 결과임을 암시한다.

다음으로 출생아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역과 비교하여 다양한 돌봄지원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돌봄지원의 범위도 영유아기에 한정되지 않고 보다 확장된 측면이 있다. 이를테면 영유아기 자녀 위주인 양육비용 지원

의 경우 학령기 자녀를 위한 수강료 면제 등이 추진되었다.

또한 출산용품과 출산장려금 지원은 해당 지역 모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각종 돌봄지원 욕구가 영유아기를 넘어서 나타나는지, 이들 지역의 다양한 돌봄지원이 보편적인 수요로서 존재하는지, 그리고 출산용품이나 출산장려금이 출산 시기를 앞당기고 추가출산을 유도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중앙정부와의 연계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본다.

IV.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 평가와 개선 요구

이 장에서는 예비부모 및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결과를 토대로, 양육단계에 따른 자녀돌봄 시 애로사항, 자녀돌봄 지원 정책 및 제도의 이용 경험 및 만족도와 도움 정도, 그리고 각 양육 단계별 현행 돌봄지원의 필요도와 추가 지원요구를 파악하였다.

1. 출산 의향과 자녀양육 단계별 애로사항

추가출산을 포함한 자녀 출산 의향과 미의향 사유, 그리고 각 양육단계의 고유한 자녀돌봄 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였다.

가. 추가출산 의향 및 희망자녀수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1명 이상 둔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출산 의향을 질문한 결과, 출산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9.3%이고, 65.3%는 추가출산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와 자녀가 1명인 가구에서 추가출산 의향이 높아 각각 32.3%와 34.6%의 응답율을 나타냈다(표 IV-1-1 참조). 또한 현재 자녀가 희망하는 자녀수라고 응답한 비율은 78.2%로 조사되었으며, 해당 비율은 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희망 자녀수가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은 현재 자녀수가 1명인 경우에서 38.2%로 조사되었는데, 이들이 출산지원 핵심 대상임을 짐작할 수 있다(표 IV-1-2 참조).

한편 현재 자녀수가 희망하는 자녀수가 아닌데도 추가출산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양육비 부담이 53.1%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직장생활과 자녀양육의 병행 어려움이 21.1%로 조사되었다(표 IV-1-3 참조). 양육비 부담을 추가출산의 주된 방해 요소로 응답한 비율은 월 가구소득이 낮고, 남성, 홀별이 가구, 그리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경제적 지원에 따른 출산율 제고 효과의 주요대상이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

구임을 시사한다. 반면에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서 각각 34.6%와 38.0%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가정 양립지원의 주요 대상이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와 맞벌이 가구임을 확인시켜 준다. 그밖에도 자녀를 혼자 돌보기 힘들어서 추가출산을 포기하려는 경우는 여성과 자녀 1명인 경우에서 평균보다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에게 전가된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육아지원의 대상을 첫째 자녀부터 포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표 IV-1-1〉 추가출산 의향

구분	단위: %(명)			
	예	아니오	모르겠다	계(수)
전체	19.6	65.3	15.1	100.0(900)
생애 단계별				
영유아자녀	32.3	44.7	23.0	100.0(300)
초등자녀	18.3	68.3	13.3	100.0(300)
중고등자녀	8.0	83.0	9.0	100.0(300)
자녀수				
1명	34.6	45.2	20.2	
2명	11.4	75.9	12.7	100.0(347)
3명	2.9	88.6	8.6	100.0(474)
4명 이상	0.0	100.0	0.0	100.0(70)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표 IV-1-2〉 현재 자녀의 희망자녀수 여부

구분	단위: %(명)		
	예	아니오	계(수)
전체	78.2	21.8	100.0(588)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70.4	29.6	100.0(27)
400만원 이하	76.8	23.2	100.0(220)
600만원 이하	79.6	20.4	100.0(226)
600만원 초과	80.0	20.0	100.0(115)
자녀수			
1명	61.8	38.2	100.0(157)
2명	85.0	15.0	100.0(360)
3명	82.3	17.7	100.0(62)
4명 이상	66.7	33.3	100.0(9)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표 IV-1-3〉 희망자녀수보다 부족하나 추가출산 의향이 없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양육비가 부담 되어서	직장생활 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워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자녀를 혼자 돌보기 힘들어서	기타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맡고 말길 데가 없어서	구직활동 또는 직장 복귀를 하려고	계수
전체	53.1	21.1	7.8	4.7	4.7	4.7	3.1	0.8	1000(128)
생애 단계별									
영유아자녀	61.5	34.6	0.0	0.0	0.0	0.0	3.8	0.0	1000(26)
초등자녀	52.0	20.0	6.0	6.0	4.0	6.0	4.0	2.0	1000(50)
중고등자녀	50.0	15.4	13.5	5.8	7.7	5.8	1.9	0.0	1000(52)
성별									
남자	67.1	15.1	5.5	0.0	6.8	4.1	1.4	0.0	1000(73)
여자	34.5	29.1	10.9	10.9	1.8	5.5	5.5	1.8	1000(55)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75.0	12.5	0.0	0.0	0.0	0.0	0.0	12.5	1000(8)
400만원 이하	56.9	15.7	7.8	7.8	2.0	7.8	2.0	0.0	1000(51)
600만원 이하	54.3	21.7	6.5	4.3	8.7	2.2	2.2	0.0	1000(46)
600만원 초과	34.8	34.8	13.0	0.0	4.3	4.3	8.7	0.0	1000(23)
맞벌이가구 여부									
맞벌이	46.0	38.0	4.0	2.0	4.0	2.0	4.0	0.0	1000(50)
홀벌이	57.7	10.3	10.3	6.4	5.1	6.4	2.6	1.3	1000(78)
자녀수									
1명	45.0	26.7	10.0	8.3	5.0	1.7	3.3	0.0	1000(60)
2명	59.3	16.7	5.6	0.0	5.6	9.3	3.7	0.0	1000(54)
3명	63.6	18.2	9.1	9.1	0.0	0.0	0.0	0.0	1000(11)
4명 이상	66.7	0.0	0.0	0.0	0.0	0.0	0.0	33.3	1000(3)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여성에게 부여된 육아부담이 결과적으로 추가출산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은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면담자 8은 자녀양육을 홀로 책임져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는 첫째 자녀 출산에서부터 불거지는데,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돌봄지원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도한 육아스트레스가 야기된다는 것이다. 또한 면담자 7과 3은 이처럼 과중한 육아부담으로 추가출산보다는 적은 수의 자녀에 대한 양질의 양육을 선택하게 한다고 언급하였다.

출산 육아가 오롯이 개인의 몫이라는 게 제일 힘든 부분이죠. 정보를 알아보는 것부터 고통을 감내하고 이런 모든 게 다 개인의 몫인 거예요. 그 고통을 알아주

지도 않고, 임신 출산 육아에서 오는 모든 고통이 다 개인의 몫, 더 축소를 하면 여자의 몫.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심리적인 우울감도 심하고, 저 같은 경우는 경력 단절이 됨으로 인해서 제 자아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병행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중략... 저는 첫아이를 독박육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아이를 더 가져서 키우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면담자 8)

지금 첫째 키우기도 힘들고요. 왜냐면 제가 친정어랑 가까이 살지만 친정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고 있어요. 제가 반대했어요. 엄마가 제가 낳은 아이까지 키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우리가 낳았으니까 우리가 키워야지, ... (중략) ... 이 아이한테만 들어가는 집중도 굉장히 저는 크거든요. 아이가 한 명 더 생기면 분명 분산이 될 것 같고, 둘 다 못해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경제적인 부분. 아이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둘째아이도 마찬가지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원금이 나와도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한 명 있을 때는 작은 집에 살면 되지만 둘이면 또 넓은 집으로 가야되는 공간적인 면, 집도 문제고. 그리고 만약 아이를 하나 더 낳게 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이 줄어들테고. ... 중략 ... 지금 아이를 다시 가져서 또 4살 될 때까지 다시 그 시간을 가야한다는 게 쉬운 선택은 아닌 거 같아요. (면담자 7)

지금도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잘하고 있나? ... (중략) ... 아이를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초반에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거 때문인 건지 아니면 그거랑 상관없이 제 성격 때문인 건지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를 키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다른 아이를 낳으면 더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 ... 후략 ... (면담자 3)

추가출산을 꺼리는 대표적인 이유로서 경력단절에의 우려를 들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경력단절을 경험한 면담자 13 등은 공통적으로 장시간 근로가 자녀돌봄을 어렵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회사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flexible time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 (중략) ...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9시까지 출근하려면 최소한 7시 반이나 8시에 나가야 되는데 그 때 유치원이 문을 안 열어요.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은 유치원에 보내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종일제를 해준다고 해도 6시에는 데리러 와야 되기 때문에 맡기는 것도 안 되고 데리고 오는 것도 안돼요. 그래서 어딘가를 보내기 시작한다는 걸 하면 그 때부터는 직장을 완전히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 (중략) ... 우리 때 상황하고 지금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노동시간이에요. (면담자 13)

저도 결혼 전엔 아이 셋 낳고 싶었어요. ... (중략) ... 일단 임신하는 순간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 하고, 워킹맘 생활을 하면서 남편이랑 빠지게 느낀 게 양육자가 분명 우리인데 우리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버거운 거예요. 둘째를 포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애하고 보내는 시간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과연 둘째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 부족한 시간을 심지어 쪼개서 이 둘을 기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 … 후략 … (면담자 5)

자녀돌봄 시간에 대한 수요는 맞벌이 가구의 주된 요구로 파악되므로, 특히 이들의 미취학 자녀에 대한 돌봄시간이 보장되는 근로환경의 조성이 요구된다.

오후 시간에 애를 돌보는 문제, 저희가 매일 일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을 줄여야겠다는 생각과, 또 만약에 풀타임으로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 용기를 거의 내지 못 하고 있는데 … (중략) … 사실 도우미에 대한 불신이 있나 봐요. (면담자 4)

일단은 퇴근도 너무 늦고요. 아이를 직접적으로 부모가 케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출산도 당연히 주저하게 되는 거죠. (면담자 5)

나아가 양육비가 부담되어서 추가출산을 기피하는 경우, 국가에서 양육비를 지원한다면 추가출산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47.1%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표 IV-1-4 참조). 해당 응답율은 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 양육비 지원을 확대할 경우 저소득층 가구 위주로 출산을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표 IV-1-4〉 양육비 지원 시 추가출산 의향 여부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수)
전체	47.1	52.9	100.0(68)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50.0	50.0	100.0(6)
400만원 이하	44.8	55.2	100.0(29)
600만원 이하	60.0	40.0	100.0(25)
600만원 초과	12.5	87.5	100.0(8)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면담자 12는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는 자녀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이 추가출산의 주된 방해 요인임을 확인시켜 준다.

교육비나 키우는 데 돈이 많이 들어서 맞벌이를 안 하면 안 되는 집인데 애들이 많아지면 당장은 일을 못하잖아요. 초등학교 갈 때 까지 10년은 일을 못하니깐 그것도 걱정이고. (면담자 12)

한편 예비부모를 포함하여 희망하는 자녀수는 평균 2.04명이며, 예비부모의 평균 희망자녀수가 1.81명으로 가장 적은 수준을 보이는데, 이는 저출산 대응의 주요 대상으로 이들이 적극적으로 포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표 IV-1-5〉 희망자녀수

단위: %(명)

구분	1명	2명	3명	4명 이상	평균(명)	계(수)
전체	20.3	58.5	18.4	2.8	2.04	100.0(1164)
생애 단계별						
예비부모	32.0	57.0	9.3	1.7	1.81	100.0(300)
영유아자녀	16.2	56.4	24.1	3.4	2.15	100.0(291)
초등자녀	14.8	59.5	21.3	4.5	2.17	100.0(291)
중고등자녀	17.7	61.3	19.1	1.8	2.06	100.0(282)
자녀수						
1명	39.2	53.6	6.6	0.6	1.69	100.0(334)
2명	1.7	71.6	24.5	2.2	2.27	100.0(458)
3명	1.6	4.7	81.3	12.5	3.08	100.0(64)
4명 이상	0.0	0.0	0.0	100.0	4.50	100.0(8)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나. 자녀양육 단계별 애로사항

자녀의 양육단계에 따라 부모가 느끼는 부담은 다양한 양상을 보였으나, 대체로 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초등학교학령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인되며, 초등학교학령기 이후로는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육비 부담을 호소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또한 신생아와 영영아 자녀의 양육 시 어려움이 강조되었는데, 이는 자녀돌봄에 대한 지식 부족과 독박 육아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즉, 첫째 자녀 출산 이후 어머니들은 양육에 따른 사회로부터의 격리와 익숙하지 않은 육아로 인한 우울감이 심화되는 시기이므로, 해당 시기의 보편적인 돌봄지원 요구에 보다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저는 전업일 때는 아이들이 걸지 못하는 상태. 출산 및 신생아기. 이 때가 제가 생각할 때는 엄마들의 네트워크가 단절된 상태 같거든요. 고립감이 심해지고. 특히 아이를 처음 낳은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 아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알던 지식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이나 이런 게 많고. 그리고 신체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심리적인 불안. …(중략)… 일단 처음에 엄마들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기 아이를 낳으면 이전에 자기가 하던 일들이 다 없어져버리고 소외감도 심해지고, 양육 스트레스 및 경력단절에 대한 그런 것들. ...(중략)... 주변에 육아 돌봄을 지지해줄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게 수월하게 가는데 네트워크가 단절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시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면담자 6)

영아기 시기예요. 두, 세 살 이렇게 됐을 때. 그 때 애들이 신체활동이 활발해지지만 말은 안 통하고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24시간 붙어 있어야 하고. 처음에 아기를 낳았을 때는 열의가 있었다고 해야 할까, 그랬다면 이제는 내 시간도 갖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점점 그런 어려워지고. (면담자 4)

저는 오히려 그 시기(두세 살)가 제일 편했어요. 왜냐면 초반에는 정말 아이를 다 봐야 되고 아이는 움직일 수도 없고 하니까 외출도 못하고 집에서만 거의 있고, 그 때는 신체적으로나 스트레스도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때 힘들었고. 걸어 다니고 나서는 아이가 말을 조금 알아듣고 그 때는 밖에 나가고 하기가 조금 수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숨통도 좀 트이고 아이랑 할 수 있는 게 생겨서 그 때 더 편했어요. (면담자 3)

양육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영아기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가 직접 돌보려는 의향이 두드러져, 자녀돌봄 시간의 보장을 위한 전반적인 노동 관행의 개선을 희망하였다.

저는 계속 기관을 이용했던 사람이라.. 저도 그 시기(두세살)가 힘들긴 했던 게, 아프니까. 아픈데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고, 그리고 그 시기에는 아이가 많이 울고 하니까 다치잖아요. 애가 통제가 안 되어서 혹시 선생님들이 좀 화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불안감으로 다가왔어요. 신랑이랑 저랑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기관에 아이가 잘 다닐 것인가 하는 총체적인 고민까지 하게 되고. (면담자 5)

전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누가 있으면 조금 고민을 덜 해볼 수도 있는데, ... 중략 ... 열 두 시간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하기엔 용기가 안 나서 못했죠. (면담자 4)

아이가 돌이 되기 전에 기관에서 아이를 아무리 잘 키워준다고 해도 기관에 맡길 수 없어요. 그리고 모르는 베이비시터가 우리 집에 와서 내 아이를 맡길 수 없어요. 그래서 남은 방법은 직접 봐야 돼요. (면담자 13)

우선은 퇴근시간이 보장되는 게 1차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무시간이 탄력적이면 더 좋겠고. 그리고 사정이 있는 부모들에게는 하원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갖춰지면 좋겠죠. 워낙 어린이집 같은 경우 개원, 하원

시간이 딱 정해진 상태에서 아이돌봄서비스가 그 이전, 이후 시간에는 자유롭지 못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9시 출근, 6시 퇴근이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힘들죠. (면담자 8)

유아기 자녀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아나 돌봄 공백이 크게 생기는 초등학교에 비해서 자녀양육이 수월해진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유아기는 기관 이용이 급증하면서 아이의 안전 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로, 부모들은 영아 자녀에 비해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면서 심리적 압박감은 줄어든 반면, 실질적으로 아이와의 소통과 양육 방식 등에 관한 고민이 증가하는 시기라고 보았다.

5세부터는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보내면 아이가 장시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4세까지는 어리다싶고. (면담자 8)

조금 더 어리면 집으로 오는 게 낫고. 그런데 정말 안전하기는 한 사람이 와서 저희 집에 있는 거 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가서 맡기는 게 나을 거 같아요. ... 종락 ... 잠깐이라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좋죠. (면담자 14)

한 30개월 전후에서부터는 아이가 주장이 좀 세지면서 제가 아이를 훈육하거나 육아법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면담자 3)

초등학교에는 자녀돌봄에 대한 시간적 부담 및 비용적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로, 초등학교의 하교가 비교적 이른 시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방과후 돌봄의 부담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초등 저학년 자녀의 돌봄에 대한 어려움을 강하게 호소하였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비스 이용비용의 부담도 지적하였다.

맞벌이 하시던 분들은 차라리 어렸을 때는 누군가한테 맡기고 그게 가능한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돌봄이 다 없어져버리고 아이는 성적을 받아오고, 비어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오히려 초등학교 학령기에 일을 많이 그만두게 되고 ... 후략... (면담자 6)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오히려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부터예요. 하교시간이 너무 빠르다보니까 저희 애들이 빨리 올 때는 12시 50분, 조금 늦게 오면 1시 40분, 그게 4교시 5교시 끝나는 시간이고 방과후 1, 2개 하면 3~4시쯤 와요. 그럼 3~4시에 퇴근할 수 있는 엄마는 없죠. 그러니까 보통 초등학교 때 가장 경력단절이 많이 이뤄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유아 시기보다 저는 초등 돌봄이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면담자 8)

이와는 달리 외벌이 가구는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공백보다는 교육비 부담이 보다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초등 고학년부터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방과후 학교 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드러내어, 공교육 혁신 및 내실화가 초등학교를 포괄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연구자가 초등학교 취학 후 어려움을 묻자) 저는 교육비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교육비. (면담자 14)

그 때는 아무래도 학원이나 사교육으로 아이들이 뱅뱅이를 ...중략... (초등 고학년에 학원의 필요성을 질문하자) 대부분 그렇게 하시니까 저만 안 보내면 좀. 그리고 애들도 가기를 원해요. 친구들이 하고 그러니까 나도 하고 싶다고 말하고. (면담자 11)

같이 어울리는 것 땀에 학원을 가요. 공부도 공부지만 자기 혼자만 학원 안 가니까 그냥 계속 땀은 거예요. 다들 학원 땀에 가버리니까 혼자 남아요. ...중략... 교육비도 부담이 되죠. (면담자 10)

굳이 비슷한 돈을 들어서 학교 방과후의 질보다 사교육의 질이 낫다고 생각해요. (연구자가 질의 구체적 내용을 질문하자) 사교육에서 해주는 만큼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따라가진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질도 방과후라고 해서 너무 저렴하지도 않잖아요. 영어 같은 경우는 또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영어 같은 경우는 그게 학교별론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3개월씩 하는데 40에서 50 사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조금 더 들어서 사교육 가는 게 낫거든요. (면담자 1)

마지막으로 중고등학교로 접어들면,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주된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교육비 지원 요구 이외에도 학교폭력 등 학교 내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고, 청소년 자녀대상 상담서비스 등의 수요도 파악되었다.

(연구자가 중고등학교년에는 자녀 돌봄이 수월해지는지를 질문하자) 그 때는 이제 보육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학업문제와 자녀와의 갈등 문제 같은. (면담자 6)

(고등학생은) 거의 대학생 수준으로 돈이 들어가요. 수업료가 제일 부담돼요. 학교운영비가 굳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되나? 그런 거 하고. 식대는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요, 일수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복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요. ...후략... (면담자 10)

작년인가 재작년에 큰 애 때 한 번 상담을 했었는데 선생님이 선행학습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 인식이 요즘 아이들 다 배워온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면담자 11)

선생님이 “학원 다니죠? 거기서 이렇게 안 가르쳐주던가요?” 이렇게 먼저 물어 보시니까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중략… 중학교 때까지는 사교육하고, 고등학교 가니까 더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면담자 10)

2.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도움 정도 인식

예비부모를 포함하여 현행 정부의 자녀돌봄 지원 정책 및 제도의 인지도와, 막내자녀 기준으로 각종 돌봄지원 제도의 이용율, 그리고 제도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에 한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5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토록 하여 효과성을 규명하였다.

가. 자녀돌봄지원 제도 및 정책의 인지도

정책 수요자인 부모가 현행 자녀돌봄지원 제도 및 정책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각 양육 단계별로 조사하였다.

1) 출산·신생아 지원

출산·신생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들어보았고 내용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1.6%로 가장 높았다(표 IV-2-1 참조). 반면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와 신생아 난청진단 시 의료비 지원의 경우는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4.7%와 40.5%였고, 고위험 신생아 산모지원의 해당 비율도 30.0%로 낮은 인지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사업 인지도의 격차는 산모 및 신생아 일반에 적용되는 사업과 위험군에 적용되는 사업의 적용대상 범위와 일부 관련된다고 보여지나, 전반적으로 낮은 인지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표 IV-2-1〉 출산·신생아 지원제도 인지도_전반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모름	들어	들어	들어	계(수)
		보았으나 내용은 모름	보았으나 내용은 대충 앎	보았고 내용도 알고 있음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6.5	33.3	38.7	21.6	1000(1,200)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이관리 지원	34.7	33.9	21.7	9.8	1000(1,200)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40.5	30.8	19.3	9.4	1000(1,200)
신생아·산모도우미 지원	17.3	30.9	34.2	17.7	1000(1,200)
고위험 신생아·산모 지원	30.9	33.8	25.0	10.3	1000(1,200)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표 IV-2-2〉 출산·신생아 지원제도 인지도_세부 사업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모름	들어	들어	들어 보았고	계(수)
		보았으나 내용은 모름	보았으나 내용은 대충 앎	내용도 알고 있음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생애 단계별_전체	6.5	33.3	38.7	21.6	100.0(1,200)
예비부모	8.7	43.3	34.7	13.3	100.0(300)
영유아자녀	2.3	19.0	38.0	40.7	100.0(300)
초등자녀	4.3	27.3	46.0	22.3	100.0(300)
중고등자녀	10.7	43.3	36.0	10.0	100.0(300)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이관리 지원					
생애 단계별_전체	34.7	33.9	21.7	9.8	100.0(1,200)
예비부모	56.7	28.7	11.0	3.7	100.0(300)
영유아자녀	17.7	33.3	30.7	18.3	100.0(300)
초등자녀	29.7	32.3	26.3	11.7	100.0(300)
중고등자녀	34.7	41.3	18.7	5.3	100.0(300)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생애 단계별	40.5	30.8	19.3	9.4	100.0(1,200)
예비부모	60.7	26.0	9.3	4.0	100.0(300)
영유아자녀	18.3	32.0	30.0	19.7	100.0(300)
초등자녀	38.0	29.3	23.3	9.3	100.0(300)
중고등자녀	45.0	36.0	14.3	4.7	100.0(300)

(표 IV-2-2 계속)

구분	전혀 모름	들어 보았으나 내용은 모름	들어 보았으나 내용은 대충 알	들어 보았고 내용도 알고 있음	계(수)
신생아·산모도우미 지원					
생애 단계별 전체	17.3	30.9	34.2	17.7	100.0(1,200)
예비부모	23.3	37.3	31.3	8.0	100.0(300)
영유아자녀	5.7	21.7	39.3	33.3	100.0(300)
초등자녀	15.0	28.7	36.0	20.3	100.0(300)
중고등자녀	25.0	36.0	30.0	9.0	100.0(300)
고위험 신생아·산모 지원					
생애 단계별 전체	30.9	33.8	25.0	10.3	100.0(1,200)
예비부모	43.7	32.7	19.3	4.3	100.0(300)
영유아자녀	15.3	29.0	34.0	21.7	100.0(300)
초등자녀	28.3	32.0	29.7	10.0	100.0(300)
중고등자녀	36.3	41.3	17.0	5.3	100.0(300)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한편 단기간 내에 이들 사업의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부모가 이외 자녀를 둔 가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제도 인지도를 보여, 이들 대상의 정책 홍보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심층면담에서도 제도 홍보 부족이 확인된다. 이를테면 임신, 출산기에 부모교육 및 육아정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해서 필요한 시점에 이용하지 못하였다거나, 제도를 들어는 보았으나 세부적용 기준을 명확히 모르거나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이용하지 못한 경험도 언급되었다.

저는 근본적인 생각이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정책을 마련하고 이용하게 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회적 공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 (중략) ... 이런 모든 양육제도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엄마가 되면 당연히 알아야하지만 알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고요. 이런 부분이 있다고 공교육화하는 것도 아니고. 아빠들은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면담자 9)

소득이 너무 높다거나. 자녀수가 너무 적다거나(해서 지원대상이 아니예요). (면담자 6의 의견에 대해서) 네. 대상이 아니어서 저는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나라에서 나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건 없겠구나. 없다고 깔고 들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중략)...(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경험에 대해서 질문하자) 저는 전액을 부담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상관이 없어서 했지만, 안된 거예요. (면담자 7)

2) 영유아기 자녀

영유아기 자녀돌봄 지원 및 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세제지원 등 비용지원과 일반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자녀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들어보았고 내용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2.5%와 30.5%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0~5세 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제도, 3~5세 누리과정 자원을 '들어보았고 내용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9.9%와 26.1%, 24.8% 순으로 나타났다.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의 경우에도 해당 비율이 28.5%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에 저소득층 가구 대상의 드림스타트 사업과 영양플러스 사업의 경우는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6.4%와 53.9%로 높게 나타난다. 이외에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과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수준이었다.

〈표 IV-2-3〉 영유아기 자녀돌봄 지원제도 및 정책 인지도

단위: %(명)

구분	전혀 모름	들어 보았으나 내용은 모름	들어 보았으나 내용은 대충 앎	들어 보았고 알고 있음	계(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38.9	31.5	22.6	7.0	100.0(1,200)
시간제보육	12.4	34.8	36.3	16.4	100.0(1,200)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20.4	35.3	31.7	12.7	100.0(1,200)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15.3	37.7	32.7	14.3	100.0(1,200)
가정양육수당 지원	11.9	27.7	34.3	26.1	100.0(1,200)
0~5세 보육료 지원	7.6	24.7	37.8	29.9	100.0(1,200)
3~5세 누리과정 지원	10.1	28.6	36.5	24.8	100.0(1,200)
시간연장형보육 지원	22.2	34.3	27.9	15.7	100.0(1,200)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지원	35.0	36.1	21.4	7.5	100.0(1,200)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42.8	34.8	16.8	5.7	100.0(1,200)
드림스타트 사업	56.4	26.1	13.2	4.3	100.0(1,200)
영양플러스 사업	53.9	25.8	13.2	7.2	100.0(1,200)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18.4	26.9	27.7	27.0	100.0(1,200)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41.3	32.7	19.6	6.4	100.0(1,200)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	11.3	24.4	35.8	28.5	100.0(1,200)
자녀세액공제	11.8	23.2	32.5	32.5	100.0(1,200)
교육비 세액공제	13.4	24.1	32.0	30.5	100.0(1,200)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3) 학령기 자녀

학령기 자녀 대상의 자녀돌봄 지원 및 정책에 대해서는 방과후 학교의 경우 ‘들어보았고 내용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3.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급식비 지원과 초등돌봄교실의 해당 비율이 각각 24.3%와 23.3%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저소득층 위주의 방과후 수강권 지원과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는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3.3%와 34.9%로 낮은 인지도를 나타냈다.

〈표 IV-2-4〉 학령기 자녀 돌봄지원 제도 및 정책 인지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모름	들어 보았으나	들어 보았으나	들어 보았고	계(수)
		내용은 모름	내용은 대충 알	내용도 알고 있음	
초등돌봄교실	18.0	28.5	30.3	23.3	100.0(1,200)
방과후 학교	5.5	23.0	38.3	33.2	100.0(1,200)
방과후 수강권 지원	33.3	30.3	23.3	13.0	100.0(1,200)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34.9	34.6	22.3	8.3	100.0(1,200)
지역아동센터 운영	24.9	33.8	27.7	13.7	100.0(1,200)
급식비 지원	13.8	30.9	31.1	24.3	100.0(1,200)
학교 우유급식 지원	19.3	31.0	28.5	21.2	100.0(1,200)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표 IV-2-5〉 근로자 대상 기업의 자녀돌봄 지원 및 정책 인지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모름	들어 보았으나	들어 보았으나	들어 보았고	계(수)
		내용은 모름	내용은 대충 알	내용도 알고 있음	
출산전후휴가제도	9.2	23.3	38.8	28.8	100.0(1,200)
배우자 출산휴가(남성 5일)	10.8	24.9	35.5	28.8	100.0(1,200)
육아시간(수유시간) 허용	29.7	31.2	26.3	12.8	100.0(1,200)
육아휴직제도	4.9	19.9	39.1	36.1	100.0(1,200)
아빠의 달 인센티브 제도	54.6	27.1	14.0	4.3	100.0(1,200)
가족돌봄 휴직제도	43.4	33.2	16.7	6.8	100.0(1,20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34.2	34.5	20.1	11.3	100.0(1,200)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지원	37.5	34.5	20.6	7.4	100.0(1,200)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마지막으로 근로자 대상 기업의 자녀돌봄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휴가·휴직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반면에 최근 도입된 가족돌봄 휴가제도의 인지도는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즉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는 들어보았고 내용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6.1%였고, 출산전후휴가제도와 배우자 출산휴가의 해당 비율은 공히 28.8%로 조사되었다. 이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34.2%에 달하였다.

나. 자녀돌봄지원 제도의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자녀양육 단계별 돌봄지원 정책 및 제도의 이용 경험과 이용자에 한하여 도움 정도를 5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토록 하였다.

1) 출산·신생아 지원

출산·신생아 지원제도의 경우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이용한 경험이 45.9%로 약 절반 수준이었고, 이외 지원은 10%선에 머물렀다. 제도 이용 경험이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된 사업은 신생아·산모 도우미 지원으로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42.2%이고 평균 4.12점(5점 만점)을 나타냈다.

한편 이들 제도의 도움 정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가구 특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해당 지원이 소득기준 등과 상관없는 보편적인 수요임을 암시한다.

〈표 IV-2-6〉 출산·신생아 지원제도의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_전반

단위: %(명), 점

구분	이용 여부		도움 정도						평균 (5점)
	이용 비율	전체 (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계(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45.9	(900)	0.7	4.8	23.5	38.5	32.4	1000(413)	3.97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	13.6	(900)	0.0	5.7	24.6	41.8	27.9	1000(122)	3.92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10.9	(900)	3.1	10.2	17.3	40.8	28.6	1000(98)	3.82
신생아산모 도우미 지원	12.9	(900)	0.9	5.2	17.2	34.5	42.2	1000(116)	4.12
고위험 신생아산모 지원	4.3	(900)	2.6	5.1	30.8	30.8	30.8	1000(39)	3.82

주: 평균 점수는 '전혀 도움 되지 않음'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표 IV-2-7〉 출산·신생아 지원제도의 도움 정도_가구 특성별

단위: 점

구분	임산·출산 진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이환리 지원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신생아 산모도우미 지원	고위험 신생아 산모도우미 지원
전체	3.97	3.92	3.82	4.12	3.82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3.79	3.89	4.00	4.20	4.00
400만원 이하	3.88	3.82	3.78	4.02	3.67
600만원 이하	4.08	3.98	3.97	4.21	3.79
600만원 초과	4.00	4.06	3.50	4.31	4.13
F	1.655	0.433	0.631	0.528	0.356
맞벌이가구 여부					
맞벌이	4.00	4.11	3.88	4.19	3.78
홀벌이	3.94	3.72	3.78	4.06	3.86
t	0.577	2.567*	0.454	0.743	-0.239
자녀수					
1명	3.93	4.03	3.79	4.08	3.81
2명	4.04	3.86	3.77	4.09	3.53
3명	3.91	4.11	4.22	4.33	4.60
4명 이상	3.63	3.80	3.75	4.40	5.00
F	0.923	0.478	0.481	0.341	2.022

주: 평균 점수는 '전혀 도움 되지 않음'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2) 영유아기 자녀

영유아를 둔 가구의 돌봄지원 정책 및 제도의 경우는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과 자녀세액공제가 각각 68.7%와 62.9%로 높은 수혜율을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52.6%, 영유아 건강검진 55.3%, 0~5세 보육료 지원 47.6% 순이었다. 각 제도 및 사업별로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의 도움 정도는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이 '매우 도움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8%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평균 4.37점, 5점 만점). 그 다음으로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0~5세 보육료 지원, 자녀세액공제, 3~5세 누리과정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4.14 점 순이었다.

〈표 IV-2-8〉 영유아기 돌봄지원 제도 및 정책의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_전반

단위: %(명), 점

구분	이용 여부		도움 정도					계(수)	평균 (5점)
	이용 비율	전체 (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5.8	(900)	0.0	1.9	28.8	46.2	23.1	1000(52)	3.90
시간제보육	19.6	(900)	1.1	2.8	22.7	37.5	35.8	1000(176)	4.04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8.2	(900)	1.4	2.7	20.3	41.9	33.8	1000(74)	4.04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52.6	(900)	0.4	1.9	12.9	34.2	50.5	1000(473)	4.33
가정양육수당 지원	47.6	(900)	0.2	1.6	12.9	38.6	46.7	1000(428)	4.30
0~5세 보육료 지원	12.9	(900)	2.6	2.6	13.8	38.8	42.2	1000(116)	4.16
3~5세 누리과정 지원	7.3	(900)	3.0	12.1	31.8	37.9	15.2	1000(66)	3.50
시간연장형보육 지원	3.4	(900)	0.0	12.9	25.8	48.4	12.9	1000(31)	3.61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지원	7.9	(900)	1.4	4.2	23.9	39.4	31.0	1000(71)	3.94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37.4	(900)	0.0	5.0	19.9	31.2	43.9	1000(337)	4.14
드림스타트 사업	3.6	(900)	0.0	3.1	21.9	50.0	25.0	1000(32)	3.97
영양플러스 사업	8.1	(900)	1.4	5.5	28.8	28.8	35.6	1000(73)	3.92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55.3	(900)	1.0	3.0	18.1	36.5	41.4	1000(498)	4.14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7.8	(900)	1.4	4.3	24.3	42.9	27.1	1000(70)	3.90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	68.7	(900)	0.0	2.3	9.4	37.5	50.8	1000(618)	4.37
자녀세액공제	62.9	(900)	0.4	3.7	15.0	38.3	42.6	1000(566)	4.19
교육비 세액공제	51.2	(900)	0.4	4.1	16.7	37.5	41.2	1000(461)	4.15

주: 평균 점수는 '전혀 도움 되지 않음'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이들 제도의 도움 정도를 가구 특성별로 살펴보면, 가구소득, 자녀수와 상관 없이 보편적인 수요를 나타냈다. 그러나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보육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아 시간제보육과 0~5세 보육료 지원의 도움 정도를 더 높게 평가하였고,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홑벌이 가구에 비해 더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였다(표 IV-2-8 참조). 또한 거주지역별로는 시간연장형보육 지원의 경우 대도시 지역과 읍면지역에서 도움 정도 평가가 더 높았다.

〈표 IV-2-9〉 영유아기 돌봄지원 제도 및 정책의 도움 정도_가구 특성별(1)

구분	단위: 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시간제 보육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가정양육수당 지원	0-5세 보육료 지원	3-5세 누리과정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지원	
전체	3.90	4.04	4.04	4.14	4.33	4.30	4.16	3.50	3.61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5.00	4.14	3.80	4.11	4.00	4.23	3.67	5.00	4.00	
400만원 이하	3.95	3.90	4.03	4.14	4.31	4.27	4.21	3.44	3.60	
600만원 이하	3.81	4.13	3.93	4.15	4.38	4.32	4.00	3.54	3.50	
600만원 초과	3.90	4.32	4.39	4.11	4.33	4.34	4.47	3.43	3.71	
F	0.787	1.713	0.932	0.028	1.530	0.247	1.271	0.818	0.207	
맞벌이가구 여부										
맞벌이	4.00	4.20	4.07	4.17	4.41	4.39	4.27	3.48	3.67	
홀벌이	3.76	3.88	4.00	4.11	4.23	4.21	3.98	3.54	3.54	
t	1.091	2.473*	0.343	0.529	2.438*	2.443*	1.659	-0.251	0.394	
거주지역										
광역시	3.74	4.09	4.03	4.14	4.33	4.28	4.14	3.69	3.57	
중소도시	4.17	3.97	3.85	4.11	4.29	4.31	4.13	2.87	3.33	
읍면지역	4.40	4.00	4.67	4.31	4.49	4.40	4.60	3.67	4.25	
F	2.638	0.372	3.048	0.598	0.846	0.403	0.583	4.325*	1.404	

(표 IV-2-9 계속)

구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시간제 보육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가정양육수당 지원	0-5세 보육료 지원	3-5세 누리과정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지원
자녀수									
1명	4.10	4.07	4.23	4.12	4.39	4.29	4.24	3.64	3.38
2명	3.71	4.03	3.98	4.15	4.31	4.32	4.09	3.38	3.60
3명	3.83	3.85	3.25	4.23	4.11	4.24	4.00	3.50	4.00
4명 이상	4.50	4.33	4.33	4.00	4.43	4.25	4.50	4.00	4.50
F	1.383	0.341	1.704	0.176	1.396	0.148	0.382	0.443	0.926

주: 평균 점수는 '전혀 도움 되지 않음'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5$

〈표 IV-2-10〉 영유아기 돌봄지원 제도 및 정책의 도움 정도_가구 특성별(2)

구분	단위: 점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드림스타트 사업 (아동통합서비스)	영양플러스 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징발 검사비 지원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	자녀세액 공제	교육비	지역공제	세액공제
전체	3.94	3.97	3.92	4.14	3.90	4.37	4.19	4.15	4.15	4.15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4.67	4.33	4.50	4.27	3.60	4.39	4.10	4.00	4.10	4.00
400만원 이하	3.65	3.82	4.03	4.22	4.13	4.39	4.15	4.08	4.15	4.08
600만원 이하	4.00	3.92	3.79	4.06	3.97	4.35	4.26	4.22	4.26	4.22
600만원 초과	4.13	4.20	3.38	4.13	3.42	4.35	4.14	4.12	4.14	4.12
F	1.662	0.488	1.805	1.265	1.961	0.163	0.857	0.925	0.857	0.925
맞벌이가구 여부										
맞벌이	4.05	4.06	3.706	4.20	4.00	4.41	4.26	4.25	4.26	4.25
홀벌이	3.80	3.86	4.103	4.08	3.79	4.33	4.13	4.05	4.13	4.05
t	1.123	0.706	-1.719	1.511	0.952	1.217	1.800	2.546*	1.800	2.546*
거주지역										
광역시	3.81	3.89	3.93	4.10	3.89	4.36	4.17	4.17	4.17	4.17
중소도시	4.14	3.89	3.71	4.18	3.90	4.37	4.18	4.09	4.18	4.09
읍면지역	3.86	4.40	4.43	4.26	4.00	4.43	4.37	4.40	4.37	4.40
F	1.086	0.894	1.377	1.021	0.032	0.158	0.947	1.684	0.947	1.684

(표 IV-2-10 계속)

구분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드림스타트 사업 (아동통합서비스)	영양플러스 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	자녀세액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수								
1명	3.92	4.00	3.85	4.21	4.07	4.40	4.25	4.215
2명	3.92	3.89	3.83	4.10	3.72	4.35	4.16	4.104
3명	4.00	4.00	4.29	4.17	4.25	4.33	4.12	4.200
4명 이상	4.50	5.00	4.50	4.00	4.00	4.38	4.00	3.750
F	0.256	0.625	0.902	0.651	1.012	0.292	0.662	0.868

주: 평균 점수는 '전혀 도움 되지 않음'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5$

3) 학령기 자녀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는 방과후 학교의 이용율이 57.5%로 가장 높고 급식비 지원이 35.7%로 그 뒤를 이었다. 각 지원내용별로 도움 정도는 급식비 지원과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각각 평균 4.36점(5점 만점)과 4.35점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도움 정도를 높게 평가하여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율은 각각 42.1%와 40.0%였다.

〈표 IV-2-11〉 학령기 자녀돌봄 지원제도 및 정책의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전반

단위: %(명), 점

구분	이용 여부		도움 정도					계(수)	평균 (5점)
	이용 비율	전체 (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됨		
초등돌봄교실	20.2	(600)	1.7	15.7	38.8	42.1	100.0(121)	4.18	
방과후 학교	57.5	(600)	1.2	2.9	21.7	42.6	31.6	100.0(345)	4.01
방과후 수강권 지원	9.8	(600)	3.4	3.4	11.9	45.8	35.6	100.0(59)	4.07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7.0	(600)	0.0	7.1	16.7	52.4	23.8	100.0(42)	3.93
지역아동센터 운영	7.5	(600)	0.0	6.7	11.1	42.2	40.0	100.0(45)	4.16
급식비 지원	35.7	(600)	0.0	1.9	10.7	37.4	50.0	100.0(214)	4.36
학교 우유급식 지원	28.0	(600)	0.0	1.8	10.7	38.1	49.4	100.0(168)	4.35

주: 평균 점수는 ‘전혀 도움 되지 않음’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이들 제도의 도움 정도는 전반적으로 가구 특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가구소득이나 자녀수와 상관없이 보편적인 수요로 파악된다. 단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방과후 돌봄에 대한 수요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와 600만 원 이상 가구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전자는 양육비용 부담에 따른 것이고, 후자는 사교육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된다(표 IV-2-12 참조). 또한 자녀수에 많을수록 도움 정도를 높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 예산상 적용대상 범위를 한정해야 할 경우, 지원기준에 자녀수를 반영하여 다자녀가구 위주로 지원해야 함을 암시한다.

〈표 IV-2-12〉 학령기 자녀돌봄 지원제도 및 정책의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_가구 특성별

단위: 점

구분	초등돌봄 교실	방과후 학교	방과후 수강권 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운영	급식비 지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전체	4.18	4.01	4.07	3.93	4.16	4.36	4.35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4.38	4.06	4.38	4.50	4.50	4.29	4.14
400만원 이하	4.02	3.85	4.07	4.07	4.18	4.44	4.47
600만원 이하	4.24	4.13	3.69	3.62	4.00	4.34	4.27
600만원 초과	4.30	3.99	4.38	4.75	5.00	4.22	4.44
F	0.766	2.261	1.346	3.093*	0.920	0.766	1.248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4.27	4.06	4.00	3.94	4.27	4.34	4.35
홀벌이	4.04	3.96	4.10	3.92	4.00	4.37	4.35
t	1.434	1.130	-0.385	0.079	1.016	-0.266	0.053
자녀수							
1명	4.17	4.04	3.94	3.87	3.75	4.21	4.21
2명	4.16	4.03	4.00	3.88	4.29	4.43	4.42
3명	4.25	3.69	4.75	4.50	4.67	4.29	4.55
4명 이상	5.00	4.25	4.67	5.00	5.00	4.75	4.20
F	0.322	0.915	1.226	0.909	2.524	1.736	1.145

주: 평균 점수는 '전혀 도움 되지 않음'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5$.

4) 근로자 대상 기업의 돌봄지원 제도

근로자 대상 기업의 돌봄지원 제도의 경우는 이용율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가운데, 출산전후휴가 23.3%, 배우자 출산휴가 22.7%, 육아휴직제도 18.3%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제도가 매우 도움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육아휴직 65.5%, 출산전후휴가 53.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48.7% 순이었다.

한편 이들 제도의 가구 특성별 도움 정도를 살펴보면, 우선 월 가구소득이 200만 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에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의 도움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므로, 해당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표 IV-2-12 참조). 또한 성별로는 여성들의 휴가·휴직제도의 도움 정도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어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이용을 제고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시켜 준다. 그러나 자녀수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해당 제도의 적

용은 첫째 자녀부터 일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2-13〉 근로자 대상 자녀돌봄 지원제도의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_전반

단위: %(명), 점

구분	이용 여부		도움 정도					평균 (5점)	
	이용 비율	전체 (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 도움 됨		계(수)
출산전후휴가제도	23.3	(900)	0.0	3.3	9.5	33.3	53.8	1000(210)	4.38
배우자 출산휴가	22.7	(900)	2.5	4.4	24.5	25.5	43.1	1000(204)	4.02
육아시간(수유시간) 허용	4.2	(900)	0.0	2.6	18.4	31.6	47.4	1000(38)	4.24
육아휴직제도	18.3	(900)	0.0	0.0	11.5	23.0	65.5	1000(165)	4.54
아빠의 달 인센티브 제도	1.8	(900)	0.0	6.3	25.0	37.5	31.3	1000(16)	3.94
가족돌봄 휴직제도	2.4	(900)	0.0	0.0	31.8	40.9	27.3	1000(22)	3.9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4.3	(900)	0.0	0.0	23.1	28.2	48.7	1000(39)	4.26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지원	2.6	(900)	0.0	0.0	34.8	30.4	34.8	1000(23)	4.00

주: 평균 점수는 '전혀 도움 되지 않음'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표 IV-2-14〉 근로자 대상 자녀돌봄 지원제도의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_가구 특성별

구분	단위: 점									
	출산전후 휴가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시간 허용	육아휴직 제도	이빠의 답 인센티브 제도	가족돌봄 휴직제도	육아근로시간 단축제도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지원		
전체	4.38	4.02	4.24	4.54	3.94	3.95	4.26	4.00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4.67	3.60	2.00	5.00	0.00	0.00	5.00	0.00		
400만원 이하	4.18	3.93	4.18	4.52	3.67	3.71	4.00	3.67		
600만원 이하	4.44	3.99	4.29	4.51	4.14	3.90	4.53	4.14		
600만원 초과	4.46	4.32	4.44	4.59	4.00	4.40	4.00	4.29		
F	1.687	1.608	2.904*	0.418	0.398	1.175	1.679	1.200		
성별										
남	4.07	3.93	4.18	4.30	4.00	4.00	3.93	3.75		
여	4.50	4.14	4.29	4.67	3.83	3.91	4.44	4.13		
t	-3.746***	-1.465	-0.388	-3.055**	0.337	0.265	-1.939	-1.028		
맞벌이가구 여부										
맞벌이	4.44	4.22	4.46	4.58	4.00	3.82	4.28	4.00		
홀벌이	4.21	3.84	3.86	4.46	3.83	4.09	4.21	4.00		
t	1.924	2.676**	2.205*	0.987	0.286	-0.808	0.238	0.000		

(표 IV-2-14 계속)

구분	출산진후 휴가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시간 허용	육아휴직 제도	아빠의 달 인센티브 제도	가족돌봄 휴직제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시간선택제 일자리진환지원
자녀수								
1명	4.35	4.02	4.46	4.47	3.57	3.57	4.38	4.00
2명	4.38	4.07	4.16	4.57	4.25	4.15	4.19	3.92
3명	4.55	3.80	4.50	4.80	0.00	4.00	4.00	5.00
4명 이상	4.00	4.00	3.00	5.00	4.00	4.00	4.00	0.00
F	0.283	0.278	2.048	na	0.999	0.814	na	0.726

주: 1) 평균 점수는 '전혀 도움 되지 않음'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주: 2) na는 빈도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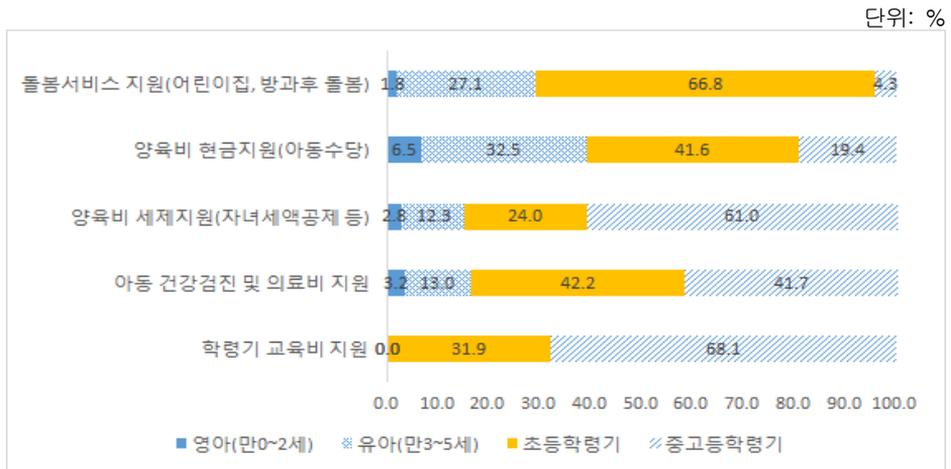
3. 자녀돌봄 지원의 개선 요구

주요 돌봄서비스 지원이 각 양육 단계별로 필요한 시기와 추가 지원요구, 그리고 2016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출산장려시책¹²⁾에 대한 출산 및 양육에의 도움 정도를 7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토록 하여 돌봄지원 수요 전반을 파악하였다.

가. 자녀돌봄 지원의 필요도 인식

1) 주요 돌봄지원 분야의 필요도 및 추가 지원요구

주요 돌봄지원 정책 및 제도별로 양육단계에 따라 필요한 시기를 질문하였다. 우선 돌봄서비스는 초등학교학령기가 66.8%, 양육비 현금지원은 초등학교학령기가 41.6%, 만 5세까지 32.5% 순이었다. 양육비 세제지원과 학령기 교육비 지원은 중·고등학교학령기까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1.0%와 68.1%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대해서는 초등학교학령기 42.2%, 중·고등학교학령기 41.7%로 유사한 응답율을 보였다.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그림 IV-3-1] 양육 단계별 자녀돌봄 지원의 필요도

12) 해당 사업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시책 사례집”(보건복지부, 2017h)의 출산 및 육아지원 부분의 자체사업 중 지역별로 공통된 사업을 위주로 선정함.

또한 각 양육 단계별로 이외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돌봄지원으로는 다음이 제기되었다. 출산 및 신생아기는 산모대상 지원과 출산용품, 영아기는 영아 대상 의료비 지원 수준 확대, 양육비 현금지원 수준 상향 조정, 유아기는 독서와 놀이교구 등 지원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종일반 내실화, 초등학교기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등하교 안전관리 강화, 중고등학교기는 학교폭력 예방, 저녁 및 야간시간 돌봄서비스, 공교육 내실화 등이다.

〈표 IV-3-1〉 자녀양육 단계별 주요 돌봄지원 외 추가내용

단위: (명)

구분	애로사항	(수)
출산 및 신생아기	- 산부인과 진료 의료비 및 출산용품 등 관련 비용 지원금 확대 - 산모 대상 지원 서비스 확대(산후도우미, 양육비 등) - 육아휴직 적용 대상 기업 확대(육아휴직 불가능한 기업 多) - 남편의 육아휴직 적용 확대	(25)
영아 (만0~2세)	- 영아 의료비 지원 수준 확대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가능하도록 돌봄서비스 규모 확대 - 양육비 현금지원 수준 확대 - 직장 내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가정참여 시간/기회 확대	(32)
유아 (만3~5세)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어린이집 종일반 시간/적용 기관 확대 - 독서, 놀이교구 등 양질의 유아교육서비스 지원	(54)
초등학교기	- 방과 후 돌봄서비스/돌봄교실의 시간/지원수준 확대 - 등하교길 안전 지원 - 질 높은 급식메뉴 지원 - 의무교육의 수준/종류 등 상향 - 학교 내 부모참여 시간 축소 - 맞벌이부부 위한 시간선택근무제 확대 적용	(64)
중고등학교기	- 학교폭력, 왕따 등 문제 해결 - 고등학교까지 일관된 교육정책 적용 - 저녁시간이나 야간시간 돌봄지원 확대 - 사교육이 필요없는 교육 정책 등	(57)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한편 주요 돌봄지원이 자녀 출산 및 양육에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영유아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이 평균 6.25점(7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수요를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는 양육비 세제지원 6.17점, 학령기 교육비 지원 6.12점 순이었다. 이들 지원의 경우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55.8%와 52.9% 순으로 높게 나타나, 시급한 대상 확대가 요구된다고 본다.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에의 필요도는 그 뒤를 잇고 있다.

아동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에의 보편적 수요는 심층면담에서도 확인된다. 이를테면 신생아에 대한 건강검진, 산후조리 지원, 아동건강센터 운영 등 다양한 요구들이 제기되었다. 이때 의료서비스의 질이 충분한 수준 이상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비용이 많이 드는 질환에 대해서도 소득수준과 자녀 연령 등에 상관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또한, 임신·출산 등과 관련하여서는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모든 가구에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1(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 2(신생아·산모도우미 지원), 8(영유아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번이요. (면담자 3)

출산 전에 출산을 안전하게 하기 까지 어려움을 겪는 산모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도 사실은 조기 진통 때문에 3개월을 꼬박 입원했었거든요. 그 때 비용이 정말 수천만 원이 들었는데 어느 것에서도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 태아 보험을 들어도 그건 태아에 대해서만 커버가 되고 이걸 산모 문제이기 때문에 제외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때 약도 보험적용이 안 되는 것도 있고 해서 비용이 되게 많이 드는데 그걸 좀 잘 대처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조기 출산해서 장애를 안고 태어나거나, 그래서 비용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면담자 4)

저는 애기를 자연분만이 힘들다고 해서 제왕절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수술비 전혀 지원이 안되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오랫동안 고생을 해서 해주셨는데 집이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죠. 월급은 적은데. 특히나 수술을 했는데 아무 혜택이 없으니까. (면담자 12)

저는 아동 건강센터 운영을 1번으로 보고 싶고요, 그리고 육아상담사를 2번으로 보고 싶고, 3번은, 이게 영유아 대상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은 지금 어느 정도 연령까지 커버 가능하지 않나요? (연구자가 어디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자) 왜냐면 독감 같은 건 예방 접종 중에서 비용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낼 때, 모두가 맞을 때, 부담이 되더라고요. (면담자 1)

근데 금액이 너무 적어요. 의료지원도 대상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범위가 너무 작아요. 그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면담자 10)

자녀양육 단계별로 저출산 지원 대책의 요구도 약간씩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임신, 출산기의 경우 전반적으로 의료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과 함께 육아상담 및 정보제공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특히 첫째 자녀 출산 이후 주변으로부터의 원활한 육아상담 및 지원은 후속출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의료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과 육아상담,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는 영

아기까지 이어졌다.

일단 간호인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오셔서 예를 들어 젖몸살이 난다, 애가 배탈 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면 좋는데 저희 친정엄마도 30년 전에 애 낳아서 몰라 그렇게 하시고. 애기 목욕하는 법도 아무도 몰라서 허둥댔거든요. (면담자 13)

아이를 어떻게 케어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미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중략) ...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회적 시스템이 분명히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부족했고 그걸 내가 찾아야지만 알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부모교육 같은 것도 의무교육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만 듣게 되어 있잖아요. (면담자 9)

(정책들 중에서 선호하는 제도가 있는지를 질문하자) 저는 산후조리원 지원이 너무 좋아요. (면담자 7)

제가 영국에서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영국은 미드 와이프 제도라고 낳기 전하고 낳고 난 후하고. 임신 했을 때에는 미드 와이프들이 있는 센터가 있었어요. 거기서 한 달에 한번 정도 진단을 받고 검사도 받고, 낳기 직전에는 2주에 한번 정도 가는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심리상담도 해주고, 그 다음에 안심을 시켜줘요. 아이를 낳고 나면 바로 다음날부터 하루, 이틀, 삼일 정기적으로 가정에 방문을 해요. ... (중략) ... 모든 가정이요. 저는 기본적으로 원하지 않는 사람 말고는 대부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면담자 6)

한편,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경우에는 등하원 도우미 등 특히 맞벌이 가구에서 자녀돌봄 공백 해소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아이돌봄서비스와 겹치는 게 이전에 산모도우미도 있을 수 있지만 초등 방과후.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까지지만 초등 방과후가 제대로 되면 경력단절도 해결할 수 있고. 초등방과후 도우미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이용을 안했지만 주변에 엄마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조금 강화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정말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엄마들이 흔히 말하는 학원 뺑뺑이를 할 수 밖에 없거든요. (면담자 8)

저도 지금 계획은 초등학교 때 육아휴직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그걸 받아줄지. 특히 초등학교 1학년 때. (면담자 7)

육아휴직제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영아일 때 보다 초등 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면담자 4)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등 의료서비스 지원대상은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일부 부모들은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의 보편적 확대가, 보육서비스의 보편적 지원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연구자가 건강보험 이외의 지원 요구를 질문하자) 저는 초등이나 중학교까지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2차 성징이 나타나서 여자 애들이 생리를 한다거나 엄마가 없는 아이라 던지, 이런 애들이 여기에서 그런 걸 얻어갈 수 있는. (면담자 7)

성인까지는 계속 건강검진 같은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면담자 5)

아이가 분명히 병원을 많이 가는 시기는 정해져 있어요. 취학 전에 많이 가긴 해요. 감기든, 자잘하게 아픈 것들, 근데 저는 평소에 생각한 게 이게 연령에 대한 구분보다는, 질환에 대한 구분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의료비 부담에 대한 걱정이 되는 게, 감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이 오진 않잖아요. 과도한 비용이 중간에 발생할 수 있을 때에 대한 대비가 중요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면담자 1)

한편, 중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부모들의 경우에는 사춘기 자녀들과의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을 위한 부모-자녀 상담 프로그램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또한, 중고등학교에 접어들면서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교육비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는 입장이 주를 이루었다. 이 시기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 공교육 혁신이 일차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부모교육 혹은 상담 필요성을 질문하자) 네, 아이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면담자 2) 근데, 그 상담의 질이 양질이었으면 좋겠어요. (면담자 1)

사춘기에 들어가면 오히려 그게(상담 프로그램) 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직접적인 건강이나 예방접종이 필요하지만. (면담자 14)

고등학교까지 무상이었으면 좋겠는데. ... 거의 대학생 수준으로 돈이 들어가요. 수업료가 제일 부담돼요. (면담자 10)

2) 세부 지원별 필요도

현행 중앙정부의 세부 지원별로 출산 및 양육시의 필요도를 7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한 바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평균 5점 이상으로 높은 수요를 보였다. 구

체적으로는 영유아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이 평균 6.25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양육비 세제지원 6.17점, 학령기 교육비 지원 6.12점,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공히 6.06점,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6.05점 순이었다.

〈표 IV-3-2〉 출산·양육 시 자녀돌봄 제도 및 정책의 필요도 인식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음	②	③	보통	⑤	⑥	매우 필요함	계(수)	평균 (7점)
	①			④		⑦			
임산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	0.2	0.6	1.5	9.7	17.0	20.7	50.4	1000(1,200)	6.06
신생아산모도우미 지원	0.3	0.7	2.3	11.4	17.6	22.9	44.9	1000(1,200)	5.94
출산용품 지원	0.9	1.2	3.6	18.1	21.4	20.7	34.2	1000(1,200)	5.57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0.8	1.1	3.6	14.9	21.6	21.8	36.3	1000(1,200)	5.66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1.0	1.0	2.0	10.9	21.5	28.0	35.6	1000(1,200)	5.77
일시돌봄(시간제보육) 지원	0.3	0.8	2.7	12.6	22.8	24.8	36.1	1000(1,200)	5.75
양육비 현금지원	0.8	1.1	2.8	10.8	14.8	22.0	47.9	1000(1,200)	5.95
양육비 세제지원	0.0	0.3	1.7	7.9	13.8	23.5	52.9	1000(1,200)	6.17
영유아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0.1	0.5	0.8	6.8	12.3	23.8	55.8	1000(1,200)	6.25
영유아 보육료 지원	0.5	0.8	1.5	9.0	15.2	24.0	49.1	1000(1,200)	6.06
초등 방과후돌봄 지원	0.3	0.6	1.1	9.3	16.5	25.5	46.8	1000(1,200)	6.05
학령기 교육비 지원	0.2	0.8	0.9	8.3	14.8	24.8	50.3	1000(1,200)	6.12

주: 평균 점수는 '전혀 필요하지 않음' 1점~'매우 필요함' 7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3) 양육 단계별 돌봄지원의 필요도

돌봄서비스는 영유아 자녀와 초등자녀를 둔 가구에서 초등학령기까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평균보다 높다(표 IV-3-3 참조).

아동수당의 경우는 중고등학령기까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 200만 원 이하 가구의 해당 응답율은 34.0%였다. 또한 자녀수가 많을수록 중고등학령기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성을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표 IV-3-4 참조).

세제지원의 경우는 월 가구소득이나 자녀수에 상관없이 중고등학령기까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61.0%로 압도적으로 높고, 특히 자녀수가 3명 이상과 4명 이상에서 각각 67.1%와 77.8%로 높게 나타났다(표 IV-3-5 참조).

〈표 IV-3-3〉 돌봄지원 필요 시기_돌봄서비스 지원(어린이집, 방과후 돌봄)

단위: %(명)

구분	영아 (만0~2세)	유아 (만3~5세)	초등 학령기	중고등 학령기	$X^2(df)$	계(수)
전체	1.8	27.1	66.8	4.3		100.0(1,200)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0.0	24.0	68.0	8.0		100.0(50)
400만원 이하	1.7	28.8	65.3	4.2	5.706(9)	100.0(475)
600만원 이하	1.8	27.1	67.1	3.9		100.0(490)
600만원 초과	2.7	23.2	69.7	4.3		100.0(185)
맞벌이가구 여부						
맞벌이	1.8	24.7	70.3	3.2	7.629(3)	100.0(595)
홀벌이	1.8	29.4	63.5	5.3		100.0(605)
자녀수						
1명	2.3	24.5	67.4	5.8		100.0(347)
2명	1.7	21.9	73.2	3.2	14.657(9)	100.0(474)
3명	0.0	20.0	68.6	11.4		100.0(70)
4명 이상	0.0	11.1	77.8	11.1		100.0(9)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표 IV-3-4〉 돌봄지원 필요 시기_양육비 현금지원(아동수당)

단위: %(명)

구분	영아 (만0~2세)	유아 (만3~5세)	초등 학령기	중고등 학령기	$X^2(df)$	계(수)
전체	6.5	32.5	41.6	19.4		100.0(1,200)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6.0	20.0	40.0	34.0		100.0(50)
400만원 이하	4.6	31.6	41.9	21.9	19.459(9)*	100.0(475)
600만원 이하	8.6	33.3	41.0	17.1		100.0(490)
600만원 초과	5.9	36.2	42.7	15.1		100.0(185)
자녀수						
1명	6.9	32.9	42.1	18.2		100.0(347)
2명	7.6	31.4	41.1	19.8	6.070(9)	100.0(474)
3명	7.1	22.9	44.3	25.7		100.0(70)
4명 이상	11.1	11.1	44.4	33.3		100.0(9)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5$

아동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은 초등학교학령기와 중학교학령기까지 응답한 비율이 유사하여 각각 42.2%, 41.7%로 조사되었다. 중학교학령기까지 지원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가구소득 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와 자녀수가 4명 이상

에서 높게 나타나므로, 보편적으로 지원하되,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에 추가지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모색할 만하다.

〈표 IV-3-5〉 돌봄지원 필요 시기_양육비 세제지원(자녀세액공제 등)

단위: %(명)

구분	영아 (만0~2세)	유아 (만3~5세)	초등 학령기	중고등 학령기	X2(df)	계(수)
전체	2.8	12.3	24.0	61.0		100.0(1,200)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0.0	10.0	22.0	68.0	8.045(9)	100.0(50)
400만원 이하	1.9	13.1	25.7	59.4		100.0(475)
600만원 이하	3.7	12.0	24.1	60.2		100.0(490)
600만원 초과	3.2	11.4	20.0	65.4		100.0(185)
자녀수						
1명	3.2	14.4	22.2	60.2	6.767(9)	100.0(347)
2명	2.7	11.8	25.5	59.9		100.0(474)
3명	1.4	7.1	24.3	67.1		100.0(70)
4명 이상	0.0	0.0	22.2	77.8		100.0(9)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표 IV-3-6〉 돌봄지원 필요 시기_아동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단위: %(명)

구분	영아 (만0~2세)	유아 (만3~5세)	초등 학령기	중고등 학령기	X2(df)	계(수)
전체	3.2	13.0	42.2	41.7		100.0(1,200)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0.0	12.0	34.0	54.0	12.542(9)	100.0(50)
400만원 이하	1.9	13.5	40.8	43.8		100.0(475)
600만원 이하	4.7	12.4	43.7	39.2		100.0(490)
600만원 초과	3.2	13.5	43.8	39.5		100.0(185)
자녀수						
1명	3.7	12.4	40.3	43.5	8.698(9)	100.0(347)
2명	3.2	13.1	39.2	44.5		100.0(474)
3명	0.0	10.0	37.1	52.9		100.0(70)
4명 이상	0.0	11.1	11.1	77.8		100.0(9)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표 IV-3-7〉 돌봄지원 필요 시기_학령기 교육비 지원

단위: %(명)

구분	영아 (만0~2세)	유아 (만3~5세)	초등 학령기	중고등 학령기	X2(df)	계(수)
전체	0.0	0.0	31.9	68.1		100.0(1,200)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0.0	0.0	24.0	76.0		100.0(50)
400만원 이하	0.0	0.0	32.6	67.4	3.860(3)	100.0(475)
600만원 이하	0.0	0.0	33.7	66.3		100.0(490)
600만원 초과	0.0	0.0	27.6	72.4		100.0(185)
자녀수						
1명	0.0	0.0	33.7	66.3		100.0(347)
2명	0.0	0.0	30.2	69.8	6.877(3)	100.0(474)
3명	0.0	0.0	24.3	75.7		100.0(70)
4명 이상	0.0	0.0	0.0	100.0		100.0(9)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3) 가구 특성별 세부 지원별 수요

가구 특성별로는 일부 세부 지원에 한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표 IV-3-8, IV-3-9 참조).

우선 생애 단계별로 예비부모의 경우 모든 항목에 걸쳐 가장 높은 필요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이들의 출산이 적극적으로 유도되기 위해서는 출산 시기부터 학령기 자녀의 돌봄지원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어야 함을 암시한다.

또한 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돌봄지원 전반에서 높은 수요를 보였다. 특히 이들은 현물지원 즉 출산용품과 저저귀·조제분유 지원의 경우는 월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월 200만 원 이하 가구의 필요도가 가장 높았다. 이와 관련하여 면담자 1 등은 일시금 또는 교육비 등 현금 또는 현물지원에의 수요는 저소득층 가구에서 두드러진다는 점이 강조된다.

저소득층 말씀을 하셔서, 10만 원, 20만 원이 적지 않은 돈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근데 제 생각은 ... (중략) ... 돈이 결코 대부분의 이유가 아니잖아요. ... (중략) ... 돈으로 10만 원, 20만 원 주고 이걸 주요 대책으로 던지는 것이 무책임한 것 같아서 차라리 이것 말고 다른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 (중략) ... 저소득층 생각하면 속의 말이 안 나와요. 필요 없다고 얘기하기가 좀 신경이 쓰이는 거죠. (면담자 1)

학령기 교육비 지원 이런 것도 저소득층 대상으로는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 요

새 교복이라든지 이런 거 구입하기 힘든 사람들 많잖아요. ...후략... (면담자 8)

맞벌이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와 일시돌봄 지원 등 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등방과후 돌봄지원의 수요도 맞벌이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 심층면담에서는 맞벌이 가구들의 종일제보육의 어려움과 긴급보육 등 돌봄 사각지대 우려가 제기되었다. 면담자 1은 근로시간보다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으로 경력단절이 초래되는 경우를 지적하였으며, 면담자 5는 방학과 주말근로 등에 따른 긴급보육 시 애로사항을 언급하였다.

4번(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같은 경우는 취업모가 월등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애들이 갑자기 일찍 오기 시작하면 그 때 퇴직하는 엄마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전업모라면 4번의 중요도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면담자 4)

어린이집은 가끔 방학을 할 때도 있고 주말에 출근을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긴급보육이 필요한 상황이 생각보다 많아요. (면담자 5)

반면 양육비 현금지원이나 양육비 세제지원 등은 월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아, 해당 지원에 대한 수요가 전(全)계층에 걸쳐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표 IV-3-8〉 출산·양육 시 자녀돌봄 제도 및 정책의 필요도_가구 특성별(1)

단위: 점

구분	임산·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	신생아산모 도우미 지원	출산용품 지원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임시돌봄 지원
전체	6.06	5.94	5.57	5.66	5.77	5.75
생애 단계별						
예비부모	6.47	6.30	5.91	5.97	6.04	6.08
영유아자녀	6.30	6.14	5.79	5.80	5.99	5.79
초등자녀	5.99	5.83	5.46	5.60	5.70	5.69
중고등자녀	5.50	5.49	5.10	5.26	5.36	5.44
F	43.148**	26.959**	23.291***	16.427***	18.802***	15.169***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6.26	6.04	5.82	5.90	5.92	5.86
400만원 이하	6.15	6.00	5.70	5.75	5.80	5.77
600만원 이하	6.01	5.91	5.53	5.64	5.76	5.73
600만원 초과	5.92	5.82	5.24	5.38	5.69	5.73
F	2.574	1.275	6.029***	3.987**	0.615	0.237
맞벌이가구 여부						
맞벌이	6.10	6.02	5.63	1.3305	5.97	5.90
홀벌이	6.03	5.86	5.51	1.3243	5.58	5.60
t	1.144	2.388*	1.551	1.078	5.421***	4.281***

(표 IV-3-8 계속)

구분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	신생아산모 도우미 지원	출산용품 지원	기저귀·조계분유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일시돌봄 지원
자녀수						
1명	5.99	5.85	5.52	5.58	5.73	5.64
2명	5.86	5.78	5.39	5.51	5.70	5.60
3명	6.06	5.89	5.46	5.59	5.34	5.90
4명 이상	6.11	5.78	6.22	6.22	5.78	5.78
F	1.232	0.280	1.554	0.939	1.131	1.221

주: 평균 점수는 '전혀 필요하지 않음' 1점 ~ '매우 필요함' 7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표 IV-3-9〉 출산·양육 시 자녀돌봄 제도 및 정책의 필요도_가구 특성별(2)

구분	단위: 점						
	양육비 현금지원	양육비 세제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학령기 교육비 지원	
전체	5.95	6.17	6.25	6.06	6.05		6.12
생애 단계별							
예비부모	6.18	6.45	6.51	6.24	6.17		6.10
영유아자녀	6.31	6.26	6.42	6.42	6.25		6.30
초등자녀	5.96	6.16	6.27	6.09	6.08		6.20
중고등자녀	5.37	5.82	5.81	5.49	5.70		5.89
F	28.913***	19.269***	23.836***	33.117***	13.023***		6.873***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6.00	6.16	6.40	6.28	6.22		6.32
400만원 이하	6.06	6.16	6.27	6.12	6.04		6.14
600만원 이하	5.90	6.21	6.26	6.04	6.07		6.10
600만원 초과	5.83	6.11	6.14	5.89	5.99		6.10
F	1.961	0.505	1.128	2.274	0.608		0.664
맞벌이가구 여부							
맞벌이	5.97	6.24	6.28	6.12	6.16		6.15
홀벌이	5.94	6.11	6.22	6.00	5.95		6.10
t	0.437	1.994*	1.078	1.662	3.273**		0.819

(표 IV-3-9 계속)

구분	양육비 현금지원	양육비 세제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학령기 교육비 지원
자녀수						
1명	5.94	6.07	6.22	6.03	6.01	6.08
2명	5.81	6.05	6.09	5.94	5.97	6.11
3명	6.07	6.33	6.34	6.19	6.21	6.49
4명 이상	6.00	6.22	6.44	6.44	6.22	6.44
F	1.240	1.366	1.943	1.423	1.033	3.026*

주: 평균 점수는 '전혀 필요하지 않음' 1점 ~ '매우 필요함' 7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나. 양육 단계별 돌봄지원 수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을 위주로 각 양육 단계별 돌봄지원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와, 현재 소득기준이 적용되나 전(全)계층 확대가 필요한 지원내용을 파악하였다.

1)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의 양육 단계별 도움 정도 인식

가) 출산에의 도움 정도

자녀를 원하는 시기에 출산하는 데 각 출산지원 정책 및 제도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신생아 의료비 지원이 평균 5.94점(7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인다. 그 다음으로 수요자가 출산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아동수당 42.3%, 산후조리원 지원 36.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29.6% 순으로 평가되었다.

〈표 IV-3-10〉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의 출산 도움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도움 되지 않음 ①	②	③	보통 ④ ⑤ ⑥			매우 도움 됨 ⑦	계(수)	평균 (7점)
	출산지원금(일시금)	3.0	2.2	3.8	15.8	19.3	22.5		
출산기념품(출산용품) 지원	6.0	6.3	6.5	24.7	19.4	14.8	22.3	100.0(1,200)	4.79
아동수당(매월 지급)	1.3	1.8	2.7	13.8	16.3	22.0	42.3	100.0(1,200)	5.77
산후조리원 지원	2.4	2.5	2.7	14.9	20.6	20.2	36.8	100.0(1,200)	5.5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2.4	2.3	4.2	16.9	23.4	21.3	29.6	100.0(1,200)	5.39
모유수유 전문가 가정 파견	3.3	4.0	6.3	21.4	22.1	17.5	25.4	100.0(1,200)	5.09
유축기 대여	3.9	4.2	6.9	24.8	19.7	16.6	24.0	100.0(1,200)	4.98
신생아(0세아) 의료비 지원	1.0	1.2	2.7	8.5	17.5	23.4	45.8	100.0(1,200)	5.94

주: 평균 점수는 '전혀 도움 되지 않음' 1점 ~ '매우 도움됨' 7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한편 출산지원금이 자녀 출산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 지원대상으로는 첫째 자녀부터가 75.9%로 다수를 이루었으며, 해당 비율은 월 가구소득이 높을 수록 낮게 나타났다. 희망 지원액은 첫째 자녀라고 응답한 경우는 약 176만 원,

둘째 자녀는 약 199만 원, 셋째 자녀인 경우는 213명으로 조사되었다. 첫째 자녀부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를 기준으로 해당 급여액은 예비부모가 192만 원으로 가장 높고, 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IV-3-11〉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단위: %(명)

구분	첫째 자녀 부터	둘째 자녀 부터	셋째 자녀 이상	넷째 자녀 이상	계(수)
전체	73.9	19.6	6.2	0.3	100.0(904)
생애 단계별					
예비부모	88.7	10.1	1.3	0.0	100.0(238)
영유아자녀	74.2	22.5	3.4	0.0	100.0(236)
초등자녀	72.1	20.5	7.0	0.4	100.0(229)
중고등자녀	58.2	26.4	14.4	1.0	100.0(201)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80.0	20.0	0.0	0.0	100.0(35)
400만원 이하	76.9	17.6	5.5	0.0	100.0(363)
600만원 이하	72.0	20.1	7.1	0.8	100.0(368)
600만원 초과	69.6	23.2	7.2	0.0	100.0(138)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표 IV-3-12〉 출산지원금 지원 수준

단위: 만 원

구분	둘째 자녀 부터	둘째 자녀 부터	셋째 자녀 이상	넷째 자녀 이상
전체	176.37	198.59	213.21	66.67
생애 단계별				
예비부모	192.23	126.25	450.00	0.00
영유아자녀	169.14	218.11	403.75	0.00
초등자녀	160.52	223.19	225.63	50.00
중고등자녀	180.94	190.02	129.31	75.00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133.57	332.86	0.00	0.00
400만원 이하	169.84	170.95	263.50	0.00
600만원 이하	189.09	212.03	201.54	0.00
600만원 초과	172.71	193.44	143.00	66.67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다음으로 아동수당이 출산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도움 정도 5점 이상, 7점 만점) 아동수당의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표 IV-3-13〉 아동수당 지급 기준_아동 연령

단위: %(명)

구분	자녀 연령과 상관없이 균등한 급여액을 지급함	자녀 연령이 적을수록 급여액을 높임	자녀 연령이 많을수록 급여액을 높임	계(수)
전체	53.5	22.9	23.7	100.0(967)
생애 단계별				
예비부모	56.2	25.5	18.3	100.0(251)
영유아자녀	51.2	23.4	25.4	100.0(248)
초등자녀	53.0	22.3	24.7	100.0(247)
중고등자녀	53.4	19.9	26.7	100.0(221)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55.3	10.5	34.2	100.0(38)
400만원 이하	56.7	22.6	20.8	100.0(390)
600만원 이하	51.0	24.7	24.2	100.0(388)
600만원 초과	51.0	21.9	27.2	100.0(151)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표 IV-3-14〉 아동수당 지급 기준_자녀수

단위: %(명)

구분	첫째 자녀부터 급여를 지급함	둘째 자녀부터 급여를 지급함	셋째 자녀이상부터 급여를 지급함	계(수)
전체	75.5	18.5	6.0	100.0(967)
생애 단계별				
예비부모	89.6	8.8	1.6	100.0(251)
영유아자녀	78.2	17.3	4.4	100.0(248)
초등자녀	70.9	22.3	6.9	100.0(247)
중고등자녀	61.5	26.7	11.8	100.0(221)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81.6	15.8	2.6	100.0(38)
400만원 이하	80.0	16.2	3.8	100.0(390)
600만원 이하	72.9	19.3	7.7	100.0(388)
600만원 초과	68.9	23.2	7.9	100.0(151)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우선 아동 연령 기준으로는 자녀 연령과 상관없이 균등한 급여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3.5%이며, 반면에 월 가구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는 자녀 연령이 많을수록 급여액이 높아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4.2%로

나타났다.

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급여액이 높아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5.0%였으며, 돌봄취약계층 가구에게 추가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율은 71.5%였고, 예비부모에서 해당 비율은 77.3%로 가장 높았다.

〈표 IV-3-15〉 아동수당 지급 기준_가구소득

구분	단위: %(명)		
	소득과 상관없이 균등한 급여를 지급함	소득이 낮을수록 급여액을 높임	계(수)
전체	45.0	55.0	100.0(967)
생애 단계별			
예비부모	46.2	53.8	100.0(251)
영유아자녀	52.4	47.6	100.0(248)
초등자녀	40.5	59.5	100.0(247)
중고등자녀	40.3	59.7	100.0(221)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42.1	57.9	100.0(38)
400만원 이하	41.8	58.2	100.0(390)
600만원 이하	46.9	53.1	100.0(388)
600만원 초과	49.0	51.0	100.0(151)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표 IV-3-16〉 아동수당 지급 기준_돌봄취약계층(장애아 등)

구분	단위: %(명)		
	특수한 요구를 지닌 아동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급여를 지급함	특수한 요구를 지닌 아동에게 추가급여를 지급함	계(수)
전체	28.5	71.5	100.0(967)
생애 단계별			
예비부모	22.7	77.3	100.0(251)
영유아자녀	30.6	69.4	100.0(248)
초등자녀	30.4	69.6	100.0(247)
중고등자녀	30.8	69.2	100.0(221)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39.5	60.5	100.0(38)
400만원 이하	29.0	71.0	100.0(390)
600만원 이하	26.5	73.5	100.0(388)
600만원 초과	29.8	70.2	100.0(151)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한편 출산지원 제도 및 정책의 도움 정도를 가구 특성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예비부모의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출산지원 전반의 강화가 요구됨을 시사한다. 또한 이들 지원요구는 월 가구소득이나 자녀수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보편적인 요구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표 IV-3-17〉 출산에의 도움 정도

구분	단위: 점							
	출산지원금 (일시금)	출산기념품 (출산용품) 지원	아동수당 (매월 분할금)	산후조리원 지원	산모, 신생아 간강관리사 파견	모유수유 전문가 가정 파견	유축기 대여	신생아(0세아) 의료비 지원
진체	5.48	4.79	5.77	5.56	5.39	5.09	4.98	5.94
생애 단계별								
예비부모	5.74	5.07	5.95	6.05	5.84	5.51	5.22	6.23
영유아자녀	5.66	4.84	5.95	5.66	5.45	5.26	5.21	6.16
초등자녀	5.47	4.70	5.81	5.40	5.27	4.99	4.86	5.86
중고등자녀	5.05	4.55	5.38	5.14	4.99	4.61	4.63	5.50
F	12.632***	4.965**	11.424***	23.520***	19.835***	19.904***	9.956***	19.969***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5.36	4.84	5.94	5.44	5.50	5.22	5.10	5.94
400만원 이하	5.56	4.94	5.84	5.60	5.44	5.22	5.11	6.00
600만원 이하	5.47	4.71	5.71	5.59	5.36	5.04	4.91	5.91
600만원 초과	5.34	4.57	5.74	5.42	5.28	4.85	4.78	5.84
F	1.063	2.561	0.995	0.878	0.618	2.541	2.198	0.722
맞벌이/가구 여부								
맞벌이	5.57	4.89	5.84	5.73	5.51	5.19	5.05	6.04
맞벌이	5.39	4.69	5.71	5.40	5.27	5.00	4.91	5.83
t	2.045*	2.039*	1.664	3.790***	2.846**	2.101*	1.415	2.810**

(표 IV-3-17 계속)

구분	출산지원금 (일시금)	출산기념품 (출산용품) 지원	이동수당 (매월 분할급)	산후조리원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모유수유 전문가 가정 파견	유축기 대여	신생아(0세아) 의료비 지원
거주지역								
광역시	5.56	4.86	5.81	5.66	5.44	5.13	5.04	6.00
중소도시	5.34	4.67	5.71	5.40	5.31	5.03	4.91	5.87
읍면지역	5.67	4.96	5.83	5.74	5.41	5.13	4.90	5.77
F	3.303*	2.026	0.734	4.851**	1.075	0.507	0.876	1.910
자녀수								
1명	5.39	4.74	5.70	5.37	5.25	4.95	4.90	5.88
2명	5.36	4.65	5.69	5.39	5.21	4.95	4.90	5.79
3명	5.53	4.74	5.90	5.56	5.37	4.97	4.79	6.01
4명 이상	5.89	5.00	6.00	5.56	5.33	4.89	5.22	5.56
F	0.926	0.334	0.709	0.320	0.282	0.009	0.282	0.962

주: 평균 점수는 '전혀 도움 되지 않음' 1점 ~ '매우 도움됨' 7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나) 양육에의 도움 정도

자녀양육 시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영유아 대상무료 독감 예방이 평균 6.04점이고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47.3%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5.86점, 상해보험료 등 신생아 안심보육료 지원 5.58점, 영유아 학습지 지원이 5.57점 순이었다(표 IV-3-18 참조).

가구 특성별로는 예비부모의 도움 정도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 가운데, 일부 지원에 한하여 유의미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 유모차와 장난감 대여 등 육아용품 제공의 도움 정도는 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높게 평가되었다(표 IV-3-19 참조). 막내자녀 연령별로는 영아의 경우는 북스타트와 아동전문 건강센터 운영, 육아상담사 파견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등하원서비스는 막내자녀가 영유아인 가구에서 도움 정도를 높게 평가하였고, 맞벌이 가구 대상 가사관리사 파견에 대해서는 맞벌이 가구의 높은 수요가 확인된다.

〈표 IV-3-18〉 자녀양육에의 도움 정도_전반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보통					매우	계(수)	평균 (7점)
	도움 되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⑥	도움 됨 ⑦		
신생아 안심보육료지원	0.8	1.6	3.3	14.7	25.3	21.8	32.7	1000(1,200)	5.58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0.5	0.8	1.8	11.6	20.3	24.3	40.6	1000(1,200)	5.86
맞벌이가구 가사관리사 파견	1.0	2.3	2.6	15.7	19.7	22.1	36.8	1000(1,200)	5.64
영유아 무료 독감 예방접종	0.1	0.8	1.9	9.0	16.6	24.3	47.3	1000(1,200)	6.04
유모차(보행기 포함) 대여	1.3	3.2	4.9	23.3	22.0	20.8	24.5	1000(1,200)	5.22
장난감 대여	1.2	3.2	4.8	24.0	22.3	20.7	24.0	1000(1,200)	5.21
영유아 학습비 지원	1.0	1.7	3.8	14.4	22.5	25.0	31.7	1000(1,200)	5.57
북스타트	0.9	2.3	3.7	18.8	25.6	22.4	26.3	1000(1,200)	5.39
아동전문 건강센터 운영	0.6	1.3	3.1	15.7	20.2	26.0	33.2	1000(1,200)	5.64
육아상담사 가정 파견	1.0	2.2	4.3	18.9	23.3	22.0	28.3	1000(1,200)	5.40
아동 등하원(교) 서비스 제공	1.2	1.1	2.9	15.3	21.6	23.4	34.6	1000(1,200)	5.64
다자녀 진료비 감면 셋째 자녀	1.3	1.8	3.0	15.3	19.7	23.4	35.5	1000(1,200)	5.62

주: 평균 점수는 ‘전혀 도움되지 않음’ 1점~‘매우 도움됨’ 7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표 IV-3-19〉 자녀양육에의 도움 정도_가구 특성별(1)

구분	신생아 안심보육료 지원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맞벌이 가구 대상 가사관리사 파견		영유아 대상 무료 독감 예방접종		유모차(보행기 포함) 대여		장난감 대여
	5.58	6.02	5.86	6.25	5.64	6.04	5.22	5.21			
진척											
생애 단계별											
예비부모	5.58	6.02	5.86	6.25	5.64	6.04	5.22	5.21			
영유아자녀	6.02	5.70	6.25	6.06	5.97	6.29	5.49	5.55			
초등자녀	5.70	5.43	6.06	5.72	5.74	6.18	5.29	5.29			
중고등자녀	5.43	5.18	5.72	5.39	5.52	6.02	5.07	5.05			
F	5.18	25.251***	5.39	31.367***	5.33	12.217***	5.02	6.799***	4.95	11.039***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5.56	5.68	5.82	5.95	5.60	6.08	5.52	5.34			
400만원 이하	5.68	5.51	5.95	5.82	5.66	6.13	5.35	5.32			
600만원 이하	5.51	5.49	5.82	5.74	5.64	5.98	5.12	5.17			
600만원 초과	5.49	1.683	5.74	1.684	5.60	5.92	5.06	4.98			
F	1.683		1.684		0.103	2.093	3.611*	2.849*			
맞벌이가구 여부											
맞벌이	5.68	5.49	5.94	5.78	5.85	6.11	5.30	5.26			
홀벌이	5.49	2.502*	5.78	2.324*	5.44	5.96	5.14	5.16			
t	2.502*		2.324*		5.213***	2.205*	1.952	1.300			

단위: 점

(표 IV-3-19 계속)

구분	신생아 안심보육료 지원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생아 맞벌이 가구 대상 가사관리사 파견	영유아 대상 무료 독감 예방접종	유모차(보행기 포함) 대여	장난감 대여
자녀수						
1명	5.51	5.80	5.53	6.04	5.12	5.15
2명	5.38	5.65	5.52	5.87	5.10	5.03
3명	5.43	5.83	5.59	6.03	5.31	5.24
4명 이상	5.56	5.89	5.56	6.00	5.11	5.11
F	0.760	1.153	0.045	1.588	0.602	0.734
자녀 연령						
0-2세	5.80	6.13	5.75	6.26	5.50	5.44
3-6세	5.63	5.93	5.70	6.10	5.19	5.24
7-12세	5.31	5.65	5.49	5.94	5.01	4.96
13세 이상	5.20	5.40	5.29	5.66	5.00	4.94
F	8.834***	13.717***	4.811**	10.156***	4.317**	5.293**

주: 평균 점수는 '전혀 도움 되지 않음' 1점 ~ '매우 도움됨' 7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표 IV-3-20〉 자녀양육에의 도움 정도_가구 특성별(2)

구분	단위: 점					
	영유아 학습비 지원	북스타트 : 도서 대여 및 독서프로그램	아동전문 건강센터 운영	육아상담사 가정 파견	아동 등하원(교) 서비스 제공(I:I)	다자녀 진료비 감면 : 셋째 자녀 대상
전체	5.57	5.39	5.64	5.40	5.64	5.62
생애 단계별						
예비부모	5.81	5.58	5.94	5.75	5.89	5.75
영유아자녀	5.73	5.54	5.70	5.49	5.93	5.78
초등자녀	5.50	5.29	5.58	5.21	5.50	5.57
중고등자녀	5.26	5.13	5.35	5.17	5.22	5.38
F	10.729***	7.434***	11.783***	12.097***	20.121***	5.667**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5.82	5.72	5.80	5.42	5.56	5.64
400만원 이하	5.65	5.46	5.70	5.51	5.63	5.67
600만원 이하	5.53	5.34	5.64	5.39	5.68	5.62
600만원 초과	5.44	5.21	5.45	5.17	5.55	5.49
F	1.804	2.832*	1.920	2.731*	0.464	0.814
맞벌이가구 여부						
맞벌이	5.63	5.46	5.75	5.50	5.82	5.69
홀벌이	5.52	5.31	5.53	5.31	5.46	5.56
t	1.310	1.884	2.923**	2.284*	4.719***	1.590

(표 IV-3-20 계속)

구분	영유아 학습비 지원	복스타트 : 도서 대여 및 독서프로그램	아동진문 건강센터 운영	육아상담사 가정 파견	아동 등하원(교) 서비스 제공(1:1)	다자녀 진료비 감면 : 셋째 자녀 대상
자녀수						
1명	5.51	5.37	5.56	5.32	5.63	5.46
2명	5.44	5.26	5.50	5.25	5.46	5.58
3명	5.70	5.43	5.73	5.43	5.76	6.19
4명 이상	6.00	5.67	5.56	5.11	5.56	5.78
F	1.248	0.783	0.690	0.474	1.713	10.012***
자녀 연령						
0-2세	5.84	5.65	5.83	5.59	5.93	5.91
3-6세	5.61	5.43	5.61	5.39	5.83	5.59
7-12세	5.45	5.24	5.54	5.18	5.42	5.59
13세 이상	5.26	5.14	5.34	5.16	5.23	5.39
F	6.354***	5.107**	4.262**	3.868**	13.503***	4.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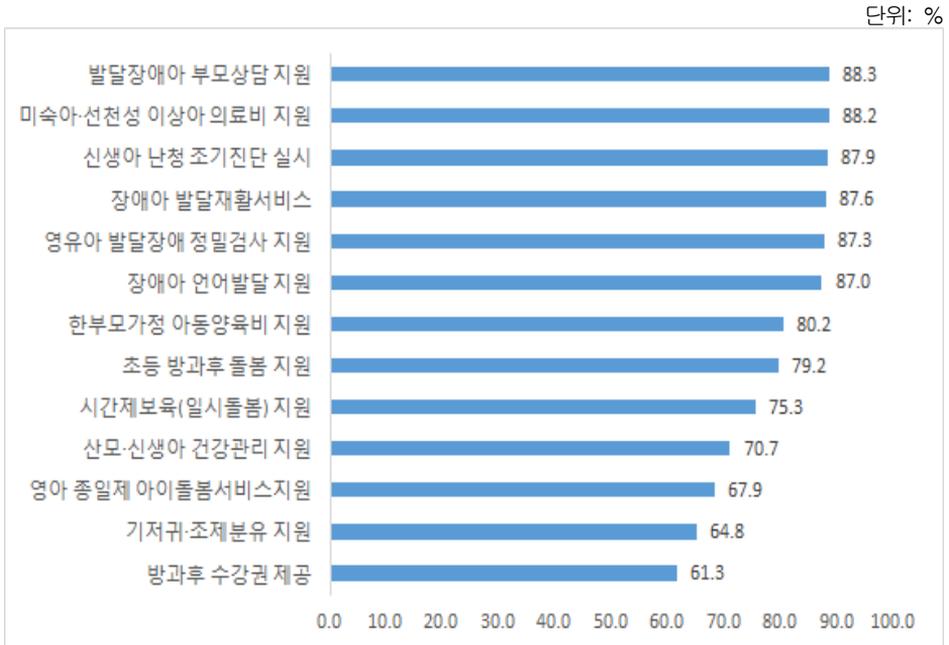
주: 평균 점수는 '전혀 도움 되지 않음' 1점 ~ '매우 도움됨' 7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2) 돌봄지원의 보편적 적용

원하는 시기에 희망하는 수단급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현행 지원은 일부 계층에 한정되나 향후 전(全)계층으로 확대하는 데 동의하는 비율은 장애아 관련 지원서비스 부문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 방과후 수강권 제공에는 61.3%로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를 보였다.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그림 IV-3-2] 전(全)계층 지원 확대의 동의 비율_부모

다음으로는 가구 특성별로 각 세부지원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지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생애 단계별로 전반적으로 예비부모는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실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전(全)계층 확대에 대해 각각 95.3%와 94.3%가 동의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장애아 발달 재활서비스 및 발달 장애아 부모상담 지원의 해당 비율이 각각 90%로 높았다(표 IV-3-21 참조).

〈표 IV-3-21〉 전(全)계층 지원 여부_생애 단계별

단위: %(명)

구분	전 계층 지원 동의 비율				X ² (df)	계(수)
	예비 부모	영유아 자녀	초등 자녀	중고등 자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94.3	91.3	82.0	85.0	27.637(3)***	100.0(1,200)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실시	95.3	89.0	81.3	86.0	29.142(3)***	100.0(1,200)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78.3	74.7	66.7	63.0	21.645(3)***	100.0(1,200)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71.3	77.3	62.0	61.0	25.222(3)***	100.0(1,200)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70.0	71.3	59.0	59.0	18.027(3)***	100.0(1,200)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93.7	87.7	84.0	83.7	17.462(3)***	100.0(1,200)
시간제보육(일시돌봄) 지원	79.0	78.3	71.7	72.0	7.566(3)	100.0(1,200)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78.3	84.7	79.7	74.0	10.53(3)*	100.0(1,200)
방과후 수강권 제공	58.7	73.0	57.7	56.0	23.416(3)***	100.0(1,200)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80.3	81.7	78.0	80.7	1.363(3)	100.0(1,200)
장애아 언어발달 지원	89.7	90.0	83.0	85.3	9.254(3)*	100.0(1,200)
장애아 발달재활 서비스	90.0	89.7	85.0	85.7	5.663(3)	100.0(1,200)
발달장애아 부모상담 지원	90.0	89.7	85.0	88.3	4.525(3)	100.0(1,200)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표 IV-3-22〉 전(全)계층 지원 여부_가구소득별

단위: %(명)

구분	전계층 지원의 동의 비율				X ² (df)	계(수)
	200만원 이하	400만원 이하	600만원 이하	600만원 초과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료비 지원	84.0	90.9	89.4	78.9	20.217(3)***	100.0(1,200)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실시	88.0	92.2	87.8	77.3	27.895(3)***	100.0(1,200)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72.0	72.2	71.8	63.2	5.831(3)	100.0(1,200)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68.0	69.9	66.9	65.4	1.604(3)	100.0(1,200)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76.0	71.2	62.2	52.4	24.986(3)***	100.0(1,200)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82.0	89.7	88.2	80.0	12.878(3)**	100.0(1,200)
시간제보육(일시돌봄) 지원	88.0	77.1	73.9	70.8	7.646(3)	100.0(1,200)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88.0	80.0	78.4	76.8	3.407(3)	100.0(1,200)
방과후 수강권 제공	72.0	64.2	59.6	55.7	7.18(3)	100.0(1,200)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92.0	85.1	78.8	68.1	29.051(3)***	100.0(1,200)
장애아 언어발달 지원	90.0	89.5	88.4	76.2	22.8(3)***	100.0(1,200)
장애아 발달재활 서비스	90.0	88.4	89.2	80.5	10.167(3)**	100.0(1,200)
발달장애아 부모상담 지원	94.0	90.7	89.6	76.8	28.845(3)***	100.0(1,200)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표 IV-3-23〉 전(全)계층 지원 여부_맞벌이 가구 여부별

단위: %(명)

구분	전계층 지원의 동의 비율		X ² (df)	계(수)
	맞벌이	홀벌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료비 지원	87.7	88.6	0.215(1)	100.0(1,200)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실시	88.2	87.6	0.113(1)	100.0(1,200)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72.6	68.8	2.139(1)	100.0(1,200)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73.1	62.8	14.603(1)***	100.0(1,200)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63.7	66.0	0.668(1)	100.0(1,200)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87.7	86.8	0.246(1)	100.0(1,200)
시간제보육(일시돌봄) 지원	77.5	73.1	3.148(1)	100.0(1,200)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80.2	78.2	0.718(1)	100.0(1,200)
방과후 수강권 제공	61.7	61.0	0.06(1)	100.0(1,200)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80.2	80.2	0(1)	100.0(1,200)
장애아 언어발달 지원	87.1	86.9	0.004(1)	100.0(1,200)
장애아 발달재활 서비스	87.9	87.3	0.108(1)	100.0(1,200)
발달장애아 부모상담 지원	87.4	89.1	0.832(1)	100.0(1,200)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01$

〈표 IV-3-24〉 전(全)계층 지원 여부_자녀수별

단위: %(명)

구분	전계층 지원의 동의 비율				X ² (df)	계(수)
	1명	2명	3명	4명 이상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료비 지원	85.0	87.1	84.3	88.9	1.014(3)	100.0(1,200)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실시	86.2	85.0	84.3	88.9	0.375(3)	100.0(1,200)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68.9	67.7	67.1	66.7	0.165(3)	100.0(1,200)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67.1	67.7	58.6	66.7	2.337(3)	100.0(1,200)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63.1	64.1	54.3	77.8	3.387(3)	100.0(1,200)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85.3	85.2	84.3	77.8	0.435(3)	100.0(1,200)
시간제보육(일시돌봄) 지원	73.2	74.7	72.9	77.8	0.345(3)	100.0(1,200)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81.3	78.9	74.3	77.8	1.948(3)	100.0(1,200)
방과후 수강권 제공	63.7	61.0	62.9	66.7	0.721(3)	100.0(1,200)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79.0	80.8	80.0	88.9	0.865(3)	100.0(1,200)
장애아 언어발달 지원	85.6	86.5	85.7	88.9	0.205(3)	100.0(1,200)
장애아 발달재활 서비스	86.2	87.3	85.7	88.9	0.348(3)	100.0(1,200)
발달장애아 부모상담 지원	86.7	88.4	88.6	77.8	1.374(3)	100.0(1,200)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월 가구소득별로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장애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에서는 600만 원 이하 가구에서 높은 동의 비율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미숙아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에서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IV-3-22 참조). 또한 초등방과후 돌봄의 경우는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전계층에 걸쳐 높은 수요를 보여, 일차적으로 보편적 지원 확대가 필요한 사업으로 파악되었다. 반면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과 방과후 수강권 지원은 600만 원 초과 가구의 동의 비율이 50%대로 낮아 현행과 같이 저소득층 가구 위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맞벌이 가구 여부로는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서 맞벌이 가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요를 나타냈다(표 IV-3-2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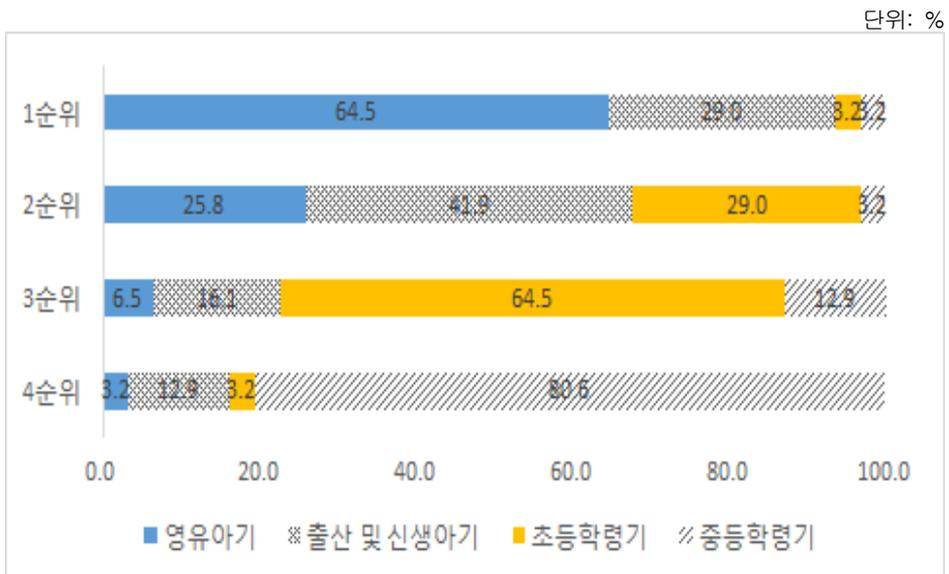
또한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가 1명 또는 2명 이상인 경우가 3명 이상에 비해 확대에 동의한 비율이 높으나(표 IV-3-24 참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것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V. 자녀돌봄 지원의 정합성 평가와 개선 과제

이 장에서는 정책 전문가 대상의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녀돌봄 지원의 재정투자 비중 및 방향성, 돌봄지원 부문 및 세부사업의 효과성, 그리고 지원대상 및 수준의 정합성과 추가 지원내용 등 개선 과제를 파악하였다.

1. 자녀돌봄 지원의 재정투자 비중 및 방향성

합계출산율 제고 차원에서 자녀양육 시기별 재정투자 비중의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1순위 기준으로 영유아기가 64.5%로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출산 및 신생아기가 29.0%로 조사되었다.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효과와 개선요구 조사' 결과임.

[그림 V-1-1] 자녀양육 단계별 재정투자 우선순위

주요 돌봄지원 분야의 적용대상 자녀 연령 기준을 파악하기 위해 합계출산율 제고 효과 측면에서 요구되는 시기는 각각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즉 어린이집이나 방과후 돌봄 등 돌봄서비스 지원은 초등학교가 71.0%, 양육비 현금지원은 초등학교 48.1%, 초등학교 25.8%, 자녀세액공제 등 양육비 세제지원은 초등학교 61.3%,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은 중고등학교 61.3%, 학령기 교육비 지원은 중고등학교 80.6%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표 V-1-1〉 주요 돌봄지원의 적용대상

단위: %

구분	연령							기타 (수)
	영아	유아	영아 ~ 초등학교	초등학교 학령기	중고등학교	만 18세	기타	
1 돌봄서비스 지원(어린이집·방과후 돌봄)	-	9.7	3.2	71.0	12.9	-	3.2 (31)	
2 양육비 현금지원(아동수당)	3.2	16.1	3.2	25.8	48.4	3.2	- (31)	
3 양육비 세제지원(자녀세액공제 등)	-	3.2	-	16.1	61.3	3.2	16.0 (31)	
4 아동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3.2	3.2	-	25.8	61.3	3.2	3.2 (31)	
5 학령기 교육비 지원	-	-	-	6.5	80.6	-	12.8 (31)	

주: 1) 1번의 기타는 '초등 저학년 3학년'임.

주: 2) 3번의 기타는 '영아~중고등 학령기', '장기적으로 현금수당 등으로 정리·흡수되어야 할 것임', '폐지', '현금지원 시 세제지원은 축소·폐지 바람직', '필요없음'임.

주: 3) 4번의 기타는 '영아~중고등 학령기'임.

주: 4) 5번의 기타는 '초중등은 의무교육', '의무교육 기간인 중학생까지', '교육비 지원의 의미 모호함', '초중등은 의무교육', '대학교까지'임.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효과와 개선요구 조사' 결과임.

중앙정부의 자녀돌봄 지원 분야의 합계출산율 제고 효과에 대해서는 1순위 기준으로 보육지원 내실화가 45.2%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휴가·휴직제도 강화 19.4%,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근로문화 개선 12.4% 순이었다(표 V-1-2 참조). 1순위와 2순위를 합하면, 보육지원 내실화와 휴가·휴직제도의 강화가 공히 61.3%로 가장 높게 평가되어 양 제도가 돌봄지원의 핵심 사업임을 확인시켜준다.

현행 중앙정부의 돌봄지원 이외에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내용으로는 중학교 이후 교육비 지원, 맞벌이 보육지원 강화를 위한 서비스 다양화와 고용친화적 보육지원, 지역돌봄 인프라 확충,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 관리 및 의료지원 강화 등이 제시된다.

〈표 V-1-2〉 자녀돌봄 지원의 합계출산을 제고 효과 평가

구분	단위: %(명)	
	1순위	1+2순위
보육지원 내실화	45.2	61.3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 강화	19.4	61.3
돌봄 사각지대 해소	12.9	35.5
근로문화 개선	12.9	32.3
임신 및 출산지원	6.5	6.5
남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경영	3.2	3.2
계(수)	100.0(31)	(31)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효과와 개선요구 조사' 결과임.

2. 자녀돌봄 지원의 효과성 평가

부모의 생애 단계별로 현행 자녀돌봄 지원 제도와 전 단계에 걸쳐 기업의 자녀돌봄 지원 제도가 합계출산을 제고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7점 만점으로 평가토록 하고,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지원내용을 파악하였다.

가. 출산 및 신생아기 돌봄지원

출산·신생아 돌봄지원 제도 및 정책의 합계출산을 제고 효과에 대해서는 신생아·산모도우미 지원이 4.90점(7점 만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고위험 신생아 산모 지원 순으로 평가되었다(표 V-2-1 참조).

또한 정책 효과가 낮다(7점 기준 3점 이하)고 평가한 이유로는 대체로 지원 대상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표 V-1-5 참조). 세부적으로 해당 비율은 고위험 신생아·산모지원 66.7%, 신생아 난청 의료비 지원 53.9%,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서 37.5%로 응답하였다. 그 밖에도 지원내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지원수준이 낮은 점 등도 지적되었다(V-2-2 참조). 그 밖에도 신생아 난청 의료비 지원 등은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평가된다.

한편 현행 출산 및 신생아기 지원 이외에 추가지원 요구로는 출산직후 산모 대상으로는 산후조리 지원과 산후우울증 진단 및 예방, 육아기술 및 산모 건강관리 프로그램, 신생아 대상으로는 전계층 대상 건강관리사 파견 등이 제기 된다.

〈표 V-2-1〉 출생·신생아 지원 제도 및 정책 효과성 인식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평균 (7점)
	전혀 효과 없음						매우 효과 있음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2	6.5	16.1	25.8	22.6	19.4	6.5	1000(31)	4.42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12.9	9.7	6.5	25.8	32.3	6.5	6.5	1000(31)	4.00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16.1	16.1	9.7	22.6	22.6	9.7	3.2	1000(31)	3.61
신생아·산모도우미 지원	6.5	6.5	3.2	16.1	29.0	19.4	19.4	1000(31)	4.90
고위험 신생아·산모 지원	12.9	6.5	9.7	19.4	22.6	19.4	9.7	1000(31)	4.29
영유아 의료비 지원	16.1	6.5	9.7	12.9	25.8	22.6	6.5	1000(31)	4.19

주: 평균 점수는 '전혀 효과 없음' 1점~ '매우 효과 있음' 7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효과와 개선요구 조사' 결과임.

〈표 V-2-2〉 출생·신생아 지원 제도 및 정책 효과성 낮은 이유

단위: %

구분	지원 대상 범위가 제한적	지원 내용이 적절치 않아서	지원 수준이 낮아서	출산률 제고 효과 낮음	기타	(수)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7.5	12.5	12.5	29.5	12.5
2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44.4	-	11.1	22.2	-	(9)
3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53.9	7.7	-	46.2	-	(13)
4 신생아·산모도우미 지원	40.0	-	20.0	-	20.0	(5)
5 고위험 신생아·산모 지원	66.7	-	-	33.3	0.0	(9)
6 영유아 의료비 지원	40.0	-	10.0	50.0	-	(10)

주: 1) 1번의 기타는 '출산 의지가 있는 대상만 정책 적용'임.
 주: 2) 4번의 기타는 '출산 의지가 있는 대상만 정책 적용'임.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효과와 개선요구 조사' 결과임.

나. 영유아기 자녀 돌봄지원

영유아 자녀 대상 돌봄지원 제도 및 정책의 출산율 제고 효과에 대해서는 0~5세 보육료 지원과 3~5세 누리과정 지원이 각각 평균 5.48점(7점 만점)과 5.39 점, 영아중일제 아이돌봄서비스 4.94점 순으로 평가되었다(표 V-2-3 참조). 그 뒤를 이어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부문 즉 영유아 건강검진과 12세 이하 국가예 방접종이 출산율 제고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표 V-2-3〉 영유아기 자녀 돌봄지원 제도 및 정책 효과성 인식

단위: %(명)

구분	효과성 정도 인식							계(수)	평균 (7점)
	① 전혀 효과 없음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효과 있음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3.2	12.9	12.9	32.3	19.4	16.1	3.2	1000(31)	4.13
시간제보육	0.0	12.9	0.0	22.6	48.4	3.2	12.9	1000(31)	4.68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3.2	6.5	9.7	9.7	25.8	35.5	9.7	1000(31)	4.94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6.5	0.0	6.5	25.8	25.8	25.8	9.7	1000(31)	4.81
가정양육수당 지원	6.5	16.1	9.7	25.8	19.4	16.1	6.5	1000(31)	4.10
0~5세 보육료 지원	0.0	6.5	0.0	12.9	29.0	22.6	22.6	1000(31)	5.48
3~5세 누리과정 지원	0.0	6.5	0.0	19.4	22.6	25.8	25.8	1000(31)	5.39
시간연장형보육 지원	3.2	3.2	0.0	29.0	19.4	35.5	9.7	1000(31)	5.03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9.7	3.2	3.2	41.9	19.4	19.4	3.2	1000(31)	4.29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9.7	6.5	0.0	45.2	22.6	9.7	6.5	1000(31)	4.19
드림스타트 사업	6.5	6.5	3.2	45.2	29.0	9.7	0.0	1000(31)	4.13
영양플러스 사업	9.7	6.5	6.5	32.3	35.5	6.5	3.2	1000(31)	4.10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3.2	6.5	6.5	29.0	12.9	25.8	16.1	1000(31)	4.84
영유아발달장애 검사비 지원	6.5	6.5	6.5	35.5	12.9	19.4	12.9	1000(31)	4.52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	6.5	9.7	0.0	22.6	22.6	12.9	25.8	1000(31)	4.87
자녀세액공제	3.2	3.2	3.2	41.9	12.9	19.4	16.1	1000(31)	4.81
교육비 세액공제	3.2	3.2	6.5	38.7	12.9	22.6	12.9	1000(31)	4.74
자녀장려세제	3.2	9.7	3.2	35.5	22.6	16.1	9.7	1000(31)	4.52

주: 평균 점수는 '전혀 효과 없음' 1점~ '매우 효과 있음' 7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효과와 개선요구 조사' 결과임.

또한 정책 효과가 낮다(7점 만점 기준 3점 이하)고 평가한 이유로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등은 지원대상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0~5세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시간제 보육에 대해서는 지원내용이 적절치 못하다고 언급되었다.

한편 현행 영유아 대상 돌봄지원 이외에 추가지원 요구로는 아동수당 상향 조정, 육아용품 지원(장난감, 교구 등), 세제지원의 확대는 상반된 의견이 공존하고, 가정내 양육지원 강화와 가정내 보육서비스의 지원대상 확대, 의료비 전액지원, 이외에도 부모 자조모임 지원 등도 제기된다.

〈표 V-2-4〉 영유아기 자녀 돌봄지원 제도 및 정책 효과성 낮은 이유(중복응답)

구분	지원대상 범위가 제한적	지원 내용이 부적절 해서	아동 수당 통합	출산율 제고 정책 아님	기타	(수)
1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55.6	22.2	-	11.1	11.1 (9)
2	시간제보육	25.0	50.0	-	25.0	- (4)
3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33.3	33.3	-	16.7	16.7 (6)
4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	75.0	-	25.0	- (4)
5	가정양육수당 지원	-	60.0	10.0	-	40.0 (10)
6	0~5세 보육료지원	-	100.0	-	-	50.0 (2)
7	3~5세 누리과정 지원	-	50.0	-	-	50.0 (2)
8	시간연장형 보육 지원	-	50.0	-	-	50.0 (2)
9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40.0	40.0	-	40.0	- (5)
10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60.0	20.0	-	20.0	- (5)
11	드림스타트 사업	60.0	20.0	-	20.0	- (5)
12	영양플러스 사업	57.1	14.3	-	28.3	- (7)
13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60.0	-	-	20.0	20.0 (5)
14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비 지원	50.0	-	-	33.4	16.7 (6)
15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	20.0	20.0	-	20.0	40.0 (5)
16	자녀세액공제	33.3	-	33.3	-	33.3 (3)
17	교육비 세액공제	25.0	25.0	25.0	-	25.0 (4)
18	자녀장려세제	20.0	-	20.0	20.0	40.0 (5)

- 주: 1) 1번의 기타는 '지원수준이 낮아서'임.
 주: 2) 3번의 기타는 '아동발달 저해, 성인입장'임.
 주: 3) 5번의 기타는 '지원 수준이 낮아서', '바람직한 정책이 아님', '여성의 성역할 강화의 부작용', '출산 기피는 돈보다 돌봄 부담이 더 크기 때문'임.
 주: 4) 6번의 기타는 '서비스 품질을 높여 믿음을 받는 것이 급선무'임.
 주: 5) 7번의 기타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불확정적이어서 불안만 키움'임.
 주: 6) 8번의 기타는 '부모의 노동 상황에 대한 대응일 뿐 추가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음'임.
 주: 7) 13번의 기타는 '영유아 보건 정책으로 저출산 대책으로서 의미 낮음'임.
 주: 8) 14번의 기타는 '보건정책으로서 성격을 가짐'임.
 주: 9) 15번의 기타는 '기타', '보건정책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정책'임.
 주: 10) 16번의 기타는 '돌봄과 수당 확대 시 폐지 필요'임.
 주: 11) 17번의 기타는 '폐지'임.
 주: 12) 18번의 기타는 '지원수준이 낮아서', '폐지'임.
-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효과와 개선요구 조사' 결과임.

다. 학령기 자녀 돌봄지원

학령기 자녀 대상 돌봄지원 제도 및 정책의 출산을 제고 효과에 대해서는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가 각각 평균 5.42점(7점 만점)과 5.03점으로 높게 평가되었다(표 V-2-5 참조). 그 다음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급식비 지원이 공히 4.71점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정책 효과가 낮다(7점 만점 기준 3점 이하)고 평가한 이유로는 대체로 지원대상의 범위가 한정된 점이 지적되었으나, 학교 우유급식 지원의 경우는 지원대상 범위 이외에도 지원내용 등 복합적인 이유가 언급되었다(표 V-2-6 참조).

〈표 V-2-5〉 학령기 자녀 돌봄지원 제도 및 정책의 효과성 인식

단위: %(명)

구분	효과성 정도 인식							계(수)	평균 (7점)
	① 전혀 효과 없음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효과 있음		
초등돌봄교실	0.0	6.5	3.2	9.7	32.3	19.4	29.0	1000(31)	5.42
방과후 학교	0.0	3.2	6.5	29.0	29.0	9.7	22.6	1000(31)	5.03
방과후 수강권 지원	3.2	3.2	9.7	38.7	19.4	12.9	12.9	1000(31)	4.58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9.7	6.5	9.7	25.8	35.5	6.5	6.5	1000(31)	4.16
지역아동센터 운영	3.2	3.2	9.7	25.8	29.0	19.4	9.7	1000(31)	4.71
급식비 지원	6.5	3.2	9.7	25.8	19.4	19.4	16.1	1000(31)	4.71
학교 우유급식 지원	6.5	9.7	12.9	32.3	16.1	16.1	6.5	1000(31)	4.16

주: 평균 점수는 '전혀 효과 없음' 1점~ '매우 효과 있음' 7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효과와 개선요구 조사' 결과임.

한편 위의 학령기 돌봄지원 이외에 추가 지원요구로는 문화 바우처 대상 확대, 저소득층 대상 놀이체험 프로그램 이용권, 초등 방과후 돌봄관련 지원대상 확대, 프로그램 다양화, 행정전달체계 효율화, 그리고 무료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중 3때까지) 등이 제기된다.

〈표 V-2-6〉 학령기 자녀 돌봄지원 제도 및 정책 효과성 낮은 이유

구분	지원 대상 범위 제한적	지원 내용이 부적절	지원 수준이 낮음	맞벌이 부부의 비율 낮음	출산율 제고 효과 없음	예비 부모가 정책 모름	기타	수
1 초등돌봄교실	66.7	-	-	-	-	33.3	-	3
2 방과후 학교	66.7	-	-	33.3	-	-	-	3
3 방과후 수강권 지원	60.0	-	-	20.0	-	-	20.0	5
4 청소년 방과후이카데미	75.0	12.5	-	12.5	-	-	-	8
5 지역아동센터 운영	40.0	-	20.0	-	20.2	20.0	-	5
6 급식비 지원	50.0	-	-	-	33.4	-	16.7	6
7 학교 우유급식 지원	33.3	22.2	22.2	-	22.2	-	11.1	9

주: 1) 3번의 기타는 '사교육시장만 늘리고 아동들은 학원을 떠돌게 됨'임.

주: 2) 5번의 기타는 '다른 계층의 아동과 만날 수 있게 통합프로그램 필요함'임.

주: 3) 6번의 기타는 '양육비에서 급식비 지원으로 상계되는 비용이 낮기 때문'임.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효과와 개선요구 조사' 결과임.

라. 근로자 대상 기업의 자녀돌봄 지원

근로자 대상 기업의 자녀돌봄지원 제도의 합계출산율 제고 효과에 대해서는 신생아·산모도우미 육아휴직제도가 평균 6.06점(7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출산전후휴가제도 5.87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5.45점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V-2-7 참조). 남성대상의 휴가 및 제도인 배우자 출산휴가와 아빠의 달 인센티브 제도는 공히 5.35점을 나타내었고, '매우 효과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25.8%와 22.6%로 조사되었다.

또한 정책 효과가 낮다(7점 만점 기준 3점 이하)고 평가한 이유로는 지원수준이 낮은 점이 지적되었고, 실제 제도 이용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도 동시에 언급되었다(표 V-2-8 참조).

한편 위의 학령기 돌봄지원 이외에 추가 지원요구로는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 상향 조정, 한부모 육아휴직제도 이용권 보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적용대상 확대(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등), 아버지 양육참여 지원 기업의 인센티브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14일 또는 30일로 확대 등이 제기된다.

〈표 V-2-7〉 근로자 대상 자녀돌봄지원 제도 및 정책의 효과성 인식

단위: %(명)

구분	효과성 정도 인식							계(수)	평균 (7점)
	① 전혀 효과 없음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효과 있음		
출산전후휴가제도	0.0	3.2	3.2	3.2	25.8	22.6	41.9	100(31)	5.87
배우자 출산휴가	0.0	9.7	3.2	6.5	29.0	25.8	25.8	100(31)	5.35
육아시간(수유시간) 허용	3.2	6.5	12.9	22.6	16.1	25.8	12.9	100(31)	4.71
육아휴직제도	0.0	0.0	3.2	9.7	6.5	38.7	41.9	100(31)	6.06
아빠의 달 인센티브 제도	0.0	6.5	6.5	12.9	16.1	35.5	22.6	100(31)	5.35
가족돌봄 휴직제도	0.0	3.2	6.5	16.1	32.3	25.8	16.1	100(31)	5.19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0.0	6.5	6.5	6.5	25.8	25.8	29.0	100(31)	5.45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지원	0.0	6.5	9.7	25.8	16.1	29.0	12.9	100(31)	4.90

주: 평균 점수는 '전혀 효과 없음' 1점~ '매우 효과 있음' 7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효과와 개선요구 조사' 결과임.

〈표 V-2-8〉 근로자 대상 자녀돌봄지원 제도 및 정책 효과성 낮은 이유

단위: %

구분	지원 대상 범위 제한적	지원 내용 부적절	지원 수준이 낮아서	이용률 높지 않음	현실 적용 어려움	기타	(수)
1 출산전후휴가제도	-	-	50.0	-	-	50.0	(2)
2 배우자 출산휴가	-	-	50.0	-	-	50.0	(4)
3 육아시간(수유시간) 허용	14.3	14.3	14.3	14.3	28.6	14.3	(7)
4 육아휴직제도	-	-	-	-	-	100.0	(1)
5 아빠의 달 인센티브 제도	-	50.0	25.0	25.0	-	-	(4)
6 가족돌봄 휴직제도	-	-	33.3	33.3	33.3	-	(3)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25.0	25.0	-	25.0	25.0	-	(4)
8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지원	-	40.0	-	20.0	20.0	20.0	(5)

주: 1) 1번의 기타는 '출산을 꺼리는 이유가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임.

주: 2) 2번의 기타는 '기간이 너무 짧음', '비용부담으로 인한 저출산 요인이 높기 때문에'임.

주: 3) 3번의 기타는 '실질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방안 모색 필요'임.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효과와 개선요구 조사' 결과임.

3. 자녀돌봄 지원의 개선 과제

전 양육단계에 걸쳐 현행 자녀돌봄 지원제도 및 정책이 자녀를 출산, 양육 하는데 얼마나 필요한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이 자녀를 원하는 시기에 출산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각각 7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토록 하였다. 또한 현금지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수준에 관한 의견도 파악하였다.

가. 돌봄지원의 필요도 및 도움 정도

전 양육단계를 포괄하여 현행 중앙정부의 돌봄지원이 출산·양육 시 얼마나 필요한지를 질문한 결과,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평균 6.06점(7점 만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초등 방과후 돌봄 5.97점, 학령기 교육비 지원 5.81점, 신생아·산모 도우미 지원 5.74점, 임신·출산관련 의료비 지원 5.61점 순으로 나타났다.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한 비율은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이 공히 38.7%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표 V-3-1〉 중앙정부 돌봄지원의 출산·양육 시 필요도 인식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평균 (7점)
	전혀 필요 하지 않음						매우 필요 함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	0.0	3.2	3.2	16.1	22.6	16.1	38.7	1000(31)	5.61
신생아·산모 도우미 지원	0.0	3.2	0.0	9.7	29.0	22.6	35.5	1000(31)	5.74
출산용품 지원	0.0	6.5	3.2	32.3	16.1	35.5	6.5	1000(31)	4.90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0.0	3.2	9.7	22.6	29.0	22.6	12.9	1000(31)	4.97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0.0	0.0	3.2	9.7	16.1	41.9	29.0	1000(31)	5.84
일시 돌봄(시간제보육) 지원	0.0	3.2	6.5	12.9	16.1	35.5	25.8	1000(31)	5.52
양육비 현금지원(아동수당)	6.5	3.2	3.2	12.9	25.8	35.5	12.9	1000(31)	5.06
양육비 세제지원	6.5	3.2	0.0	25.8	12.9	29.0	22.6	1000(31)	5.13
영유아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0.0	0.0	0.0	16.1	25.8	19.4	38.7	1000(31)	5.81
영유아 보육료 지원	0.0	3.2	0.0	3.2	9.7	48.4	35.5	1000(31)	6.06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0.0	3.2	3.2	6.5	6.5	41.9	38.7	1000(31)	5.97
학령기 교육비 지원	0.0	0.0	0.0	19.4	12.9	35.5	32.3	1000(31)	5.81

주: 평균 점수는 '전혀 필요하지 않음' 1점~ '매우 필요함' 7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효과와 개선요구 조사' 결과임.

다음으로 2016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 제도 및 정책이 원하는 시기에 자녀 출산에의 도움 정도는 신생아(0세아) 의료비 지원이 평균 5.32점(7점 만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표 V-3-2 참조). 그 다음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5.13점, 아동수당 5.00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신생아 의료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이 각각 29.0%와 22.6%로 높게 나타났다.

〈표 V-3-2〉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 제도 및 정책의 출산 도움 정도 인식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인식							계(수)	평균(7점)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음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도움 됨		
출산지원금	9.7	16.1	19.4	32.3	19.4	0.0	3.2	100(31)	3.48
출산용품 지원	16.1	22.6	3.2	45.2	9.7	3.2	0.0	100(31)	3.19
아동수당(매월 분할금)	0.0	3.2	6.5	25.8	32.3	16.1	16.1	100(31)	5.00
산후조리원 지원	3.2	3.2	3.2	29.0	29.0	12.9	19.4	100(31)	4.94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파견	0.0	3.2	3.2	35.5	16.1	19.4	22.6	100(31)	5.13
모유수유 전문가 가정 파견	3.2	9.7	16.1	35.5	9.7	16.1	9.7	100(31)	4.26
유축기 대여	6.5	22.6	9.7	29.0	9.7	16.1	6.5	100(31)	3.87
신생아(0세아)의료비 지원	0.0	3.2	6.5	19.4	25.8	16.1	29.0	100(31)	5.32

주: 평균 점수는 '전혀 도움되지 않음' 1점~ '매우 도움됨' 7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효과와 개선요구 조사' 결과임.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지원 및 제도 및 정책이 자녀양육에의 도움 정도는 영유아 대상 무료독감 예방 접종이 평균 5.55점(7점 만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표 V-3-3 참조). 그 다음으로는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5.26점, 1:1 개별 파견 방식의 자녀 등하원서비스 제공 5.10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영유아 무료독감 예방 접종 35.5%,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25.8% 순이었다.

〈표 V-3-3〉 지방자치단체 육아지원 제도 및 정책의 자녀양육 도움 정도 인식

단위: %(명)

구분	도움 정도 인식							계(수)	평균 (7점)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음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도움 됨		
신생아 안심보육료 지원	6.5	6.5	12.9	32.3	16.1	19.4	6.5	1000(31)	4.29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0.0	6.5	3.2	25.8	12.9	25.8	25.8	1000(31)	5.26
맞벌이가구 가사관리사 파견	3.2	12.9	3.2	22.6	29.0	9.7	19.4	1000(31)	4.68
영유아 무료 독감 예방접종	0.0	3.2	0.0	25.8	16.1	19.4	35.5	1000(31)	5.55
유모차(보행기 포함) 대여	0.0	9.7	0.0	54.8	12.9	12.9	9.7	1000(31)	4.48
장남감 대여	0.0	12.9	0.0	45.2	19.4	9.7	12.9	1000(31)	4.52
영유아 학습비 지원	6.5	19.4	16.1	29.0	16.1	9.7	3.2	1000(31)	3.71
복스타트	0.0	12.9	0.0	32.3	25.8	19.4	9.7	1000(31)	4.68
아동전문 건강센터 운영	0.0	6.5	3.2	32.3	22.6	22.6	12.9	1000(31)	4.90
육아상담사 가정 파견	0.0	6.5	0.0	29.0	35.5	16.1	12.9	1000(31)	4.94
아동 등하원(교) 서비스 제공	0.0	9.7	3.2	19.4	19.4	32.3	16.1	1000(31)	5.10
다자녀 진료비 감면 셋째 자녀	0.0	9.7	3.2	32.3	19.4	22.6	12.9	1000(31)	4.81

주: 평균 점수는 '전혀 도움되지 않음' 1점~ '매우 도움됨' 7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효과와 개선요구 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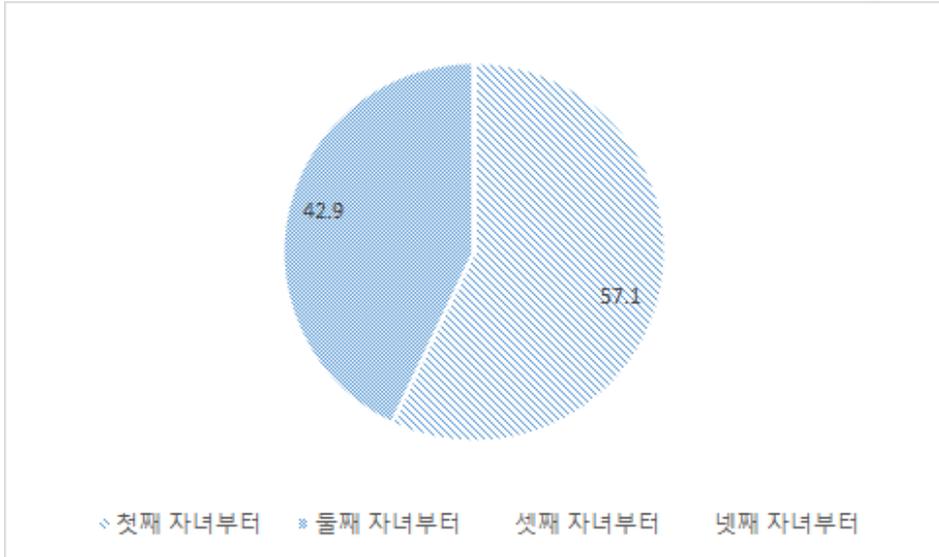
나. 지원대상 및 수준

1) 출산장려금/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및 방식

2016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 제도 및 정책 중 출산지원금과 아동수당의 도움 정도를 5점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 해당 지원대상 및 수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우선 출산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의 지급대상으로는 첫째 자녀부터 42.9% 둘째 자녀부터 57.1%로 조사되었다(그림 V-3-1 참조). 해당 급여액은 평균 175만 원이고, 100만 원이 28.6%로 약간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30만 원부터 50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그림 V-3-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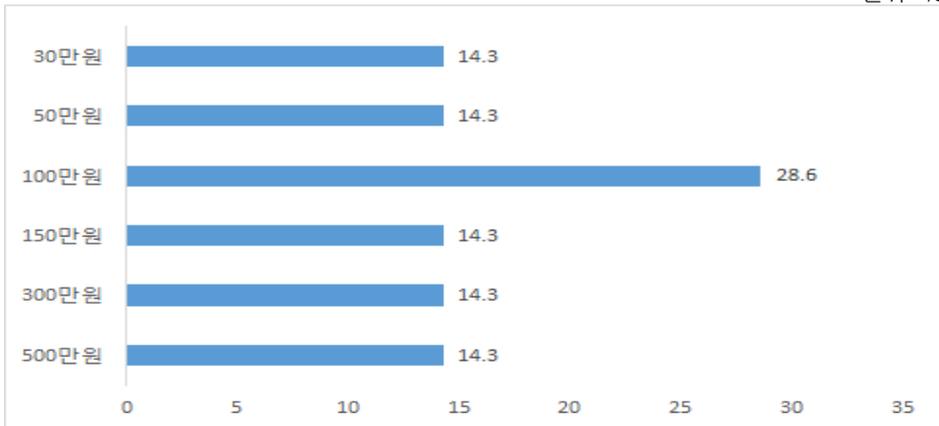
단위: %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효과와 개선요구 조사' 결과임.

[그림 V-3-1]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의 출생순위

단위: %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효과와 개선요구 조사' 결과임.

[그림 V-3-2] 출산지원금 적정급여 수준

다음으로 매월 분할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지원대상 기준으로는 고등학생까지가 60.0%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초등학교까지(만 12세 이

하)가 20% 순이었다(그림 V-3-3 참조). 출생순위로는 첫째 자녀부터가 90%로 다수였으며, 모든 계층에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율은 70%로 조사되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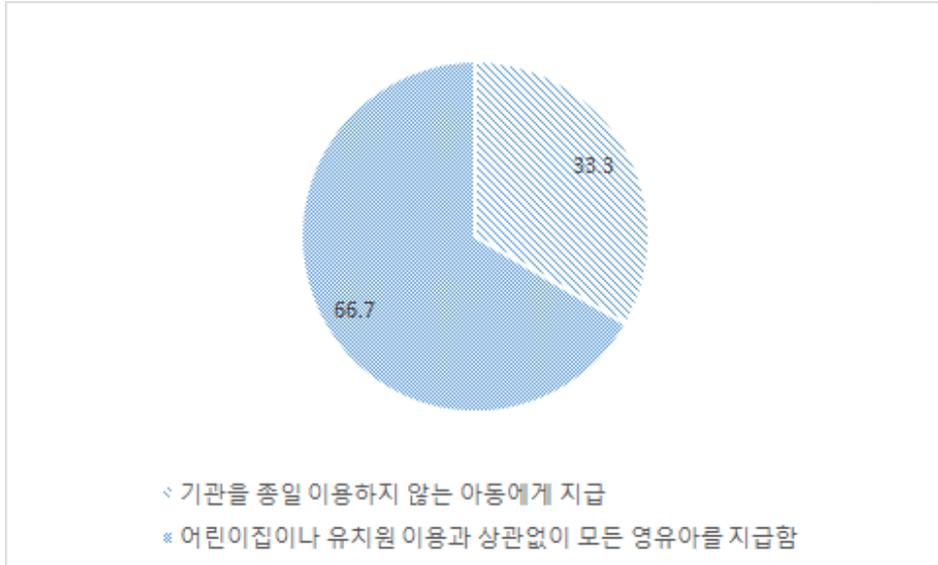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효과와 개선요구 조사' 결과임.

[그림 V-3-3] 아동수당 지급대상 기준

또한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으로 영유아까지가 타당하다고 응답한 경우, 세부 적용기준으로는 기관 즉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6.7%로 더 높게 나타났다.

단위: %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효과와 개선요구 조사' 결과임.

[그림 V-3-4]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영유아인 경우 세부 적용기준

한편 아동수당이 출산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 적합한 급여지급 방식으로는 자녀 연령과 상관없이 급여 지급이 40.0%, 자녀 연령이 적을수록 급여 수준을 높이는 것과 이와는 반대로 자녀 연령이 많을수록 급여수준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공히 30%로 조사되어 해당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됨을 말해준다.

또한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급여수준을 높이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급여수준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5.0%와 60.0%로 높게 나타났다. 특수한 요구를 지닌 아동에 대한 추가급여의 지급에 대해서는 95%가 지지하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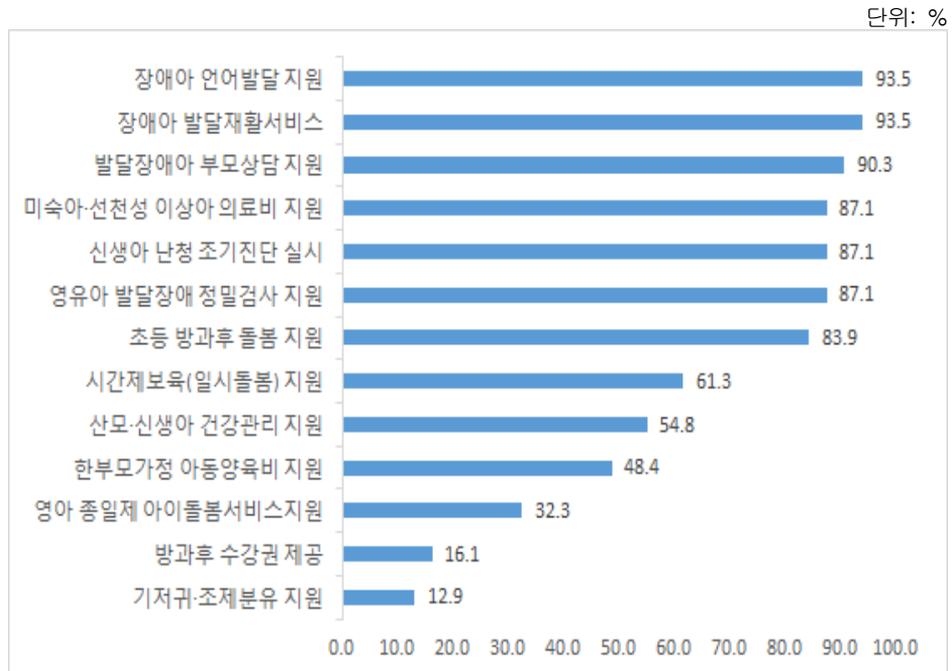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효과와 개선요구 조사' 결과임.

[그림 V-3-5] 아동수당 급여지급 방식

2) 돌봄지원 제도 및 정책의 적용대상 확대

현행 중앙정부의 자녀돌봄지원 제도 및 정책들 중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항목들의 적용대상 확대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全)계층 지원에의 동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장애아 지원 부문 즉 장애아 언어 발달 지원과 장애아 발달재활서비스가 공히 93.5%. 발달장애아 부모상담 지원이 9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진료비지원과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실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이 공히 87.1%였다.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이 83.9%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데 동의하는 비율은 54.8%에 그쳤다.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효과와 개선요구 조사' 결과임.

[그림 V-3-6] 전(全)계층 지원 확대의 동의 비율_전문가

VI. 결론 및 제언

이 장에서는 4, 5장의 실증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현행 자녀돌봄 지원이 수요자의 욕구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자녀돌봄 지원의 방향 및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1. 종합: 자녀돌봄 지원의 양육 단계별 정합성 평가

정책 제언을 도출하기에 앞서, 현행 자녀돌봄 지원이 생애주기상 자녀 양육기의 각 단계별로 수요자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 수요자의 각 돌봄지원 제도별 도움 정도와 필요도 인식에 주목하되, 이를 정책 전문가의 효과성 평가와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그 타당성을 도출한 바는 이하와 같다.

구체적으로는 각 양육 단계별 돌봄지원 분야의 재정투자 비중이 욕구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는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한 후, 자녀돌봄의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수준이 수요자의 욕구와 정책 효과성에 부합하는지를 다루었다.

가. 정합성 평가 1: 자녀양육 단계별 재정투자 비중의 적정성

주요 돌봄지원에서 정책 수요자인 부모와 정책 전문가 모두에서 높은 필요도를 나타낸 항목으로는 돌봄서비스 지원은 초등학교, 양육비 세제지원과 교육비 지원은 중고등학교로서 해당 비율은 약 60%선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외 지원 분야에서는 부모와 정책 전문가의 필요도 인식이 일부 차이를 보였다. 즉 양육비 현금지원의 경우는 부모들은 유아와 초등학교까지, 정책 전문가는 중고등학교까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아동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기는 부모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가 유사한 필요도 수준을 보였으나, 정책 전문가는 중고등학교까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1.3%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 수요에 따르면, 현행 돌봄지원이 영유아기의 돌봄서비스에 과도하게 집

중되어, 학령기 전반에 대한 돌봄지원 전반이 간과되고, 현금지원과 돌봄서비스 이외 서비스 지원에 대한 재정투자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VI-1-1〉 양육 단계별 돌봄지원의 필요도_부모/전문가 비교

구분 사업명	자녀양육 단계별							
	영아		유아		초등학령기		중고등학령기	
	부모	전문가	부모	전문가	부모	전문가	부모	전문가
돌봄서비스 지원	1.8	-	27.1	9.7	66.8	71.0	4.3	12.9
양육비 현금지원	6.5	3.2	32.5	16.1	41.6	25.8	19.4	48.4
양육비 세제지원	2.8	-	12.3	3.2	24.0	16.1	61.0	61.3
아동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3.2	3.2	13.0	3.2	42.2	25.8	41.7	61.3
학령기 교육비 지원	0.0	-	0.0	-	31.9	6.5	68.1	80.6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와 '자녀돌봄 지원의 효과와 개선요구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재구성한 표임.

돌봄지원 욕구는 영유아기에 한정되지 않고, 각 주요내용별로 차이가 있으나 초등학령기 나아가 중고등학령기에 걸쳐 보다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현행 돌봄지원 분야의 재정투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에서 영유아기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전체 출생 및 신생아기부터 중고등학령기에 이르는 돌봄지원 분야의 재정투자 비중은 중앙정부의 경우는 영유아기에 73.7%에 달하며, 지방정부의 경우에도 공통사업과 자체사업에서 해당 비중이 각각 88.9%와 65.3%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현행과 같이 생애주기상 자녀 출산 및 신생아기와 영유아기 자녀를 둔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출산율 제고 효과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다. 향후에는 돌봄지원 분야에 따라 초등학령기와 중고등학령기로 그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장해야 하며, 이때 지원대상의 단계적 확대는 정책 효과 측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정합성 평가 2: 현금지원과 서비스 지원 비중의 적정성

우선 서비스 지원은 영유아기 자녀를 둔 가구 대상의 보육서비스 지원이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의 공통사업과 자체사업에서 각각 66.8%와 60.0%를 차지한다. 중고등학령기까지 그 수요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영유아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에 대한 재정투자 비중은 각각 4.6%와 2.3%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현금지원은 영유아기는 공통사업에서 14.6%, 자체사업에서 2.3%를 차지하는 데 그친다. 영유아기의 현금지원에 대한 재정투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부터 새롭게 보편적인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그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한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제도의 적용대상이 미취학아동에 한정되어, 현금지원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동수당제도의 적용대상 연령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부모는 최소한 초등학교, 나아가 중학교까지였으며, 정책 전문가는 현금지원은 중학교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게다가 앞서 2장에서 다룬 바와 같이(표 II-1-1 참조) OECD 국가의 연령별 1인당 공적지출 수준은 초등학교의 현금지원 비중은 영유아기에 비해 감소하나 일정 부문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중학교에 이른다.

따라서 서비스 지원이 보육서비스에 한정되고, 현금지원이 미취학아동에 한정되는 것은 수요자의 욕구에 미치지 못하므로, 그 범위를 중학교까지 확장하고, 서비스 내용도 다양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각 양육 단계별로 돌봄서비스는 초등학교까지, 양육비 세제지원과 교육비 지원은 중학교까지 포괄해야 하며, 아동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과 양육비 현금지원은 기존 미취학 자녀까지부터 초등학교, 중학교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 정합성 평가 3: 지원내용/지원대상 및 수준의 적정성

현행 돌봄지원이 수요와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수준 측면에서 그 정합성 수준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돌봄지원과 수요와의 정합성은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및 수준이 동시에 고려되어 평가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보다 체계화된 분석을 위해 이들을 각각 구분하여 다룬 후 종합하였다.

1) 돌봄지원 내용

앞서 다룬 2017년 기준 중앙정부의 자녀돌봄 지원내용과 2016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및 육아지원 분야 자체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원하는 시기에 희

망하는 수대로 자녀를 출산, 양육하는데 도움 정도와 필요도를 정책 수요자와 정책 전문가가 평가한 내용을 각각 비교하여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가) 중앙정부 자녀돌봄 지원의 수요와의 부합성

(1) 전반

현행 중앙정부의 주요 돌봄지원의 도움 정도를 평가한 바에 의하면, 영유아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관련 의료비 지원에서 부모와 정책 전문가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나타냈다. 반면에 학령기 교육비 지원과 양육비 세제지원은 부모의 욕구 수준은 높으나, 정책 전문가의 효과성 평가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표 VI-1-2 참조).

〈표 VI-1-2〉 자녀돌봄 지원의 도움 정도_부모/전문가 비교

단위: %, 점

구분	부모		전문가	
	매우 도움됨 비율	평균점수 (7점)	매우 도움됨 비율	평균점수 (7점)
영유아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55.8	6.25	38.7	5.81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	50.4	6.06	38.7	5.61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46.8	6.05	38.7	5.97
영유아 보육료 지원	49.1	6.06	35.5	6.06
학령기 교육비 지원	50.3	6.12	32.3	5.81
신생아·산모 도우미 지원	44.9	5.94	35.5	5.74
양육비 세제지원(자녀세액공제 등)	52.9	6.17	22.6	5.13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35.6	5.77	29.0	5.84
일시 돌봄(시간제보육) 지원	36.1	5.75	25.8	5.52
양육비 현금지원(아동수당)	47.9	5.95	12.9	5.06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36.3	5.66	12.9	4.97
출산용품 지원	34.2	5.57	6.5	4.90

주: 평균 점수는 '전혀 필요하지 않음' 1점~'매우 필요함' 7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와 '자녀돌봄 지원의 효과와 개선요 구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재구성한 표임.

(2) 양육 단계별

□ 출산·신생아기 지원

출산 및 신생아기 지원의 경우는 신생아·산모 도우미 지원의 도움 정도가 부모와 전문가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VI-1-3 참조). 그 다음으로는 부모

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 전문가는 고위험 신생아·산모 지원의 효과를 높게 평가하였다.

〈표 VI-1-3〉 출산·신생아 지원의 도움 정도_부모/전문가 비교

단위: %, 점

구분	부모		전문가	
	도움됨 비율	평균점수 (5점)	도움됨 비율	평균점수 (7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70.9	3.97	48.5	4.42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	69.7	3.92	45.3	4.00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69.4	3.82	35.5	3.61
신생아·산모 도움미 지원	76.7	4.12	67.8	4.90
고위험 신생아·산모 지원	61.6	3.82	51.7	4.29

주: 1) 평균 점수는 부모는 '전혀 도움되지 않음' 1점~'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이며, 전문가는 '전혀 도움되지 않음' 1점~ '매우 도움됨' 7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주: 2) 도움됨 비율은 부모는 도움됨과 매우 도움됨 응답율은 합한 비율이며, 전문가는 도움됨 5점부터 7점까지(보통 4점) 응답율은 합한 비율임.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와 '자녀돌봄 지원의 효과와 개선요구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재구성한 표임.

한편 이들 출산 및 신생아기 지원을 이용한 부모의 도움 정도에 의하면,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높고, 자녀수에 따라서는 특히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에서 자녀수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의 도움 정도가 각각 4.03점과 3.86점으로 높게 평가되어, 현행 셋째아부터 지원은 부모들의 욕구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 영유아기 자녀 지원

영유아기 돌봄지원에 대해서는 부모와 전문가의 의견이 일부 달리 나타나는 데, 대체로 부모는 양육비용 지원, 전문가는 서비스 지원에 대한 효과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표 VI-1-4 참조). 구체적으로 부모는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의 도움됨 비율이 88.3%로 높게 나타나며, 전문가는 0~5세 보육료 지원과 3~5세 누리과정 지원의 도움됨 비율이 공히 74.2%로 높게 평가하였다.

반면에 현행 저소득층 가구 위주로 지원되는 드림스타트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등의 도움 정도는 부모와 전문가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낮다고 평가되므로, 현행 저소득층 가구 위주 지원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표 VI-1-4〉 영유아기 돌봄지원의 도움 정도_부모/전문가 비교

단위: %, 점

구분	부모		전문가	
	매우 도움됨 비율	평균점수 (5점)	매우 도움됨 비율	평균점수 (7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69.3	3.90	38.7	4.13
시간제보육	73.3	4.04	64.5	4.68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75.7	4.04	71.0	4.94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84.7	4.33	61.3	4.81
가정양육수당 지원	85.3	4.30	42.0	4.10
0~5세 보육료 지원	81.0	4.16	74.2	5.48
3~5세 누리과정 지원	53.1	3.50	74.2	5.39
시간연장형보육 지원	61.3	3.61	64.6	5.03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지원	70.4	3.94	42.0	4.29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75.1	4.14	0.0	4.19
드림스타트 사업	75.0	3.97	38.8	4.13
영양플러스 사업	64.4	3.92	38.7	4.10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77.9	4.14	45.2	4.84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70.0	3.90	54.8	4.52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	88.3	4.37	45.2	4.87
자녀세액공제	80.9	4.19	0.0	4.81
교육비 세액공제	78.7	4.15	61.3	4.74

주: 1) 평균 점수는 부모는 '전혀 도움되지 않음' 1점~'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이며, 전문가는 '전혀 도움되지 않음' 1점~ '매우 도움됨' 7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주: 2) 도움됨 비율은 부모는 도움됨과 매우 도움됨 응답율은 합한 비율이며, 전문가는 도움됨 5점부터 7점까지(보통 4점) 응답율은 합한 비율임.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와 '자녀돌봄 지원의 효과와 개선요구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재구성한 표임.

나)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의 수요와의 부합성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을 중심으로 출산과 자녀양육에의 도움 정도를 평가한 바로는 신생아 의료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영유아 대상 무료 독감 예방접종,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하원(교)서비스 지원이 부모와 정책 전문가 모두에서 높게 평가되었다(표 VI-1-5, VI-1-6 참조).

반면에 출산지원금과 신생아 안심보육료 지원, 영유아 학습비 지원에 대해서는 부모의 욕구 수준은 높으나, 정책 전문가의 효과성 평가는 낮은 수준을 보여, 이들 사업의 우선순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VI-1-5〉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의 출산 도움 정도_부모/전문가 비교

단위: %, 점

구분	부모		전문가	
	매우 도움됨 비율	평균점수 (7점)	매우 도움됨 비율	평균점수 (7점)
신생아(0세아) 의료비 지원	45.8	5.94	29.0	5.32
아동수당: 양육비 현금지원	42.3	5.77	16.1	5.00
산후조리원 지원	36.8	5.56	19.4	4.9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29.6	5.39	22.6	5.13
출산지원금: 자녀 출산 시 일시금 지원	33.5	5.48	3.2	3.48
모유수유 전문가 가정 파견	25.4	5.09	9.7	4.26
유축기 대여	24.0	4.98	6.5	3.87
출산기념품(출산용품) 지원	22.3	4.79	0.0	3.19

주: 평균 점수는 '전혀 도움되지 않음' 1점~'매우 도움됨' 7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와 '자녀돌봄 지원의 효과와 개선요구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재구성한 표임.

〈표 VI-1-6〉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의 자녀양육 도움 정도_부모/전문가 비교

단위: %, 점

구분	부모		전문가	
	매우 도움됨 비율	평균점수 (7점)	매우 도움됨 비율	평균점수 (7점)
영유아 대상 무료 독감 예방접종	47.3	6.04	35.5	5.55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40.6	5.86	25.8	5.26
맞벌이 가구 대상 가사관리사	36.8	5.64	19.4	4.68
아동 등하원(교) 서비스 제공	34.6	5.64	16.1	5.10
다자녀 진료비 감면: 셋째 자녀 대상	35.5	5.62	12.9	4.81
아동전문 건강센터 운영	33.2	5.64	12.9	4.90
육아상담사 가정 파견	28.3	5.40	12.9	4.94
신생아 안심보육료(상해보험료) 지원	32.7	5.58	6.5	4.29
복스타트: 도서 대여 및 독서 프로그램	26.3	5.39	9.7	4.68
장남감 대여	24.0	5.21	12.9	4.52
영유아 학습비 지원	31.7	5.57	3.2	3.71
유모차(보행기 포함) 대여	24.5	5.22	9.7	4.48

주: 평균 점수는 '전혀 도움되지 않음' 1점~'매우 도움됨' 7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와 '자녀돌봄 지원의 효과와 개선요구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재구성한 표임.

2) 돌봄지원 대상

현행 중앙정부의 돌봄지원 중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에 한하여 전계층 지원 확대의 동의 정도를 질문한 바에 의하면, 장애아 관련 각종 돌봄지원과 미숙아 및 신생아 의료지원, 그리고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 등 예방적 차원의 사업에서 부모와 정책 전문가 모두에서 80%가 넘는 동의 비율을 나타냈다. 그 외에 초등방과후 돌봄지원의 보편적 지원에 대해서도 부모는 79.2%, 정책 전문가는 83.9%로 높은 지지를 보였다.

반면에 방과후 수강권 제공의 보편적 지원에 동의한 비율은 부모는 61.3%인 반면, 정책 전문가는 16.1%에 그쳤고,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는 부모는 64.9%, 정책 전문가는 12.9%에 불과하여, 보편적인 수요로서 판단하는 데는 신중한 접근을 요한다.

〈표 VI-1-7〉 전(준)계층 지원 확대의 동의 비율

단위: %

구분	동意的한 비율	
	부모	전문가
장애아 발달재활 서비스	87.6	93.5
장애아 언어발달 지원	87.0	93.5
발달장애아 부모상담 지원	88.3	90.3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88.2	87.1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실시	87.9	87.1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87.3	87.1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79.2	83.9
시간제보육(일시돌봄) 지원	75.3	61.3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80.2	48.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건강관리사 파견)	70.7	54.8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지원(1:1파견돌보미)	67.9	32.3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64.8	12.9
방과후 수강권 제공	61.3	16.1

자료: 이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와 '자녀돌봄 지원의 효과와 개선요구 조사' 결과임.

3) 지원대상 및 수준: 현금 및 현물지원

가) 아동수당

아동수당의 지원대상은 부모와 전문가 모두에서 첫째 자녀부터가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여 각각 75.5%와 90%를 나타냈다. 자녀 연령으로는 고등학생까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응답한 전문가의 비율이 40%로 가장 높았다.

지원수준으로는 자녀 연령과 상관없이 균등한 급여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평가가 부모와 전문가 모두에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여 각각 53.5%와 40.0% 였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급여액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각각 55.0%와 60.0%가 지지하였다. 양육비를 지원할 시에 추가출산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600만 원 이하 가구에서 평균 50%선을 넘는 반면, 600만 원 초과 가구에서는 해당 비율이 12.5%에 불과하였으므로, 현금지원을 통한 출산율 제고 효과는 고소득층에서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적용대상을 한정하거나 소득기준을 적용한 급여지원체계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행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정액 급여가 제공되는 것은 효과성 측면에서 재고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급여수준을 현행보다 상향조정할 시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정책 전문가는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급여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특수한 요구를 지닌 돌봄취약계층에 추가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데는 부모와 전문가가 각각 71.5%와 95%의 동의 비율을 나타냈다.

2) 출산지원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부모들의 필요도 수준은 출산 및 신생아기의 산모와 신생아 지원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또한 아동수당과 출산용품 지원에 비해서도 월등히 낮은 필요도를 나타내어, 상대적으로 정책 효과는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으로는 부모와 전문가의 견해 차이를 보였는데, 부모는 첫째 자녀부터가 73.9%로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정책 전문가는 둘째 자녀부터가 57.1%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출산지원금이 도움이 된다고 인식한 경우 희망 지원금액이 평균 약 200만 원 선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의 지급대상이 주로 셋째 자녀부터이고, 급여액 수준도 200만 원 이하지역이 다수이므로 그 효과는 미흡하다고 보여진다.

게다가 출산지원금의 출산에의 도움 정도는 저소득층 가구에서도 아동수당과 비교하여 낮게 평가되므로 해당 제도는 폐지하고 아동수당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출산용품

출산용품 지원의 자녀 출산에의 도움 정도는 앞서 다른 출산지원금에 비해서도 낮은 도움 정도를 나타냈으며, 출산 및 신생아기 지원 전반에 걸쳐 가장 수요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도움 정도 평가가 높은 경향을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며, 자녀수에 따른 수요의 차이도 나타나지 않아, 전반적으로 재고되어야 할 사업으로 보여진다.

2. 자녀양육 단계별 돌봄지원의 방향 및 주요 전략

앞서 살펴본 종합 논의에 기반하여 저출산 대응과 자녀돌봄 지원간의 관계를 명료화하고, 자녀돌봄 지원의 방향 및 주요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기본 방향

1) 저출산 대응과 자녀돌봄 지원

일반적으로 저출산 대응은 재정투자 측면에서 사회투자 방식이 효과적으로 평가되며, 이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투자가 핵심을 이룬다. 즉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기 즉 생산 인구 및 노동력 감소, 구매력을 지닌 인구의 감소로 인한 국내 소비의 위축 등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둔화 등에 대한 대응으로, 여성고용을 제고하고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과 추가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출산을 장려 또는 유도하는 전통적인 인구정책과는 명확히 구분된다. 단적으로 말해 출산 장려정책은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등으로 관련 재정투자의 증가가 불가피하게 초래된다. 반면에 여성고용을 제고는 다른 한편으로 사회복지재정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아동에 대한 조기투자는 예방적 차원에서 사회비용 절감 효과를 지니므로 재정투자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평가된다. 보육정책은 이러한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치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이 보육정책에 주력해온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앞서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보육정책이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보육정책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여 여성고용율을 제고하고, 부모의 여건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대표적인 저출산 대응 전략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적으로 보육정책은 출산장려 정책과는 명확히 구분되며,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열악한 양육 여건으로 자녀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출산을 제고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앞서 현행 정부의 저출산 대책 과제 중 정책 전문가들이 그 효과가 높다고 평가한 바로는 보육료 지원과 출산휴가 및 휴직제도 강화가 1, 2순위를 합하여 공히 61.3%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또한 부모들이 현재 자녀가 희망하는 수보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출산 의향이 없는 이유로서 ‘양육비가 부담되어서’와 ‘직장생활과 자녀양육의 병행이 어려워서’가 각각 53.1%와 21.3%로 나타난다. 따라서 양육비용 부담을 실질적인 완화와 일·가정 양립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일상화 노력은 일관되게 견지되어야 할 돌봄지원의 핵심 방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저출산 기본계획 및 관련 대책은 저출산의 다양한 원인에 주목하되, 출산을 저해하는 구조적 원인들 즉 “원하는 시기에 희망하는 수대로 자녀를 출산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인에 집중한다. 또한 그 목표는 출산을 제고에 한정하지 말고, 양육비용 지원과 서비스 전반을 포괄하여 자녀 양육기 전반에 걸쳐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를 내실화함으로써 출생아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모든 아동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에 대응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저출산 극복의 전략을 미래세대 투자로 접근하고 육아 문제를 일차적인 국가 책임으로 인식한 점은 고무적이라고 본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80).

2) 자녀돌봄 지원의 방향 및 주요 전략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돌봄지원의 방향과 주요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양육 단계별 재정투자는 현행 영유아기 위주에서 보다 확장하여 중고등학령기를 포괄해야 한다. 현행 중앙정부의 돌봄지원 분야 재정투자는 영유아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책에서는 중고등학령기 사업이 거의 부재한 상황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앞서 다룬 OECD 국가들의 경

우는 아동 연령이 증가할수록 재정투자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부모 조사와 정책 전문가 조사 결과에서도 돌봄지원의 수요는 주요 지원 분야별로 초등학교학령기 또는 중고등학교학령기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영유아기에 집중된 재정투자는 부모들의 욕구 수준과 정책 전문가의 효과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예비부모도 그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포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생애 단계별 돌봄지원 수요 전반에서 예비부모는 출산 및 신생아 지원의 전 사업에 걸쳐 가장 높은 수요를 보이나, 해당 사업들을 '들어보았고 내용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10% 선으로 저조한 수준을 보인다. 더욱이 이들의 희망자녀수는 1.81명으로 이미 자녀를 둔 부모에 비해 낮아 향후 출산을 회복에의 우려를 자아낸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출산 및 영유아기 돌봄지원에 대한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이들의 요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종합하면 돌봄지원의 적용대상으로는 예비부모와 초등학교학령기는 물론 중고등학교학령기 부모까지 적극적으로 포괄해야 한다.

둘째, 지원내용 측면에서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위주에서 현금지원과 이외 서비스 부문으로 다각화되어야 한다. 우선 현금지원과 세제지원은 그 지원수준과 방식에 따라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비를 실질적으로 절감한다는 점에서 양육비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와 포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지원대상 범위는 학령기를 포괄하고, 지원수준은 출생순위와 소득기준을 적용하며, 돌봄취약계층에 추가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여 효과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돌봄지원 분야 서비스 수요는 보육·교육서비스 이외에도 출산 및 신생아 의료지원 및 건강관리서비스, 학령기 자녀 전반에 걸친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등 매우 다양하다. 그 밖에도 전문가 조사결과에 의하면, 산후조리 및 산후우울증 관리, 육아 정보 및 상담서비스, 가정내 보육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저소득층 가구 놀이체험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 등이 제시된다.

그러나 현행 자녀돌봄 지원내용이 영유아기 자녀에서 가장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기의 보육료 지원과 현금지원을 제외하면,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은 출산 및 신생아기와 영유아기의 저소득층에 한정된다. 따라서 다양한 돌봄 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초등학교학령기와 중고등학교학령기의 요구를 반영하여 서비스 지원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돌봄지원의 수준은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보편적인 수요를 나타내는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다시 말해 부모 조사에서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높은 수요를 보이고, 정책 전문가와 부모들의 전 계층 확대의 동의 비율이 높은 항목들을 중심으로 현행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보편적 지원으로 전면 확대한다. 해당 사업으로는 장애인 관련 돌봄 지원 전반과 미숙아와 선천적 이상아 의료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3. 세부 정책 과제

앞서 제시한 자녀돌봄 지원의 방향 및 주요 전략에 따라 자녀돌봄 지원의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각 양육 단계별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중장기 로드맵: 핵심 전략과 주요 내용

1) 자녀돌봄 지원의 포괄범위 확장

2016년에 수립된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에 의하면, 출산 및 돌봄지원 분야의 기본 방향은 자녀양육비 부담 완화이며, 주요 정책 과제로는 산모·신생아 지원 확대, 출산친화적 세제지원, 맞춤형돌봄 확대 및 교육개혁이 제시된다. 맞춤형 돌봄 확대 및 교육개혁의 세부사업으로는 시간연장형보육 확대, 시간제 보육 확대, 가정내 양육지원서비스 확대,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지원사업 확대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학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등이 제시된다. 또한 돌봄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및 공동육아나눔터 등 지역 내 돌봄 인프라 확충, 맞벌이 가구를 위한 민간 베이비시터 시장의 질 관리와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등이 포함된다. 다자녀 장학금 지원대상 확대와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담겨 있다.

그 밖에도 지난해 발표된 “출산을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에서는 첫째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추가출산 장려를 위한 다자녀 지원의 적용기준을 2자녀로 개편하는 등 주요 전략을 출산율 제고로 명료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관련 세부 과제는 출산 및 신생아기 의료 지원은 고위험군에 한정하고, 영유아기는 보육, 초등학교는 초등돌봄교실 지

원 위주여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여전히 제한적이다.

그러나 이들 지원은 앞서 파악된 각 양육 단계별로 다각화된 욕구를 온전히 포괄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즉 현행 돌봄지원 분야 저출산 대책은 영유아기 및 초등학령기 돌봄서비스 인프라 확충 위주의 기업의 일·가정 양립지원의 지원 대상 확대 위주로서, 출산 및 신생아 지원과 돌봄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 지원, 학령기 전반을 포괄한 현금지원과 현물지원, 그리고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중앙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돌봄지원 분야의 정책 과제를 양육 단계별로 욕구 수준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즉 돌봄지원의 범위는 출산 및 신생아기, 영유아기, 초등학령기, 중등학령기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각 시기별로 주된 욕구를 반영하여 [그림 VI-3-1]와 같이 다양한 지원내용을 포괄할 필요가 있다.

구분	자녀양육 단계별			
	영아	유아	초등학령기	중고등학령기
주요 돌봄지원 분야				
돌봄서비스 지원	→			
양육비 현금지원	→ → → →			
양육비 세제지원	→			
아동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 →			
학령기 교육비 지원	→			

[그림 VI-3-1] 자녀돌봄 지원의 양육 단계별 포괄범위

우선 돌봄서비스의 경우는 현행과 같이 영유아 보육서비스와 초등 방과후돌봄 위주로서 수요자의 욕구와 부합하나, 이외 지원 분야는 현행 지원범위가 수요자 욕구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므로 개선이 요구된다. 즉 양육비 현금지원의 경우는 가정양육수당과 새롭게 도입되는 아동수당의 경우 미취학 아동에 한정되므로, 향후 초등학령기, 중고등학령기로 단계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본다.

반면에 양육비 세제지원의 경우는 현행과 같이 추가공제 등의 적용기준을 영유아에 한정하지 말고 중고등학령기 자녀까지 적극적으로 포괄해야 할 것이다.

아동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은 주로 신생아와 영유아에 한정되나, 초등학교가 나아가 중고등학교로 확대되어야 하며, 학령기 교육비 지원의 경우도 중고등학교까지의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현행 돌봄지원 분야 중 출산율 제고 효과가 가장 높다고 평가되는 지원분야는 “영유아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이므로, 이를 저출산 기본계획 등 주요 대책에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행 산모 및 신생아 지원은 고위험군에 한정되며, 영유아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에 한정되므로, 이들 지원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수준을 현실화해야 할 것으로 본다.

2) 세부 돌봄지원별 우선순위 명료화

중앙정부의 돌봄지원 전반에 걸쳐 출산 및 양육 시 필요도에 대한 부모 평가를 반영하되, 정책 전문가의 효과성 평가를 종합하여 저출산 대응 효과 차원에서 세부 사업별 우선순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출산·양육기 전반에 걸쳐 부모들에게 자녀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제도를 평가토록 한 결과, 영유아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이 6.25점(7점 만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양육비 세제지원 6.17점, 학령기 교육비 지원이 6.12점, 보육료 지원과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이 공히 6.06점, 초등방과후 돌봄 지원 6.05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중 정책 전문가들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초등 방과후 돌봄지원, 학령기 교육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순으로 일치한다. 따라서 현행 영유아 보육료 지원 위주에서 영유아 대상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 강화 → 초등 방과후 돌봄지원 → 학령기 교육비 지원 →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우선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3) 기존 돌봄지원의 적용기준 완화

가구 특성별로는 출산용품 지원과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서는 저소득층가구에서 더 높은 필요도를 보이므로, 이들 지원은 현행과 같이 저소득층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과 일시돌봄 지원은 모두 맞벌이 가구가 홀벌이 가구에 비해 높은 수요를 보이므로, 아이돌봄서비스는 현행과 같이 맞벌이 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시간제보육도 시간제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는 현재 셋째 자녀 이상 가구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자녀수에 따른 수요의 차

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다자녀 우선제공 기준은 폐지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영유아기 돌봄지원은 전반적으로 보편적 지원을 추구하고, 초등방과후돌봄 지원은 맞벌이 가구의 수요가 더 높게 나타나므로, 이들에 우선 지원한다. 교육비 지원 수요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나므로, 현행과 같이 다자녀 기준을 적용하되, 지원수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4) 추가 지원내용 및 적용방식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에 대한 필요도 인식과 정책 전문가와 부모 조사에서 파악된 추가지원내용을 종합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가 지원을 모색해야 할 내용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우선 자녀 출산지원 분야에서는 신생아 의료비 지원, 아동수당, 산후조리원 지원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이들 제도는 수요자 조사에서 7점 만점에 평균 5.5점 이상으로 높은 수요를 보였다. 이들 지원은 정책 전문가에게서도 공통적으로 효과성이 높다고 평가되므로 적극적인 도입을 모색할만하다. 특히 산후조리원 지원은 읍면지역의 거주자들에서 도움 정도를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지역의 낮은 민간서비스 접근성에서 연유한 것으로 추측되므로 공공 서비스의 확충 시는 우선적으로 읍면지역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부모들이 평가한 육아지원 사업의 자녀양육 시 도움 정도는 영유아 무료독감 예방접종,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아동전문 건강센터, 등하원(교)서비스와 맞벌이 가구 가사관리사 파견, 다자녀 진료비 세제지원, 신생아 안심보육료 지원 순으로 평가되었다. 이들 중 영유아 무료독감 예방접종,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하원(교)서비스는 정책 전문가의 효과성 평가에서도 높게 나타나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돌봄지원 내용으로 새롭게 추가할 만하다.

또한 육아상담사 가정파견, 장난감 대여와 북스타트 사업(도서 대여 및 독서 프로그램 제공)은 저소득층 가구에서 더 높은 수요를 드러냈고, 아동 등하원서비스는 맞벌이가구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그리고 다자녀 진료비 세제 지원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양육 시의 도움 정도를 높게 평가하여 유의미한 효과를 지닐 것으로 기대된다.

5) 돌봄지원의 중장기 추진 계획

영유아 대상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 강화 →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 학령기 교육비 지원 →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우선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각 양육 단계별로 출산·신생아기의 돌봄지원은 정책 전문가의 효과성 평가를 반영하여 신생아·산모도우미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순으로 강화한다. 단 이때 정책 전문가들이 현행 출산 및 신생아 지원의 효과가 낮은 주된 이유로는 지원대상 범위가 협소한 점을 들고 있으므로 지원대상의 완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영유아기 돌봄지원에 대한 정책 전문가들의 효과성 평가는 0~5세 보육료 지원, 3~5세 누리과정 지원, 시간연장형보육 지원 순으로, 돌봄서비스 부문이 높고 그 다음으로는 영유아 건강검진,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 자녀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령기는 초등 돌봄후 돌봄 즉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방과후 수강권 순으로 강화한다.

6) 돌봄지원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여건 조성

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돌봄지원 연계 강화 및 역할 재정립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에 의하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방안의 하나로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추진기반 강화가 제시된다. 여기에는 저출산이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르게 대응해야 하므로 지역에서 인구정책을 주도적으로 기획,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6: 186).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자치체 단위에서 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설치를 확대하고, 광역 단위의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파편화되어 있는 개별사업을 지역단위에서 총괄·조정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정책추진 체계의 정비를 유도한다고 밝히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6: 188). 또한 시·도별 우수사례 평가에 그치는 지자체 인구정책 성과 평가를 성과지표에 의한 광역 기초지자체 정량·정성 평가체제로 개편하고, 광역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 수립 모니터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단위 인구정책 기획과 성과관리를 지원한다고 제시된다(대한민국정부, 2016: 189).

한편 이와 관련하여 2016년에 행정자치부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공조 체계

를 강조하고 2016년에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 출산율, 지원정책, 평가결과 등을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책 수립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보건복지부, 2016e: 2). 또한 같은 해에 지역맞춤형 저출산 극복을 선도하기 위해 공모사업(뉴-베이비붐)을 추진하고 특교세 총 29억을 지원하였다(보건복지부, 2016f: 2). 이는 저출산 극복 의지가 강한 선도지자체를 선정하여 저출산 극복에 필요한 시설 조성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그러나 이들 추진 내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협력내용이 모호하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간의 경쟁을 유발하거나 성과지표에 따른 평가 위주여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그러므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돌봄지원 분야의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역할과 명료화하고, 이를 토대로 협력체계를 체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각 지역별로 차별화된 인구정책을 유도하기에 앞서 지역적 역량의 차이에 주목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유형에 따른 지원체계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종합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때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의 적합성과 세부사업의 효과성 등이 규명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출생아수 10개 상위 지방자치단체 모두에서 시행된 출산장려금이 출산율 제고 효과를 지니는지, 또는 출생순위를 적용한 지원내용 중 출산율 제고 효과가 높은 세부사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규명이 요구되며, 긍정적인 결과인 경우는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볼 수 있다.

또한 전국적 적용 차원에서 효과성이 검증된 중앙정부의 돌봄지원 방향 및 세부과제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으로 추진이 용이하도록 해당 사업의 추진에 앞서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세부사업에 대한 이해 과정을 체계화한다.

나아가 자녀돌봄 지원이 출산율 제고의 대표적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의 지방비 투자 비중은 지역별로 커다란 격차를 보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모색이 요구된다. 단적으로 합계출산율이 평균 이하 지역이나 자녀돌봄 지원 분야의 지방비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경우는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외 저출산 분야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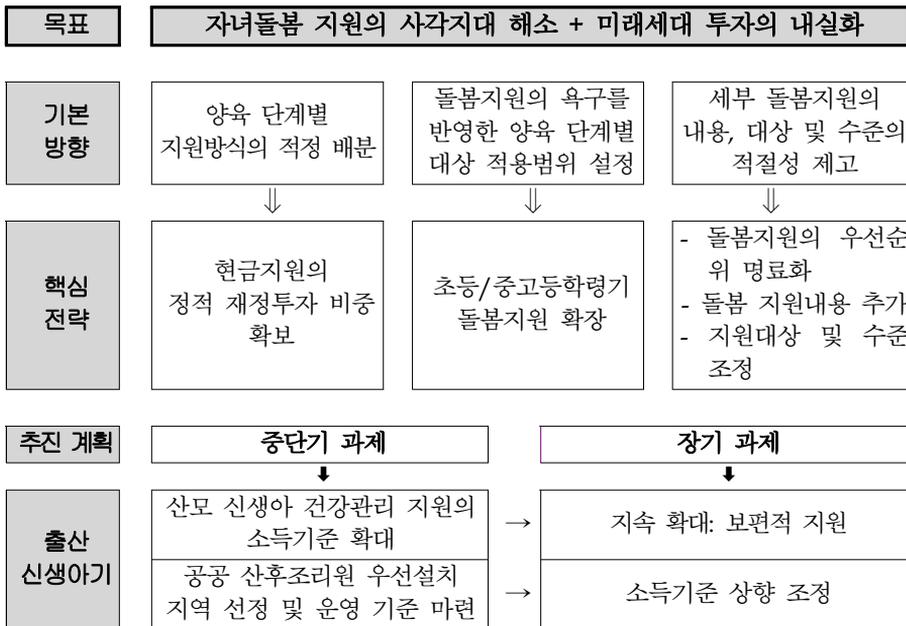
나) 정책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의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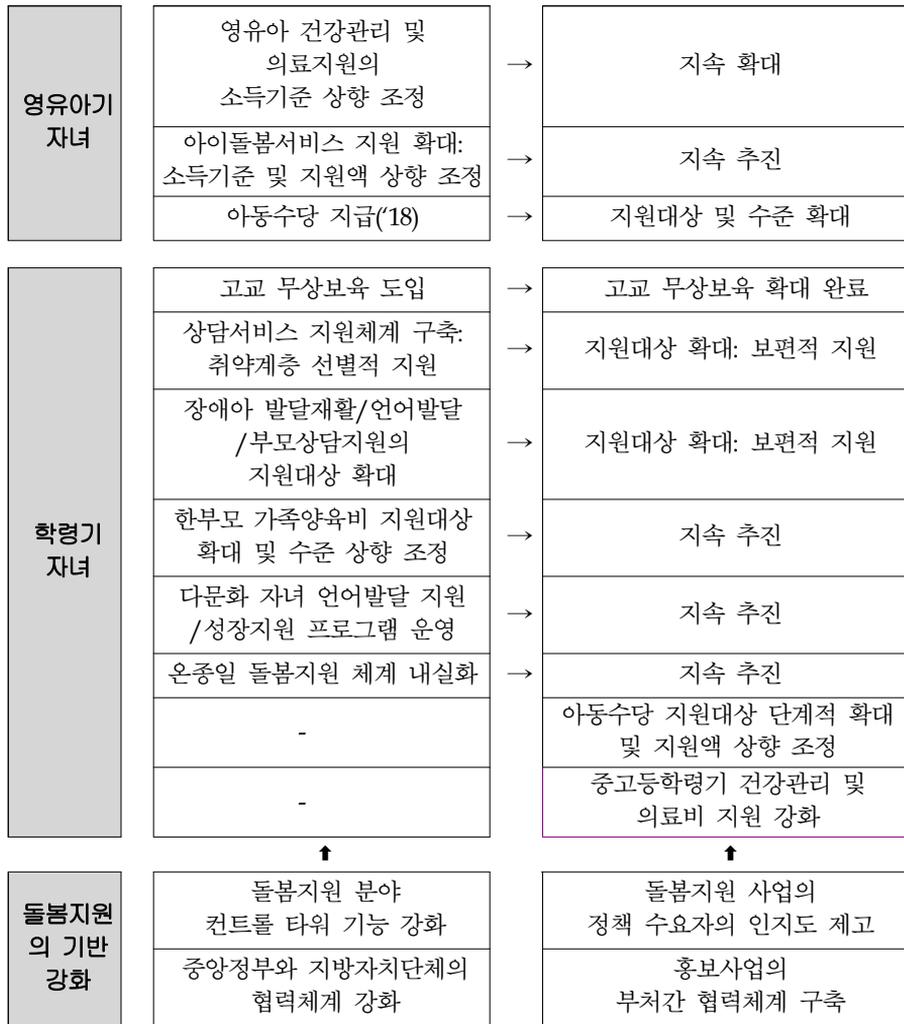
자녀돌봄 지원에 대한 수요자의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다. 다시말해 낮은 인지도는 저소득층 가구에 선별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지원사업과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에서도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5.0%와 42.8%로 높게 나타난다. 또한 해당 비율은 아빠의 달 인센티브 제도 54.6%, 가족돌봄휴가제도 43.4%,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지원 37.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34.2%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게다가 잠재적 수혜자인 예비부모들의 인지도는 모든 사업 분야에 걸쳐 대체로 자녀를 둔 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인다. 특히 이들의 출산으로 단기간 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출산 및 신생아 지원에서도 10%선의 낮은 인지도를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므로 정책 분야별로 주요 홍보대상을 명료화하고, 각 대상별로 효과적인 홍보 수단을 강구하는 등 홍보사업 전반에 대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자녀돌봄 지원의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면 [그림 VI-3-2] 와 같다.





[그림 VI-3-2] 자녀돌봄 지원의 중장기 로드맵

나. 자녀양육 단계별 개선 과제

앞서 분석한 정책 수요자와 정책 전문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각 자녀양육 단계별로 돌봄지원의 정합성 제고 방안 즉 저출산 분야의 돌봄지원 내용, 해당 지원의 대상 및 수준의 조정 등 제도 설계 측면에서 과제를 제시하였다.

1) 출산·신생아기 지원

출산·신생아 지원은 영유아기와 초등돌봄에 비해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첫째 자녀부터의 출산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다. 현행 지원에 대한 부모들의 욕구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고, 이들에 대한 정책 전문가의 효과도 높게 평가되나, 지원대상이 고위험군 위주이고 대부분 소득기준이 적용되므로 대상범위의 확대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가) 수요 전반 및 우선 과제

출산·신생아기의 돌봄지원 제도 이용자의 도움 정도 평가에 의하면, 신생아·산모 도우미 지원이 평균 4.12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97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3.92점,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와 고위험 신생아·산모 지원은 공히 3.82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구 특성별로 이들 제도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자녀수가 많을수록 도움 정도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여, 특히 신생아·산모 도우미 지원과 고위험 신생아·산모도우미 지원의 경우 3명 이상과 4명 이상 가구의 도움 정도 평가는 5점 만점에 각각 평균 4.33점과 4.40점, 4.60점과 5.00점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출산·신생아기의 현행 지원은 지원내용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수요자의 욕구에 부합하나, 특히 도움 정도가 가장 높게 평가된 신생아·산모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나) 세부사업별 개선 과제

(1) 중앙정부 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 영유아 지원의 소득기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이나, 보편적 지원에 부모는 88.2%, 정책 전문가는 87.1%가 동의하므로 보편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의 현행 소득기준은 60% 이하에 그치고 있으나, 보편적 지원 확대에 부모는 87.9%, 정책 전문가는 87.1%가 동의하므로 지원기준을 점차 상향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보편적 지원을 추구한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의 경우는 자녀를 1명 또는 2명 둔

가구의 도움 정도가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 못지않게 높게 평가되므로, 현행 셋째아 이상 지원은 부모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현행 다자녀 기준은 보다 완화하여 지원하되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면, 둘째 자녀부터로 확대하였다가, 점차 첫째 자녀부터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따라서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에 포함된 난청 대사이상 등 선천성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신생아 선별검사에 대한 건강보험료 적용 확대,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자동화이용항 방사검사 및 자동화 청성뇌간 반응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 고액의 의료비가 드는 치료비에 대한 보험 적용,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등은 적극적으로 추진될만하다(대한민국정부, 2016: 70).

다음으로 신생아·산모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현행 지원기준이 중위소득 80% 이하이나, 출산지원 분야에서 부모들의 수요가 가장 높고, 특히 산후조리 등을 지원할 인력이 부족한 결혼이민자 등을 중심으로 높은 필요도가 지적되며, 보편적 적용에 부모들의 70.7%가 동의하고 있다. 또한 신생아·산모도우미 지원은 출산 및 신생아 지원제도 및 정책에 대한 전문가 조사에서 가장 높은 효과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해당 시기의 추가지원으로 전문가들은 산후조리 지원과 산후우울증 진단 및 예방, 산모 건강관리 프로그램, 신생아 대상으로 전계층 건강관리사 파견 등을 꼽고 있다. 그러므로 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조리 지원의 지원대상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해당 내용을 주요 대책에도 구체적인 지원대상 확대 계획이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높은 부모 수요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산모 도우미 지원의 경우 이용율은 12.9%에 그치고 있으므로, 서비스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80%보다 완화하되, 동일한 소득계층인 경우는 다자녀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당 사업은 2006년 도입 당시 지원대상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에서 매년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이어져왔으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보편적 지원을 추구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의하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2019년까지 확대하며, 지원대상을 기존 산후돌봄에 더하여 임신부터 만 2세 방문형 건강관리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앞서 다룬 수요에도 부합하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154).

또한 지원기간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4년 기준으로 29.3%로 조사된 바 있으므로(대한민국정부, 2016: 69) 지원수준의 확대도 동시에 추진한다. 즉 현행 한자녀 기준으로 12일에서 15일까지 늘리고, 쌍생아는 18일, 세쌍둥이는 24일 등 출생아수를 반영하여 확대 지원한다. 그 밖에도 산모 대상 서비스 내용은 현재 주로 신체건강관리 위주로 제공되나, 추가지원 내용에서 파악된 바와 같이 산모 우울증 예방 등도 정신건강 관리도 적극적으로 포함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신생아(0세아) 대상 의료비 지원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은 출산율 제고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들 사업의 확장을 일차적으로 모색할 만하다.

그 밖에도 출산장려금과 출산용품 지원은 저소득층 가구에서 도움이 되었고 평가되므로, 지원대상은 저소득층에 한정하고, 지원수준은 의미있게 높이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2) 영유아기 자녀

영유아기는 돌봄지원이 집중된 시기로서 이외 양육단계들에 비해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료지원의 경우는 보편적인 수요에도 불구하고 지원 범위가 협소하여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가) 수요 전반 및 우선과제

영유아기 자녀돌봄 지원 제도 이용자의 도움 정도 평가에 의하면,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이 평균 4.37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4.33점, 가정양육수당 4.30점, 자녀 세액공제 4.19점, 0~5세 보육료 지원 4.30점, 교육비 세액공제 4.15점, 공동육아나눔터 지원과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이 공히 4.14점, 시간제보육과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가 4.04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가구 특성별로 이들 제도는 소득기준과는 상관없이 높은 수요를 나타냈으며, 자녀수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현행 셋째 자녀부터 우선지원하는 시간제보육과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의 적용기준을 보다 확장하기 위한 관련예산의 배정이 요구된다고 본다. 또한 자녀 세액공제는 현재 다자녀 기준이 적용되어 영유아 2명 이상 초과 시 추가공제되나, 자녀수가 많을수록 도움

정도 평가는 낮아, 다자녀 가구의 공제 수준을 상향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에 의하면,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명당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 출산 및 입양 세액공제 신설, 자녀장려금 지급 등을 담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6: 65). 그러나 교육비 세액공제는 주요 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가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중위소득 120% 이상에서 25% 정부지원과 연 480시간에서 720시간까지 지원수준을 확대하는 계획이 제시된다. 또한 공동육아나눔터 등 가정양육지원 여건 개선도 포함되어있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154).

나) 세부사업별 개선 과제

(1) 중앙정부 사업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는 현재 중위소득 60% 이하에 지원되나, 보편적 지원에의 동의 지원 비율이 부모는 75.3%, 전문가는 61.3%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므로, 지원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는 현재 건강보험료 하위 30%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되나, 부모와 전문가의 보편적 지원에의 동의 비율이 각각 87.3%와 87.1%로 높게 나타나므로,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점차 상향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장애아 언어발달 지원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과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에게 지원된다. 그러나 이들 장애인 대상 돌봄지원은 부모와 정책 전문가 모두에서 보편적 지원 확대의 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므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해당 계획을 저출산 대책에 세부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추가 지원내용으로는 영유아 대상 돌봄지원은 의료비 지원 강화, 가정내보육서비스의 지원대상 확대, 육아용품과 현금지원 상향 조정 등이 고려될만하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중 영유아 대상 무료 독감 예방접종,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하원(교)서비스 제공은 출산율 제고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들 사업의 확장을 일차적으로 모색할 만하다.

3) 학령기 자녀

가) 전반

영유아기 자녀돌봄 지원제도 이용자의 도움 정도 평가에 의하면, 급식비 지원이 4.36점(5점 만점), 학교 우유급식 지원 4.35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그 다음으로는 초등돌봄교실 4.18점, 지역아동센터 운영 4.16점, 방과후 수강권 지원, 4.07점, 방과후 학교 4.01점 순으로 조사되어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양육 단계별 지원 요구에서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은 현재 영유아기에 한정되어 있으나, 그 수요가 중고등학령기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의하면, 15세 이하 입원비 국가책임과 초중고 독감예방접종 국가지원, 아동재활병원 확충 등 학령기 자녀의 의료서비스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하도록 한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154).

지원대상별로는 전반적으로 소득기준이나 맞벌이 가구 여부, 그리고 자녀수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보편적인 수요로 파악된다. 따라서 현행 저소득층에만 지원되는 급식비와 학교 우유급식 지원의 경우에도 전(全)계층 지원을 추구하고, 보편적인 방과후 돌봄 수요에 따른 접근성 제고 노력도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나) 초등학령기 자녀

저출산 대책에서 초등학령기 자녀의 돌봄지원은 방과후 돌봄이 주를 이루나, 현물 및 현금지원과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에 대한 욕구가 해당 시기까지 광범위하게 존재하므로, 지원내용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현행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에 의하면, 초등학령기의 돌봄지원으로는 초등돌봄교실의 질 제고와 연계 체계 강화가 유일한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82). 즉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고, 부처 간, 그리고 지자체 및 교육청 간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학교 안과 밖의 돌봄체계를 개발하여 확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초등학령기의 주된 수요가 초등방과후 돌봄이라는 분석결과에도 부합하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한다.

이와 동시에 지원수준 측면에서 초등방과후 돌봄지원은 보편적 수요를 지닌 것으로 파악되므로, 현행 저소득층 가구 위주의 지원에서 그 대상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 중고등학령기 자녀

저출산 대응을 위한 돌봄지원 분야에서 중고등학령기는 교육비 지원이 주를 이루며, 이는 OECD 국가들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즉 돌봄서비스 지원에 해당하는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를 제외하면, 해당 시기의 돌봄 지원은 방과후 수강권과 교육급여 지원이 유일하다. 또한 고등학교 이후의 교육비 지원과 현물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에 한정되므로, 이들 지원의 적용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현재 시행 중인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에 의하면, 해당 시기의 지원으로는 교육개혁이 제시되며, 이때 주요내용은 공교육 만족도 제고와 역량 강화, 교육체계 개선 등이 주를 이루는 반면, 교육비 지원 계획은 부재한 실정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2022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82). 여기에는 고등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이 명시된다. 해당 시기의 주된 수요가 교육비 지원임을 감안하면, 해당 계획은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본다.

한편 교육비 지원 이외에도 현금지원과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그리고 세계 지원에 대한 요구는 중고등학령기까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들 지원도 저출산 대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특히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의 지원대상은 궁극적으로는 해당 시기를 포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둘째 자녀부터 지원하되, 급여수준은 소득 기준은 출생순위를 적용하여 실제 양육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돌봄취약계층의 경우는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되므로 급여수준의 상향 조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다. 근로자 대상 기업의 돌봄지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돌봄시간 지원의 제도 이용자의 도움 정도 평가에 의하면, 육아휴직제도 평균 4.54점(5점 만점), 출산전후휴가 4.38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4.26점, 육아시간(수유시간) 허용 4.24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지원, 아빠의 달 인센티브, 가족돌봄 휴가제도 모두에서 도움 정도가 평균 3.90점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지원내용 측면에서 이들 제도 전반의 강화가 요구된다.

가구 특성별로 도움 정도가 가장 높게 평가된 육아휴직제도와 출산전후휴가제도는 여성의 도움 정도가 더 높게 평가되어, 남성의 제도 이용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자녀수에 따른 도움 정도 평가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돌봄시간 지원제도는 다자녀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으며, 첫째 자녀부터 일괄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출산 및 양육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므로, 돌봄시간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 제도의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적극적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까지 2021년까지 확대하고(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154), 2018년부터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며(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81), 기간제 근로자의 출산휴가 급여를 보장하는(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154)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라. 가구 특성별 돌봄지원

가구 특성별로는 돌봄취약계층에 해당되는 한부모가족, 장애아가족 지원의 지원대상 및 수준을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은 서비스 내용을 다양화하며, 저소득층 가구 위주의 돌봄지원은 효과성 차원에서 내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선 한부모 가족의 경우,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한부모 가족이 전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지원을 강조하고,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아동양육 패키지 도입이 제시된다(대한민국정부, 2016: 72).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돌봄취약계층에 대한 추가급여에 동의한 비율이 부모와 정책 전문가 모두에서 높게 나타나므로, 이들 지원 이외에도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현실화가 요구된다. 즉 현재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는 중위 소득 52%에 한하여 지원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는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의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해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및 지원연령의 단계적 인상이 명시된 바는 바람직하다고 본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100).

다음으로 장애아 대상 돌봄지원 사업은 전반적으로 모든 돌봄지원 사업에 걸쳐 보편적 지원을 추구할 필요성이 제시된다. 현행 주요 사업인 장애아 발달재활

서비스와 발달장애아 부모상담 지원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장애아 언어발달 지원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에만 지원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들 사업은 보편적 지원 확대의 동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게다가 조기예방 차원의 신생아 및 영유아기 자녀 대상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도 모두 소득기준이 적용되어 일부에 지원되나, 이들 지원에 대한 보편적 지원의 필요도 인식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장애아 및 예방관련 돌봄지원 사업은 일차적으로 지원대상의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자녀돌봄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위주로 지원되나, 복합적인 돌봄 수요가 예상되므로 보다 종합적인 돌봄지원 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고 보여진다.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다문화 자녀 성장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힌 점은 고무적이라고 본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100).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는 소득기준에 따른 도움 정도와 필요도, 효과성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돌봄지원 항목은 일부에 한정되었다.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저소득층 가구 위주로 지원할 경우 재정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기존의 드림스타트, 영양플러스 사업,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으로 나타난다. 또한 새롭게 도입될 아동수당은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저소득층일수록 급여액을 높이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으며, 육아용품 즉 장난감 및 도서대여 서비스는 저소득층 가구 자녀에 우선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2016). 보도자료: 2017년 교육부 예산안 발표(2016. 8. 30).
- 교육청(2017). 2017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김미혜·정진경(2007). 사회복지정책분석론. 동인.
- 김상우(2016). 저출산 대책 평가 II: 정책 우선순위. 국회예산정책처.
- 김미숙·홍석표·정재훈·김기현·안수란(2010). 아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 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록·신동면(2016).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의 적절성 평가: 저출산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 길버트, 닐·폴 테렐(2007). 사회복지정책론. 남찬섭·유태균 옮김. 서울: 나눔의 집 (Gilbertt, N. and P. Terrell (2004).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6th ed. NY: AllynBacon).
- 대한민국정부(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대한민국정부(2017).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보건복지부(2016a). 출산을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
- 보건복지부(2016b). 201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보건복지부(2016c). 보도자료: 인구절벽 위기, 전사회적 총력 대응으로 극복(2016. 7. 11).
- 보건복지부(2016d). 보도자료: 저출산 극복을 위한 2017년 정부 예산안 편성(2016. 9. 6).
- 보건복지부(2016e). 보도자료: 저출산 극복의 희망,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2016. 10. 28).
- 보건복지부(2016f). 저출산 극복, 선도지자체가 책임집니다(2016. 12. 15).
- 보건복지부(2017a). 2017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7b).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7c). 2017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 보건복지부(2017d).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2017e). 보도참고자료: 정부, 저출산 대책 보다 강력히 추진!(2017. 2. 22).
- 보건복지부(2017f). 2017년 건강검진지원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7g).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 보건복지부(2017h).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 보건복지부·중앙일보(2017). 동아시아 4개국 저출산 정책 국제포럼.
- 송현재·우석진(2015). 보육지원정책이 출산율과 여성 노동시장참여율에 미친 거시적 성과 실증분석. 재정정책논집 17, (1), 한국재정정책학회. 3-34.
- 신윤정·고제이·이지혜·윤자영(2013). 자녀 양육지원 정책의 평가와 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성가족부(2017a). 2017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 여성가족부(2017b). 2017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원(2017). 2017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실무자 업무매뉴얼.
- 유해미·조숙인·장경희·박은영(2016). 저출산 대응정책의 진단 및 방향 연구.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 이소정·백선희·윤홍식·홍백희·김지연 (201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관련 쟁점 연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사각지대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채정(2016). 저출산 대책 평가 V. 가족·양육. 국회예산정책처.
- 이진숙·신지연·윤나리(2010). 가족정책론. 학지사.
- 통계청(2017). 보도자료: 2017년 3월 인구동향.
- 한중석·홍재화(2016). 보육료 지원정책 변화가 총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Hegewisch A., & Gornick J. C.(2012). "The impact of work-family policies on women's employment: review of reseach from OECD counties". Work and Family Policy: International Comparative Perspectives.

Routledge.

Korsvik T. R.(2011). Childcare policy since the 1970's in the 'most gender equal country in the world': A field of controversy and grassroots activism. *European Journal of Women's Studies*. 18(2), pp. 135-153.

Lewis J. (2009). "Work-family balance policies: comparisons and issues". *Work-Family Balance, Gender and Policy*. Edward Elgar.

OECD(2009). *Doing Better for Children*. OECD publishing.

OECD(2011). *Doing Better for Families*. OECD publishing.

OECD(2017). Family database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

Thévenon O., & Gauthier A. H.(2012). "Family policies in developed countries: a 'fertility-booster' with side-effects". *Work and Family Policy: International Comparative Perspectives*. Routledge.

Thévenon O.(2016). "The Influences of Family Policies on Fertility in France: Lessons from the Past and Prospects for the Future". Rindfuss R. R., & Choe M. K.(eds). *Low Fertility, Institutions, and their Policies: Variations Across Industrialized Countries*. Springer.

Øystein Kravdal(2016). Not so Low Fertility in Norway: A Result of Affluence, Liberal Values, Gender-Equality Ideals and the Welfare State". Rindfuss R. R., & Choe M. K.(eds). *Low Fertility, Institutions, and their Policies: Variations Across Industrialized Countries*. Springer.

[통계자료 및 검색 사이트]

고용노동부 일가양득 사이트 <http://worklife.kr/website> (검색일자 5월 25일)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검색일자 2017년 6월 1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moleg.go.kr/main.html> (검색일자 2017년 5월 25일)

복지로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검색일자 2017년 3월 30일)

임신출산육아 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 (검색일자 2017년 5월 20일)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시도/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H&conn_path=I2 (검색일자 2017년 5월 25일)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연간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G&conn_path=I2 (검색일자 2017년 5월 25일)

통계청 KOSIS, 인구주택총조사 2015, 성-연령 및 가구주와의 관계별 인구 - 시군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1507&conn_path=I2 (검색일자 2017년 5월 25일)

Abstract**Life cycle conformity assessment of policy response to low fertility
: focusing on childcare**

Haemi Yoo Hyomi Choi Shinhye Kang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low-birth-control measures since 2006. However, there has been a decline in the number of newborns compared to the same month of previous year and this is a concern for further low fertility. This study, therefore, has analysed how the current low birthrate policies meet the needs of those who want to give birth. Particular attention has been paid to child care support in child rearing period and the improvement has made according to participants' recognised and unrecognised needs of support level.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1,200 parents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and pre-married couples to identify the satisfaction and needs of the current government's care support. In addition, 31 policy specialists in low fertility sector were participated on the survey about the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the current child care support policy. Infants and school-ages parents wer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to identify their difficulties and needs of child-rearing.

According to the parent survey, the requirement for young children's health checkup and medical expenses was highest at 6.25 points(out of 7 points), followed by 6.17 points for child support tax, 6.12 points for supporting school education expenses, 6.06 points for providing medical expenses for pregnancy and childbirth and child care fee subsidy, and 6.05 for caring support after school programme. The policy experts has shown the

needs for newborn and postpartum helpers is the highest with 4.90(out of 7 points) in the period of newborn baby. Followed by support for medical expenses for pregnancy and childbirth, and support for high-risk newborns and mothers. As of 2016, the municipalities' maternity support policy of medical expenses for newborns was the highest satisfaction at 5.32 points(out of 7 points).

The followings are policy agenda proposals. The coverage of child care support should extend to the primary school age, and to secondary school age for child care cash support, tax support, child health checkups and medical expenses support. Child care support has to strengthen from the current support for child care fee subsidy to medical care support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child care service after school, support for school education expenses, and support for medical expenses for pregnancy and childbirth. For each child nurturing stage, supports for newborn-mother helpers and medical expenses in birth and newborn stage are required. In early child stage, the inquiry for 0-5 years old child care fee subsidy is the highest, followed by 3-5 Nuri Curriculum, and time extension type of child care; these inquires are mainly child care services. Followed by Infant and toddlers health care, full day care services for infants, national immunization support for children under 12, child tax credits, and education tax credits. In primary school children stage, policy needs to strengthen supports in the area of child care services after school; after school programme class, school-based after school programme, and after school voucher.

부 록

부록 1. 설문조사표-정책 수요자용

부록 2. 설문조사표_정책 전문가용

부록 3. 심층면담 질문지-부모용

부록 4. 전국 상위 10개 지역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

부록 1. 설문조사표: 정책 수요자용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는 예비부모, 미취학 또는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자녀돌봄지원 제도 및 정책의 만족도와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와 제34조에 의거하여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협조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육 아 정 책 연 구 소

<응답자 확인 사항>

1. 귀하의 현재 자녀가 1명 이상 있습니까?
 ① 예 ☞ 문 2번으로
 ② 아니오 ☞ 문 3번으로

 2. 귀하의 자녀 연령은 고등학생 이하(만 17세 이하)입니까?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막내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① 예 ☞ 문 4번으로
 ② 아니오 ☞ 조사 중단

 3. 귀하의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 문 7번으로
 ② 아니오 ☞ 조사 중단
- ※ 이하 질문에 대해서는 귀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막내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I. 자녀 출산 의향 및 미의향 사유

4. 현재 귀하의 막내 자녀 연령은 만으로 몇 세입니까?
 ※ 12개월 이하 자녀는 0세로 표기합니다.

자녀 연령	만 () 세
-------	--------------

5. 4번에 응답한 자녀는 몇 번째 자녀입니까?
 ① 첫째 자녀 ② 둘째 자녀
 ③ 셋째 자녀 ④ 넷째 자녀 이상

6. 귀하의 현재 추가 출산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 문 7번으로
 ② 아니오 ☞ 문 6-1번으로
 ③ 모르겠다 ☞ 문 7번으로

- 6-1. (추가 출산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현재 자녀수는 희망하는 자녀수입니까?
 ① 예 ☞ 문 7번으로

② 아니오 ☞ 문 6-2번으로

6-2. (희망하는 자녀수가 아니라고 응답한 경우) 희망하는 자녀수가 아닌데도 추가로 출산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양육비가 부담되어서 ☞ 문 6-3번으로
- ② 자녀를 믿고 맡길 데(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 없어서
- ③ 직장생활과 자녀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워서(자녀를 돌볼 시간이 없어서)
- ④ 구직활동(취업 준비, 직업훈련) 또는 직장복귀를 하려고
- ⑤ 자녀를 혼자 돌보기 힘들어서
- ⑥ 건강이 좋지 않아서
-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6-3. (6-2번에서 ①번에 응답한 경우) 귀하는 국가에서 양육비를 지원한다면 추가 출산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 6-4번으로
- ② 아니오 ☞ 문 8번으로

6-4. (6-3번에서 ①번에 응답한 경우) 추가 출산하려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요구되는 적정 양육비 지원액(현금)은 월 얼마라고 판단되십니까?

적정 급여액(현금)	월 () 만 원
------------	----------------------

7. 귀하의 희망 자녀수는 몇 명입니까?

희망 자녀수	총 () 명
--------	--------------------

II. 자녀돌봄지원 제도 및 정책의 인지도와 필요도 인식

8. 귀하는 이하의 출산·신생아 지원사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자녀돌봄 제도 및 정책/사업명	① 전혀 모름	② 들어 보았으나 내용은 잘 모름	③ 들어 보았으나 내용은 대충 알	④ 들어 보았고 내용을 알고 있음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①	②	③	④

2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①	②	③	④
3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①	②	③	④
4	신생아·산모 도우미 지원	①	②	③	④
5	고위험 신생아·산모 지원	①	②	③	④

9. 귀하는 이하의 영유아 자녀 대상 돌봄지원 제도 및 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자녀돌봄 제도 및 정책/사업명	① 전혀 모름	② 들어 보았으나 내용은 잘 모름	③ 들어 보았으나 내용은 대충 알	④ 들어 보았고 내용을 알고 있음
1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①	②	③	④
2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	①	②	③	④
3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①	②	③	④
4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①	②	③	④
5	가정양육수당 지원	①	②	③	④
6	0~5세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①	②	③	④
7	3~5세 누리과정 지원 (유치원/어린이집)	①	②	③	④
8	시간연장형보육 지원(어린이집)	①	②	③	④
9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지원	①	②	③	④
10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①	②	③	④
11	드림스타트 사업(아동통합서비스)	①	②	③	④
12	영양플러스 사업	①	②	③	④
13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①	②	③	④
14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①	②	③	④
15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	①	②	③	④
16	자녀세액공제	①	②	③	④
17	교육비 세액공제	①	②	③	④

10. 귀하는 이하의 학령기 자녀 대상 돌봄지원 제도 및 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자녀돌봄 제도 및 정책/사업명	① 전혀 모름	② 들어 보았으나 내용은 잘 모름	③ 들어 보았으나 내용은 대충 앎	④ 들어 보았고 내용을 알고 있음
1	초등돌봄교실	①	②	③	④
2	방과후 학교	①	②	③	④
3	방과후 수강권 지원	①	②	③	④
4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①	②	③	④
5	지역아동센터 운영	①	②	③	④
6	급식비 지원	①	②	③	④
7	학교 우유급식 지원	①	②	③	④

11. 귀하는 이하의 근로자 대상 기업의 자녀돌봄지원 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자녀돌봄 제도 및 정책/사업명	① 전혀 모름	② 들어 보았으나 내용은 잘 모름	③ 들어 보았으나 내용은 대충 앎	④ 들어 보았고 내용을 알고 있음
1	출산전후휴가제도	①	②	③	④
2	배우자 출산휴가(남성 5일)	①	②	③	④
3	육아시간(수유시간) 허용	①	②	③	④
4	육아휴직제도	①	②	③	④
5	아빠의 달 인센티브 제도	①	②	③	④
6	가족돌봄 휴직제도	①	②	③	④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①	②	③	④
8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지원	①	②	③	④

Ⅲ.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 및 수요

- ※ 이하는 귀하의 막내 자녀를 기준으로 해당 연령에만 응답합니다.
- ※ 무자녀 응답자(문3의 ①응답자)는 문12~문15 skip 후 문16부터 응답
- ※ 영유아 자녀(문4의 만0세~만5세 응답자)는 문14 skip(문12~13 후 문15 응답)

12. 1) 귀하는 이하 제도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2) 이용한 경험이 있다면, 자녀양육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자녀돌봄 제도 및 정책/사업명	1) 제도 이용 여부	2) 자녀양육 시 도움 정도				
		① 이용함 ☞ 문 12-2)로 ② 미이용 /모름 ☞ 문 13로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음	②	③ 보통	④	⑤ 매우 도움 됨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2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①	②	③	④	⑤
3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4	신생아 산모 도우미 지원		①	②	③	④	⑤
5	고위험 신생아 산모 지원		①	②	③	④	⑤

13. 1) 귀하는 이하 제도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2) 이용한 경험이 있다면 자녀양육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자녀돌봄 제도 및 정책/사업명	1) 제도 이용 여부	2) 자녀양육 시 도움 정도				
		① 이용함 ☞ 문13-2)로 ② 미이용 /모름 ☞ 문 14로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음	②	③ 보통	④	⑤ 매우 도움 됨
1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①	②	③	④	⑤

2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		①	②	③	④	⑤
3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4	가정양육수당 지원		①	②	③	④	⑤
5	0~5세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①	②	③	④	⑤
6	3~5세 누리과정 지원 (유치원/어린이집)		①	②	③	④	⑤
7	시간연장형보육 지원(어린이집)		①	②	③	④	⑤
8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지원		①	②	③	④	⑤
9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①	②	③	④	⑤
10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11	드림스타트 사업(아동통합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12	영양플러스 사업		①	②	③	④	⑤
13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①	②	③	④	⑤
14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15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		①	②	③	④	⑤
16	자녀세액공제		①	②	③	④	⑤
17	교육비 세액공제		①	②	③	④	⑤

14. 1) 귀하는 다음의 제도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2) 이용한 경험이 있다면 자녀양육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자녀돌봄 제도 및 정책/사업명	1) 제도 이용 여부	2) 자녀양육 시 도움 정도				
		① 이용 ☞ 문14-2)로 ② 미이용 /모름 ☞ 문 15로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음	②	③ 보통	④	⑤ 매우 도움 됨
1	초등돌봄교실		①	②	③	④	⑤
2	방과후 학교		①	②	③	④	⑤
3	방과후 수강권 지원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①	②	③	④	⑤
5	지역아동센터 운영		①	②	③	④	⑤
6	급식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7	학교 우유급식 지원		①	②	③	④	⑤

15. 1) 귀하는 다음의 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2) 이용경험이 있다면 자녀양육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자녀돌봄 제도 및 정책/사업명	1) 제도 이용 여부	2) 자녀양육 시 도움 정도				
		①이용함 ☞ 문15-2)로 ②미이용 /모름 ☞ 문 16로 ③해당사항 없음(근로자 아님) ☞ 문 16로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음	②	③ 보통	④	⑤ 매우 도움 됨
1	출산전후휴가제도		①	②	③	④	⑤
2	배우자 출산휴가(남성 5일)		①	②	③	④	⑤
3	육아시간(수유시간) 허용		①	②	③	④	⑤
4	육아휴직제도		①	②	③	④	⑤
5	아빠의 달 인센티브 제도		①	②	③	④	⑤
6	가족돌봄 휴직제도		①	②	③	④	⑤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①	②	③	④	⑤
8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지원		①	②	③	④	⑤

16. 귀하는 이하의 돌봄지원은 자녀가 몇 세까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출산·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시기를 모두 표기해 주십시오.

	① 영아 (만0~2세)	② 유아 (만3~5세)	③ 초등학 령기	④ 중고등학 령기
자녀돌봄 제도 및 정책/사업명				

)		
1	돌봄서비스 지원(어린이집, 방과후 돌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양육비 현금지원(아동수당)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양육비 세제지원(자녀세액공제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아동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학령기 교육비 지원	응답불가	응답불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6-1 문 16번에서 제시된 돌봄지원 이외에 자녀양육 시기별로 추가로 필요한 지원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든 자유롭게 필요한 지원에 대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추가 지원 요구
1	출산 및 신생아기	
2	영아(만0~2세)	
3	유아(만3~5세)	
4	초등학령기	
5	중고등학령기	

17. 귀하는 이하의 돌봄지원이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데 얼마나 필요하다고 판단되십니까?

※ 이하 출산 양육지원 세부내용 참조

	자녀돌봄 제도 및 정책/사업명	출산 양육 시 필요도 수준						
		① 전혀 필요 하지 않음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매우 필요 함
1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신생아·산모 도우미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출산용품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일시 돌봄(시간제보육)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양육비 현금지원(아동수당)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양육비 세제지원(자녀세액공제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영유아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영유아 보육료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학령기 교육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출산·양육 지원 세부내용 (문 17)		
제도 및 사업명	지원내용	
1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	임신이 확인된 자에게 임신·출산 진료비의 일부 지원
2	신생아·산모 도우미 지원	출산한 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돌봄서비스 지원
3	출산용품 지원	출산전 준비용품(기저귀, 크림, 배냇저고리, 욕조 등)을 지원
4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영아(0~24개월)를 둔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 지원
5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만 3개월~12세 아동 대상 아이돌보미 파견 및 비용지원
6	일시 돌봄(시간제보육) 지원	기관(어린이집) 미이용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에게 월 40시간~월 80시간 이용단가의 일부 지원
7	양육비 현금지원(아동수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아동에 월 10~20만 원의 현금 지원
8	양육비 세제지원(자녀세액공제 등)	자녀수에 따른 종합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
9	영유아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영유아 대상 각 월령별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발달장애 진단 및 정밀검사, 입원 시 본인 부담 면제,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원 등
10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0~5세아에 보육료 지원
11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취학아동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
12	학령기 교육비 지원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면제 및 일부 지원

18. 귀하는 이하의 정부지원이 자녀를 원하는 시기에 출산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십니까?

	출산지원 제도 및 정책	자녀 출산에의 도움 정도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음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매우 도움 됨
1	출산지원금: 자녀 출산 시 일시금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응답 후 문18-1로		
2	출산기념품(출산용품)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아동수당 : 양육비 현금지원(매월 지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응답 후 문18-2로		
4	산후조리원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모유수유 전문가 가정 파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유축기 대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신생아(0세아) 의료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1 (출산지원금이 출산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 출산지원금은 1) 몇 번째 자녀부터 2) 얼마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18-1A. 지급대상 아동의 출생순위	18-1B. 지원금액(만 원)
<input type="checkbox"/> ① 첫째 자녀부터	() 만 원
<input type="checkbox"/> ② 둘째 자녀부터	
<input type="checkbox"/> ③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	
<input type="checkbox"/> ④ 넷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	

18-2 (아동수당이 출산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 적합한 지급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동 연령, 자녀수, 가구소득, 돌봄취약계층별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급 요건을 각각 표기해 주십시오.

구분		지급 기준
1	아동 연령	<input type="checkbox"/> ① 자녀 연령과 상관없이 균등한 급여액을 지급함
		<input type="checkbox"/> ② 자녀 연령이 적을수록 급여액을 높임
		<input type="checkbox"/> ③ 자녀 연령이 많을수록 급여액을 높임
2	자녀수	<input type="checkbox"/> ① 첫째 자녀부터 급여를 지급함
		<input type="checkbox"/> ② 둘째 자녀부터 급여를 지급함
		<input type="checkbox"/> ③ 셋째 자녀이상 부터 급여를 지급함
3	가구소득	<input type="checkbox"/> ① 소득과 상관없이 균등한 급여를 지급함
		<input type="checkbox"/> ② 소득이 낮을수록 급여액을 높임
4	돌봄취약 계층 (장애아 등)	<input type="checkbox"/> ① 특수한 요구를 지닌 아동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급여를 지급함
		<input type="checkbox"/> ② 특수한 요구를 지닌 아동에게 추가급여를 지급함

19. 귀하는 이하의 정부지원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십니까?

	육아지원 제도 및 정책	자녀양육에의 도움 정도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음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매우 도움 됨
1	신생아 안심보육료(상해보험료)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맞벌이 가구 대상 가사관리사(도우미: 세탁, 청소 등) 파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영유아 대상 무료 독감 예방접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유모차(보행기 포함) 대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장난감 대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영유아 학습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북스타트: 도서 대여 및 독서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아동전문 건강센터 운영: 만 12세 아동 종합건강관리 제공, 발달 단계별 건강증진 교육 및 정보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육아상담사 가정 파견: 육아정보 제공, 육아 고민 및 경험 공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아동 등하원(교)서비스 제공(1: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다자녀 진료비 감면: 셋째 자녀대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이하 항목은 현재 소득기준이 적용되어 일부 계층에만 지원되는 제도 및 사업입니다.
 귀하께서 판단하기에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수만큼”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지원해야 할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 모든 항목에 표기해주시요.

	육아지원 제도 및 정책	모든 계층 지원여부	
		<input type="checkbox"/> ① 예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1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①	②
2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실시	①	②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건강관리사 파견)	①	②
4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1:1 파견 돌보미)	①	②

5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①	②
6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①	②
7	시간제보육(일시돌봄) 지원	①	②
8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①	②
9	방과후 수강권 제공	①	②
10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①	②
11	장애아 언어발달 지원	①	②
12	장애아 발달재활서비스	①	②
13	발달장애아 부모상담 지원	①	②

IV. 응답자 및 자녀의 일반적 특성

※ 응답 가구 및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에 관한 질문입니다.

D1. 연령	만 ()세	
D2. 성별	<input type="checkbox"/> ① 남	<input type="checkbox"/> ② 여
D3. 최종학력	① 고졸 이하 ③ 4년제 대학 이상	② 전문(3년제)대학 졸 ④ 대학원 이상
D4. 직업	<input type="checkbox"/> ① 관리자 <input type="checkbox"/>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input type="checkbox"/> ③ 사무종사자 <input type="checkbox"/> ④ 서비스종사자 <input type="checkbox"/> ⑤ 판매종사자 <input type="checkbox"/> ⑥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input type="checkbox"/> ⑦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⑧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input type="checkbox"/> ⑨ 단순노무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⑩ 군인 <input type="checkbox"/> ⑪ 가정주부 <input type="checkbox"/> ⑫ 기타(기입: _____)	
D5. 취업 여부 ※part-time 등 모든 근로 형태를 포함	<input type="checkbox"/> ① 예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 D6.가구 특성으로
D5-1 취업상태	<input type="checkbox"/> ① 자영업자(혼자 운영) <input type="checkbox"/> ③ 상용근로자(정규 출퇴근) <input type="checkbox"/> ⑤ 일용근로자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	<input type="checkbox"/> ② 고용주(종업원 등) <input type="checkbox"/> ④ 임시근로자 <input type="checkbox"/> ⑥ 무급가족종사자
D5-2. 주당 평균 근로시간	주당 평균 () 시간	
D6. 가구 특성 (해당 되는 항목 모두 표기)	구분	해당 여부 <input type="checkbox"/> ① 예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다문화가정	① ②
	한부모/조손가정	① ②
	장애부모 가정	① ②
	장애아 자녀를 둔 가정	①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①	②
	차상위계층 가구	①	②
	북한이탈주민 가구	①	②
	맞벌이 가구(부부 모두 1일 8시간 이상 근로)	①	②
D7. 자녀 특성	총 자녀수	총 ()명	
	첫째 자녀 연령	만 ()세	

D8. 귀댁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월 평균 ()만 원

D9. 귀하의 거주 지역 어디입니까?

()시/도 ()구/시 ()군

D10.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도시규모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광역시(서울특별시 포함) ② 도지역_시지역(중소도시) ③ 도지역_군지역(읍면지역)

부록 2. 설문조사표: 정책 전문가용

자녀돌봄 지원의 효과와 개선요구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책연구 기관입니다.

본 연구소는 학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현행 자녀돌봄지원 제도 및 정책의 합계출산율 제고 효과와 개선 과제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와 제34조에 의거하여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육 아 정 책 연 구 소

I. 자녀 양육기의 재정투자 비중 및 돌봄지원 방향

1. 귀하는 합계출산을 제고를 위해서는 자녀양육 시기별로 재정투자 비중이 어떠해야 한다고 판단되십니까?
 - 1) 재정투자의 비중(총 예산액이 아닌 중요도)이 높은 순서대로 1순위부터 번호(1, 2, 3, 4)를 표기해주시요.
 - 2) 재정투자 순위가 가장 높은 시기에 한하여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시요.

	구분	1-1)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또는 중요도)	1-2) 1순위 선택 사유 ※1순위로 선택한 시기에만 표기
1	①출산 및 신생아기		
2	②영유아기(만 0~5세아)		
3	③초등학령기(만 6~11세아)		
4	④중등학령기(만 12~17세아)		

2. 귀하는 이하 돌봄지원의 지급대상은 아동 연령 기준으로 몇 세까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출산을 제고 효과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를 모두 표기해주시요.

	자녀돌봄 제도 및 정책/사업명	① 영아 (만0~2세)	② 유아 (만3~5세)	③ 초등학령기	④ 중고등학령기	⑤ 기타 (상세기입)
1	돌봄서비스 지원(어린이집, 방과후돌봄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양육비 현금지원(아동수당)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양육비 세제지원(자녀세액공제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아동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학령기 교육비 지원	응답불가	응답불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다음의 출산·신생아 지원 제도 및 정책은 출산을 제고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① 전혀 효과 없음 문 4-1	② 문 4-1	③ 문 4-1	④ 보통	⑤	⑥	⑦ 매우 효과 있음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신생아·산모 도우미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고위험 신생아·산모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문4 사업의 세부내용입니다.

제도 및 사업명	지원내용
1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	임신부의 본인 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 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50만 원 지원(다태아 90만 원)
2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연간 출생하는 신생아 모두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2차 정밀 검사 결과 선천성대사 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만 18세 미만의 환아 중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환아관리 지원대상임
3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보장 가구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0% 이하 가구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4 신생아·산모 도우미 지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케어를 돕는 제도(산모의 유방관리 및 수유지원, 식사 지원 등과 신생아 위생관리, 건강상태 확인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
5	고위험 신생아·산모 지원	부족한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확충하여 지역별 불균형 해소 및 신생아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광역 단위의 고위험산모 중증질환 신생아 치료를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고위험분만통합 치료센터 설치
6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 지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와,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미숙아는 체중별 최고 1천만 원까지, 선천성 이상아는 최고 5백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

4-1 4번에서 효과가 낮다고 응답한 경우(①,②,③)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가능)

※ 출산율 제고 효과가 낮다고 평가한 항목에 한하여 응답합니다.

	구분	출산율 제고 효과가 낮은 이유(복수 선택 가능)
	자녀돌봄 제도 및 정책/사업명	①지원내용이 적절하지 않아서 ②지원대상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 일부대상만 지원 ③지원 수준(지원금액)이 낮아서 ④기타: 구체적으로 기입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2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3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4	신생아·산모 도우미 지원	
5	고위험 신생아·산모 지원	
6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 지원	

4-2. 4번의 현행 지원내용 이외에 출산을 제고를 위해 산모 및 신생아에게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지원내용을 자유롭게 제안해주시시오.

※ 출산직후 산모, 신생아, 또는 산모 및 신생아 모두를 대상으로 해당 란에 표기해주시면 됩니다.

※ 각 대상별 지원내용 이외에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지원대상 범위(소득기준 등)를 기술해주시시오.

구분	추가 지원내용 / 지원대상 범위: 소득기준 등
출산직후 산모 대상	
신생아 대상	
출산직후 산모 및 신생아 대상	

5. 다음의 영유아 자녀 대상 돌봄지원 제도 및 정책은 출산을 제고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① 전혀 효과 없음 문 5-1	② 문 5-1	③ 문 5-1	④ 보통	⑤	⑥	⑦ 매우 효과 있음
1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시간제보육(어린이집/육아종합 지원센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가정양육수당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0~5세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3~5세 누리과정 지원(유치원/어린이집)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시간연장형보육 지원(어린이집)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육아종합지원센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가정양육지원								
10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드림스타트 사업(아동통합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영양플러스 사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자녀세액공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교육비 세액공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자녀장려세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 5번 사업의 세부내용입니다.

제도 및 사업명		지원내용
1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중위소득 40%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기저귀 64,000원과 조제분유 86,000원을 각각 지급
2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 받지 않고,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월 40시간 혹은 월 80시간의 시간제보육료 이용단가 중 일부를 지원
3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 가구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의 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가정으로 파견하여 이유식 먹이기, 지저귀 갈기 등 돌봄서비스 제공하며,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정부지원 ※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월 91만 원 정부지원 중위소득 120%초과 가구 본인부담 100%(130만 원)
4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제공, 등하원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중위소득 120%까지 정부지원 ※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시간당 4875원 정부지원 중위소득 120% 초과 가구 본인부담 100%(시간당 6,500원)
5	가정양육수당	보육료나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

	지원	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48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 연령에 따라 월 10-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차등 지급
6	0~5세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은 부모와 아이의 필요에 따라 종일반과 맞춤형으로 구분하여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0~2세 맞춤형 아동은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지원
7	3~5세 누리과정 지원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아에게 해당 연령의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8	시간연장형 보육지원 (어린이집)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시간대에 지원대상 자녀에 대하여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 /만0세~2세 보육료, 만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 전) 지원아동에게 시간연장보육료, 야간보육료, 24시간 보육료 지원
9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지원	취학전 모든 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도서 및 장난감 등 대여, 체험 및 놀이공간 이용, 부모대상 육아상담 및 교육, 육아정보 등을 제공
10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의 자녀돌봄을 위한 공간 및 육아정보를 제공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
11	드림스타트 사업 (아동통합서비스)	0세(임산부)~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해 서비스 대상을 선정하고, 아동발달 영역별(신체, 정서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아동의 경우는 건강검진 등과 임산부는 예비 부모교육, 부모에게는 자녀 발달 및 양육관련 교육을 제공
12	영양플러스 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미만인 가구의 빈혈 등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 결과에 따라 영양보충 식품을 제공하고,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 지원하는 내용 등의 교육과 상담을 제공
13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이하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만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을 공통으로 실시하며, 2-3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으로 구성
14	영유아 발달장애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되는 당해연

	정밀 검사비 지원	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인 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15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백신별 대상자는 상이 보건소 및 전국 1만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은 국가예방접종 접종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총 16종의 백신을 무료 접종
16	자녀세액공제	자녀수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공제하는 제도로서, 연간 공제액은 첫째 자녀 30만 원, 둘째 자녀 50만 원, 셋째 자녀 이상은 70만 원이며, 6세 이하 자녀가 2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1인당 연간 15만 원 추가 공제
17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 제도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하며, 한도액은 영유아부터 고등학생 자녀는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
18	자녀장려세제	연간소득이 4천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 지급

5-1 5번에서 효과가 낮다고 응답한 경우(①,②,③)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가능)

※ 출산율 제고 효과가 낮다고 평가한 항목에 한하여 응답합니다.

	구분	출산율 제고 효과가 낮은 이유
	자녀돌봄 제도 및 정책/사업명	①지원내용이 적절하지 않아서 ②지원대상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일부대상만 지원 ③지원 수준(지원금액)이 낮아서 ④기타: 구체적으로 기입
1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	시간제보육	
3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4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5	가정양육수당 지원	
6	0~5세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7	3~5세 누리과정 지원 (유치원/어린이집)	
8	시간연장형보육 지원 (어린이집)	
9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지원	
10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11	드림스타트 사업 (아동통합서비스)	
12	영양플러스 사업	
13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14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15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	
16	자녀세액공제	
17	교육비 세액공제	
18	자녀장려세제	

5-2. 5번의 현행 지원내용 이외에 출산을 제고를 위해 영유아 및 부모에게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지원내용을 각 부문별로 자유롭게 제안해주시시오.

※ 각 부문별 지원내용 이외에도 해당 지원의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지원대상 범위(아동 연령 및 소득기준 등)가 있다면 기술해주시시오.

구분	추가 지원내용 / 지원대상 범위 (아동 연령/소득기준 등)
영유아 자녀 대상 현물지원	
영유아 자녀 세제지원	
돌봄서비스 /가정내양육 지원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기타(구체적으로)	
-----------	--

6. 다음의 **학령기 자녀 대상 돌봄지원** 제도 및 정책은 출산을 제고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① 전혀 효과 없음	② <u>문 6-1</u>	③ <u>문 6-1</u>	④ 보통	⑤	⑥	⑦ 매우 효과 있음	
1	초등돌봄교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방과후 학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방과후 수강권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지역아동센터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급식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학교 우유급식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6번 사업의 세부내용입니다.

제도 및 사업명	지원내용
1 초등돌봄교실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1~2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학교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유형(오후돌봄, 저녁돌봄,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에 따라 지원대상과 이용시간이 다름.
2 방과후 학교	방과후에 돌봄이 필요한 초등 3~6학년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학생 중 방과후 프로그램을 1~2개 참여, 오후 5시까지 운영
3 방과후 수강권 지원	저소득층 자녀가 자유롭게 원하는 방과후 학교 강좌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1인당 연간 60만 원 내외에서 방과후 학교 수강료를 지원
4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취약계층 청소년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저소득층, 한부모, 장애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중위소득 60% 이

	미	하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학생 중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 학습,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
5	지역아동센터 운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90% 이상은 중위소득 100%이하인 우선보호아동)으로 아동보호, 교육, 정서적 지원, 문화서비스, 지역연계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운영
6	급식비 지원	초, 중, 고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에서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급식비를 지원
7	학교 우유급식 지원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한부모가족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기타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단가 430원인 200ml 우유를 연간 250일 내외로 무상지원

6-1 6번에서 효과가 낮다고 응답한 경우(①,②,③)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 출산율 제고 효과가 낮다고 평가한 항목에 한하여 응답합니다.

	구분	출산율 제고 효과가 낮은 이유(복수 선택 가능)
	자녀돌봄 제도 및 정책/사업명	①지원내용이 적절하지 않아서 ②지원대상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일부대상만 지원 ③지원 수준(지원금액)이 낮아서 ④기타: 구체적으로 기입
1	초등돌봄교실	
2	방과후 학교	
3	방과후 수강권 지원	
4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5	지역아동센터 운영	
6	급식비 지원	
7	학교 우유급식 지원	

- 6번의 현행 지원내용 이외에 출산을 제고를 위해 학령기 자녀 또는 부모에게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지원내용을 자유롭게 제안해주시시오.
- 6-2. ※ 각 대상별 지원내용 이외에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지원대상 범위(소득기준 등)를 기술해주시시오.

구분	추가 지원내용 / 지원대상 범위: 아동 연령, 소득기준 등
초등학령기 대상 현물지원	
세제지원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기타	

7. 이하의 근로자 대상 기업의 자녀돌봄지원 제도는 출산을 제고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자녀돌봄 제도 및 정책/사업명	① 전혀 효과 없음 문 7-1	② 문 7-1	③ 문 7-1	④ 보통	⑤	⑥	⑦ 매우 효과 있음
1	출산전후휴가제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배우자 출산휴가(남성 5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육아시간(수유시간) 허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육아휴직제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아빠의 달 인센티브 제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가족돌봄 휴직제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7번 사업의 지원내용입니다.

제도 및 사업명		지원내용
1	출산전후휴가 제도	기업주는 근로자가 출산 시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급여 상한액 최대 150만 원
2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 5일)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근로자에게 3~5일의 휴가를 부여, 최초 3일은 유급
3	육아시간 (수유시간) 허용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사업주가 1일 2회 각 30분 이상 유급 수유시간 제공해야 함
4	육아휴직제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최대 1년까지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해당 기간내 휴직 급여(상한액 1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지급
5	아빠의 달 인센티브 제도	부부 모두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이용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첫 3개월 급여는 100% 지급(최대 150만 원)
6	가족돌봄 휴직제도	근로자의 자녀가 질병, 사고 등을 돌봐야 할 때 휴직을 신청한 경우, 연간 최장 90일간 부여하며, 분할 사용 가능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돌봄을 위해 근로시간을 일부 단축하고 단축한 시간의 급여를 정부로부터 일부 보전 받도록 한 제도로서,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기업주는 허용해야 함
8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지원	자녀돌봄이 필요한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전환시킨 사업주에게 1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

7-1 7번에서 효과가 낮다고 응답한 경우(①,②,③)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가능)

※ 출산율 제고 효과가 없다고 평가한 항목에 한하여 응답합니다.

구분	출산율 제고 효과가 낮은 이유 (복수 선택 가능)
자녀돌봄 제도 및 정책/사업명	①지원내용이 적절하지 않아서 ②지원대상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일부대상만 지원 ③지원 수준(지원금액)이 낮아서 ④기타: 구체적으로 기입
1 출산전후휴가제도	

2	배우자 출산휴가(남성 5일)	
3	육아시간(수유시간) 허용	
4	육아휴직제도	
5	아빠의 달 인센티브 제도	
6	가족돌봄 휴직제도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8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지원	

- 7-2. 7번의 현행지원 이외에 출산을 제고를 위해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지원내용을 자유롭게 제안해주시시오.
 ※ 각 대상별 지원내용 이외에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지원대상 범위(소득기준 등)를 기술해주시시오.

구분	추가 지원내용 / 지원대상 범위: 소득기준 등
부모 직접 돌봄	
근로시간 단축 및 선택제	
아버지 양육참여 지원	
기타	

Ⅲ. 자녀돌봄 지원의 수요 인식 전반

8. 귀하는 이하의 돌봄지원이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데 얼마나 필요하다고 판단되십니까?
 ※ 이하 출산 양육지원 세부내용 참조

	출산 양육 시 필요도 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자녀돌봄 제도 및 정책/사업명	① 전혀 필요 하지 않음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매우 필요 함

1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신생아·산모 도우미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출산용품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일시 돌봄(시간제보육)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양육비 현금지원(아동수당)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양육비 세제지원(자녀세액공제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영유아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영유아 보육료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학령기 교육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출산·양육 지원 세부내용 (문 8)		
제도 및 사업명	지원내용	
1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	임신이 확인된 자에게 임신·출산 진료비의 일부 지원
2	신생아·산모 도우미 지원	출산한 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돌봄서비스 지원
3	출산용품 지원	출산전 준비용품(기저귀, 크림, 배냇저고리, 욕조 등)을 지원
4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영아(0~24개월)를 둔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 지원
5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만 3개월~12세 아동 대상 아이돌보미 파견 및 비용지원
6	일시 돌봄(시간제보육) 지원	기관(어린이집) 미이용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에게 월 40시간~월 80시간 이용단가의 일부 지원
7	양육비 현금지원(아동수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아동에 월 10~20만 원의 현금 지원
8	양육비 세제지원 (자녀세액공제 등)	자녀수에 따른 종합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
9	영유아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영유아 대상 각 월령별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발달장애 진단 및 정밀검사, 입원 시 본인 부담 면제,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원 등

10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0~5세아에 보육료 지원
11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취학아동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
12	학령기 교육비 지원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면제 및 일부 지원

※ 이하는 2016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대책들입니다.

9. 귀하는 이하의 정부지원이 자녀를 원하는 시기에 출산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십니까?

	출산지원 제도 및 정책	자녀 출산에의 도움 정도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음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매우 도움됨
1	출산지원금: 자녀 출산 시 일시금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응답 후 문9-1로		
2	출산기념품(출산용품)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아동수당: 양육비 현금지원(매월 지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응답 후 문9-2로		
4	산후조리원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모유수유 전문가 가정 파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유축기 대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신생아(0세아) 의료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1. (1>출산지원금이 출산에 도움이 된다(⑤,⑥,⑦)고 응답한 경우, 출산지원금은 1) 몇 번째 자녀부터 2) 얼마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9-1A. 지급대상 아동의 출생순위	9-1B. 지원금액(만 원)
<input type="checkbox"/> ① 첫째 자녀부터	() 만 원
<input type="checkbox"/> ② 둘째 자녀부터	
<input type="checkbox"/> ③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	
<input type="checkbox"/> ④ 넷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	

9-2. (문 9번에서 3>아동수당이 출산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 적합한 지원대상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자녀 연령, 자녀 출생순위, 가구소득별로 적합한 지원대상에 표기해주시시오.

9-3. (문 9-2번에서 ①, ②에 응답한 경우) 취학전 아동(영유아) 대상 적합한 현금지원대상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 현재의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보육교육료 지원 기관)을 다니지 않는 아동입니다.

구분	문 9-2. 지원대상 기준	문 9-3. 취학전 아동 지원대상
A 자 녀 연 령	<input type="checkbox"/> ① 영아까지(만 2세 이하) ☞ 문9-3으로	<input type="checkbox"/> ① 현재의 양육수당과 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종일 동안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함 <input type="checkbox"/> ②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반일만 이용하는 경우는 전액 중 일부만 지급함 <input type="checkbox"/> ③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과 상관없이 모든 영유아를 지급함
	<input type="checkbox"/> ② 미취학 아동까지(만 5세 이하) ☞ 문9-3으로	
	<input type="checkbox"/> ③ 초등저학년까지(만 9세 이하)	
	<input type="checkbox"/> ④ 초등학생까지(만 12세 이하)	X
	<input type="checkbox"/> ⑤ 중등학생까지(만 15세 이하)	
	<input type="checkbox"/> ⑥ 고등학생까지(만 18세 이하)	
	<input type="checkbox"/> ⑦ 대학생까지(만 24세 이하)	
	<input type="checkbox"/> ⑧ 기타(구체적으로:)	
B 자 녀	<input type="checkbox"/> ① 첫째 자녀부터	
	<input type="checkbox"/> ② 둘째 자녀부터	

출생순위 C 가구소득	<input type="checkbox"/> ③ 셋째 자녀 이상 부터	X
	<input type="checkbox"/> ① 저소득층가구에만 지원함	
	<input type="checkbox"/> ② 중산층까지 지원함	
	<input type="checkbox"/> ③ 전(全)계층을 지원함	

9-4. (문 9번에서 3>아동수당이 출산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 적합한 급여수준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자녀 연령, 자녀수, 가구소득, 특수한 요구를 지닌 아동 및 가구 차원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급방식을 각각 표기해주시시오.

구분		급여 수준
1	자녀 연령	<input type="checkbox"/> ① 자녀 연령과 상관없이 균등한 급여액을 지급함
		<input type="checkbox"/> ② 자녀 연령이 적을수록 급여수준을 높임
		<input type="checkbox"/> ③ 자녀 연령이 많을수록 급여수준을 높임
2	자녀수	<input type="checkbox"/> ① 출생순위가 상관없이 동일한 급여를 지급함
		<input type="checkbox"/> ② 출생순위가 높을수록(자녀수가 많을수록) 급여수준을 높임
3	가구소득	<input type="checkbox"/> ① 소득과 상관없이 균등한 급여를 지급함
		<input type="checkbox"/> ② 소득이 낮을수록 급여액을 높임
4	돌봄취약계층 (장애아 등)	<input type="checkbox"/> ① 특수한 요구를 지닌 아동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급여를 지급함
		<input type="checkbox"/> ② 특수한 요구를 지닌 아동에게 추가급여를 지급함

※ 이하는 2016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대책들입니다.

10. 귀하는 이하의 정부지원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십니까?

	육아지원 제도 및 정책	자녀양육에의 도움 정도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음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매우 도움 됨
1	신생아 안심보육료(상해보험료)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맞벌이 가구 대상 가사관리사 (도우미: 세탁, 청소 등) 파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영유아 대상 무료 독감 예방접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유모차(보행기 포함) 대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장난감 대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영유아 학습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북스타트 : 도서 대여 및 독서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아동전문 건강센터 운영 : 만 12세 아동 종합건강관리 제공, 발달 단계별 건강증진 교육 및 정보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육아상담사 가정 파견 : 육아정보 제공, 육아 고민 및 경험 공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아동 등하원(교)서비스 제공(1: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다자녀 진료비 감면: 셋째 자녀대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이하 항목은 현재 소득기준이 적용되어 일부 계층에만 지원되는 제도 및 사업입니다.

귀하께서 판단하기에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수만큼”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지원해야 할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 모든 항목에 표기해주시시오.

	육아지원 제도 및 정책	전(全)계층 지원 여부	
		<input type="checkbox"/> ① 예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1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①	②
2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실시	①	②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건강관리사 파견)	①	②
4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1:1 파견 돌보미)	①	②
5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①	②
6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①	②
7	시간제보육(일시돌봄) 지원	①	②
8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①	②
9	방과후 수강권 제공	①	②
10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①	②
11	장애아 언어발달 지원	①	②
12	장애아 발달재활서비스	①	②
13	발달장애아 부모상담 지원	①	②

부록 3. 심층면담 질문지: 부모용

육아정책연구소

자녀 양육기의 돌봄지원 만족도와 요구_심층면담 질문지_부모용

<p>1. 아동 및 가구 특성/양육 실태 전반</p> <p>1) 자녀 및 가구 특성은 어떠합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총 자녀수, 자녀 연령(막내자녀 연령 및 출생순위 확인: 제도 이용경험 등 적용), 기관(어린이집/유치원 등) 이용 및 재학 현황 - 가구 특성: 다양한 가족 여부(한부모가족 등), 부모의 취업 여부/근로 특성(교대제/야간근로 등 포함)/평균 근로시간 <p>2) (영유아 및 초등자녀 대상) 주양육자 등 자녀양육 실태는 어떠합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양육자: 기관 이용 여부 등 - 기관 이용 시: 최초 이용 시기 및 총 이용 기간, 기관 변경 여부 및 의향 - 기관 미이용 시: 미이용 사유, 희망 기관 이용 시기(자녀 연령) 및 기관 유형
<p>2. 자녀양육 시기별 애로사항 및 그 변화(가구 특성별 차별성 포함)</p> <p>* 자녀양육 시기 구분: <u>출산 및 신생아기/영유아기/초등학령기/중고등학령기</u></p> <p>1) 자녀 연령별 양육 특성 및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연령별 돌봄 시 주된 애로사항 - 각 시기별 세부 구분(<u>출산 및 신생아기/영유아/초등/중고등</u>)의 적정성: 각 시기별 세분화 여부, 돌봄지원 분야 중고등학령기 포함 필요성 여부 등 - 자녀돌봄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 또는 향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 및 그 사유 - 자녀 돌봄이 어려운 부문/양육 시기별 부문의 변화 (예시) 과도한 양육비용(사교육비), 육아정보 및 양육기술 부족, 믿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 기관 부족(국공립어린이집 등), 일·가정 양립 어려움(돌봄시간 부족) 등 - 현재 경험 중인 자녀 돌봄 시 주된 어려움

- 2) 자녀돌봄의 어려움으로 출산을 포기하거나 연기한 경험이 있습니까?
 - 출산 연기 또는 포기 경험 여부 및 그 사유
 - 해당 시기의 돌봄지원 경험: 돌봄지원 제도 이용 여부 및 세부 내용
 - 출산 연기 및 포기를 예방하기 위한 세부 지원내용
- 3) 귀하의 가구 특성 및 근로 특성에 따른 자녀 돌봄 시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가구 특성 일반: 가구소득/자녀수에 따른 돌봄 시 애로사항
 -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자녀 돌봄 시 애로사항: 한부모 가족 등
 - 근로특성에 따른 자녀 돌봄 시 애로사항: 맞벌이 가구 및 아버지의 근로특성 등
 - 자녀양육 단계별 영향 요인의 변화 양상: 양육 단계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 등

3. 자녀돌봄 지원정책 및 제도 이용 실태 및 만족도 / 출산을 제고 효과 인식

- 1) 이하는 현행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돌봄지원 제도 및 정책 내용입니다. 귀하께서 이용해본 경험이 있거나 향후 이용 의향이 있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 중요도에 따라 1, 2, 3순위를 선택해 주십시오.
 ※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지원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항목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고자료 1: 출산·양육 지원 세부내용	
제도 및 사업명	지원내용
1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	임산이 확인된 자에게 임신·출산 진료비의 일부 지원
2 신생아·산모도우미 지원	출산한 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돌봄서비스 지원
3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영아(0~24개월)를 둔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 지원
4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만 3개월~12세 아동 대상 아이돌보미 파견 및 비용지원
5 일시돌봄(시간제 돌봄) 지원	기관(어린이집) 미이용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에게 월 40시간~월 80시간 이용 단가의 일부 지원
6 양육비 현금지원(아동수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아동에 월 10~20만 원의 현금 지원
7	양육비 세제지원(자녀세액공제 등)	자녀수에 따른 종합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
8	영유아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영유아 대상 각 월령별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발달장애 진단 및 정밀검사, 입원 시 본인 부담 면제,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원 등
9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0~5세아에 보육료 지원
10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취학아동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
11	학령기 교육비 지원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면제 및 일부 지원

2)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만족도와 출산 및 양육 시 도움 정도는 어떠합니까?

3) 자녀양육 시기별로 참고자료 1의 중요도는 각각 어떠하다고 보십니까?

	구분	돌봄지원의 중요도
1	출산 및 신생아기	
2	영아(만0~2세)	
3	유아(만3~5세)	
4	초등학령기	
5	중고등학령기	

4) 귀하는 이하의 돌봄지원이 필요한 시기는 자녀가 몇 살 때까지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적정 지원대상: 자녀 연령 연령/출생순위/가구소득
- 적정 급여수준: 현금지원 등 출산 및 추가출산을 위한 희망 및 적정

	자녀돌봄 제도 및 정책/사업명	① 영아 (만0~2세)	② 유아 (만3~5세)	③ 초등학령기	④ 중고등학령기
1	돌봄서비스 지원 (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방과후돌봄)				
2	양육비 현금지원 (아동수당)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양육비 세제지원 (자녀세액공제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아동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학령기 교육비 지원	응답불가	응답불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급여액

4. 추가출산 의향 및 미의향 사유 / 자녀양육 시기별 추가지원 요구

- 1) 귀하는 추가 출산 의향이 있습니까?
 - 추가출산 의향 여부 및 그 사유
 - 희망자녀수 여부 및 추가출산 포기 사유

- 2) 귀하는 이하 **출산지원**이 원하는 수의 자녀를 원하는 시기에 출산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 중요도에 따라 1, 2, 3순위를 선택해 주십시오.
 ※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지원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항목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산지원 제도 및 정책	자녀 출산에의 도움 정도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음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매우 도움 됨
1	출산지원금: 자녀 출산 시 일시금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출산기념품(출산용품)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아동수당: 양육비 현금지원(매월 지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산후조리원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모유수유 전문가 가정 파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유축기 대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신생아(0세아) 의료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귀하는 이하 **육아지원**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 중요도에 따라 1, 2, 3순위를 선택해 주십시오.

※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지원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육아지원 제도 및 정책	자녀양육에의 도움 정도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음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매우 도움 됨
1	신생아 안심보육료(상해보험료)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맞벌이 가구 대상 가사관리사 (도우미: 세탁, 청소 등) 파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영유아 대상 무료 독감 예방접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유모차(보행기 포함) 대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장난감 대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영유아 학습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북스타트: 도서 대여 및 독서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아동전문 건강센터 운영 : 만 12세 아동 종합건강관리 제공, 발달 단계별 건강증진 교육 및 정보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육아상담사 가정 파견 : 육아정보 제공 육아 고민 및 경험 공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아동 등하원(교)서비스 제공(1: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다자녀 진료비 감면 : 셋째 자녀대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희망하는 수대로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기 위해 양육 시기별로 반드시 필요하거나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내용은 무엇입니까?

	구분	일차적으로 필요한 지원	추가 요구내용
1	출산 및 신생아기		
2	영아(만0~2세)		
3	유아(만3~5세)		
4	초등학령기		
5	중고등학령기		

<p><부모용></p> <p>심층면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p> <p>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보다 나은 육아지원정책 마련을 위하여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니,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일련번호: 부모 () 번</p>

D1. 연령	만 ()세		
D2. 성별	<input type="checkbox"/> ① 남	<input type="checkbox"/> ② 여	
D3. 최종학력	<input type="checkbox"/> ① 고졸 이하	<input type="checkbox"/> ② 전문(3년제)대학 졸	
	<input type="checkbox"/> ③ 4년제 대학 이상	<input type="checkbox"/> ④ 대학원 이상	
D4. 직업	<input type="checkbox"/> ① 사무직	<input type="checkbox"/> ② 생산직	
	<input type="checkbox"/> ③ 전문직	<input type="checkbox"/> ④ 서비스 및 판매직	
	<input type="checkbox"/> ⑤ 전업주부	<input type="checkbox"/> ⑥ 무직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		
D5. 취업 여부 ※ part-time 등 포함	<input type="checkbox"/> ① 예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 D6. 가구 특성으로	
D5-1 취업상태	<input type="checkbox"/> ① 자영업자(혼자 운영)	<input type="checkbox"/> ② 고용주(종업원 등)	
	<input type="checkbox"/> ③ 상용근로자(정규 출퇴근)	<input type="checkbox"/> ④ 임시근로자	
	<input type="checkbox"/> ⑤ 일용근로자	<input type="checkbox"/> ⑥ 무급가족종사자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		
D5-2 주당 평균 근로시간	주당 평균 () 시간		
D6. 가구 특성 (해당 항목 모두 표기)	구분	해당 여부	
		<input type="checkbox"/> ① 예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다문화가정	①	②
	한부모/조손가정	①	②
	장애부모 가정	①	②
	장애아 자녀를 둔 가정	①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①	②

	차상위계층 가구		①	②
	북한이탈주민 가구		①	②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1일 8시간 이상 근로)		①	②
D7. 자녀 특성	구분	연령(만)	기관 이용 여부	재학
			①미이용 ③유치원	②어린이집 ④기타
	첫째 자녀	() 세		
	둘째 자녀	() 세		
	셋째 자녀	() 세		
	넷째 자녀	() 세		
	총 자녀수	() 명		
D8. 거주 지역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D9. 월평균 가구소득	<input type="checkbox"/> ① 149만 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③ 200~249만 원 <input type="checkbox"/> ⑤ 300~349만 원 <input type="checkbox"/> ⑦ 400~499만 원 <input type="checkbox"/> ⑨ 600만 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② 150~199만 원 <input type="checkbox"/> ④ 250~299만 원 <input type="checkbox"/> ⑥ 350~399만 원 <input type="checkbox"/> ⑧ 500~599만 원	

심층면담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4. 전국 상위 10개 지역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

〈부록 표 4-1〉 전국 상위 10개 지역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2016)

단위: 명, 해당연령 여성인구 1천명당 명, 인구 1천명당 명

지역명	합계출산율	지역명	출생아수
전남 해남군	2.46	경기 수원시	12,036
강원 인제군	2.16	경남 창원시	9,526
전남 영암군	2.11	경기 용인시	9,296
전남 장성군	2.10	경기 성남시	8,864
부산 강서구	1.98	충북 청주시	8,529
충남 당진시	1.95	경기 고양시	8,131
강원 화천군	1.93	경기 부천시	6,909
경남 거제시	1.91	경기 화성시	6,726
경남 산청군	1.89	충남 천안시	6,412
전남 광양시	1.84	서울 송파구	5,899

자료: 통계청, 「2015년 출생통계(확정)」 (16. 8월).

연구보고 2017-15

저출산 대응정책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분석 연구
: 자녀 양육기의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발행일 2017월 11월

발행인 소장직무대행 이미화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http://www.kicce.re.kr>

인쇄처 경성문화사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7952-28-2 93330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orea
ChildCare and *Institute of*
*Educ*ation



9 791187 952282

ISBN 979-11-87952-28-2